

2015 해외연구관 보고서



선거연수원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

일리두기

- 본 자료집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추진에 참고할 주요 국가의 선거·정치 관련 법제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최신 자료를 적기 수집하고자 운영한 해외연구관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한 것임.
- 2015년도 해외연구관은 주요 선진국인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에 거주하는 정치학·법학 전공자 등 선거·정치분야 전문가 중 5명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 해외연구관에게 5차례 지정과제 부여한 바, 본 자료집에는 1차 지정과제를 제외한 지정과제와 해외연구관이 자발적으로 수집한 선택과제 2건을 수록하였음.
 - ※ 1차 지정과제 “2009년 이후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정 내용”은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2015)」에 수록
- 본 자료집 내용 중 객관적 사실 이외의 평가·분석 부분은 해당 국가 관계자 또는 해외연구관 개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힘.



목 차

I .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방안.....	1
1. 영국.....	8
2. 독일.....	24
3. 미국.....	47
4. 호주.....	60
5. 일본.....	73
II .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재외선거, 거주불명등록자).....	89
1. 영국.....	96
2. 독일.....	109
3. 미국.....	125
4. 호주.....	136
5. 일본.....	147
III . 정책선거 추진실태 및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163
1. 영국.....	170
2. 독일.....	183
3. 미국.....	205



목 차

4. 호주	218
5. 일본	229
IV. 정당의 구성 및 활동 등에 대한 제도 및 운영실태	257
1. 영국	264
2. 독일	277
3. 미국	337
4. 호주	346
5. 일본	361
V. 선택과제	375
1. 영국 교육부 시민교육(초등) 지침	377
2. 서호주 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책임자(DMM) 임명	393
VI. 부 록	399
1. 2015년도 해외연구관 현황	401
2. 2015년도 지정과제 목록	402

I.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 방안

1. 영국 / 8
2. 독일 / 24
3. 미국 / 47
4. 호주 / 60
5. 일본 / 73



국가별 개요

1. 영국(United Kingdom)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급증하는 장애인유권자 수에 비해 정부 및 정당 차원의 선거정보 제공 실적은 미미함. 다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단체들이 정부 지원 아래 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
- 주요정당들은 지난 2010년 총선 이후 장애인유권자들을 위한 ‘읽기 쉬운 선거공약집’ 을 일반 공약집과 구분해 발간함.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장애인유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표적 관련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DDA 1995)」, 「평등법 (EA 2010)」, 「정보자유법 (FIA 2000)」 등이 있음.
- 정부는 장애인유권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평등지원자문단(EASS), 평등인권위원회(EHRC)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영국 내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현재 진행형임.
- 투표소 직원은 어떤 경우라도 장애인유권자들이 비장애인유권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거감독관이 맡음.
- 장애인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인유권자들은 우편투표 및 대리인을 지명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정부 소속으로 장애인 권익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를 통해 장애인에게 선거관련 정보의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음.
- TV 방송국을 통해 진행되는 선거토론방송 또는 선거관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국 자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음성지원 또는 텍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2002년 제정된 「장애인 평등법」에 기초하여 정부 관련부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선거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장애인 평등법 제14조 및 제15조」)
- 「연방선거법 시행령」에서 선거인명부 등재, 선거증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투표소로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를 설치함.
- 장애인 또는 문맹 등의 사유로 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를 제외하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표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력자를 이용하여 투표하도록 함.

3.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미국 대부분 주의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각 선거의 후보자 및 주민발의 투표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은 홈페이지에서 각 후보자 및 투표안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 할 수 있음.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미국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법(ADA)」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선거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
- 「투표지원법(HAVA)」 제정 이후 장애인들의 선거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각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표소 접근성 및 투표 장비 개선을 위해 장애인 시설 이동투표 허용 등 장애인 편의 제공하고 있음.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장
- 투표소로 진입하는 통로의 경사, 복도의 폭, 장애인용 배를 위한 공간 등 주차장에 갖추어져야 할 요건과 투표소 입구의 넓이 등을 「장애인법」에 규정하여 투표 편의 제공
- 최근에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투표 등 장애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고 있음.

4. 호주(Australia)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호주선거위원회(AEC)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파일을 제공하며, 청각장애인 혹은 언어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는 국립 릴레이 서비스(National Relay Service)를 제공.
- 2013년 연방선거에서는 총 7,697개 투표소 중에 11.8%이 완벽하게 장애인 접근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70.2%이 부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었음.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1992(DDA 1992)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해 장애인유권자 편의 제공
- 「연방선거법」을 통해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전자보조투표기기(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시력이 나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을 투표주재관에게 확인받는 경우, 해당 유권자는 도움 받을 사람을 지명하여 참관인의 참석 하에 기표소로 함께 들어가서 기표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음.
-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자동전화투표서비스 (Automated Telephone Voting service), 우편투표 또는 사전투표도 가능하며 이동투표소가 설치된 병원(Hospital that are polling places) 또는 원격지에서 이동투표도 할 수 있음.

5. 일본(Japan)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권고하는 형식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하거나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장애인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일본의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 규정은 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
-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를 통해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며, 한정적으로 민간단체에 의한 장애인 투표지원 있음.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총무성은 각 자치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 등의 선거정보 제공을 의뢰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¹⁾.
- 전국 규모의 강제 규정은 없으나,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구정촌(市区町村)별로 점자, 음성 테이프를 이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대부분의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1. 영국



영국 연구관 : 윤성원

1. 시각청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1) 선거관리기관·후보자·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2015년 총선에 등록된 선거인수는 총 4,642만 5,386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유권자는 1,1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자선단체인 ‘Papworth Trust’ 는 1,200만으로 추산).²⁾ 이는 영국 유권자 4명 중 1명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함.
 -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총선을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추세임. ‘Papworth Trust’ 가 총선 전인 지난 4월 장애인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가 “확실히 투표할 것” 이라고 답했으며, 92%에 달하는 유권자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 고 답변함.³⁾
 - 학습장애 분야에서 영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단체인 멘캡 (Mencap)에 따르면, 학습장애를 지닌 유권자 5명당 1명 이하 꼴로 2005년 총선에 참가했으나, 2010년 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한 학습장애 유권자 수는 3명당 1명 선으로 증가함.⁴⁾

1) 총무성청취자료(http://www8.cao.go.jp/shougai/suishin/kaikaku/s_kaigi/k_9/pdf/s4.pdf)

2)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and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Disability facts and figures’ (16 January 2014). 이 가운데 45%는 국가연금 수혜를 받는 고령자임. 이와 관련, 영국 국가통계청(ONS)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장애를 수반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3) Papworth Trust, ‘Disabled people feel ignored but will turn out to vote for the NHS’ (24 April 2015).

4) Cabinet Office and Mencap, ‘Easy read guide to voting and registering to vote’

- 급증하는 장애인유권자 수에 비해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정부 및 정당 차원의 직접적인 선거정보 제공 실적은 미미한 편임. 다만 정부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단체들 간의 협력, 또는 자선단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이밖에 지역별로 활성화된 자선단체들이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Scope, Scope Cymru, Capability Scotland, Disability Action, Disability Wales, Inclusion London 등이 대표적 지역단체들이며, 장애인유권자들은 해당 단체를 통해 각종 선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주요정당은 2010년 총선 이후 학습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읽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 을 일반 공약집과 구분해 발간하고 있음 (<사진 1> 참조).
 - ‘Mencap’ 은 웹사이트를 통해 각 정당별 선거공약집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Mencap’ 과 더불어 학습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참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읽기 쉬운 형태로 제작 배포하고 있음. 동 자료 내에는 선거등록 기한 및 방법, 우편대리인투표 신청을 비롯한 투표절차 전반, 투표소 확인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음 (<사진 2> 참조).
 - BBC는 청각장애인유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See Hear’ 을 통해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015년 총선 전에는 특별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각 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소속 정당의 주요 공약 및 후보자 정보 등을 제공하게 함 (<사진 3> 참조). 더불어 ‘Facebook’ 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Liberal Democrat Manifesto 2015
Easy read summary



Liberal Democrats
Stronger Economy. Fairer Society.
Opportunity for Everyone.

This document tells you what we will do if we win the general election.

**Stronger economy, fairer society:
Opportunity for everyone**



We are the **Liberal Democrat Party**.
Our leader is Nick Clegg.



We are a **political party**.
This means we are 1 of the groups who want to be the next **government** and run the country.




This easy read summary of our manifesto tells you about some of the main things that:


- we believe in
- we will do if we become the next government.

〈사진1〉 자유민주당 발간 ‘2015 총선 읽기 쉬운 선거공약집’

Voting at a polling station **7.1**




This guide explains **how to vote at a polling station**.
You can find out more about voting on the Mencap and Electoral Commission websites:
www.mencap.org.uk/allaboutvoting
www.aboutmyvote.co.uk





First, register to vote, either online here at www.gov.uk/register-to-vote or by completing the electoral registration form in this guide. When you have registered to vote, you can vote in person at a polling station.

Before an election, you will be sent a poll card. This will tell you where your polling station is.

Voting at a polling station **7.2**




Polling stations are often at churches, community centres and schools. However they can be in all sorts of places.

Polling stations are usually open from 7am to 10 pm.

It can be useful to take your poll card with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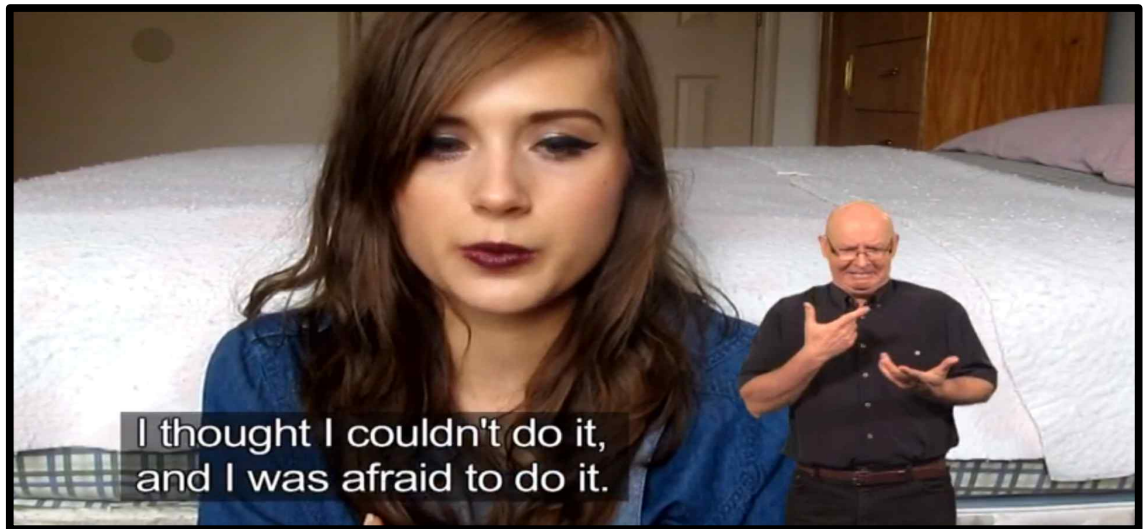
When you arrive at a polling station, you will be asked to give your name and address.



You will be given a ballot paper. This is a form that shows who you can vote for.

Different elections have different rules about how many people you can vote for. This will be explained on your ballot paper.

〈사진2〉 Mencap 발간 발달·학습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선거지침서



〈사진3〉 BBC 'See Hear' 장면 (다양한 장르와 형태로 구성)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은 장애인유권자 투표권 보장과 관련한 주요 근거 법안 중 하나임. 동법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모든 주체는 장애를 지닌 시민들이 해당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당한 수준의 물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투표구역 역시 이에 해당함.
- 「평등법 (Equality Act 2010)」은 기존의 다양한 차별금지법들을 대체하여 단일화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보장을 위한 보다 새로운 근거 법안으로 볼 수 있음. 동 법안은 서비스제공, 업무고용, 교육, 장애인 이동 등과 관련해 ‘차별이 금지되는 유형과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하고 있음.⁵⁾
-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은 선거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장애인유권자들이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⁶⁾
- 영국정부는 장애인유권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평등지원자문단(EASS), 평등인권위원회(EHRC)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⁷⁾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등은 ‘장애인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을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동 협약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생산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을 명기하고 있음.
 - 고용연금부는 지난 2014년 9월 ‘The Accessible Britain Challenge’ 프로그램을 발족함.⁸⁾ 동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5) 손대수, ‘영국의 평등법 제정의미와 시사점’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12.10).

6) Local Mencap Liverpool, ‘Using the Freedom Information Act’

7) Department for Education, Governmental Equalities Office and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equality’ (7 May 2015).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적극적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성 증대, 공간의 혁신적 사용, 포괄적 사회 활동 참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유권자들의 선거 정보 획득 및 참정권 행사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사례별)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실태

- 영국 내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현재진행형임.
 - 장애인유권자 접근을 위한 임시경사로를 사용하는 등 일회성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가건물 혹은 일부지역에서는 카라반(이동주택)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장애인유권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됨.
 - 투표소 입구의 계단, 좁은 출입구 및 복도, 낮은 기표대 부재 등 접근성 제약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남.
- 2010년 총선 기준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소 안팎의 장애인유권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임.
 - 모든 지자체는 「선거관리법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및 「선거등록 및 관리법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에 따라 법이 정한 시한 내에 투표소로 활용된 건물의 내외 부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선거에 활용될 공공기관, 민간시설, 임시구조물 등을 선정해야 함.
 - Scope이 「정보자유법 2000」에 의거해 영국 전역의 지자체에 2010년

8) <https://www.gov.uk/accessiblebritain> (검색일: 2015.5.12.)

총선에 활용된 투표소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결과 약 70% (27,340개)의 투표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89%의 투표소가 법이 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11%에 달하는 투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조차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전체 투표소 중 평가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30%의 투표소를 포함해 40%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장애인유권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영함.⁹⁾

- 평가가 실시된 투표소 가운데 3,851개의 투표소가 장애인 접근성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총선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이는 해당 투표소의 장애인유권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거 당일 각 투표소 직원들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함.¹⁰⁾

2)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시설현황 안내 및 제공

- 투표소 직원은 어떤 경우라도 장애인유권자들이 비장애인유권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참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유권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¹¹⁾
 - 지역 장애인 단체들 역시 장애인유권자들의 선거과정에 조언 및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 투표소 안내문(polling station sign)은 장애인유권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크게 제작돼야 하며, 입구를 가리키는 방향이 제시돼야 함. 투표소 내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입구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입구로 안내하는 이정표를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배치해야 함. 유권자 지침서(Guidance for voters) 역시 투표소에 도착한 장애인유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9) Scope, '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 (July 2010), pp. 12-13.

10) Scope, '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 (July 2010), p. 13.

11) The Electoral Commission, 'Disabled people' s voting rights'

위치해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반드시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투표일 동안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함.
-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입구(방화벽 제외)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며, 입구 앞에 놓인 도어매트가 느슨한 경우 제거해야 함.¹²⁾
- 장애인유권자들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가 필요한 경우 유권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해 선거일 동안 사용할 수 있음.
- 장애인유권자가 쉴 수 있는 의자가 제공되어야 하며, 팔걸이가 있는 의자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함께 비치하는 것을 권고함.¹³⁾

3)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우편투표 및 대리인투표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거제도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이동편의 제공관련 규정은 부재함.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유권자는 우편투표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투표소 직접투표를 선호하는 장애인유권자가 있는 경우 지역 장애인업무 관련 자선단체들이 선거정보 및 이동차량을 제공하고 있음.¹⁴⁾

4) 투표도우미의 투표지원 등

-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거감독관(presiding officers)이 맡음.
- 만일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소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 선거감독관은 투표소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한 이후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에 있는 유권자에게 전해줄 수 있음. 기표된 용지를 유권

12) <http://www.scope.org.uk/get-involved/campaigns/general-election/voting> (검색일: 2015.5.8.)

13) The Electoral Commission, 'Handbook for polling station staff' (2012), p. 20.

14) Papworth Trust 정무담당 Flora Wilkie와의 인터뷰 (2015.5.21.)

자로부터 건네받은 이후엔 즉시 해당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함. 한편 투표함은 어떤 경우라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투표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¹⁵⁾

- 선거감독관은 장애인유권자들이 기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음. 이 경우 장애인유권자는 기표소 내에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선거감독관은 이에 따라 기표할 수 있음.¹⁶⁾

○ 장애인유권자들은 필요한 경우 조력자와 함께 투표소에 진입할 수 있음.

- 장애인유권자의 조력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의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조부모 및 손자 등)이어야 하며, 해당 유권자는 선거감독관에게 조력자의 도움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 장애인유권자의 조력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유권자 조력자로서의 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거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선거감독관은 반드시 해당 장애인유권자 및 조력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따로 마련된 목록(List of voters with disabilities assisted by companions)에 기재해야 함 (5. 기타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관련 입법례 참조).¹⁷⁾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1) 장애인용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등 선거용품 제공여부

- 시각장애인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발부받기 전 기표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대된 형태의 투표용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해야 함. 시각장애인유권자는 필요시 투표소 직원에게 ‘견본’ 이라고 적힌 휴대용 확대 투표용지를

¹⁵⁾ *ibid.*

¹⁶⁾ *ibid.*

¹⁷⁾ *ibid.*, p. 21.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¹⁸⁾

- 시각장애인유권자는 투표용지에 부착된 촉각판 (tactile voting template)을 이용해 조력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진 4> 참조). 투표소 내 모든 직원은 반드시 해당 선거용품 사용방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촉각판이 투표용지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유권자가 해당 용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낮은 형태의 기표대(low level polling booths) 및 시각장애인유권자들이 투표함을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투표함을 둘러싼 표식을 설치할 수 있음.¹⁹⁾
 - 2010년 총선 기준 낮은 형태의 기표대를 확보한 투표소는 62%에 불과함 (2005년 총선 66%).²⁰⁾

2) 장애인용 투표용지 작성사례

- 시각장애인유권자용 부착식 촉각판 용례는 다음과 같음: 선호후보의 번호 옆에 부착된 촉각판을 짚힌 뒤 표기→촉각판 원위치(선호투표제 등 복수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 과정을 반복)→투표용지에서 촉각판 제거→투표→제거된 촉각판을 선거감독관에 반납.²¹⁾

18) <http://www.scope.org.uk/get-involved/campaigns/general-election/voting> (검색일: 2015.5.8.)

19) <http://www.scope.org.uk/get-involved/campaigns/general-election/voting> (검색일: 2015.5.8.)

20) Scope, '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 (July 2010), p. 28.

21) The Electoral Commission, 'Handbook for polling station staff' (2012), p. 21.



〈사진4〉 촉각판이 부착된 투표용지

○ 그러나 적지 않은 장애인유권자들이 촉각판 등 해당 용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활용하기 쉬운 형태의 관련용품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²²⁾ 게다가 투표소 직원들이 촉각판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고됨. 2010년 총선 기준 투표소에 시각장애인 유권자 기표용 촉각판을 구비하지 않거나, 구비하더라도 투표소 직원들이 해당용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합하면 전체 투표소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다음은 기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의 발언을 인용한 것임.²³⁾

- “시각장애인이라 투표용지를 망칠까봐 기표를 하는 게 망설여졌어요. 엉뚱한 곳에 표시를 하거나 뭔가 잘못 그려져서 표기기준에 벗어난 투표용지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 “발달장애를 지닌 아들을 데리고 투표장에 갔는데 투표소 직원들이 ‘재(투표)용지 하나 더 버렸네’ 라고 하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들과 함께 우편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22) BBC, ‘Why do disabled people feel ignored when it comes to voting?’ (28 March 2015).

23) Scope, ‘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 (July 2010), pp. 28-31.

- “투표소에 구비된 촉각판 규격이 표준 투표용지에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대된 견본투표용지에 맞는 크기였죠.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라며 자신이 근무한 3년 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임시방편으로 규격에 맞춰 촉각판을 자른 뒤에야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3)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내용 확인방법

- 시각장애인유권자가 촉각판을 사용하지 않고 선거감독관에 기표를 요청할 경우, 선거감독관은 반드시 유권자의 지시에 따라 기표를 해야 함. 유권자의 선호 후보 발언 및 이에 따른 선거감독관의 대리기표는 반드시 후보자, 선거관계자 혹은 투표소 직원 등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돼야 함.²⁴⁾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Law Commission)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유권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선거용품 제공과 관련된 단일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함.²⁵⁾

4) 장애인 기표행위 지원 대상범위 및 방법

- 장애인유권자 혹은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전문식견을 가진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지자체의 투표소 평가결과에 대해 선관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이는 지자체가 장애인유권자들을 위한 투표소 접근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함.
- 불만사항을 접수받은 선관위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불만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
- 선관위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진정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

24) The Electoral Commission, ‘Handbook for polling station staff’ (2012), p. 21.

25) Law Commission, ‘Electoral Law Summary’ (9 December 2014).

과는 웹사이트에 공고함. 더불어 해당 지자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된 진정서의 처리결과를 공고해야 함. 지자체는 이후 2달 이내에 선관위 평가결과를 반영해 적절한 변경조치를 취해야 함.

4. 시설 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1) 장애인시설 유형별 거소투표신고자(우편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무 기준 및 현황

- 장애인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인유권자들은 우편투표 또는 대리인 지명을 통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²⁶⁾
 - 우편투표는 선거일 11 근무일 전까지, 대리인투표는 선거일 6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기존 대리투표 변경 건은 11일 근무일 전까지 신청). 우편투표 및 대리인투표는 △특정 선거 지정 (1회) △특정 기간 지정 △영구적 등으로 기간을 세분화해 신청할 수 있음.
 - 장애로 인해 우편투표 신청서에 서명하기가 어려운 경우 선거팀은 서명 제공 의무부과를 철회할 수 있음.²⁷⁾
 - 대리인투표 신청은 일반 대리투표와 다른 별도의 신청서(Application to vote by proxy based on disability)를 통해 가능함.
 - 지자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장애지원비용 및 자립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유권자들은 별도의 제청절차 없이 신청서의 해당사항만 작성해 신청이 가능함. 그 밖의 신청자들은 등록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제청을 받아야 함.²⁸⁾

26)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Guidance: Part 5—Absent Voting (April 2014).

27) <https://www.shropshire.gov.uk/democracy/voting-and-elections/postal-voting-and-proxy-voting/> (검색일: 2015.5.14.)

28) The Electoral Commission, 'Application to vote by proxy based on disability'

- 대리인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선거인이어야 하며, 가까운 가족 혹은 친지로만 임명할 수 있음.
- 대리인투표 신청 기한이 지난 이후 신체에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선거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별도의 대리인투표 신청이 가능함. 신청절차 및 기준은 일반 장애인유권자의 대리인투표 신청과 같음.²⁹⁾

2) 장애인시설 거소투표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방법

-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유권자들이 우편투표시 비밀투표, 직접투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대체로 높은 편임 (비밀투표 85%, 직접투표 77%).³⁰⁾
- 그러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의 비밀·직접투표 보장은 어려운 것이 사실임. 배송된 투표용지를 우편에서 분리하고 기표 뒤 반송봉투에 넣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일부 장애인유권자들은 기표 자체의 어려움을 근거로 종이 아닌 형태의 대체투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³¹⁾

5. 기타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관련 입법례

- 「국민대표법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Section 39)은 시각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련 과정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감독관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개정 「국민대표법 2000」 (Section 13)은 시각장애인유권자를 위한 대형

29) The Electoral Commission, 'Application to vote by emergency proxy based on disability'

30) Scope, '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 (July 2010), p. 34.

31) *ibid.*, pp. 33-35.

투표용지(견본)의 투표소 설치 의무를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s)에 부과함.

- 「선거관리법 2006」 및 「선거등록 및 관리법 2013」은 지방정부가 모든 투표소 및 잠재적 투표장소를 평가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유권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의사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2005)」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의 의사능력과 관련된 평가에 법적 기준을 제공함. 동 법(Section 1)에 따르면 발달장애유권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됨. 동 법(Section 3)은 의사결정능력 평가 기준으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이해 △해당 정보의 숙지 △해당정보의 의사결정과정 활용 △본인의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수화 포함)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투표에 관해 타인을 대신해 내리는 결정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Section 29).
 - 이와 관련, 「선거관리법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Section 73)은 유권자의 정신 상태를 이유로 ‘투표권 능력 없음’으로 규정하는 모든 관습법 규정을 폐기한다고 규정함.

6. 각종 선거물품 사진³²⁾



〈사진5〉 조명장치가 달린 장애인, 일반인 겸용 기표대



〈사진6〉 장애인 및 일반인 함께 투표하는 장면

32) 해당 사진은 영국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관련용품을 디자인하고 제조·공급하는 'pakflatt' 홈페이지(<http://www.pakflatt.com/home>)에서 발췌한 것임 (검색일: 2015.5.13.)

2. 독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1. 시각·청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1) 선거관리기관·후보자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선거공약, 후보자 정보 등 제공방법 및 사례
 -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정보제공 의무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없음.
 - 장애인의 경우에는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에 상대적인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정보습득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지원을 통한 정보제공, 청각장애인에게는 인쇄물을 통한 선거정보의 제공과 같이 접근가능성에 기초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³³⁾
 - 선거공약이나 후보자 정보에 대해 선거관리기관 차원에서 모든 정당에게 동등한 기회로 제공되는 장애인 관련 지원은 없음.
 - TV방송국을 통해 진행되는 선거토론방송 또는 선거관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국 자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음성지원 또는 텍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³⁴⁾
 - 2002년 제정된 「장애인 평등법」에 기초하여 정부 소속으로 장애인 권익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를 통해 장

33)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공약집, TV광고 등은 정당에서 제작되며,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작되어 사용되는 자료를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하는 것임.

34) 이러한 음성지원, 텍스트 서비스는 선거방송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사인 ZDF와 ARD 채널의 경우에는 일반적, 상시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제공되고 있음.

애인에게 선거관련 정보의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음(「장애인 평등법 제14조 및 제15조」).³⁵⁾

[참고조문]

「장애인 평등법」

제14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위한 연방정부 대표자의 직무

- (1) 연방정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위한 연방정부 대표자를 임명한다.
- (2) 대표자는 임무수행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 (3) 임기에 있어서 해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의 임기와 함께한다.

제15조 임무와 권한

- (1) 대표자의 임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비장애인들의 동등한 삶의 여건을 배려해야 할 연방의 책임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표자는 이런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및 남성장애인들의 상이한 삶의 여건들을 고려하고 성별로 특화된 차별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 (2) 연방의 각 부처는 동제1항의 임무수행 시 장애를 가진 사람의 통합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는 모든 법률, 시행령 및 중요한 계획 시 대표자를 참여시킨다.
- (3) 모든 연방관서와 연방의 공공사무소는 대표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며 특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의 열람을 보장한다. 개인과 관련된 자료들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침해되지 않는다.

「BGG」

§ 14 Amt der oder des Beauftragten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 (1) Die Bundesregierung bestellt eine Beauftragte oder einen Beauftragten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 (2) Der beauftragten Person ist die für die Erfüllung ihrer Aufgabe notwendige Personal- und Sachausstattung zur Verfügung zu stellen.
- (3) Das Amt endet, außer im Fall der Entlassung, mit dem Zusammentreten eines neuen Bundestages.

35) 연방하원의회의 선거 -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SharedDocs/Downloads/DE/BPB_Wahlhilfe.html
유럽의회 선거 -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SharedDocs/Downloads/DE/EuropawahlBrosch.html>

§ 15 Aufgabe und Befugnisse

- (1) Aufgabe der beauftragten Person ist es, darauf hinzuwirken, dass die Verantwortung des Bundes, für gleichwertige Lebensbedingungen für Menschen mit und ohne Behinderungen zu sorgen, in allen Bereichen des gesellschaftlichen Lebens erfüllt wird. Sie setzt sich bei der Wahrnehmung dieser Aufgabe dafür ein, dass unterschiedliche Lebensbedingungen von behinderten Frauen und Männern berücksichtigt und geschlechtsspezifische Benachteiligungen beseitigt werden.
- (2) Zur Wahrnehmung der Aufgabe nach Absatz 1 beteiligen die Bundesministerien die beauftragte Person bei allen Gesetzes-, Verordnungs- und sonstigen wichtigen Vorhaben, soweit sie Fragen der Integration von behinderten Menschen behandeln oder berühren.
- (3) Alle Bundesbehörden und sonstigen öffentlichen Stellen im Bereich des Bundes sind verpflichtet, die beauftragte Person bei der Erfüllung der Aufgabe zu unterstützen, insbesondere die erforderlichen Auskünfte zu erteilen und Akteneinsicht zu gewähren. Die Bestimmungen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bleiben unberührt.

-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시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선거증의 교부신청 시에도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신청에 따른 선거인명부 등재 절차)

- (1)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은 선거일 21일 전까지 서면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신청도 허용된다. 단체신청은 기재된 선거권자 모두의 자필서명을 필요로 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이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가 준용된다.

§ 18 Verfahren für die Eintragung in das Wählerverzeichnis auf Antrag

- (1) Der Antrag auf Eintragung in das Wählerverzeichnis ist schriftlich bis spätestens

zum 21. Tage vor der Wahl bei der zuständigen Gemeindebehörde zu stellen. Er muss Familiennamen, Vornamen, Geburtsdatum und die genaue Anschrift des Wahlberechtigten enthalten. Sammelanträge sind, abgesehen von den Fällen des Absatzes 5, zulässig; sie müssen von allen aufgeführten Wahlberechtigten persönlich und handschriftlich unterzeichnet sein. Ein behinderter Wahlberechtigter kann sich hierbei der Hilfe einer anderen Person bedienen; § 57 gilt entsprechend.

제27조(선거증 신청)

(1) 선거증의 교부신청은 기초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텔레그램, 전보, 텔레팩스, 이메일 또는 그 밖의 문서화가 가능한 전송방식 등이 서면으로 인정된다. 전화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신청 시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가 준용된다.

§ 27 Wahlscheinanträge

(1) Die Erteilung eines Wahlscheines kann schriftlich oder mündlich bei der Gemeindebehörde beantragt werden. Die Schriftform gilt auch durch Telegramm, Fernschreiben, Telefax, E-Mail oder durch sonstige dokumentierbare elektronische Übermittlung als gewahrt. Eine telefonische Antragstellung ist unzulässig. Ein behinderter Wahlberechtigter kann sich bei der Antragstellung der Hilfe einer anderen Person bedienen; § 57 gilt entsprechend.

○ 후보자 TV토론회 수화제공 여부 및 사례(사진 포함)

- 선거 후보자의 TV 연설이나 대담, 토론회 등에서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지난 2013년 연방하원 선거 과정에서 개최된 TV토론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동시통역 또는 자막방송이 제공되지는 않음.
- TV 방송국의 음성지원, 텍스트 서비스는 선거방송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방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사인 ZDF와 ARD의 경우 일 반적, 상시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제공되고 있음.

○ 투표절차 및 투표소 위치정보 안내 방법 및 사례

-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46조 투표소

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능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그 관청의 건물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BWO」

§ 46 Wahlräume

(1) Die Gemeindebehörde bestimmt für jeden Wahlbezirk einen Wahlraum. Soweit möglich, stellen die Gemeinden Wahlräume in Gemeindegebäuden zur Verfügung. Die Wahlräume sollen nach den örtlichen Verhältnissen so ausgewählt und eingerichtet werden, dass allen Wahlberechtigten, insbesondere Behinderten und anderen Menschen mit Mobilitätsbeeinträchtigung, die Teilnahme an der Wahl möglichst erleichtert wird. Die Gemeindebehörden teilen frühzeitig und in geeigneter Weise mit, welche Wahlräume barrierefrei sind.

(이하 생략)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연방의회선거법」 과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이 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선거과정의 지원에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평등법」 을 통해 연방정부 내에 장애인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통해 장애인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함.

- 금치산자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러 정신병원에 구금 중인 경우에는 선거권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제13조」).

[참고조문]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13조 선거권 배제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권이 배제된다.

1. 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자
2. 자신의 모든 일상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법원의 잠정적 명령에 따라 보호자가 임명된 자(금치산자); 이는 보호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가 민법 제1896조 제4항 및 제1905조에서 규정된 업무들을 포괄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형법 제20조와 결합된 제63조에 기초한 명령에 의거하여 정신병원에 구금 중인 자
4. (삭제)

§ 13 Ausschluss vom Wahlrecht

Ausgeschlossen vom Wahlrecht ist,

1. wer infolge Richterspruchs das Wahlrecht nicht besitzt,
2. derjenige, für den zur Besorgung aller seiner Angelegenheiten ein Betreuer nicht nur durch einstweilige Anordnung bestellt ist; dies gilt auch, wenn der Aufgabenkreis des Betreuers die in § 1896 Abs. 4 und § 1905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bezeichneten Angelegenheiten nicht erfaßt,
3. wer sich auf Grund einer Anordnung nach § 63 in Verbindung mit § 20 des Strafgesetzbuches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befindet,
4. (weggefallen)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사례별)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실태

-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설비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46조 투표소

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능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그 관청의 건물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BWO」

§ 46 Wahlräume

(1) Die Gemeindebehörde bestimmt für jeden Wahlbezirk einen Wahlraum. Soweit möglich, stellen die Gemeinden Wahlräume in Gemeindegebäuden zur Verfügung. Die Wahlräume sollen nach den örtlichen Verhältnissen so ausgewählt und eingerichtet werden, dass allen Wahlberechtigten, insbesondere Behinderten und anderen Menschen mit Mobilitätsbeeinträchtigung, die Teilnahme an der Wahl möglichst erleichtert wird. Die Gemeindebehörden teilen frühzeitig und in geeigneter Weise mit, welche Wahlräume barrierefrei sind.

(이하 생략)

2)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시설현황 안내 및 제공

-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설치된 투표소에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의 투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음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사진1〉 장애인 투표가능 투표소 공고문

3)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중증장애인이 투표소에 내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환자, 노인, 수감자 등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를 설치하도록 함.
-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 설치 대상은 소규모의 병원, 양로원, 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 치료원 및 교도소 등임(「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3조」).
- 특별투표구의 설치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관청이 설치함(「연방선거법 제13조」).
- 특별투표구의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설치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동투표구를 통해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연방선거법 제13조제3항」).

- 특별투표구에서 투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증(「연방선거법 제25조」 이하)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함.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조(이동투표구선거위원회)

소규모의 병원, 양로원, 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치료원 및 교도소 등에서의 투표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관할 투표구의 선거위원장이나 그 직무대리인 및 2명의 투표구 선거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다. 시·읍·면 관청은 그 시·읍·면 관청에 속한 다른 투표구의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에 대하여 투표용지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투표구)

- (1) 병원, 양로원, 노인주택, 요양원, 교정원 등 본 시설물 이외에는 적당한 투표공간이 없는 많은 수의 선거인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그 요구가 있을 경우 시·읍·면 관청은 선거증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를 위하여 특별투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여러 개의 시설은 1개의 특별투표구로 통합할 수 있다.
- (3) 특별투표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가 적용된다.

§ 8 Beweglicher Wahlvorstand

Für die Stimmabgabe in kleineren Krankenhäusern, kleineren Alten- oder Pflegeheimen, Klöstern,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en und Justizvollzugsanstalten sollen bei entsprechendem Bedürfnis und soweit möglich bewegliche Wahlvorstände gebildet werden. Der bewegliche Wahlvorstand besteht aus dem Wahlvorsteher des zuständigen Wahlbezirks oder seinem Stellvertreter und zwei Beisitzern des Wahlvorstandes. Die Gemeindebehörde kann jedoch auch den beweglichen Wahlvorstand eines anderen Wahlbezirks der Gemeinde mit der Entgegennahme der Stimmzettel beauftragen.

§ 13 Sonderwahlbezirke

- (1) Für Krankenhäuser, Altenheime, Altenwohnheime, Pflegeheime, Erholungsheime und gleichartige Einrichtungen mit einer größeren Anzahl von Wahlberechtigten, die keinen Wahlraum außerhalb der Einrichtung aufsuchen können, soll die Gemeindebehörde bei entsprechendem Bedürfnis Sonderwahlbezirke zur Stimmabgabe für Wahlscheininhaber bilden.
- (2) Mehrere Einrichtungen können zu einem Sonderwahlbezirk zusammengefasst werden.
- (3) Wird ein Sonderwahlbezirk nicht gebildet, gilt § 8 entsprechend.

○ 2009년 연방하원 선거 과정에서 사민당(SPD)이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을 통해 선거운동을 시행한 사례는 있으나 투표소로의 이동에 한정하여 운행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님.

4) 투표도우미의 투표지원 등

- 독일의 경우 투표소의 관리 및 질서유지는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담당하며 별도의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또는 문맹 등의 사유로 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제33조제2항」).

[참고조문]

「연방의회선거법」

제33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1항 (생략)

제2항 문맹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입하거나, 투표용지를 접거나 스스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없는 선거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66조(우편투표)

- (3) 투표용지는 타인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 봉투에 넣어야 한다. 제56조 제8항이 준용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에 대해서는 제57조가 준용된다. 선거권자가 도움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경우에는 도움 제공자가 선거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부합하게 투표용지에 기표가 이루어졌음을 서명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 제공자는 만 16세를 경과한 자여야 한다.

「BWahlG」

§ 33 Wahrung des Wahlgeheimnisses

- (1) (생략)
(2) Ein Wähler, der des Lesens unkundig ist oder 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 gehindert ist, den Stimmzettel zu kennzeichnen, zu falten oder selbst in die Wahlurne zu werfen, kann sich der Hilfe einer anderen Person bedienen.

§ 66 Briefwahl

- (3) Der Stimmzettel ist unbeobachtet zu kennzeichnen und in den Stimmzettelumschlag zu legen; § 56 Abs. 8 gilt entsprechend. Für die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gilt § 57 entsprechend. Hat der Wähler den Stimmzettel durch eine Hilfsperson kennzeichnen lassen, so hat diese durch Unterschreiben der Versicherung an Eides statt zur Briefwahl zu bestätigen, dass sie den Stimmzettel gemäß dem erklärten Willen des Wählers gekennzeichnet hat; die Hilfsperson muss das 16. Lebensjahr vollendet haben.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1) 장애인용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등 선거용품 제공여부(사진 포함)

-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를 제외하면 장애인을 위한 기표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 장애인의 기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투표도우미 제도임(「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투표 도우미의 지정은 선거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관위에 통지함(「연방 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투표 도우미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법률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지정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도우미가 될 수 있음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선거권자의 장애여부 또는 투표 도우미로 지정된 자의 적절성이나 투표시 의사 결정에 대한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개입 할 수 있음.
-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기표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해당 투표소 중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표소에 대한 공고는 이루어짐(「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참고조문]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46조 투표소

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능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그 관청의 건물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 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1) 읽을 수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스스로 넣을 수 없는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행위에 도움을 줄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도움 제공자는 선거권자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중간 생략)...

(4) 맹인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위해 투표용지 접자틀을 이용할 수 있다.

「BWO」

§ 46 Wahlräume

- (1) Die Gemeindebehörde bestimmt für jeden Wahlbezirk einen Wahlraum. Soweit möglich, stellen die Gemeinden Wahlräume in Gemeindegebäuden zur Verfügung. Die Wahlräume sollen nach den örtlichen Verhältnissen so ausgewählt und eingerichtet werden, dass allen Wahlberechtigten, insbesondere Behinderten und anderen Menschen mit Mobilitätsbeeinträchtigung, die Teilnahme an der Wahl möglichst erleichtert wird. Die Gemeindebehörden teilen frühzeitig und in geeigneter Weise mit, welche Wahlräume barrierefrei s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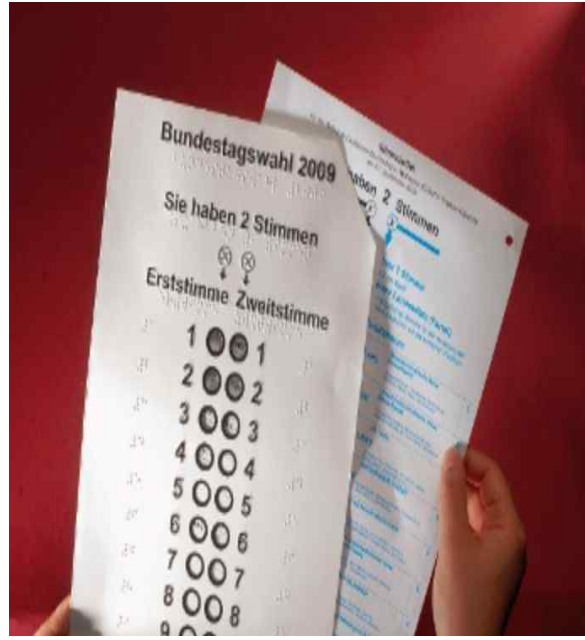
(이하 생략)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 (1) Ein Wähler, der des Lesens unkundig ist oder 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 gehindert ist, den Stimmzettel zu kennzeichnen, zu falten oder selbst in die Wahlurne zu werfen, bestimmt eine andere Person, deren Hilfe er sich bei der Stimmabgabe bedienen will, und gibt dies dem Wahlvorstand bekannt. Hilfsperson kann auch ein vom Wähler bestimmtes Mitglied des Wahlvorstandes sein.

...(중간 생략)...

- (4) Ein blinder oder sehbehinderter Wähler kann sich zur Kennzeichnung des Stimmzettels auch einer Stimmzettelschablone bedienen.



〈사진2〉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용지



〈사진3〉 거동불편 장애인의 기표장면

2) 장애인용 투표용지 작성사례

- 장애인용 투표용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틀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표용지 견본이 작성되면 이를 시각장애인 협회에 보내 투표용지에의 기표를 용이하게 하는 투표용지용 점자틀이 제작되며, 해당 비용은 연방정부가 지원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연방선거법 제50조 제4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제50조(선거비용)

(생략)...

- (4) 연방은 투표용지용 점자틀을 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각장애인 협회들에게 투표용지용 점자틀의 제작 및 분배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배상한다.

§ 50 Wahlkosten

(생략)...

- (4) Der Bund erstattet den Blindenvereinen, die ihre Bereitschaft zur Herstellung von Stimmzettelschablonen erklärt haben, die durch die Herstellung und die Verteilung der Stimmzettelschablonen veranlassten notwendigen Ausgaben.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5조(투표용지, 우편투표용 봉투)

(생략)...

- (5) 투표용지 견본은 완성 즉시 지체 없이 투표용지용 점자틀을 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각장애인 협회들에 제공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책임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분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우편투표를 위해 필요로 하는 우편투표용 봉투와 투표용지용 봉투를 전달한다.

§ 45 Stimmzettel, Umschläge für die Briefwahl

(생략)...

(5) Muster der Stimmzettel werden unverzüglich nach ihrer Fertigstellung den Blindenvereinen, die ihre Bereitschaft zur Herstellung von Stimmzettelschablonen erklärt haben, zur Verfügung gestellt. Der Kreiswahlleiter weist den Gemeindebehörden die Stimmzettel zur Weitergabe an die Wahlvorsteher zu. Er liefert den Gemeindebehörden die erforderlichen Wahlbriefumschläge und Stimmzettelumschläge für die Briefwahl.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생략)...

(4) 맹인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위해 투표용지 점자틀을 이용할 수 있다.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생략)...

(4) Ein blinder oder sehbehinderter Wähler kann sich zur Kennzeichnung des Stimmzettels auch einer Stimmzettelschablone bedienen.

3)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내용 확인방법

- 시각장애인은 점자틀을 이용하여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 투표과정 또는 기표절차와 관련하여 투표도우미를 지정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특정된 조력방법을 규정하거나 기표시 확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장애를 가진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조력자를 지정하여 선거관리기관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기표소에서 장애인의 조력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장애를 가진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조력자가 기표소에 함께 출입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투표과정에서 조력자가 기표를 위해 투표내용에 대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우편투표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진행한 경우, 투표인의 의사에 따라 기표가 진행되었음을 서명한 문서를 투표용지와 동봉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 (1) 읽을 수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스스로 넣을 수 없는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행위에 도움을 줄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도움 제공자는 선거권자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 (2) 도움 제공 행위는 선거권자가 원하는 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도움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자와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 (3) 도움 제공자는 타인의 선거를 도우면서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4) 맹인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위해 투표용지 접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 (1) Ein Wähler, der des Lesens unkundig ist oder 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 gehindert ist, den Stimmzettel zu kennzeichnen, zu falten oder selbst in die Wahlurne zu werfen, bestimmt eine andere Person, deren Hilfe er sich bei der Stimmabgabe bedienen will, und gibt dies dem Wahlvorstand bekannt. Hilfsperson kann auch ein vom Wähler bestimmtes Mitglied des Wahlvorstandes sein.
- (2) Die Hilfeleistung hat sich auf die Erfüllung der Wünsche des Wählers zu beschränken. Die Hilfsperson darf gemeinsam mit dem Wähler die Wahlzelle aufsuchen, soweit das zur Hilfeleistung erforderlich ist.
- (3) Die Hilfsperson ist zur Geheimhaltung der Kenntnisse verpflichtet, die sie bei der

Hilfeleistung von der Wahl eines anderen erlangt hat.

- (4) Ein blinder oder sehbehinderter Wähler kann sich zur Kennzeichnung des Stimmzettels auch einer Stimmzettelschablone bedienen.

제66조(우편투표)

- (3) 투표용지는 타인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 봉투에 넣어야 한다; 제56조 제8항이 준용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에 대해서는 제57조가 준용된다. 선거권자가 도움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경우에는 도움 제공자가 선거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부합하게 투표용지에 기표가 이루어졌음을 서명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 제공자는 만 16세를 경과한 자여야 한다.

§ 66 Briefwahl

- (3) Der Stimmzettel ist unbeobachtet zu kennzeichnen und in den Stimmzettelumschlag zu legen; § 56 Abs. 8 gilt entsprechend. Für die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gilt § 57 entsprechend. Hat der Wähler den Stimmzettel durch eine Hilfsperson kennzeichnen lassen, so hat diese durch Unterschreiben der Versicherung an Eides statt zur Briefwahl zu bestätigen, dass sie den Stimmzettel gemäß dem erklärten Willen des Wählers gekennzeichnet hat; die Hilfsperson muss das 16. Lebensjahr vollendet haben.

4) 장애인 기표행위 지원대상·범위 및 방법

- 기표과정에서 조력자를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읽을 수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스스로 넣을 수 없는 선거권자” 로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 (1) 읽을 수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스스로 넣을 수 없는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행위에 도움을 줄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도움 제공자는 선거권자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1) Ein Wähler, der des Lesens unkundig ist oder 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 gehindert ist, den Stimmzettel zu kennzeichnen, zu falten oder selbst in die Wahlurne zu werfen, bestimmt eine andere Person, deren Hilfe er sich bei der Stimmabgabe bedienen will, und gibt dies dem Wahlvorstand bekannt. Hilfsperson kann auch ein vom Wähler bestimmtes Mitglied des Wahlvorstandes sein.

...(이하 생략)

4. 시설 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1) 장애인시설 유형별 거소투표신고자(우편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무 기준 및 현황

- 일반적 투표소 투표는 물론 우편투표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유형을 구별하여 투표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음.
- 선거구별로 별도의 우편투표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구별하여 우편투표구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음.
- 투표소로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즉, 환자·노인·수감자 등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를 설치하도록 함.
-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 설치 대상은 소규모의 병원, 양로원, 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 치료소 및 교도소 등임(「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3조」).
- 특별투표구의 설치에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관청이 설치하며, 특별투표구의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설치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동투표구를 통해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연방선거법 제13조」).

- 특별투표구에서 투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편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증(「연방선거법 제25조」 이하)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함.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조(이동투표구선거위원회)

소규모의 병원, 양로원, 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치료원 및 교도소 등에서의 투표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관할 투표구의 선거위원장이나 그 직무대리인 및 2명의 투표구 선거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다. 시·읍·면 관청은 그 시·읍·면 관청에 속한 다른 투표구의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에 대하여 투표용지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투표구)

- (1) 병원, 양로원, 노인주택, 요양원, 교정원 등 본 시설물 이외에는 적당한 투표공간이 없는 많은 수의 선거인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그 요구가 있을 경우 시·읍·면 관청은 선거증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를 위하여 특별투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여러 개의 시설은 1개의 특별투표구로 통합할 수 있다.
- (3) 특별투표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가 적용된다.

§ 8 Beweglicher Wahlvorstand

Für die Stimmabgabe in kleineren Krankenhäusern, kleineren Alten- oder Pflegeheimen, Klöstern,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en und Justizvollzugsanstalten sollen bei entsprechendem Bedürfnis und soweit möglich bewegliche Wahlvorstände gebildet werden. Der bewegliche Wahlvorstand besteht aus dem Wahlvorsteher des zuständigen Wahlbezirks oder seinem Stellvertreter und zwei Beisitzern des Wahlvorstandes. Die Gemeindebehörde kann jedoch auch den beweglichen Wahlvorstand eines anderen Wahlbezirks der Gemeinde mit der Entgegennahme der Stimmzettel beauftragen.

§ 13 Sonderwahlbezirke

- (1) Für Krankenhäuser, Altenheime, Altenwohnheime, Pflegeheime, Erholungsheime und gleichartige Einrichtungen mit einer größeren Anzahl von Wahlberechtigten, die keinen Wahlraum außerhalb der Einrichtung aufsuchen können, soll die Gemeindebehörde bei entsprechendem Bedürfnis Sonderwahlbezirke zur Stimmabgabe für Wahlscheininhaber bilden.
- (2) Mehrere Einrichtungen können zu einem Sonderwahlbezirk zusammengefasst werden.
- (3) Wird ein Sonderwahlbezirk nicht gebildet, gilt § 8 entsprechend.

2) 장애인시설 거소투표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방법

- 장애인 투표와 관련하여 별도의 감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장애인의 투표와 관련하여 조력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투표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우편투표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진행한 경우, 투표인의 의사에 따라 기표가 진행되었음을 서명한 문서를 투표용지와 동봉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와 직접투표를 보장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생략)...

(3) 도움 제공자는 타인의 선거를 도우면서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3) Die Hilfsperson ist zur Geheimhaltung der Kenntnisse verpflichtet, die sie bei der Hilfeleistung von der Wahl eines anderen erlangt hat.

(이하 생략)

제66조(우편투표)

(생략)...

- (3) 투표용지는 타인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 봉투에 넣어야 한다; 제56조 제8항이 준용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에 대해서는 제57조가 준용된다. 선거권자가 도움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경우에는 도움 제공자가 선거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부합하게 투표용지에 기표가 이루어졌음을 서명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 제공자는 만 16세를 경과한 자여야 한다.

§ 66 Briefwahl

(생략)...

- (3) Der Stimmzettel ist unbeobachtet zu kennzeichnen und in den Stimmzettelumschlag zu legen; § 56 Abs. 8 gilt entsprechend. Für die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gilt § 57 entsprechend. Hat der Wähler den Stimmzettel durch eine Hilfsperson kennzeichnen lassen, so hat diese durch Unterschreiben der Versicherung an Eides statt zur Briefwahl zu bestätigen, dass sie den Stimmzettel gemäß dem erklärten Willen des Wählers gekennzeichnet hat; die Hilfsperson muss das 16. Lebensjahr vollendet haben.

5. 그밖에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관련 입법례

- 「연방선거법」 및 「연방선거법 시행령」 이외에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6.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선거물품 사진 등

- 지난 2014년 6월에는 정부의 장애인대의원이 투표시 사용될 점자판,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디오 가이드, 문맹인을 위한 쉬운 용어로 작성된 가이드 등의 테스트가 진행된 바 있음(사진).³⁶⁾

36)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SharedDocs/BilderGalerie/DE/20140603_Bundestagbesucherdienst_kk.html



〈사진4〉 테스트 후 사용될 장애인의 점자판

3. 미 국



미국 연구관 : 박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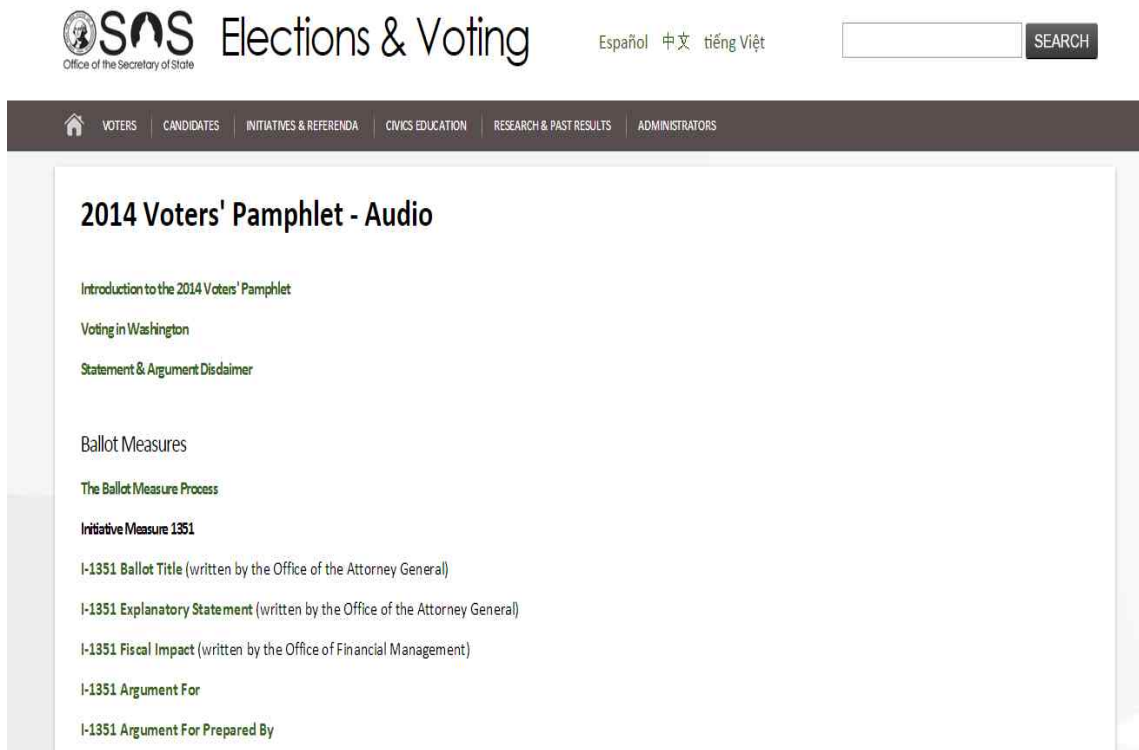
1. 시각·청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1) 선거관리기관·후보자·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미국 대부분 주의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각 선거의 후보자 및 주민발의 투표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은 홈페이지에서 각 후보자 및 투표안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정보는 음성파일로도 제공하고 있음.
- 대통령 후보자 TV토론 등을 특정하여 수화방송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없으나, 후보자 TV토론을 포함한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 장애인들이 자막을 통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³⁷⁾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각 주 정부는 각 주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이들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투표소가 유권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이 힘든 곳일 경우, 해당 유권자는 주 정부에 투표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ADA와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HAVA)』³⁸⁾ 등의 법률이

37) http://www.ada.gov/pcatoolkit/ch3_toolkit.pdf (검색일: 2015. 5. 18)

투표소의 접근성 및 투표장비의 구비 등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포괄하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 등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투표권의 제한은 아직까지 많은 주에서 법률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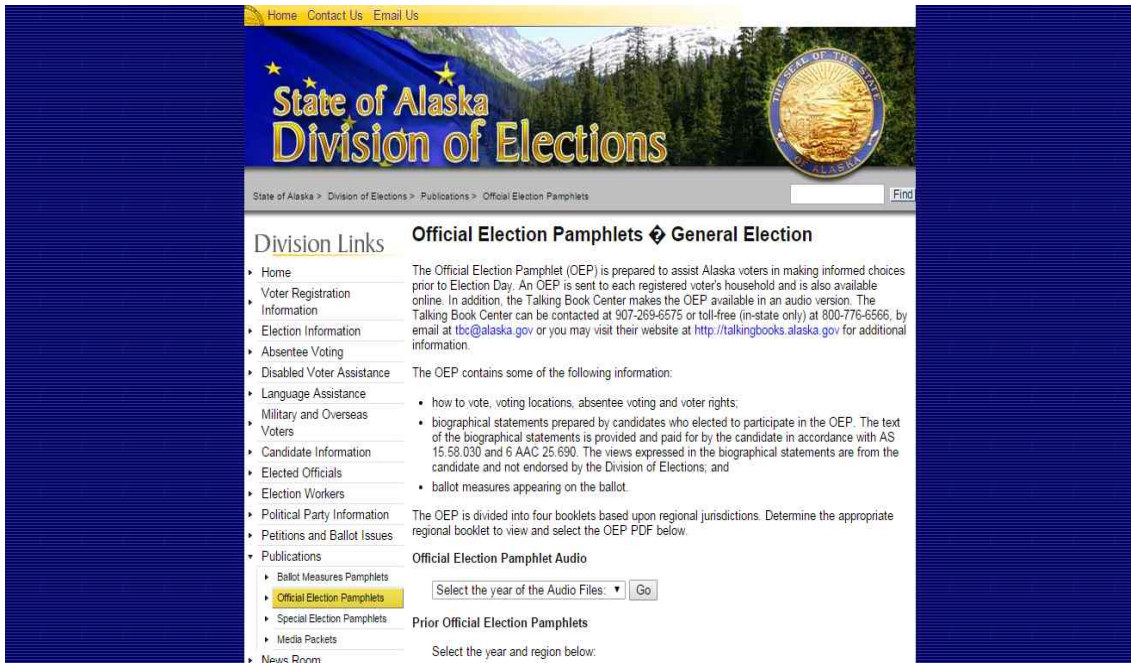


〈사진1〉 워싱턴 주 국무부의 2014년 선거에 대한 음성정보 게재 페이지⁴⁰⁾

38) 42 U.S.C. § 15301

39) http://www.ndrn.org/images/Documents/Issues/Voting/NDRN_state_voting_rights_MD_laws_062304.pdf
(검색일: 2015. 5. 20)

40) https://wei.sos.wa.gov/agency/osos/en/press_and_research/PreviousElections/2014/General-Election/Pages/voters_pamphlet_audio.aspx (검색일: 2015. 5. 16)



〈사진2〉알래스카 주 국무부의 2014년 선거에 대한 음성정보 게재 페이지⁴¹⁾



〈사진3〉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의 2014년 선거에 대한 음성정보 게재 페이지⁴²⁾

41) https://www.elections.alaska.gov/pub_oepphp (검색일: 2015. 5. 16)

42) <http://www.voterguide.sos.ca.gov/en/audio/> (검색일: 2015. 5. 16)

2) 관련법 및 국가지원범위

- 2002년 제정된 HAVA는 각 주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표소 접근성 및 투표장비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장애인의 투표권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HAVA의 261항과 291항에 명시되어 있음. HAVA는 장애인의 투표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주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투표소와 투표장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⁴³⁾
 - HAVA가 투표소 및 장비와 관련하여 주 정부에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주로 하여금 장애인을 위원회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⁴⁴⁾
 - 연방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소에 장애인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투표장비를 최소한 하나 이상 배치하여야 함. 이 투표 장비는 장애인들이 다른 유권자들이 일반적인 장비를 이용할 때와 동등한 정도로 투표의 기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함.⁴⁵⁾
-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는 2010년 기준으로 HAVA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의 투표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 개발 및 연구에 약 7,000,000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⁴⁶⁾

43) 42 U.S.C. § 15421

44) 42 U.S.C. § 15405

45) 42 U.S.C. § 15481(a)(3)

46)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2013, Experience of Voters with Disabilities in the 2012 Election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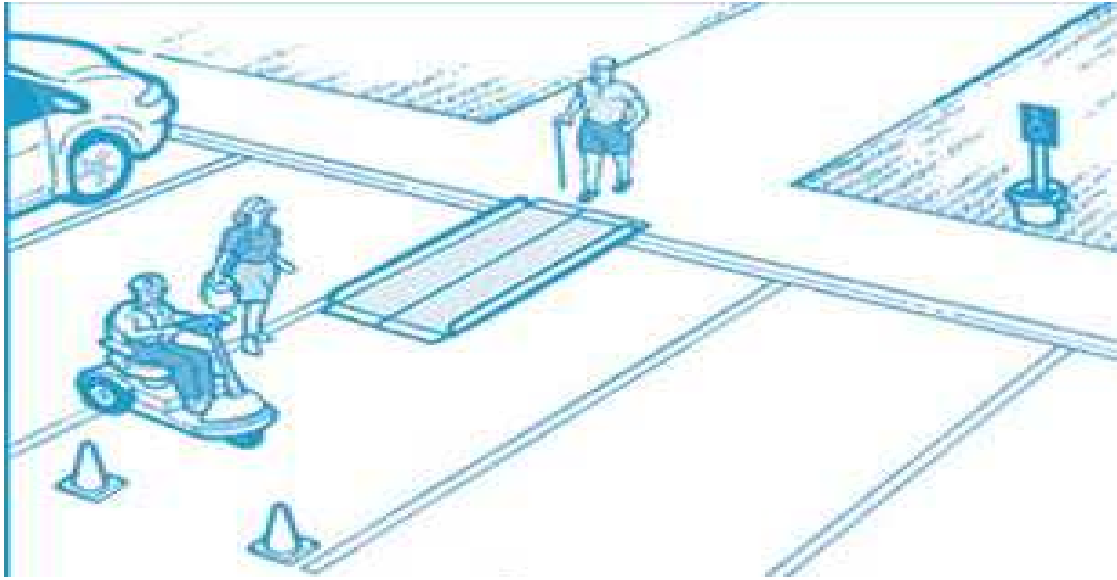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실태

- HAVA는 모든 투표소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들의 투표소 접근성을 구성하는 요건은 ADA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투표소로 진입하는 통로의 경사, 복도의 폭, 장애인용 배를 위한 공간 등 주차장에 갖추어져야 할 요건, 입구의 넓이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미국장애인협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투표소에 배정된 선거 관련 종사자들의 원활한 장애인 유권자 투표 지원을 위해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HAVA에 명시된 투표소 접근성은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013년에 발간된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선거 시기 동안 조사된 투표소 가운데 27% 만이 장애인들이 주차장에서 투표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투표소까지 이동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투표를 허용하는 커브사이드(curbside) 투표가 가능한 45%의 투표소를 제외해도 28% 이상의 투표소에서 장애인들이 투표 장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2000년 선거의 접근성 보장율 16%에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투표소에서 접근성 시설 제공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줌.⁴⁷⁾
- 다음 그림은 투표소 입구와 근접한 위치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 유권자가 하차하여 휠체어에 오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투표소의 예시임.⁴⁸⁾

47)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Voters with Disabilities: Challenges to Voting Accessibility" (검색일: 2015. 5. 24)

48)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Guideline.



〈그림1〉 인도와 주차장 사이 경사로 설치 예시

2) 우편투표 시행 주의 장애인 유권자 지원 방안

- 전면적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주의 경우 조력자 없이 우편투표가 불가능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워싱턴 주의 킹(King) 카운티의 경우 선거 시기에 별도의 투표소를 개설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⁴⁹⁾

49) <http://www.kingcounty.gov/elections/voting/accessible.aspx> (검색일: 2015. 5. 23)



〈그림2〉 워싱턴 주 킹 카운티의 투표소 표시판⁵⁰⁾

- 반면, 마찬가지로 전면적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오리건 주는 2011년 부터 장애인 유권자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⁵¹⁾ 장애인 유권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경우, 선거 당국에 요청하여 담당자들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본인의 투표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
- 태블릿 PC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시력이 약한 장애인들의 경우, 태블릿 PC의 글씨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지 장애 혹은 독해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의 투표 지원에도 이용될 수 있음. 사지마비나 관절염 등의 증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도 손가락이나 태블릿 PC에 연결된 호흡조절 입력장치(sip-and-puff systems)을 통해 기표할 수 있음.

50) <http://www.kingcounty.gov/elections/voting/accessible.aspx> (검색일: 2015. 5. 23)

51) <http://sos.oregon.gov/voting/Pages/disabilities.aspx> (검색일: 2015. 5. 25)



〈사진4〉 오리건 주 2011년 선거 시 유권자가 아이패드 이용 투표장면⁵²⁾

3)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편의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몇 개의 주에서는 투표소로의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사전에 부재자투표나 사전투표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조기에 투표하거나, 지역 내의 정당 혹은 후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자원봉사자를 통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⁵³⁾

52) http://www.nytimes.com/2011/11/17/us/oregon-tries-out-voting-by-ipad-for-disabled.html?_r=0 (검색일: 2015. 5. 28)

53) Louisiana Secretary of State, Voting in Louisiana; <http://www.disabilityrightsohio.org/voter-rights-assistance> (검색일: 2015. 5. 25)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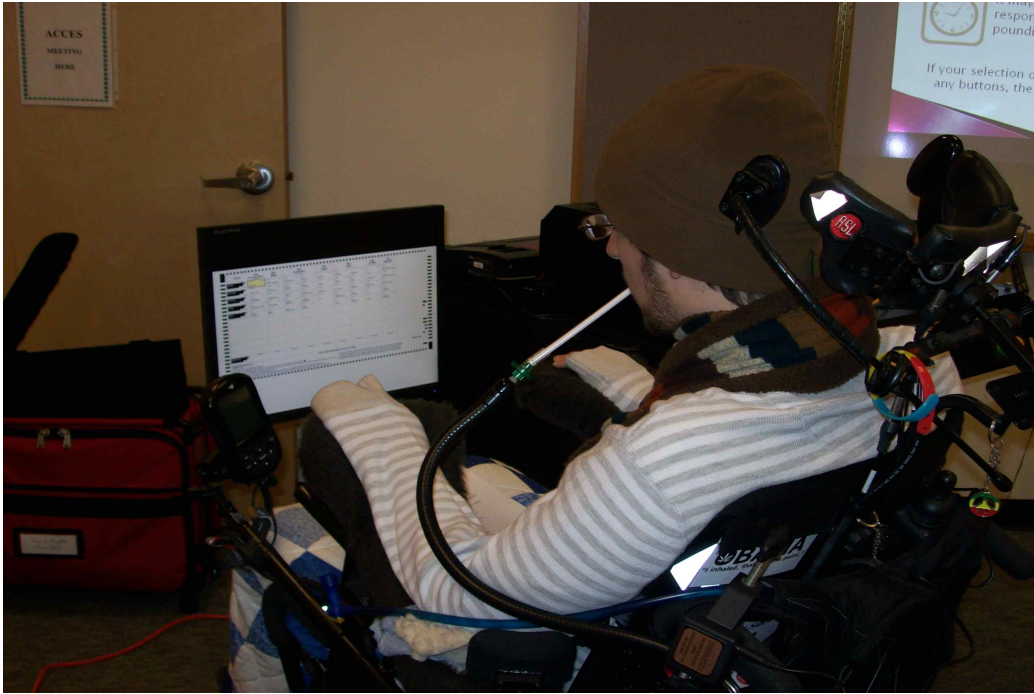
- 상술한 바와 같이, 연방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소에 장애인들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투표 장비를 최소한 하나 이상 배치하여야 함.⁵⁴⁾
-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장애인용 투표기는 ES&S에서 개발한 AutoMARK인 것으로 보임. AutoMARK는 여러 가지 기표방식 가운데 광학스캔(optical scan ballot)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혹은 약시자들의 투표를 지원하기 위한 헤드폰,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호흡조절 입력장치 등 여러 가지 증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⁵⁵⁾
- 미국 선거는 다수의 선거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AutoMARK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특정 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스크린뿐만 아니라 오디오 장치를 통해서 해당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알려줌. 투표를 마친 이후,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본인의 기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본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투표를 시작할 수 있음.



〈사진5〉 AutoMARK의 이미지와 AutoMARK 사용 예시⁵⁶⁾

54) 42 U.S.C. § 15481(a)(3)

55) <https://www.verifiedvoting.org/resources/voting-equipment/ess/automark/> (검색일: 2015. 5. 28)



(사진6) 불수 장애인 유권자의 호흡조절 입력장치를 이용한 투표 장면⁵⁷⁾

4. 시설 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⁵⁸⁾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시설 거주자를 위해 일부 주에서는 “이동 투표(mobile polling),” 즉, 장애인 시설에서의 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 이동투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욕,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23개 주에서 주의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다음의 18개 주는 장애인 혹은 노인시설 거주자 투표 지원자의 자격을 명시

56) <http://www.essvote.com/products/6/13/ballot-marking-devices/AutoMark>;

<https://www.verifydvoating.org/resources/voting-equipment/ess/automark/> (검색일: 2015. 5. 28)

57) <https://gurguiralsystemsadvocate.wordpress.com/2011/11/17/embracing-the-right-to-vote/> (검색일: 2015. 5. 25)

58)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oting-for-residents-of-long-term-care-facilities.aspx>
(검색일: 2015. 5. 30)

하고 있음. 가장 일반적으로는 노조의 대표자나 유권자의 고용인이 아닌, 유권자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함.

주	지원자 자격	근거 법령
캘리포니아	유권자가 선택한 자	Ca. Elec. Code § 3021
플로리다	유권자가 선택한 자	Fla. Stat. § 101.655 and Fla. Admin. Code Ann. r. 65E-5.602
캔자스	유권자가 선택한 자; 지원자의 서약이 필요함	Kan. Stat. Ann § 25-2812
루이지애나	장애인 혹은 노인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유권자가 선택한 자	La. Rev. Stat. Ann. § 18:1333
메인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이 아닌, 유권자가 선택한 자	21-A MRSA § 753-B and § 754-A
매사추세츠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이 아닌, 유권자가 선택한 자	M.G.L. c. 54, § 91B and M.G.L. c. 54, § 98
미네소타	선거 후보자가 아닌, 해당 유권자와 원래 친분이 있는 자	Minn. Stat. Ann. § 203B.11
미시시피	유권자의 가족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Miss. Code Ann. § 23-15-625
뉴욕	유권자가 선택한 자	N.Y. Elec. Law § 8-407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가 선택한 자; 장애인 혹은 노인 시설 종사자나 소유주, 선거공직자나 후보자, 정당인,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혹은 회계 책임자는 제외	N.C. Gen. Stat. Ann. § 163-226.3
노스다코타	유권자가 선택한 자;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 혹은 후보자나 그 가족은 제외	16.1-07-04
오하이오	초당적 선거지원팀	Ohio Rev. Code § 3501.29, § 3509.08 and § 3721.13
오클라호마	유권자가 선택한 자;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은 제외	Okla. Stat. 26 § 14-113.2 and 26 § 7-123.3

주	지원자 자격	근거 법령
로드아일랜드	초당적 선거지원팀	R.I. Gen. Laws § 17-20-14 and R.I. Gen. Laws § 17-20-2
사우스다코타	지역 선거담당자	SDCL § 12-19-9.1
테네시	초당적 선거지원팀	Tenn. Code Ann. § 2-6-601
텍사스	유권자가 선택한 자;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은 제외; 지원자의 서약이 필요함	Tex. Elec. Code § 64.032
웨스트버지니아	유권자가 선택한 자;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은 제외	W. Va. § 3-3-4 and § 3-3-5c
위스콘신	특별선거보 혹은 가족 중 1인	Wis. Stat § 6.875

○ 각 주의 법률 외에 장애인 시설의 거소투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주의 시행령에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위스콘신 주⁵⁹⁾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원하는 유권자는 해당 행정구역 선거담당자 혹은 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정 행정구역에 소속된 5인 이상의 유권자와 1인 이상의 부재자 투표 신청자가 있는 장애인/노인 거주 시설의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선거 담당자는 이 시설에 특별선거보를 파견해야 함. 특별선거보들은 해당 행정구역의 선거담당자 혹은 선거위원회에 의해 임명됨.
- 특별선거보로 임명된 자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해당 행정구역의 유권자

59)

http://www.gab.wi.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65/absentee_voting_in_residential_care_facilities_and_20843.pdf (검색일: 2015. 5. 30)

- ② 관련 훈련에 참가한 자
 - ③ 해당 시설의 피고용인이 아닌 자
 - ④ 해당 시설에서 최근 2년 내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
 - ⑤ 해당 시설의 피고용인 혹은 해당 시설에서 최근 2년 내에 근무한 기록이 있는 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자
- 공화·민주 양당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실시된 대통령 혹은 주지사 선거 결과 해당 행정구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정당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는 시설에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음. 참관인을 파견하고자 하는 정당은 투표 실시 전날 업무시간 종료 이전에 참관인의 성명을 선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인의 참관인을 제외한 (언론종사자를 포함한) 그 밖의 사람들은 참관이 금지됨.
 - 선거와 관련된 특별선거보들의 활동은 참관인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하지만, 참관인은 투표용지가 장애인 유권자에게 배부된 이후에는 해당 유권자와 투표를 지원하는 개인 사이의 어떤 대화도 들을 수 없음.

4. 호주



호주 연구관 : 김리라

1. 시각·청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1) 선거관리기관·후보자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 Election Commission)에서 제공된 오디오 CD, 점자, 인터넷 문서, 큰 문자로 만들어진 파일, MP3 음성파일을 통해 후보자 및 정당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청각장애인 유권자는 국립 릴레이 서비스(National Relay Service)⁶⁰⁾를 이용하여 선거정보를 얻거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도 할 수 있음.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전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문자화된 정보를 음성으로 바꾸거나 음성정보를 문자화로 바꾸는 서비스, 문자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등 청각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 사무원이 취득한 모든 전화내용은 관련법에 의하여 비밀로 보장됨.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발달장애인 유권자는 투표절차 및 투표소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공약이나 후보자 정보를 얻는 것도 릴레이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이 투표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내자를 위해 호주선거위원회에서는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자료⁶¹⁾와 쉬운

60) 청각장애인이나 언어발달장애인을 위한 호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함. 국립 릴레이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http://relayservice.gov.au/making-a-call/>

61)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교육(Education)파트 장애인과 학습장애를 가진 유권자를 위한 투표 학습(Voting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learning difficulties) 내용 중.

<http://www.aec.gov.au/education/voting-activities.htm> 2015년 5월 검색.

영어로 된 선거안내 가이드(Easy English Guides⁶²)를 제공하고 있음.

- 세션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투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긴 비디오, 의사결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호주 정부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게임, 선거인등록과 선거일 당일 시뮬레이션, 각기 다른 투표용지 작성해보기로 총 6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음.
- 각 세션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그룹활동 내용, 토론주제, 안내자를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5

Session 5: Planning to vote

You will need

One or more copies of the Easy English Guide **How to Vote at a Polling Place** and **How to Vote by Mail**. These are written in a way that is easy to understand. You can download them from the AEC website, [Easy English Guides](http://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asy-english/) (http://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asy-english/), or request copies by phoning 13 23 26.

You will also need to photocopy the Election plan from either the how to vote at a polling place or how to vote by mail Easy English Guides, depending on the method your participants will use to vote. Each participant will need their own copy of the relevant plan.

If preparing for a state, territory or local government election, contact your state or territory electoral body for information and resources. You will find links at www.elections.gov.au

Activities

Help participants to be organised to cast their vote in an upcoming election by working through the Election plan. The activity sheet has space to write each person's practical plans for the election. The plans for voting at a polling place or by mail have different activities.

Group discussion

1. Who can help you in a polling place? What can they help with?
Key Idea: You can either take someone with you to help fill in your ballot papers or you can ask a polling official to help you.
2. Do you have to vote on election day?
Key Idea: Voting and enrolling is compulsory in Australia and all citizens who are eligible to vote are required to do so.
3. How can you vote before election day?

4. What questions will you be asked by the polling official before you are given your ballot papers?
Key Idea: three questions are:
1. What is your full name?
2. Where do you live?
3. Have you voted before in this election?

5. Why does the polling official need to know these things?
Key Idea: These questions are asked so the polling official can mark your name off the electoral roll and to ensure that you are only voting once.

Notes for facilitator

Use the **How to Vote at a Polling Place** and **How to Vote by Mail** Easy English Guides as a reference to help participants and their support people.

The Easy English Guide **How to Vote at a Polling Place** mentions how-to-vote cards. This topic will be discussed in more detail in session 6. This may also be relevant for postal voters because candidates distribute how-to-vote material in other ways.

〈사진1〉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자료 중 세션5 자료

- 하지만 호주 NGO 연합이 발표한 투표할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992(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비밀투표와 직접투표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⁶³⁾

62)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쉬운 영어로된 선거안내 파일

http://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asy-english/ 2015년 5월 검색.

63) 인권법센터(Human Rights Law Centre)에서 발간한 국립인권액션플랜 내용 중 투표할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

- 그 근거로 투표 장소의 접근성이 낮으며, 다른 시민에 비해 선거정보나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음. 그 외에도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투표용지가 없으며 장애인 범위에 따른 법적 적용이 잘못되고 있어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하여 벌칙을 받는 장애인이 많음을 지적함.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연방선거법」 15항 B에서 ‘시력이 낮은 사람의 투표를 돕는 전자보조투표 기기’에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비밀투표와 직접투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조투표기기를 비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었음⁶⁴⁾.
- 「연방선거법」 15항 202AB조에서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전자보조투표기기(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를 사용하여 투표를 선택한 경우, 시각장애를 가진 투표자에게 다른 일반 투표자와 동일한 절차로 선거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참고. <http://www.humanrightsonline.org.au/nhrap/focus-area/disability-rights> 2015년 5월 검색.

64)호주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호주의 투표할 권리’에 대한 기사 참조.

’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rights-and-freedoms/publications/right-vote-not-enjoyed-equally-all-australians#fn11a> 2015년 5월 검색.

202AB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법령

(3) 전자보조투표기기는 다음과 같은

(a) 상원의원선거에서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 (i) 법령 16항의 적용을 받는 일반 상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서와 같은 순서로 같은 선거정보를 받으며 같은 투표선택방법을 제공받는다.
- (ii) 유권자가 대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경우 이는 239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표를 한다.

(b) 일반선거, 보궐선거에서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 (i) 법령 16항의 적용을 받는 일반선거, 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서와 같은 순서로 같은 선거정보를 받으며 같은 투표선택방법을 제공받는다.
- (ii) 유권자가 대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경우 이는 240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표를 한다.

202AB Regulations may provide for voting by an 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

(3) The 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 must be such that a person using the method:

(a) for a Senate election:

- (i) receives the same information (in the same order), and has the same voting options, as would appear in the ballot paper for the Senate election that the person would be given if he or she were instead voting under Part XVI; and
- (ii) is able to indicate his or her vote in a way that, if he or she were instead marking a ballot paper, w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39; and

(b) for a general election or by-election:

- (i) receives the same information (in the same order), and has the same voting options, as would appear in the ballot paper for the general election or by-election that the person would be given if he or she were instead voting under Part XVI; and
- (ii) is able to indicate his or her vote in a way that, if he or she were instead marking a ballot paper, w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40.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실태

- 투표소에는 휠체어로 기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꼭 갖춰야하며, 기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훈련을 받은 호주선거위원회 소속 사무원이 이를 돕게 하고 있음.
- 2010년 퀸즐랜드주에서 투표소 선정에 대한 불만이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투표소로 선정된 건물의 정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17개의 계단이 있었고, 계단을 쉽게 오르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건물의 뒤편을 통해서만 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위해 받는 것이라는 주장임.⁶⁵⁾
 - 이에 공공서비스법 1999(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투표소 결정에 참여한 호주선거위원회(AEC) 관련자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문제는 2012년 중재되었음.

2)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시설현황 안내 및 제공

- 호주선거위원회가 투표소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13년 연방선거에서는 총 7,697개 투표소 중에 11.8%이 완벽하게 장애인 접근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70.2%이 부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음.⁶⁶⁾
 - 투표소 장소 공고에는 장애인 시설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투

65)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2011-2012 연간보고서 중 외부기관 조사관련 부분 참조.
<http://annualreport.aec.gov.au/2012/governance/scrutiny.html> 2015년 5월 검색.

66) 장애인 유권자에 관한 법률제정 전에 호주선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 참고
http://www.alrc.gov.au/sites/default/files/subs/10._org_australian_electoral_commission_submission_to_alrc.pdf 2015년 5월 검색.

표소 표지판에는 장애인시설이 갖추어진 투표소 입구와 주차공간이 명시되어야함.

3)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18세 이상의 호주시민은 연방선거와 국민투표에 등록 및 투표할 의무가 있으며 연방선거법 1918에서는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는 투표소 사무원 및 타인의 도움을 통해 기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투표소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투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의 유권자를 위해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음.⁶⁷⁾
- 선거일에 유권자가 기표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일반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우편투표 신청도 2013년 연방선거부터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이동투표 팀은 선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병원, 요양원, 감옥, 호주의 외딴 곳에 방문하여 유권자들의 선거를 도움.

4) 투표도우미의 투표지원

- 시력이 나쁘거나, 신체적 문제가 있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을 투표주재관에게 확인받는 경우, 해당 유권자는 친구, 친척, 참관인, 정당원 등 후보자를 제외한 사람을 지명하여 참관인의 참관하에 기표소로 함께 들어가서 도움 받을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34조)
 -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가 미리 특정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투표소 책임 사무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음. 투표도우미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이 때 투표참관인은 기표소

67) 장애인 유권자에 관한 법률제정 전에 호주선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 참고
http://www.alrc.gov.au/sites/default/files/subs/10._org_australian_electoral_commission_submission_to_alrc.pdf 2015년 5월 검색.

안에 들어갈 수 없음.

○ 타인의 권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라도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에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없음.⁶⁸⁾ 하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투표소 사무원의 도움을 받아 선언투표봉투에 서명을 대신하는 표시를 하고 선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투표 사무원은 장애인 유권자가 한 표시 위에 'his mark' 혹은 'his mark'를 쓰고 그 표시 왼쪽에는 유권자의 이름을 쓰고 오른쪽에는 성을 대신 써줌.

3. Declaration: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vote, that I have not already voted in this election/referendum, and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on this form is complete and correct. I also request that, where applicable, my name and address on the Subdivision Roll be amended to reflect the details given above.

Your signature or mark: HIS MARK
JEFF X WILSON

Your personal information on this form may be viewed by authorised staff and scrutineers, and may be provided to Commonwealth agencies and other bodies in accordance with Commonwealth law.

NOTE: Gi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s a serious offence

POLLING OFFICIAL TO COMPLETE - PRE-ISSUE CHECK

B EP054 Address

Permanent

Enrolled

A Voter's Signature

〈사진2〉 투표소 사무원의 도움을 받아 서명을 대신한 경우의 예시

68) 호주선거관리위원회 자주묻는질문과 답 부분의 선언투표 내용참고.
http://www.aec.gov.au/FAQs/Voting_Australia.htm#help 2015년 5월 검색.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1) 장애인용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등 선거용품 제공여부

- 「연방선거법」 제202조AB는 시각장애를 가진 유권자에게 일반선거, 상원 의원선거, 보궐선거에서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선거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전체적으로 혹은 특정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음.
 - 세부 법령에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사용 가능한 투표소 장소의 수, 유권자가 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보조투표기기를 사용가능할 수 있는 유권자 기준,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외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표대, 투표함과 같은 장애인 선거용품은 따로 준비되지 않음.



〈사진3〉 2010년 다윈(Darwin)지역의 한 투표소⁶⁹⁾

69) 호주 스윈번대학교 미디어 센터 자료에서 호주 투표시스템의 효과성 기사 중 사진
<http://www.swinburne.edu.au/media-centre/news/2014/08/australias-un-doing-of-voter-intimidation.html> 2015년 5월 검색.

2) 장애인용 투표용지 작성사례

- 별도의 장애인용 투표용지가 있지 않지만 2012년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를 처음으로 활용하였음. 점자로 된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우편투표, 선거인이 지정한 투표소에 제공됨.
 - 점자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점자를 활용하여 투표하는데 적법한 유권자임을 확인 받아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주선거위원회에 선호하는 투표형태를 알려야함.
 -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약 10%만이 점자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도 있음.⁷⁰⁾

3)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내용 확인방법

-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전자보조투표기기(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를 사용하여 투표를 선택한 경우, 투표자가 기표한 특정인이 누구인지 나타내지 않는 한에서 녹화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렇게 녹화된 기록은 적법하게 기표된 투표용지로 인식함. (연방선거법 제202AC, 202AD조)

4) 장애인 기표행위 지원대상·범위 및 방법

-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안좋은 유권자를 위하여 전화기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동전화투표서비스(Automated Telephone Voting service)⁷¹⁾가 있음.⁷²⁾ 이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스스로 투표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미리 신청을 하면 6자리 비밀번호를 발부 받아서 전화를

70) 뉴사우스웨일즈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한 투표시스템(iVote) 설명 참고.
<http://www.elections.nsw.gov.au/voting/ivote/background> 2015년 5월 검색.

71) 호주선거위원회(AEC) 홈페이지의 2013년 선거에 대한 정보가 나온 부분에 의하면, 전화투표를 통해 투표를 한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수는 2010년 연방선거에서 410명이었고, 2013년에는 그 수가 2,832명이었음.

72) <http://www.eca.gov.au/research/files/telephone-voting-standard.pdf>

통한 투표를 할 수 있음.

-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 종류를 정해놓고 있으며, 이에는 신체적 장애, 지적 장애, 정신지체, 감각 관련 장애, 신경 관련 장애, 학습 불능 장애가 있음.
- 전화기에 있는 12개의 키(1,2,3,4,5,6,7,8,9,*,0)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은 음성으로 남길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일반적인 투표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선호를 표시한 자료(How to Vote Card; HTVC)’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소속 정당,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본인 확인 후 유권자는 선거인등록부에 따라 등록된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투표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표가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에게 들려줌.
- 하지만 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을 구동할 수 있는 키 패드와 핸드셋을 갖춘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스피커폰을 사용하는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타인이 기표내용을 들을 수 있어 비밀투표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4. 시설 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 「연방선거법」 제2호 시행령에는 우편투표⁷³⁾ 또는 사전투표 신청의 근거가 서술되어 있으며 그 중 시설 안에서 장애인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선거인이 질병, 쇠약, 자녀출생 임박의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선거일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경우, 제 224조(이동투표소가 설치된 병원) 및 227조의 적용과 관계없이 적용)

1) 장애인시설 유형별 거소투표신고자(우편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무 기준 및 현황

- 「연방선거법」 제224조에서 이동투표소가 설치된 병원(Hospital that are polling places)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환자가 해당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거나 병원이 위치한 주 혹은 준주 선거의 유권자인 경우,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투표하기 원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함.⁷⁴⁾
 - 투표할 수 있는 병원 외의 기타 병원에서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병원에서 이동투표가 가능하다는 「연방선거법」 제225조는 삭제되었음.
- 투표주재관이 투표할 수 있는 병원의 환자를 방문할 때에는 투표함, 투표용지, 기타 환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여타의 물품을 가지고 가야하며 필요한 경우 투표 사무관과 참관인을 동반해야함.
 - 투표주재관이 환자와 같은 방 혹은 같은 병동에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

73) 호주선거위원회(AEC) 홈페이지의 2013년 선거에 대한 정보가 나온 부분에 의하면, 2010년 95만명의 우편투표 신청자가 있었고 2013년 연방선거에서는 130만 명이 우편투표를 신청하였음.

74) 선거위원회가 관보에 공고하여 투표할 수 있는 병원 외의 기타 병원에서 투표하기 원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특수병원에서 이동투표가 가능하다는 「연방선거법」 225조는 삭제되었음.

되어 해당 방 혹은 병동이 환자의 투표소가 됨.

- 투표주재관이 환자를 방문할 때에는 후보자 혹은 해당 정당에서 제공하는 선거관련 선거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선거방법 등 환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주어야 함.(「연방선거법」 제226조2A)
 - 환자를 방문할 때는 해당 투표날 혹은 투표가 연기된 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이루어지며 투표주재관이 투표소를 떠나 환자를 방문할 때에는 투표사무관이 대신 해당 병원 안에 설치된 기표소에 있어야 함.
 - 「연방선거법」 제224조에 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이 의료상의 이유로 인해 투표주재관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환자는 투표를 할 수 없음.(「연방선거법」 제226조1)
- 선거위원회에서는 원격지 기표소를 설치하여 유권자들의 투표를 도울 수 있음.
「연방선거법」 제227조에 따라 원격지의 이동투표를 운영할 이동투표 팀의 팀원과 팀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근거 없이도 이 법에 따라 원격지 투표를 가능함.
- 선거위원회에서는 투표의 목적에 따라 방문할 장소를 관보에 공고하고 선거위원회 웹사이트에도 원격지 투표의 장소와 날짜를 공시할 수 있음. 원격지 투표의 날짜는 선거일, 해당 투표가 연기된 날, 혹은 선거일 12일 전 어느 날로 정할 수 있음.
 - 이동투표 팀이 투표함, 투표용지, 그룹투표티켓 등 투표에 필요한 기타 다른 용품과 후보자가 제공하는 ‘후보자 선호를 표시한 책자(how-to-vote card)’ 가 있다면 이를 제공해야함.
- 어떠한 이유로 이동투표 팀의 팀장이 해당 선거를 위한 원격지 투표를 위한 방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팀장은 다른 장소, 시간으로 대신 정할 수 있음.

2) 장애인시설 거소투표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방법

- 정당, 후보 측이 장애인시설 내 거소투표의 비밀투표와 직접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하는 법령이나 규칙은 없으나, 「연방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이동투표소가 설치된 병원(Hospital that are polling places)에서의 투표의 경우에 해당 선거 주재관이 환자를 방문할 때 투표 사무관과 참관인이 참여하여 절차를 감독해야 함.

5. 그밖에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관련 입법례

- 201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호주 연방선거법 상에서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 중 'unsound mind' 용어는 장애인을 차별할 여지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요청함.⁷⁵⁾ 정신 미약인지 선별하는 테스트를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쉽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또한 선거인등록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의료인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생득적으로 획득한 투표할 권리능력을 가정하지 않은 것임.⁷⁶⁾

75) 호주 ABC라디오에서 인권변호사와 앵커가 나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권 증진에 대한 인터뷰 내용
참고, <http://www.abc.net.au/pm/content/2013/s3931818.htm> 2015년 5월 검색.

76) 장애인 유권자에 관한 법률제정 전에 호주선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 참고
http://www.alrc.gov.au/sites/default/files/subs/10._org_australian_electoral_commission_submission_to_alrc.pdf 2015년 5월 검색.

5. 일 본



일본 연구관 : 송재현

1.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1) 선거관리 기관, 후보자, 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시각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선거정보로는 인쇄물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권고하는 형식임.
 - 「공직선거법」 및 관계 법령(공직선거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집행규정, 공직선거법 시행 규칙) 내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관련 자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총무성은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 등의 선거정보 제공을 의뢰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⁷⁷⁾.
 - 전국 규모의 강제 규정은 없으나,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구정촌(市区町村)별로 점자, 음성 테이프를 이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중의원, 참의원 선거와 같은 국정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도도부현에서 점자판, 음성판 선거정보를 제공하나 지방선거의 경우 제한적임.
 - 점자판 선거공약의 경우, 대부분 요약판으로 전역(全訳)은 소수임.

77) 총무성청취자료(http://www8.cao.go.jp/shougai/suishin/kaikaku/s_kaigi/k_9/pdf/s4.pdf)



〈사진 1〉 음성코드를 포함한 선거공약

교토부(京都府)의 사례 78)

○ 2007년 참의원 선거 이후 문자확대, 점자, 음성판 선거공약(전역)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선거인 2015년 4월 12일 교토시의회의원선거, 교토부 의회의원 선거에도 문자 확대, 점자, 음성판 선거공약을 제공.

카나가와현(神奈川県)의 사례

○ 2015년 4월 12일 카나가와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공약을 문자 확대, 점자, 음성(테이프)으로 제공.

시마네현(島根県)의 사례

○ 2015년 4월 12일 시마네현 지사 및 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약을 점자, 음성판으로 제공

78) <http://www.city.kyoto.lg.jp/senkyo/page/0000098278.html>

점자 및 음성 선거정보 제공 현황.(총무성 조사자료⁷⁹⁾)

제22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선거구)

- 점자: 47/47 (100%)
- 음성: 41/47 (82.3%)

제22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비례대표)

- 점자: 47/47 (100%)
- 음성: 47/47 (100%)

도도부현지사 선거⁸⁰⁾

- 점자: 45/47 (95.7%)
- 음성: 29/47 (61.7%)

민간단체에 의한 음성 선거공약 제공⁸¹⁾

○ 2013년 6월 참의원선거 선거공약의 경우 23개 도도부현에서 「일본맹인회연합」이 제작한 음성코드를 포함하는 선거공약을 제공. (사진 1 참조)

- 청각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선거정보로는 연설회 및 정견방송이 있으나 정견방송의 경우 수화 통역이나 자막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함. (의무사항은 아님)
 - 가두연설 및 연설회의 경우 청각정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화 통역자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청각 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전달이 불가능.
 - 단, 후보자 정견방송의 경우, 수화 통역 및 자막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함.
 - 수화 통역의 경우, 참의원 선거구선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선거에 삽입가능.
 - 자막의 경우 중의원 선거구 선거와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서 삽입가능.

79) 장애자에 관련된 투표환경 향상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09980.pdf)

80) 201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선거. 일본의 경우 재보궐선거에 의해 지사가 당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형식이 아니라 새로 4년간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사 선거가 일치하지 않음.

81) <http://senkyo.mainichi.jp/news/20130611ddf041010010000c.html>

- 2010년 현재 정견방송의 수화 통역이 가능한 자는 전체 수화 통역자 2,609명 중 642명. 82)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일본의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 규정⁸³⁾은 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
- 「공직선거법」 제197조의 2: 중의원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주에 수화 통역자를 포함함.
- 정견방송 및 경력방송 실시규정: 정견방송에 수화 통역 및 자막 삽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점자 및 음성판 선거공약 및 선거정보에 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없음.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 실태

- 법적인 규제는 없으며, 총무성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는 형식
-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2층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음.
- 투표소에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면을 설치

82) 각주 3참조

83) 공직선거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집행규정, 공직선거법 시행 규칙



〈사진2〉 투표소 입구의 경사면 설치 예

- 이상의 사항은 총무성의 요청사항이므로 강제하는 규정은 아님.
- 다만 대부분의 투표소가 이상의 요청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2)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안내 및 제공

- 제22회 참의원통상선거 사전 투표소 및 당일 투표소의 접근성 개선 현황에 관한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이하의 표 참조)
 - 사전 투표소 : 입구에 계단과 같은 단차가 있는 투표소의 경우, 약 99.4%의 투표소에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입구와 투표소가 다른 층에 위치한 투표소의 경우 약 99.8%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당일 투표소: 입구에 계단과 같은 단차가 있는 투표소의 경우, 약 99.9%의 투표소에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입구와 투표소가 다른 층에 위치한 투표소의 경우 약 99.3%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경사면 혹은 승강기와 같은 편의 시설이 없을 경우, 투표 도우미가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지원하고 있음.

사전 투표소	
사전 투표소 총수	4,642
1. 입구에 단차가 있는 곳	638
경사면 있음	634
경사면 없음	4
2. 건물입구와 투표가에 동일한 층에 없는 곳	1,054
승강기 있음	1,052
승강기 없음	2
당일 투표소	
당일 투표소 총수	50,311
1. 입구에 단차가 있는 곳	27,408
경사면 있음	27,393
경사면 없음	15
2. 건물입구와 투표소가 동일한 층에 없는 곳	853
승강기 있음	847
승강기 없음	6

3) 중증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투표소까지 거리가 먼 경우,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택시 및 버스를 지원하는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곳은 일부 존재함.
 - 2010년 통일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소가 2006년에 비해 1,800개 감소함에 따라, 14개 도도부현의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 및 버스를 이용한 투표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⁸⁴⁾
 - 다만 이는 투표소 수가 감소함에 따라 투표소와의 거리가 멀어짐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84) <http://www.asahi.com/senkyo/news/TKY201012050352.html>

삿포로(札幌)시의 사례 85)

- 통상, 장애로 인한 우편투표는 신체장애인 수첩에 양 다리, 이동기능, 체간기능의 장애가 기입되어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음(예를 들면 완전 마비, 보행곤란, 기립곤란 등). 따라서 2007년 제 16회 통일지방 선거를 앞두고 삿포로 시에서는 이동이 곤란한 장애인을 투표소까지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이 아닌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홋카이도 실행 위원회”가 주최.

4) 투표소 도우미의 투표지원

-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투표소에 도우미가 상주하며, 휠체어 환자 등을 위한 투표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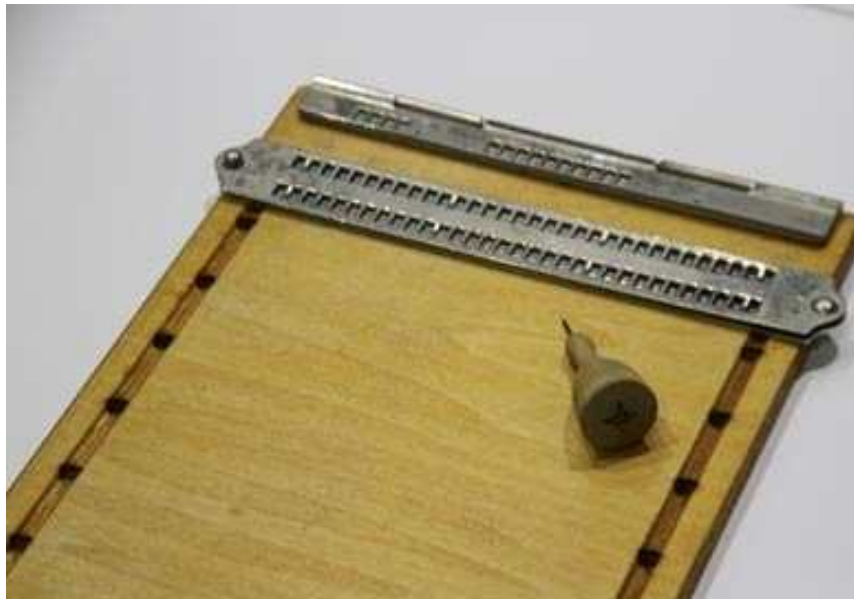
85) http://www.dpi-japan.org/hokkaido/katsudou/jiritushien_taiou/tousyo2007/isou/youkou.pdf

86) 각주 3참조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1) 장애인용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등 선거용품 제공여부

- 「공직선거법」 제262조 2항은 선거에 필요한 물품 중 점자기 조정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항이 없으나 「공직선거법」 제47조가 점자투표를 보장하는 관계로 모든 투표소에는 점자 투표기가 비치되어 있음.



〈사진3〉 점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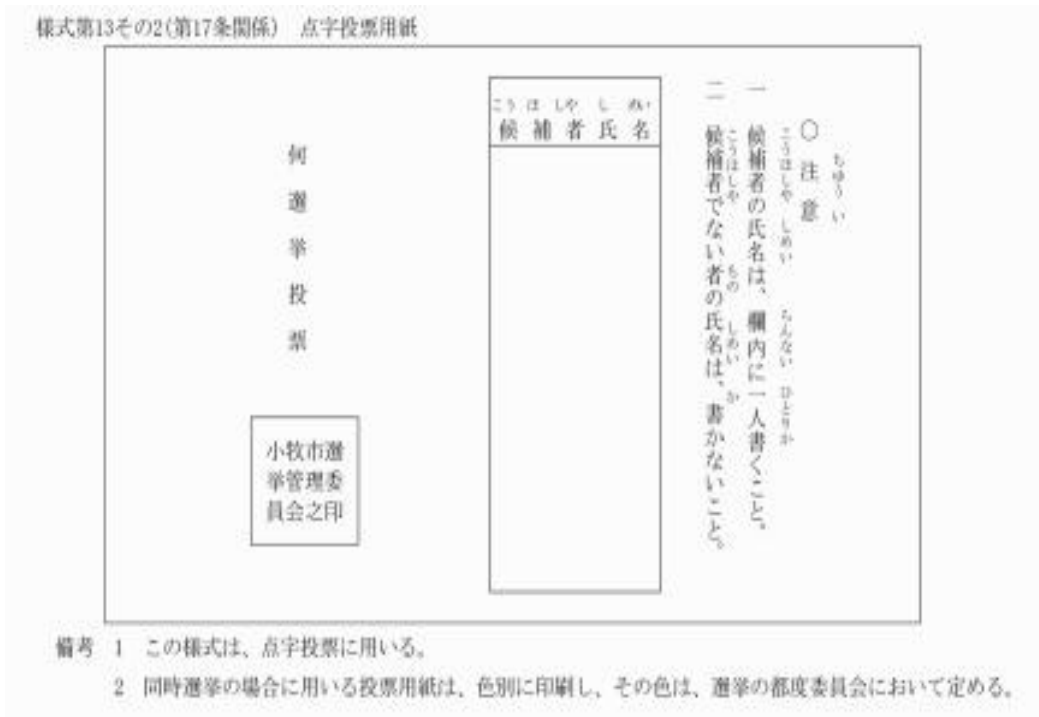
- 또한 총무성은 각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휠체어, 휠체어용 기표대, 돋보기, 노안경 등의 용품을 비치해 둘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이용가능.



〈사진4〉 휠체어용 기표대

2) 장애인용 투표용지 작성사례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제7조로 점자투표용지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음.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행해질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투표용지는 색을 다르게 하며, 색은 각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함.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지정함.
- 중의원선거와 함께 행해지는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의 경우, 통상 재판관의 이름에 X표를 하는 것으로 불신임을 표현하나 점자투표의 경우 재판관의 이름을 직접 점자로 기재해야 함.



〈사진5〉 점자투표용 투표용지의 예(코마키(小牧)시)



〈사진6〉 쿠시마(串間)시 주민투표 점자투표용지 예

										注意
小	大	白	寺	千	大	横	須	岡	山	裁判官の名 やめさせた方がよいと思う裁判官について、その名の上の欄に×を置くこと、やめさせなくてよいと思う裁判官については、何も書かないこと。
貫	谷	木	田	葉	橋	田	藤	部	浦	
芳	剛		逸	勝	正	尤	正	喜	善	
信	彦	勇	郎	美	春	孝	彦	代	樹	

〈사진7〉 일반적인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 투표용지



〈사진8〉 점자투표용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 투표용지

3)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내용 확인방법

- 시각장애인의 점자투표의 경우 본인 기표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다른 조치사항 없음.

4) 장애인 기표행위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⁸⁷⁾

- 장애인의 기표 방법으로는 점자투표와 대리투표가 공직선거법상 보장되고 있음.
 - 점자투표 : 통상적인 글을 쓸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투표관리자에게 요청하면 투표관리자는 점자투표임이 표시된 투표용지(사진 5)를 배부함. 투표자는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점자기(사진 3)를 이용해 점자로 후보자명 혹은 정당명을 기입 후 투표.
 - 대리투표(1) : 손이나 팔의 장애로 인해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대리투표가 가능. 투표관리자에게 대리투표를 신청하면 투표관리자는 그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투표 입회인과 상의를 거쳐 2명의 투표보조인(투표사무자 종사하는 자에 한함)을 선출함. 그 중 한명이 대리로 기표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입회하도록 되어있음.
 - 대리투표(2) : 정신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⁸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2013년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 이래로 참정권이 보장되었으며, 상기의 대리투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침.
- 청각 장애인 및 언어 장애자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투표가 가능하나, 투표 절차 등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비하여 커뮤니케이션 보드⁸⁹⁾를 비치.

87) <http://www.pref.tochigi.lg.jp/senkyo/sangisenkyo/qanda/qanda-2.html>

88) 모든 정신질환을 포함하지 않으며, 가정재판소로부터 후견개시의 판결을 받은 자만을 칭함.

89) 커뮤니케이션 보드는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기재한 인쇄물을 칭함. 청각 장애인 혹은 언어 장애자가 커뮤니케이션 보드상의 특정 질문을 선택하여 투표 관리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コミュニケーションボード

<p>Q 入場整理券がありません。</p>	<p>Q 入場整理券の氏名が間違っています。</p>	<p>A 確認します。</p>	
<p>Q 候補者が分かりません。</p>	<p>A 選挙公報を貸します。</p>	<p>Q 字が小さくて読めません。</p>	<p>A メガネを貸します。</p>
<p>Q 字が書けません。</p>	<p>A 補助者が代筆します。</p>	<p>Q 書き間違えました。</p>	<p>A 二重線で訂正して下さい。</p>
<p>Q 書き方が分かりません。</p>	<p>A① 候補者氏名を書きます。</p>	<p>A② 政党名を書きます。</p>	<p>A③ 辞めさせたい人に「×」を書きます。</p>
<p>授乳室</p>	<p>お手洗い</p>	<p>Q どこにありますか?</p>	
<p>Q 投票所に忘れ物をしました。</p>		<p>A 職員が取りに行きます。</p>	

〈사진9〉 커뮤니케이션 보드

4. 시설 안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1) 장애인시설 유형별 거소 투표 신고자(우편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 의무 기준 및 현황

- 신체장애자이면서 신체장애자 지원 시설⁹⁰⁾에 입소해있을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투표용지 및 봉투를 신청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시행령 제 50조」)
- 시설내의 기표소는 부재자 선거관리자(각 시설의 장(長))가 지정한 소정의 장

90)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에서 지정하는 곳에 한함.

소에서 행해짐.

-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라도, 일정 이상⁹¹⁾의 장애가 인정될 경우, 우편을 이용한 부재자 투표가 가능.⁹²⁾

2) 장애인시설 거소 투표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방법

- 총무성은 대리투표는 직접투표 및 비밀투표 원칙의 예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⁹³⁾.
- 장애인시설 내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경우 이하와 같은 절차로 투표함. (「공직선거법」 제 49조 및 「공직선거법시행령」 제 58조)



〈사진10〉 시설 내 투표소

- 부재자투표 관리자에게 투표용지와 투표봉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91) 신체장애자 수첩에 양다리, 이동기능, 체간장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92) 총무성 선거제도 소개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5.html)

93)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33483.pdf

- 소정의 장소에서 기표
- 부재자투표 관리자에게 제출
- 2013년부터는 시설 내 투표소에 외부 입회인을 두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 국정 선거의 경우 국비로 그 비용을 보조함.
- 투표봉투에는 기표한 날짜와 장소를 기입하기 때문에(「공직선거법시행령」 제 59조의 2), 해당 시설 내의 투표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비밀투표의 보장이 불가능함.

II.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재외선거, 거주불명등록자)

1. 영국 / 96
2. 독일 / 109
3. 미국 / 125
4. 호주 / 136
5. 일본 / 147



국가별 개요

1. 영국(United Kingdom)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 재외선거 선거인명부는 특별선거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선거인명부 내 기타 선거인으로 따로 구분·관리함.
- 선거등록관은 해외 거주 15년이 되는 해까지 재외국민에게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등록 갱신 관련 안내서류를 매년 발송해야 함.
※ 지역구 선거 등록 후 영국을 떠난 지 15년이 경과한 재외국민은 선거권 행사 불가
-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체류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1년에 한차례씩 갱신이 필요함.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및 근거법

- 「국민대표법 1983」 제4조~제7조C 및 「선거관리법 2006」 제9조~제13조 등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유권자의 사례 및 관련 등록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거주불명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음.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참여 안내 방안

- 거주지역이 불명확한 유권자들은 지역연계신고 양식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선거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 수 있음.
- 선관위는 자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거주불명유권자들의 선거등록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함.

2.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 국민으로서 독일 내에 주소를 보유하지 않아 선거인명부에 직권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 요건 존재 : p. 21 참조

○ 독일의 경우 선거를 위한 영구명부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선거 때마다 별도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및 근거법

○ 거주불명등록자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은 없으나, 거주지의 불명확은 선거권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불명등록자는 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인이 선거일에 체류한 체류지의 관할기관으로 공시된 자치단체가 선거인명부 작성의 관할기관이 됨.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참여 안내 방안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선거의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이후에는 선거절차에 규정된 선거정보의 제공을 받게 됨.

3.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 재외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각 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법은 각 주에서 주 선거 최고책임자를 임명하여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포함한 연방 및 주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우편투표 신청 후, 해외이주 전 국내 거주지 담당 선거기관에 이를 송부하여야 함.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및 근거법

- 미국 연방 및 대부분의 주 법률은 한국의 거주불명등록자와 유사한 맥락의 비활동 유권자(Inactive voters)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명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참여 안내 방안

-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비활동 유권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연방 및 주의 정기선거에서 2회 연속으로 투표하지 않거나 성명, 소속 정당 등의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등록유권자들에게 거주지변경확인우편(Alternate Residency Confirmation Card, ARC)를 발송함.

4. 호주(Australia)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 재외선거인으로 신청하는 자는 선거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위원회는 신청자가 재외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석으로 남김. 주석이 작성되는 때부터 취소될 때까지 신청인은 적법한 재외선거인으로 간주됨.
- 재외선거인 신청을 한 선거인은 해외거주 시부터 6년까지는 별도 재신청 없이 자격유지. 6년 후에는 명부에서 삭제되나, 다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 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음.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및 근거법

- (a) 호주에 있으면서, (b) 어떠한 선거구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을 하는 이유로 한 선거구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연방선거법 제96조에 의해 선거위원회에 거주불명등록자(Itinerant Elector)로 선거인명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참여 안내 방안

- 호주선거위원회는 주거지원프로그램(Supported Accomodation Assistance Program, SAAP)기관 등의 복지단체들과 협업하여 거주불명등록자들이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투표와 사전선거, 우편투표를 통해 거주불명자 및 호주 에보리진(호주 원주민)의 선거참여를 높임.

5. 일본(Japan)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 재외선거 선거인 명부는 일반 선거인 명부처럼 각 시군구(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함.
- 일반 선거인 명부와 다른 점은 주민표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닌 외국 특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유권자의 개별적인 신청에 의한 신청등록제임.
- 재외선거 선거인 명부는 일반 선거인 명부와 같이 영구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음.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및 근거법

- 거주불명등록자는 일본 내에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제도는 전무한 실정임.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참여 안내 방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선거정보(텔레비전, 신문, 후보자 포스터 등) 제공을 통한 거주불명등록자의 정보 접촉 기대
- 주민표가 없는 유권자의 경우 선거인 명부에 신상정보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정권은 제한됨.

1. 영국



영국 연구관 : 윤성원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방법

1) 명부작성 주체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

-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및 보관의 최종책임은 선거등록관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에 있음.⁹⁴⁾
 - 「선거관리법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는 선거와 관련된 주요 업무들을 설정하고 감독할 권한을 지님. 선관위는 선거등록관을 포함,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개표위원 등 선거관련 주요 행위자들의 활동을 매년 평가함.⁹⁵⁾
- 2014년 6월 개별선거등록제(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시행으로 새롭게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가보험번호 및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해외체류 확인절차를 완료해야 함.
 - 개별선거등록제를 활용한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도입으로 재외선거 등록시 과거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입증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임.⁹⁶⁾
- 재외선거 선거인명부는 국내용으로 활용되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포함되나, 군인·정부 공무원·거주불명등록자·익명등록자 등과 함께 특별선거인 집단

94) Isobel White, Alexander Home and Richard Cracknell, Overseas voters, SN/PC/05923 (9 December 2014), p. 5.

95) The Electoral Com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s (September 2013), p. 1.

96) 영국 선관위 공보담당관 Mark Nyack과의 인터뷰 (2014.9.3.). 다만 재외선거 등록시 제출한 자료가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증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special category electors)으로 분류되어 선거인명부 내 기타 선거인 (other electors)으로 따로 구분·관리함.⁹⁷⁾

- 재외선거 선거인명부는 각 선거구별로 성(surname)의 알파벳순에 따라 기재하며, 각 유권자의 해외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모든 재외선거 등록자는 선거인명부상 기재된 이름 앞에 알파벳 F가 표기되어야 함 (<표 2> 참조).⁹⁸⁾
- 선거등록관은 열람, 확인 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외선거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발행 또는 게재해야 함.

2) 영구명부제 도입여부

- 영국의 선거인명부는 국내, 국외유권자를 막론하고 신청등록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하는 형태를 취함. 2014년 개별등록제 도입 이후에도 해당 시스템이 유지되는바 가까운 장래에 영구명부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음.

3) 명부 갱신 방법

- 재외선거 유권자의 선거인 등록 후 유효기한은 1년임.
- 선거등록관은 재외선거 15년 규정(15 year rule)⁹⁹⁾에 따라 해외 거주 15년이 되는 해까지 재외국민에게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등록 갱신 관련 안내 서류를 매년 발송해야 함.
 - 선거등록 갱신 관련 서류에는 유권자가 서명 후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를 동봉해야 함.

97) Cabinet Office and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Part 4—Maintaining the register throughout the year (May 2015), pp. 82–83.

98) 재외선거 유권자가 상원의원일 경우에는 F가 아닌 E가 기재됨.

99)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에 따른 것으로, 지역구 선거 등록 후 영국을 떠난 지 15년이 경과한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임. 동 법 이외 15년이라는 기간을 규정한 뚜렷한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음.

- 해당 안내문은 재외선거 유권자가 선거인으로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발송되어야 함.
- 2차 안내문은 1차 안내문 발송 이후 21~28일 사이에 발송.
- 갱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됨.

Elector number	Franchise marker	Name	Address	참조 (not shown on register)
1		Evans, Gareth	1, The Street	일반유권자
2	12/06/yy yy	Juba, Charlotte	2, The Street	기재된 날짜부터 투표가능
3	G	Chamberlain, Louise	3, The Street	지방선거만 투표가능
4	K	Mackenzie, Scott	4, The Street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선거

〈표 1〉 일반유권자 선거인명부 작성 예

Elector number	Franchise marker	Name	Address	참조 (not shown on register)
5	F	Jolly, Simon		재외선거 유권자; 지방선거 참여 불가
6		Watts, Julie		군인·공무원 및 가족 등; 전 선거 참여가능
7	N			익명등록자; 전 선거 참여가능
8	GN			EU 소속국가 시민으로 익명등록자; 지방선거만 투표가능

〈표 2〉 기타 선거인명부 작성 예¹⁰⁰⁾

4) 현행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문제점 및 보완방식¹⁰¹⁾

○ 수시명부제 및 신청등록제의 가장 큰 맹점은 낮은 등록률에 있음.

- 2005년 이후 선관위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등록률 제고 및 참정권 행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음.¹⁰²⁾

100)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guidance: Part 3-2015 canvass (May 2015), pp. 35-36.

101) 현행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문제점 및 보완방식 부분은 본 연구관의 2014 재외선거제도 제출과제에서 일부 발췌, 재정리한 것임.

그러나 선관위와의 산발적 협력활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가기관들의 활동은 미비한 것이 현실임.

- 재외선거 등록률 제고 보완책 마련에 앞서 영국정부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참정권 자격을 지닌 재외국민 현황에 대한 확인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재외국민들의 자발적 선거등록 및 신고절차가 없는 한 투표용지 혹은 선거등록 안내용지를 발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선관위는 2014년 2월 이후 영국 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10개국¹⁰³⁾을 중심으로 재외선거 등록캠페인을 전개함. 이밖에 △토크 라디오 유럽(Talk Radio Europe)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광고 △외무부 및 주요 정당들과 협력, 재외국민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를 확인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방식 등을 택하고 있음.¹⁰⁴⁾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등

1) 거주불명등록자 등록제도 도입 여부

-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제4조~제7조C 및 「선거관리법 2006」 제9조~제13조 등은 선거등록 자격부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유권자의 사례 및 관련 등록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거주불명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음.

102) Geoffrey Clifton-Brown MN *et al.*, *Making votes count: Enhancing engagement in the electoral process by British expatriates* (Cross-Party Group on Overseas Voters Report: March 2014), p. 9.

103) 호주, 미국, 스페인,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UAE 순.

104) 영국 선관위 공보담당관 Mark Nyack과의 인터뷰 (2014.9.3.)

2)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

-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는 △상선 선원 △집시 및 유목 집단 (장기여행자) △하우스보트 및 이동식 차량 거주자 △노숙자 △정신병원 환자 △형 확정 전인 구류 수감자 등으로 나뉨.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연계신고 (declaration of local connection) 절차를 거치면 선거등록이 가능함 (4. 신청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안내 방안 참조).¹⁰⁵⁾
- 선거등록을 위한 주택조사 미응답자 역시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유권자로 분류될 수 있음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및 투표참여 안내 방안 참조). 이와는 별도로 두 개 이상의 주소에서 선거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두 개 이상의 주소에서 선거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학기 중과 방학 기간 거주지가 다른 학생, 두 개 이상의 집을 소유한 유권자에 한함. 다만 이 경우 두 번째 집이 레저 등을 위한 별장이 아니며 거주를 목적으로 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¹⁰⁶⁾

[참고조문]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제7C조 지역연계신고의 효력

(2) 지역연계신고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먼저 해당하는 시기까지 등록유권자로서의 자격을 지닌다.

(a)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시기로부터 12개월

(aa) 선거등록관이 규정상 해당 유권자가 등록에 부적격이라고 판단*

(b) 동 법 제7조B 제9항에 따른 신고의 취소

105)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guidance: Part 2—The registration framework (May 2015), pp. 11–13.

106) *ibid.*, pp. 10–11.

(c) 해당 유권자가 다른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연계신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음)

(3) (2)의 이유로 인해 유권자의 등록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선거등록관은 해당 유권자가 추가적인 지역연계신고에 따라 등록유권자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한 해당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등재사항을 삭제한다.

(이하생략)

Section 7C Effect of declaration of local connection.

(2) A person registered in a register of electors in pursuance of a declaration of local connection is entitled to remain so registered until—

(a) the end of the period of 12 months beginning with the date when the entry in the register first takes effect,

(aa) the registration officer determine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that the person was not entitled to be registered,

(b) the declaration is cancelled under section 7B(9) above, or

(c) another entry made in respect of him in any register of electors takes effect (whether or not in pursuance of a declaration of local connection),

whichever first occurs.

(3) Where the entitlement of such a person to remain so registered terminates by virtue of subsection (2) above, the registration officer concerned shall remove that person's entry from the register, unless he is entitled to remain registered in pursuance of a further declaration of local connection.

(이하생략)

* (aa)는 「선거관리법 (Electoral Administration 2006)」에 의해 추가됨.

3) 거주불명등록자 현황관리 실태 및 관리주체

- 선거등록관은 「국민대표법 1983 (제9A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포함, 등록 가능한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고, 등록자격을 상실한

-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연중 관리해야 함.
-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유권자들 가운데 지역연계신고 절차를 마친 등록자들은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기타 선거인(other electors)으로 분류(주소란 공백)되어 선거인명부에 따로 등재됨.¹⁰⁷⁾
 -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유권자 역시 선거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권 행사 자체가 불가하므로, 선거등록관은 선거인명부를 관리함에 있어 해당 선거구 내 미등록 유권자 현황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¹⁰⁸⁾
 - 선거등록관은 미등록 유권자 여부 확인 과정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IER digital service)망을 통해 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다른 선거구에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선거구의 선거등록관이 동 신청을 허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선거구의 선거등록관으로부터 자신의 담당구역에 거주하던 유권자의 선거구 이동 신청 및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유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공식 통보받은 경우 △담당 선거구 내 유권자가 특정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두 개 이상의 자료 필요) 등에 한해 해당 유권자를 선거인명부에서 제할 수 있음.¹⁰⁹⁾
 - IER 디지털서비스 혹은 다른 선거구의 선거등록관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등록관은 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인명부에서 제할 수 없음.
 - 선거인명부에서 말소된 유권자는 해당 날짜로부터 14근무일 내에 선거등록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107) Cabinet Office and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Part 4—Maintaining the register throughout the year* (May 2015), p. 95.

108) *ibid.*, pp. 4-5.

109) *ibid.*, pp. 115-119.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및 투표참여 안내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 지역연계신고 절차를 완료한 유권자는 거주불명등록자를 위한 선거등록양식 (Electoral registration form) 작성을 통해 선거정보 및 투표참여 안내 사항을 제공받을 주소를 선택할 수 있음.
- 지역연계신고 양식에 선거등록 담당자의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영국 유권자들의 선거등록 및 선거관련 포털 역할을 하는 [About my vote] (www.aboutmyvote.co.uk) 웹페이지 우측 상단 검색창에 주소 혹은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선거구의 선거등록관이 근무하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선거정보 제공 및 투표참여 안내는 사실상 선거등록관이 가구조회양식(HEFs)을 전 가정에 배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이 과정에서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유권자의 식별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선거에 미등록한 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선거등록관에 의해 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음.¹¹⁰⁾
 - 선거등록관은 담당 구역 내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주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최신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토지부동산색인(LLPG)팀 등과 협력해야 함.
 - 대부분의 선거등록관은 우편을 통해 가구조회양식 및 등록초청장(ITRs)을 발송함. 우편발송은 등록사무보조원들을 고용하는 데 비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용하나, 각 유권자의 실제 거주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

110)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guidance: Part 3—2015 canvass (May 2015), pp. 1-38.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반면 등록사무보조원들이 직접 가구조회양식을 배달하는 경우 운동원 모집·교육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대두됨.

- 개별선거등록제 시행 이후 2015년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영국 전역의 선거등록관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회양식을 발송해야 함. (발송 기한 : 2015. 7. 1. ~ 2015. 11. 30.)
- 선거등록관은 가구조회양식에 대한 미응답 가구에 한해 두 차례의 추가 고지 및 최소 한 차례의 개별 방문을 해야 함.
 - 선거등록관은 해당 지역 내 미응답 가구 전체에 대한 추가확인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등록사무보조원을 고용·교육시킬 책임이 있음. 이 과정에서 등록사무보조원들이 미응답 가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등록사무보조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고용해서는 안 됨 (「국민대표법 1983」 제9조A).

2) 정당 및 후보자

- 정당 및 후보자가 단독으로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선거등록캠페인을 전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정당 및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지역 선거등록관 및 자선단체 등과 협력하여 선거공약, 선거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신청서 획득 절차 등 선거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게 됨.
 - 자선단체인 Homeless Link는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5개 정당의 노숙자 및 무주택자, 실직자 문제 해결 등과 연계된 선거공약을 따로 정리해 관련 기관에 배포함.¹¹¹⁾

111) <http://www.homeless.org.uk/sites/default/files/site-attachments/Five%20Election%20Manifestos.pdf> (검색일:

- 등록대상 유권자들은 주요정당 지구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주지를 입력하면 지역 내 주요 정당행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4. 신청등록제(선거인명부 작성방법)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거주 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안내 방안

- 정신병원 등에 머물고 있는 환자, 노숙자, 구류 중인 자 등 거주지역이 불명확한 유권자들은 지역연계신고 양식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선거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 수 있음 (<사진 1> 참조).¹¹²⁾
 - 일정한 거주지 또는 본적지를 갖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은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혹은 지역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곳을 선정해 지역연계신고를 제출한 뒤 해당 지역에 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지역연계신고를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선거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거나 혹은 지역선거등록관으로부터 직접 선거정보 및 등록관련 서류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¹¹³⁾

2015.7.21.)

112)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guidance: Part 3—2015 canvass* (May 2015), pp. 93–96;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guidance: Part 2—The registration framework* (May 2015), pp. 11–13.

113) 영국 선관위 공보담당관 Mark Nyack과의 인터뷰 (2015.7.13.)

Declaration of Local Connection – Homeless Person		For Office Use						
<small>Only One person per form please. If more forms are needed, please photocopy or contact Electoral Registration at the address shown on the reverse of this form. Please use BLOCK LETTERS.</small>								
ⓐ About you								
First names in full								
Surname								
Are you 18 years old or over? If so please tick: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Are you under 18? If so, please give your date of birth:	<table border="1"> <tr> <td>Day</td> <td>Month</td> <td>Year</td>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Day	Month	Year			
Day	Month	Year						
Are you 70 years old or over? If so please tick: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Are you a European Union Citizen? If so, please state which country (other than British or Irish.)								
If you do not wish your name to appear on the edited register please tick: <input type="checkbox"/> (see notes on reverse)								
ⓑ About where you used to be registered as an elector.								
Address and post code								
The name of your old local council, if known.								
ⓒ Where you live now.								
Address and post code of the place I spend a substantial part of my time at or near.								
I will collect correspondence from the Electoral Services Office (please tick box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OR Please send all correspondence to:								
ⓓ Declaration.								
Each person must sign his or her own form. If it is not signed the form will be sent back to you. It is an offence to make a false statement on this form; the maximum fine is £1,000.								
As far as I know, the details on this form are true and accurate. I am a British, other Commonwealth, Irish or other European citizen.								
Your signature		Date						

Data Protection Act 1998
The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 of the Borough Council of King's Lynn & West Norfolk will use this information for electoral purposes and will onl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6 and subsequent amendment regulations. The information may be subject to audit, both internal & external. You have the right to ask for a copy of the information we hold on you, which is subject to the

〈사진 1〉 지역연계신고 작성양식 (노숙자 대상)

- 지역연계신고는 신청 날짜와 함께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돼야 함.
 - 신청자 전체 이름(full name) 및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했던 이름, 선거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주소,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를 중단한 바 있는 주소, 생년월일 (생년월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유 기재, 18세 이하 혹은 70세 이상은 별도 기재), 국가보험번호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유 기재) 등
- 같은 날 두 개 이상의 지역연계신고를 하고, 서로 다른 주소를 기입할 경우 해당 신고는 무효임.
- 지역연계신고의 효력은 해당 절차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후로부터 12

개월이며, 선거등록관은 해당 유권자가 동일한 선거인명부에 계속 등재되기를 원하는 경우 동 신고를 갱신해야 함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

- 지역연계신고 갱신 관련 통지는 해당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후 9~10개월 사이에 발송돼야 함. 1차 통지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선거등록관은 1차 통지 발송일 기준 3~4주 사이에 2차 통지를 발송해야 함. 해당 절차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등록 고지 의무와 동일함.

5. 그 밖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안내 및 선거참여 관련 제도

- 선관위는 노숙자 관련 단체인 Homeless Link와 연계해 노숙자 보호시설, 호스텔, B&B¹¹⁴⁾ 등에 거주하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포스터를 작성·배포한 바 있음. 해당 포스터에는 임시 거주주소로 선거등록이 가능하다는 점과 등록관련 서류를 구할 수 있는 지역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음.¹¹⁵⁾
- 영국 내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활동이 보편화돼 있는 만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유권자에 대한 선거참여 캠페인 역시 다양한 자선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됨.
 - 노숙자를 위한 영향력 있는 자선단체인 Crisis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만 2015년 현재 약 11만20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지방정부로부터 노숙자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많은 노숙자들이 고정된 주소가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 5월 총선을 계기로 노숙자 및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등록 캠페인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됨.

114) (Bed-and-Breakfast: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민박/게스트하우스형 숙소)

115)

<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journalist/electoral-commission-media-centre/news-releases-campaigns/help-homeless-people-register-for-the-general-election> (검색일: 2015.7.12.)

- 자선단체 Crisis는 2015년 4월 에든버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선거등록지원 상담센터(drop-in sessions)를 운영, 거주불명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캠페인을 벌임.¹¹⁶⁾
- 자선단체인 HOPE not hate, 노동조합 Unite 등이 함께해 ‘No Vote No Voice’ 운동을 주관함. 이들은 런던의 상징인 붉은색 2층 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돌며 거주불명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등록 운동을 전개함. 이들은 버스를 찾는 유권자들에게 각 지자체 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선거등록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함
(〈사진 2〉 참조).¹¹⁷⁾



〈사진 2〉 거주불명유권자대상 선거등록 홍보차량

116) 노숙자 자선단체 Crisis 홍보담당관 Jack과의 인터뷰 (2015.7.13.)

117) The Mirror, *Britain's forgotten voters: Can homeless people have a voice in the election?* (11 March 2015); <http://www.mirror.co.uk/news/uk-news/britains-forgotten-voters-can-homeless-5313448>(검색일: 2015.7.12.)

3. 독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1) 명부작성 주체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

-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매 선거 이전에 일반 투표구마다 성명, 출생일자 그리고 거주지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신청이 있어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거주지를 보유하지 아니한 채 일정 선거구 내에 상주하는 자,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되었으나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 국민으로서 직권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조제2항」).
- 일반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는 1985년의 연방선거법 개정¹¹⁸⁾을 통해 「연방 선거법 제12조 제2항」의 선거권 규정에 일반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면서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됨.
- 선거인명부에 신청등재의 대상이 되는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요건은 선거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외부의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인 중, 만 14세 이후 적어도 3개월 이상 단절 없이 독일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거나, 출생시 독일에 체류하였고 그러한 체류시점 후 2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또는, 독일에서 정치적인 관계와 함께 개인적 그리고 직접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자 및 그와 관계있는 독일인으로서, 명부 작성시에 독일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직권등재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신청 가능(「연

118) 1985.03.08, BGBl. IS. 521

- 방선거법 제12조제2항」 및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 재외국민의 선거인명부 작성 관할권은 선거인이 그 선거구로부터 이전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5호」).
 - 재외국민의 투표는 우편투표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편투표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우편투표구선거위원회를 구성함(「연방선거법 제8조제1항」).
 - 우편투표의 결과 확정을 위해 각 선거구 내에 별도의 우편투표구선거위원장 및 우편투표구선거위원회의 설치가 이루어지며, 그 수는 선거구 선거위원장이 결정(「연방선거법 제8조제1항」).
 - 우편투표의 결과 확정을 위한 우편투표구선거위원장 및 우편투표구선거위원회는 여러 행정구역 권역별로 설치가 가능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주 정부 또는 그로부터 선거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결정(「연방선거법 제8조제3항」).
 -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21일 까지 투표구 관할 행정청에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선거인명부의 등록신청은 단체로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선거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재외국민이 선거인명부에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선거권에 대한 증거를 보증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여타의 자치단체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고지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 재외국민의 신청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이루어진 경우 연방선거위원장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여 등재사실을 통지하여 중복등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우편투표를 위해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 내의 해당 선거구로 다시 이주하여, 입주일 이후에 그러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개시이전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

하여서만, 그리고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것을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청이 보증한 경우에만, 해당 선거인은 이주한 신 거주지 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 선거기간 중에 독일 내로 이주한 재외국민이었던 선거인에게는 주민등록 신청시에 선거인명부 신청과 관련한 안내가 이루어짐(「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 선거기간 중에 독일 내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신청에 의해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연방선거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러한 선거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제8조(선거기관의 구분) (1) 선거기관은

전체선거지역에는 연방선거위원장과 연방선거위원회가,

각 주에는 1인의 주 선거위원장과 각 주 선거위원회가,

각 선거구에는 1인의 선거구 선거위원장과 1개의 선거구 선거위원회,

각 투표구에는 1인의 선거위원장과 1개의 선거위원회가 있으며,

우편에 의한 투표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각 선거구에 최소한 1인의 우편투표구 선거위원장과 1개의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를 둔다.

선거일 당일에 우편에 의한 투표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몇 개의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를 두어야 하는가는 선거구 선거위원장이 결정한다.

(2) 인접한 수 개의 선거구에서는 1인의 공동선거위원장과 1개의 공동선거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 선거위원장이 정한다.

(3) 우편투표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각 선거구 대신에 선거 내의 하나 또는 수 개의 시읍면, 또는 소구역에 투표구 선거위원장 및 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 정부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기관이 정한다.

제12조(선거권) (2) 선거권자는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와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선거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외부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1. 만 14세 이후 적어도 3개월 이상 단절없이 독일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거나, 출생시 독일에 체류하였고 그러한 체류시점 후 2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또는,
2. 독일에서 정치적인 관계와 함께 개인적 그리고 직접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자 및 그와 관계있는 자이다.

제 1문에서 의미하는 주거지 또는 거주 형식의 체류에는 통일조약 제3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 이전에 주거지를 가졌거나 체류한 경우도 포함한다.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4조(선거인명부의 작성) (1)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매 선거 이전에 일반 투표구(제12조)마다 성명, 출생일자 그리고 거주지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는 전산기기로 작성될 수도 있다.

(2) 선거인명부는 성의 알파벳 순서로, 같은 성일 경우에는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여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는 지역구분, 거리, 번지를 기초로 작성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투표행위에 대한 의견기재란 및 비고란을 둔다.

(3)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항상 완전하게 구비하여 선거가 실시될 경우 적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1개의 투표구가 여러 개의 자치단체 또는 그 일부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관할 투표구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선거인의 선거인명부등록) (1) 선거 35일 전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민청에 등록된 모든 선거인은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다.

1. 거주지
2. 선장이나 승무원으로 고용, 급료 또는 교육관계를 근거로 하며 연방국기를 계양할 권한이 있는 해양선박(연방선거법 제12조 제4항 제1호)
3. 독일연방공화국 내 선박대장에 등재된 내륙선박(연방선거법 제12조 제4항 제2호)
4.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연방선거법 제12조 제4항 제3호)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신청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다.

1. 연방선거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자로서

a) (삭제)

b) 거주지를 보유하지 아니한 채 선거구 내에 그 밖의 방법으로 상주하는 자

c)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제1항 제4호에 의해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2. 연방선거법 제12조 제2항 제1문이 정한 자로서,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제17조 (선거인명부등록의 관할) (1) 선거인명부등록의 관할권은

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있으며 여러 개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주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
2.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선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
3.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내륙선박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
4.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교도소나 이와 동등한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

(2) 선거인명부등록의 관할권은

1. (삭제)
2. 제16조 제2항 제1호 제b목의 경우, 선거인이 선거일에 체류한 체류지에 관할기관으로 공시된 자치단체
3. 제16조 제2항 제1호 제c목의 경우, 교도소나 이와 동등한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
4. (삭제)
5. 제16조 제2항 제2호 선거인이 그 선거구로부터 이전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지방자치단체, 제1문은 선거구로부터 이주한 이후 외국국기를 계양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내륙선박의 선원들 그리고 그들의 세대소속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연방국기를 계양할 권한이 있었던 해양선박으로부터 해고된 이후 외국국기를 계양한 선박으로 향해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이전 선주의 소재지에 있는 자치단체가 관할한다. 최종적으로 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재되었던 내륙선박으로 향해하였으며, 이후에 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내륙선박이나 외국국기를 계양한 해양선박으로 향해하는 내륙선박선원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치단체가 관할한다.

(이하 생략)

제18조 (신청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록절차) (1) 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은 서면으로 늦어도 선거일로부터 21일 이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의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선거인의 성명, 출생일자 그리고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신청이 허용된다. 단체신청은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선거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 경우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가 준용된다.

(2) (삭제)

(3)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수 있다. 이는 선거일 이후 같은 선거구역내의 다른 주민등록관청에 새로이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당해 선거인에게는 주민등록시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4) (삭제)

(5)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선거인은 별지 제2호에 의한 선거인명부로의 등재 신청 시에 해당 자치단체 행정청에 선거에 갈음한 보증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선거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가 선거구 내에 있는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여야 한다....(중간 생략)...선거인명부로의 등재가 기재된 별지 제2호에 의한 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함으로써 지체 없이 연방선거위원회에게 선거인명부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선거위원회가 여러 자치단체의 행정청으로부터 동일한 신청자의 선거인명부의 등재에 대하여 고지를 받은 경우 연방선거위원회는 최초의 통지 후에 선거인명부 등재사실을 통보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우선 통보한 자치단체의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이 등재되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고지를 받은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선거인명부에서 해당 선거인을 삭제하고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제1문에 해당하는 선거인이 해당 선거구로 다시 이주하여 입주일 이후에 그러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개시이전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서만 그리고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것을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청이 보증한 경우에만 선거인은 이주한 선거구 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다. 그러한 선거인은 주민등록 신청서에 그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는다.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연방선거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러한 선거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5항제5문과 제6문이 준용된다.

2) 영구명부제 도입여부

- 독일의 경우 선거를 위한 영구명부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각 선거마다 선거인명부는 수시로 작성됨.
- 독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거주 독일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는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각각의 연방의회선거 때마다 별도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는 자신의 독일 내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편지,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서면형식으로 제출

해야 하며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신청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록절차)

(1)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서는 선거일 21일 전까지 서면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성, 이름, 출생일 및 선거권자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단체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된 선거권자들 모두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가 준용된다.

(이하 생략)

3) 명부 갱신 방법

- 선거인명부는 각각의 연방의회선거 때마다 새롭게 작성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 선거마다 선거인명부의 등재신청이 이루어져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4조(선거인명부의 작성) (1)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매 선거 이전에 일반 투표구(제12조)마다 성명, 출생일자 그리고 거주지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는 전산기기로 작성될 수도 있다.

(이하 생략)

4) 현행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문제점 및 보완방식

- 재외선거의 경우 별도의 투표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편투표 제도 및 선거증 제도에 기초한 투표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선거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선거권의 인정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음.
- 해외에 거주하던 독일국민이 선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일에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함.
- 「연방선거법 제12조 제2항 제1문」에 대한 위헌 판결¹¹⁹⁾이 지난 2012년 7월 4일에 있었음.
-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의 내용인 선거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
- 해당 조항의 위헌판결 이후 2013년 5월 3일 해당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신청에 기초한 명부작성 방식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음.

[참고조문]

「구 연방선거법(2013년 5월 개정 이전)」

제12조(선거권) (2) 선거권자는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와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선거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외부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1949년 5월 23일 이후 퇴거 이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단절 없이 독일 연방공화국 내에 주거지가 있거나 그 밖에 거주 형식으로 체류한 자이다.)¹²⁰⁾ 제 1문에서 의미하는 주거지 또는 거주 형식의 체류에는 통일조약 제3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 이전에 주거지를 가졌거나 체류한 경우도 포함한다.

119)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012.07.04, 사건번호 2 BvC 1/11, 2 BvC 2/11

「현행 연방선거법(2013년 5월 개정)」

제12조(선거권) (2) 선거권자는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와 기본법 제116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선거일에 독일 연방공화국 외부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1. 만 14세 이후 적어도 3개월 이상 단절없이 독일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거나, 출생시 독일 내에 체류하였고 그러한 체류시점 후 2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또는,
2. 독일에서 정치적인 관계와 함께 개인적 그리고 직접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자 및 그와 관계있는 자이다.

제 1문에서 의미하는 주거지 또는 거주 형식의 체류에는 통일조약 제3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 이전에 주거지를 가졌거나 체류한 경우도 포함한다.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등

1) 거주불명자 등록제도 도입 여부

- 거주지 불명자를 별도로 관리하기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2)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

-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연방선거법 제13조」).
- 선거기간에 거주지가 등록되지 않은 채 선거구 내에 상주하는 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제b목」).
- 선거권은 있으나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는 사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신청에 기초하여 작성되며(「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신청에 의해 명부에 포함될 수 있음.

120)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012.07.04, 사건번호 2 BvC 1/11, 2 BvC 2/11」를 통해 3개월 계속체류 요건에 대해 위헌판결로 본 조문의 해당 내용만 삭제된 바 있음.

- 선거권자가 여러 개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된 주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선거인명부 등록의 관할권이 있음(「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 거주지 이전 또는 신규 등록으로 선거구역이 불명확하게 된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제 13 조 (선거권 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배제(Ausschluss)된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2. 자신의 모든 사무에 대하여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 후견인의 임무범위에 민법 제1896조와 제1905조에 규정된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도 이에 해당한다.
3. 형법 제20조와 관련하여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4. (삭제)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6조 (선거인의 선거인명부등록) (1) 선거 35일 전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민청에 등록된 모든 선거인은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다.

1. 거주지
2. 선장이나 승무원으로 고용, 급료 또는 교육관계를 근거로 하며 연방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해양선박(연방선거법 제12조 제4항 제1호)
3. 독일연방공화국 내 선박대장에 등재된 내륙선박(연방선거법 제12조 제4항 제2호)
4.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연방선거법 제12조 제4항 제3호)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신청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다.

1. 연방선거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자로서
 - a) (삭제)
 - b) 거주지를 보유하지 아니한 채 선거구 내에 그 밖의 방법으로 상주하는 자
 - c)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제1항 제4호에 의해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2. 연방선거법 제12조 제2항 제1문이 정한 자로서,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 (3) 제1항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이전하여 선거인명부열람기간(연방선거법 제17조제1항제2문) 이전에 신거주지의 주민청에 등록한 경우에 그 선거인은 신청에 의하여서만 입주지역 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다.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으로서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 새로운 거주지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등록된 원거주지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채로 남는다. 해당 선거인은 거주지신고시에 제1문과 제2문의 규정에 대하여 지도를 받는다. 신청에 따라 등재가 이루어지면 신거주지 행정청은 지체 없이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구거주지 행정청에 이에 대하여 고지한다. 제1문의 경우에 구거주지의 행정청에 선거권이 박탈에 대한 고지가 있었거나 사후적으로 고지가 있으면 당해 행정청은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한다. 삭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4) 선거일 현재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개시 이전에 주민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제3항제1문 및 제3문이 적용된다.
- (5) 제1항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이 앞으로 주된 주소로 될 다른 자치단체의 주소로 이주하거나 그 주된 주소를 다른 자치단체로 옮길 경우에 그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개시이전에 주민등록관청에 거주지 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항이 준용된다.
- (6) 선거인이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느 주소가 주된 주소인지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다.
- (이하 생략)

제17조 (선거인명부등록의 관할) (1) (중간 생략)

(2) 선거인명부등록의 관할권은

1. (삭제)
2. 제16조 제2항 제1호 제b목의 경우, 선거인이 선거일에 체류한 체류지에 관할기관으로 공시된 자치단체
3. 제16조 제2항 제1호 제c목의 경우, 교도소나 이와 동등한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
4. (삭제)
5. 제16조 제2항 제2호 선거인이 그 선거구로부터 이전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지방자치단체, 제1문은 선거구로부터 이주한 이후 외국국기를 계양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내륙선박의 선원들 그리고 그들의 세대소속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연방국기를 계양할 권한이 있었던 해양선박으로부터 해고된 이후 외국국기를 계양한 선박으로 항해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이전 선주의 소재지에 있는 자치단체가 관할한다. 최종적으로 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재되었던 내륙선박으로 항해하였으며, 이후에 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내륙선박이나 외국국기를 계양한 해양선박으로 항해하는 내륙선박선원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치단체가 관할한다.

(3) 선거인명부등록의 관할권

1. 제16조제3항의 경우, 신거주지의 자치단체

- | |
|---|
| 2. 제16조제4항의 경우, 선거인이 주소지로 신고한 자치단체, 여러 개의 거주인 경우에는 주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한 자치단체 |
| 3. 제16조제5항의 경우, 새로운 주된 주소의 자치단체 |

3) 거주불명등록자 현황관리 실태 및 관리주체

- 거주불명자를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나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나 주체는 없음.
- 거주불명자가 신청에 의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체류한 체류지에 관할기관으로 공시된 자치단체가 선거인명부 작성의 관할기관이 됨(「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1)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선거정보 제공 실태(매체별)

- 거주불명자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기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거주불명자의 경우 선거의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야 함.
- 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이후에는 선거절차에 규정된 선거정보의 제공을 받게 됨(「연방선거법시행령 제19조」).
- 선거증의 교부시에 해당 선거구의 공식 투표용지, 공식 투표지봉투, 우편투표 선jer우편물이 송달되어야 하는 전체주소 및 선거증을 발행한 자치단체 행정청의 기호 및 선거증 번호나 선거구역이 기재된 공식 우편투표 선jer우편물 봉투, 우편투표 안내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 노숙자 등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거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나 정당의 선거운동 방식은 없음.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9조 (선거인에 대한 통지) (1) 늦어도 선거인명부 열람개시 전까지 각 자치단체 행정청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모든 선거인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통지를 한다. 해당 안내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선거인의 성명, 주소
2. 투표소에 대한 안내서
3. 투표시간에 대한 안내서
4. 선거인의 선거인명부등록번호
5. 투표시 선거통지서 및 신분증 또는 여권의 지참안내
6. 선거통지서는 선거증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통보된 투표소 이외의 곳에서는 투표할 권리가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
7. 선거증의 신청 및 우편투표자료의 발송에 대한 안내. 이는 다음 사항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선거인이 원선거구의 다른 투표소 또는 우편투표를 통하여 선거할 경우에만 선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b) 선거증 교부요건(제25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 제3문)
 - c) 선거증은 서면상의 전권위임을 통한 신청서 제출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선거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신청될 수 있다(제27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선거권자의 등재가 제1문의 통지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통지는 등재 후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통지서의 뒷면에는 선거증 교부신청을 위한 양식이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인쇄되어야 한다.
 - (3) 제16조 제2항에 의한 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고 이미 선거증과 우편투표 사유서를 제시한 선거인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이하 생략)

제28조(선거증의 교부)

(중간 생략)...

(3) 선거증에는 다음 각 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의 양식에 따른 선거구의 공식 투표용지
2. 별지 제10호의 양식에 따른 공식 투표지 봉투
3. 우편투표 선거우편물이 송달되어야 하는 전체주소 및 선거증을 발행한 자치단체 행정청의 기호 및 선거증 번호나 선거구역이 기재된 공식 우편투표 선거우편물 봉투

4. 별지 제12호의 예에 따른 우편투표에 대한 안내서
제1문은 제29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정보 제공 실태(매체별)

-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근거하여 선거에 참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유권자에 대해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4. 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참여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투표참여 방안

-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이후에는 거주불명자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2) 정당·후보자의 투표참여 방안

-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정당 및 후보자가 별도로 이들에 대해 관리하는 제도는 없음.

5. 신청등록제(선거인명부 작성방법)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거주 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안내 방안

- 신청에 기초하여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이루어지는 유권자를 위해 신청서 제출을 위한 양식과 안내서를 독일의 외교 및 영사대표부, 연방선거위원장 및 선거구선거위원회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8조제5항」).
-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위해서는 선거일이 결정된 후 재외 독일인의 연방하원의원선거 참여요건과 재외 독일인의 선거인명부등록 신청의 기한·장소·방법을 하나 이상의 전국판 일간지 및 주간지에 독일어로 된 광고를 게재하여야 하고, 영사관은 한 개 이상의 지역판 일간지에 독일어로 된 광고를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재외국민에 대해 공고가 제대로 이뤄 지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게시되지 못한 때에는 외교대표부 건물에 게시하거나 가능하다면 해당자 개인에게 통지해야 함 (「연방선거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신청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록절차) (생략)... (5) 제16조제2항제2호의 경우, 선거인은 별지 제2호에 의한 선거인명부로의 등재 신청 시에 해당 자치단체행정청에 선서에 갈음한 보증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선거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가 선거구 내에 있는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 서도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외교 및 영사대표부, 연방선거위원장 및 선거구선거위원회에게 신청서 제출을 위한 양식과 안내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진술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로의 등재가 기재된 별지 제2호에 의한 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함으로써 지체 없이 연방선거위원회에게 선거인명부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선거위원장이 여러 자치단체의 행정청으로부터 동일한 신청자의 선거인명부의 등재에 대하여 고지를 받은 경우에 연방선거위원장은 최초의 통지 이후에 선거인명부 등재사실을 통보한 행정청에게 지체 없이 우선 통보한 자치단체의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이

등재되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고지를 받은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선거인명부에서 해당 선거인을 삭제하고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 20 조 (선거인명부열람의 공고 및 선거증의 교부) (1)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늦어도 선거일전 24일까지 별지 제5호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장소·시간
2. 열람기한이내에 서면 또는 서명을 통한 선고로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는 사항(제22조)
3.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에게는 늦어도 선거일전 21일까지 선거통지서가 송달되어야 하며, 신청에 의해서만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선거인으로서 이미 우편투표 사유서를 포함한 선거증을 신청한 자는 선거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음을 알리는 내용
4. 선거증의 신청요건·장소·기한(제25조 이하)
5. 우편투표의 방법(제66조 이하)

(2) 국외주재 독일연방공화국 외교 및 영사대표부는 선거일이 결정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즉시 공고한다.

1. 재외 독일인의 연방하원의원선거 참여요건
2. 재외 독일인의 선거인명부등록 신청의 기한·장소·방법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대사관은 각각 한 개 이상의 전국판 일간지 및 주간지에 독일어로 된 광고를 게재하여야 하고, 영사관은 한 개 이상의 지역판 일간지에 독일어로 된 광고를 게재하여 공고하여야만 한다. 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게시되지 못한 때에는 외교대표부 건물에 게시하거나 가능하다면 해당자 개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그 밖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안내 및 선거참여 관련 제도

- 독일의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선거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가 필요한 제도는 없음.

3. 미 국



미국 연구관 : 박천호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1) 명부 작성 주체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

- 미국의 연방 및 주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의 책임은 각 주에 있음. 『군인 및 재외국민부재자투표법(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의 제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관 가운데 군인 및 재외국민의 연방선거 부재자 투표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¹²¹⁾ 대통령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을 책임자로 지명하는 대통령령을 발효한 바 있음.¹²²⁾ 또한, 국방부 내의 연방선거지원국(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 FVAP)은 재외국민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인력 및 예산 관리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재외선거인들의 부재자투표 참여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제안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의 선거등록 및 명부 작성, 투표용지 발송 및 접수 등에 대한 실질적 업무는 각 주에서 담당하고 있음.
- 미국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재외거주자의 경우에도 각 주 별로 허용하는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예외는 아님. 재외 유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거주하였던 주에서 해당 유권자의 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등록정보는 해당 주의

121) 52 USC Ch. 203 § 20301

122) Executive Order 12642 -- Designation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s the Presidential designee under title I of 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유권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음. 재외 유권자를 포함한 유권자 명부 작성과 관련된 실무를 관리하는 책임은 각 주에 있음.

- 연방법은 각 주로 하여금 재외유권자 등록을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주 선거 최고 책임자(the chief state election official)를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11 CFR 9428.2 (b) [Title 11 -- 연방선거; Chapter II -- 선거지원위원회; Part 9428 -- 전국유권자등록법 (42 U.S.C. 1973gg-1 Et Seq.); Subpart A -- 일반조항]

주 선거 최고책임자(chief state election official)는 “42 U.S.C.의 1973gg-8에 의해 규정된 주의 선거 관리의 의무에 책임이 있는 주의 임명된 공직자 혹은 고용인”을 의미한다.

TITLE 42 - 공공 보건 및 복지

CHAPTER 20 - 선거권

SUBCHAPTER I-H - 전국 유권자등록

Sec. 1973gg-8 주 선거 최고책임자의 지명(Designation of chief State election official)

각 주는 주의 공직자 혹은 고용인을 이 조항의 주 선거관리 의무를 전담하는 주 선거 최고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주 선거 최고책임자는 각 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켄터키 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 주의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선거 최고책임자를 겸하고 있지만,¹²³⁾ 주 선거위원회의 간부가 맡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일리노이 주의 경우 선거위원회의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이 주 선거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오클라호마 주

123) <http://earc.berkeley.edu/faq.php>; <http://sos.ky.gov/elections/Pages/default.aspx>;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000-0099/0097/Sections/0097.012.html (검색일: 2015. 7. 12)

에서는 주 선거위원회의 서기(the secretary of the state election board)가 주 선거 최고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음.¹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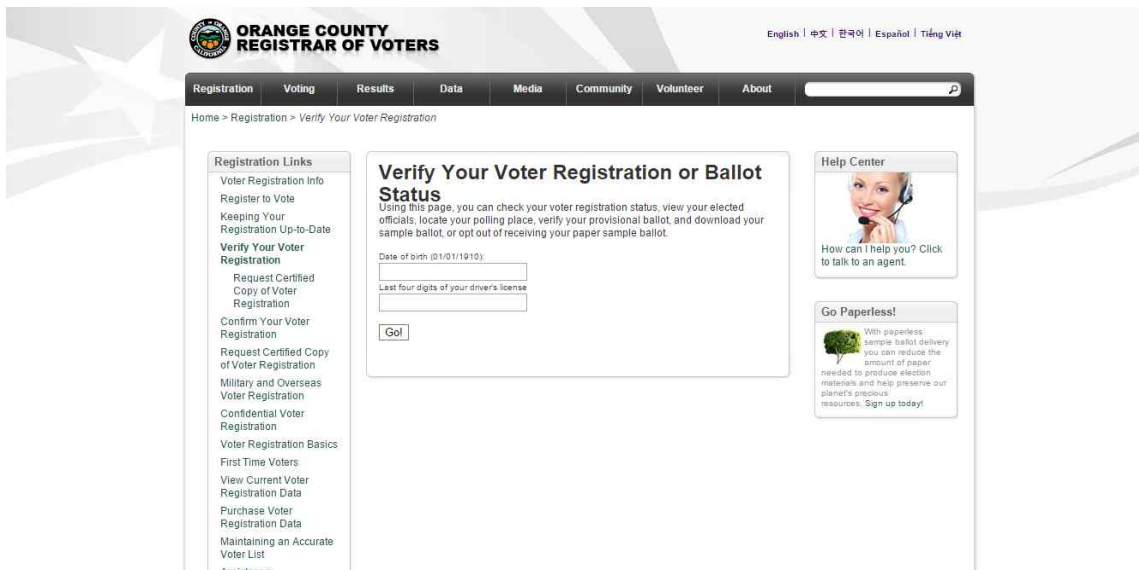
- 유권자 등록 명부 작성을 포함한 연방 및 주 선거의 전반적인 운영의 책임은 각 주의 선거 최고책임자에 있음. 미국 유권자 지원법(HAVA)은 주 선거 최고책임자의 관장 아래 각 주로 하여금 전산화된 유권자 등록 명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주는 유권자 등록 명부에 유권자의 성명 및 등록 정보와 함께 각 유권자에게 고유한 식별자(identifier)를 부여하여야 함.¹²⁵⁾
- 유권자 등록 명부 작성의 최종적인 책임은 주 선거 최고책임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카운티 혹은 타운십(township) 등 주별 지역 단위의 선거담당기관에서 선거 관련 실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선거관련 종사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접수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에 등록인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스템은 재외 유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외 유권자들은 연방선거지원국 혹은 재외유권자투표재단(Overseas Vote Foundation, OVF)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방우편투표신청서(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FPCA)를 작성한 후, 해외 이주 전의 국내 거주지의 담당 선거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유권자 등록신청서는 최소한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함.
-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 특별구,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38개 주는 재외 유권자를 비롯한 각 주의

124) North Carolina General Statute § 163-82.2; <http://earc.berkeley.edu/faq.php> (검색일: 2015. 7. 12)

125) 42 U.S. Code § 15483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¹²⁶⁾

- 58개의 카운티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각 카운티 별로 선거운영과 관련된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¹²⁷⁾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각 카운티의 선거 관련 담당자들은 유권자 등록 관련 기록 및 명부 관리 및 유권자 등록 관련 보고, 유권자 등록 삭제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선거등록인 명부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⁸⁾



〈사진 1〉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유권자 등록 확인 웹페이지¹²⁹⁾

2) 영구명부제 도입 여부

- 재외국민들의 유권자등록 이후 이의 유효기간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영구/수시명부제로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주는 재외국민들로 하

126) <http://www.fvap.gov/links> (검색일: 2015. 7. 15)

127) CA Election Code § 320.

128) CA Election Code § 2180-2185, 2187, 2201.

129) <https://www.ocvote.com/registration/verify-your-voter-registration/> (검색일: 2015. 7. 15)

여금 일정 기간 후에 혹은 거주지 주소 변동이 있을 때 다시 유권자 등록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명부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의 경우 최초 등록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도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명부제로 분류할 수 있음.

주	유권자 등록 유효 기간
앨라배마	등록 해당연도
알래스카	등록 해당연도
애리조나	등록 이후 실시되는 정기선거
아칸소	2년의 정기선거주기
캘리포니아	등록 이후 실시되는 4회의 정기선거
콜로라도	등록 이후 실시되는는 정기선거
코네티컷	등록 해당연도
델라웨어	정기선거가 실시되는 해마다 등록
컬럼비아 특별구	등록 해당연도
플로리다	등록 시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선거 이후 두 번째 정기선거가 실시되는 해까지 유효함.
조지아	등록 이후 실시되는 정기선거
하와이	등록 해당연도
아이다호	등록 해당연도
일리노이	등록 해당연도
인디애나	등록 해당연도
아이오와	등록 해당연도의 모든 연방선거
캔자스	등록 해당연도
켄터키	등록 해당연도의 선거
루이지애나	등록 이후 실시되는 2회의 정기선거
메인	등록 이후 18개월
메릴랜드	등록 해당연도
매사추세츠	등록 해당연도
미시간	등록 해당연도
미네소타	등록 해당연도
미시시피	등록 해당연도

주	유권자 등록 유효 기간
미주리	FPCA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경우, 이를 제출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대한 전자 투표용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한번의 연방선거 주기 동안의 부재자 투표 신청으로 간주됨.
몬태나	등록 해당연도 및 이듬해에 실시되는 모든 선거
네브래스카	등록 해당연도
네바다	등록 해당연도
뉴햄프셔	등록 해당연도
뉴저지	등록 이후 실시되는 정기선거
뉴멕시코	등록 이후 실시되는 정기선거
뉴욕	등록 이후 실시되는 2회의 정기선거
노스캐롤라이나	등록 해당연도
노스다코타	등록 해당연도
오하이오	등록 해당연도
오클라호마	등록 이후 실시되는 2회의 정기선거
오리건	등록 이후 유권자가 별도의 통지를 보내거나 카운티의 선거 담당자가 해당 유권자의 등록이 무효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않은 이상 등록이 유지됨.
펜실베이니아	등록 해당연도
로드아일랜드	등록 후 2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록 해당연도
사우스다코타	등록 해당연도
테네시	등록 해당연도
텍사스	등록 해당연도
유타	등록 이후 실시되는 정기선거까지
버몬트	등록 해당연도
버지니아	등록 해당연도
워싱턴	등록 이후 해당 유권자가 워싱턴 주의 유효한 등록 유권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까지 모든 선거
웨스트버지니아	등록 해당연도
위스콘신	등록 해당연도
와이오밍	1회의 정기선거주기

〈표 1〉 각 주별 유권자 등록 유효 기간¹³⁰⁾

130) <http://www.fvap.gov/vao/vag/chapter2> (검색일: 2015. 7. 23)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1) 거주불명자 등록제도 도입 여부

-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 내에 거주불명자 등록제도와 일치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주확인 우편에 응답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비활동유권자(inactive voters)” 로 규정하여 별도의 명부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다음은 미연방법에 규정된 비활동유권자의 정의임.

11 CFR 9428.2 (d) [Title 11 -- 연방선거; Chapter II -- 선거지원위원회; Part 9428 -- 전국유권자등록법 (42 U.S.C. 1973gg-1 Et Seq.); Subpart A -- 일반조항]
 비활동유권자(chief state election official)의 개념은 “42 U.S.C. 1973gg-6(d)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송된 거주확인 우편에 응답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등록유권자 “를 의미한다.

2) 비활동유권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

- 비활동유권자로 분류된 유권자들은 이후에도 선거권을 유지하지만, 주에 따라 비활동유권자들을 등록된 명부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음.

주	비활동유권자 정의(법령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앨라배마	유권자 명부 점검 기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지난 수년간 투표한 기록이 없는 유권자
알래스카	등록유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유권자
애리조나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아칸소	해당 법령 없음
캘리포니아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거나 해당 카운티 밖으로 이주한 유권자
콜로라도	거주확인우편이 “전달할 수 없음” 으로 분류되어 선거담당자에게 반송된 유권자

주	비활동유권자 정의(법령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코네티컷	지역 선거담당자에 의해 실시되는 연례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델라웨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
컬럼비아 특별구	선거권이 없는 유권자
플로리다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거나 “전달할 수 없음” 으로 분류된 유권자
조지아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하와이	지난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아이다호	활성유권자들의 명부만 관리하고 있음
일리노이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인디애나	해당 법령 없음(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나 “전달할 수 없음” 으로 분류된 유권자)
아이오와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나 “전달할 수 없음” 으로 분류된 유권자
캔자스	해당 법령 없음(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켄터키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지난 2회의 연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루이지애나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메인	해당 법령 없음
메릴랜드	해당 법령 없음(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매사추세츠	연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조사 혹은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미시간	지난 6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미네소타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활성유권자명부에서 본인을 삭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유권자
미시시피	해당 법령 없음
미주리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몬태나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네브래스카	해당 법령 없음
네바다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뉴햄프셔	해당 법령 없음
뉴저지	해당 법령 없음(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뉴멕시코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뉴욕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노스캐롤라이나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노스다코타	지난 2회의 선거(4년) 동안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주	비활동유권자 정의(법령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오하이오	해당 법령 없음
오클라호마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오리건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펜실베이니아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로드아일랜드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사우스캐롤라이나	등록인 명부에 없는 유권자
사우스다코타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테네시	등록인 명부에 없는 유권자
텍사스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유권자
유타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버몬트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주에서 확인우편을 발송한 유권자
버지니아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워싱턴	거주확인우편이 “전달할 수 없음” 으로 반송된 유권자
웨스트버지니아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위스콘신	해당 법령 없음(투표인 명부에 없는 유권자)
와이오밍	사망하거나 중죄를 범한 등록유권자 혹은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

〈표 2〉 각 주에서 규정하는 비활동유권자의 정의¹³¹⁾

3) 비활동유권자 현황관리 실태 및 관리주체

○ 각 주에서 등록유권자들을 비활동유권자로 분류하는 시점은 다양함.¹³²⁾

- 18개 주에서는 4년에 걸쳐 2회의 연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비활동유권자로 분류함. 컬럼비아 특별구는 예외적으로 매회 선거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비활동유권자로 분류함.
- 33개 주에서는 거주확인우편이 “전달할 수 없음” 으로 반송된 경우, 해당 주소거주 유권자를 비활동유권자로 분류함.

131)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2015. "2014 Statutory Overview Report," pp.12-14. (검색일: 2015. 7. 27)

132)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2015. "2014 Statutory Overview Report," pp.15-16. (검색일: 2015. 7. 27)

- 24개 주에서는 유권자가 거주확인우편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이들을 비활동유권자로 분류함.
- 아이다호 주와 뉴햄프셔 주에서는 활성/비활동 유권자의 구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3. 비활동유권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및 투표참여

○ 미국 연방 및 주 법률은 비활동유권자들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비활동유권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사진 2〉 루이지애나 비활동유권자 확인용 홈페이지 133)

○ 대부분의 주에서 비활동유권자들은 이 범주로 분류된 시점에서는 여전히 등

133) <http://www.sos.la.gov/electionsandvoting/pages/inactivevoters.aspx> (검색일: 2015. 7. 29)

록유권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은 비활동유권자들은 현재 거주 주소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투표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주의 법률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많은 주에서는 2회 이상의 연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비활동유권자들을 선거 등록인 명부에서 제외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법 2224조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이 비활동유권자로 분류되는 과정 및 등록 취소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 주 정부는 연방 및 주의 정기선거에서 2회 연속으로 투표하지 않거나 성명, 소속 정당 등의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등록유권자들에게 거주지변경확인 우편(Alternate Residency Confirmation Card, ARC)를 발송함.
 - 해당 유권자가 활성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RC를 수신한 후 15일 이내에 답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답신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비활동유권자로 분류됨.
 - ARC에 답신하지 않거나 이를 수신한 이후 2회의 정기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등록은 취소되며, 이들은 이후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다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캘리포니아 선거법 17000조는 각 카운티로 하여금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한 유권자의 등록 정보를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른 유권자 정보 관리 실태는 각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카운티는 해당 유권자들의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반면, 이들의 정보를 활성 혹은 비활동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한 후 별도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카운티도 있는 것으로 보임.

5. 호 주



호주 연구관 : 김리라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1)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주체

- 선거인이 (a) 특정선거구에 등록되어 있으며, (b) 호주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c) 호주를 떠난지 6년 이내에 거주목적으로 다시 호주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적법한 재외선거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94조1)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서류에 유효한 서명을 한 후 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선거위원회에서 적법성을 판단하여 명부를 작성함.
 - 이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특정선거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이미 선거인 자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재외선거 신청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해당 결정을 고지함.
- (a) 호주에 거주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b)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c) 이전에는 재외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다시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d) 호주를 떠난지 6년 이내에 거주목적으로 다시 호주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선거위원회에 적법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94조A1)

2) 재외선거인명부 작성방법

- 재외선거인으로 신청하는 자는 선거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신청자가 재외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석으로 남김. 주석이 작성되는 때부터 취소될 때까지 신청인은 적법한 재외선거인으로 간주됨.(연방선거법 94조2)
- 연방선거법 94조에 따라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호주 밖에서 재외선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함. (연방선거법 94조5)
 - (a) 재외신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주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경우, (b) 호주를 떠난지 6년 이내에 호주에서 다시 거주하게 된 경우, (c) 호주를 떠난지 6년 이내에 다시 호주로 돌아오는 의사를 포기한 경우, (d) 선거인 등록의 자격이 없어진 경우
- 재외선거 신청자는 선거인명부 신청을 받는 마지막날 오후 8시 이후에 각 선거구 선거위원회로부터 신청서를 받게 되며 신청서는 하부 선거구에서 관리됨(연방선거법 94조A4).

3) 영구명부제 도입여부

- 연방선거법 94조에 의해 적법하게 재외선거인 신청을 한 선거인은 6년 해외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6년까지는 선거인 명부 신청을 매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재외선거 선거인명부는 6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영구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명부 갱신 방법

- 재외선거인이 호주를 떠난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호주로 다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인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기한이 종료되기 3달 전에 선거위원회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연방선거법 94조8)
 - 이 때 기한 신청은 1년을 더하게 되며 선거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적법한 재외선거인으로서 유효한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주석으로 기입함.

5) 영구명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방식

- 재외선거는 의무가 아니지만 호주 시민이 고지하지 않고 해외에 있어서 투표하지 않는 경우, 6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선거인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호주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함. 또한 해외에서 거주하고 3년이 지나면 해외에서 선거인등록을 갱신할 수 없으며 다시 선거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최소 한 달간 호주에서 거주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갱신이 어려움.
 - 국외거주자 변호단체인 Southern Cross Group(SCG)¹³⁴)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선거법에서 정한 해외 체류가능기간을 넘겨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선거권을 박탈당하기도 하며 이는 재외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함.

134) 'Australians overseas face being locked out of elections.' 신문기사 참고.
<http://www.smh.com.au/federal-politics/federal-election-2013/australians-overseas-face-being-locked-out-of-elections-20130811-2rpeve.htm> 2015년 7월 검색.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등

1) 거주불명자 등록제도 도입 여부

- (a) 호수에 있으면서, (b) 어떠한 선거구에도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을 하는 이유로 한 선거구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연방선거법 96조에 의해 선거위원회에 거주불명등록자(Itinerant Elector)로 선거인명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등록신청은 반드시 서식에 맞는 서류에 작성하며 여기에는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함.(연방선거법 96조2)
- 거주불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a)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선거 자격이 있었던 선거구를 찾아서 그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신청자의 이름을 적어야 함. 만약 (b) 신청자가 선거 자격이 되는 선거구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더하게 됨.(연방선거법 96조2A)
 - (a)와 (b)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c) 신청자가 태어난 곳을 선거구로 지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고, (a),(b),(c) 경우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자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지정함.
 - 선거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거주불명등록자임을 선거인명부 주석으로 기입하고(연방선거법 96조2B), 해당 주석의 법적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에 관련된 선거인은 거주불명등록자로서의 자격을 가짐.(연방선거법 96조2C)
- 연방선거법 96조1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라도 (a) 한 선거구에 1달 혹은 그 이상 거주하게 될 때, (aa) 더 이상 노숙을 하지 않을 때, (b) 호주를 떠나는 계획이 있거나 1달 혹은 그 이상 호주를 떠나게 될 때에는 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해당 상황을 신고해야 함.(연방선거법 96조7)

- 하지만 거주지주소가 없는 사람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고 투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인등록과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의무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받게 되지는 않음.¹³⁵⁾

2)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

- 연방선거법 93조 2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등록한 사람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불명자가 등록을 한 경우에 18세 미만, 심신미약, 3년 이상의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연방선거법 93조 2)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18세 이상의 호주시민 혹은 호주수도하원의원법(Australian Capital Representation Act 1973)과 북부준주하원의원법(Northern Territory Representation Act 1922)에 따라 1984년 1월 25일 이전에 기재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린 선거인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연방선거법 93조 1,2)

3) 거주불명등록자 현황관리 실태 및 관리주체

- 거주불명등록자의 수는 매우 적는데 2008년에 빅토리아주에서는 927명이 등록을 하였고 이는 빅토리아주 전체 선거인명부등록자 수의 0.027%에 해당함.¹³⁶⁾
- 호주 정부는 「주거지원법1994(Supported Accommodation Assistance

135)호주선거위원회(AEC) 홈페이지에서 거주불명등록자의 신청안내중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참고.

http://www.aec.gov.au/enrolling_to_vote/special_category/enrolment_with_no_fixed_address.htm 2015년 7월 검색.

136) 호주 국회 보고서, 호주원주민과 거주불명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homeless electors) 챕터6.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esentatives_Committees?url=em/elect07/report2/chapter_6.pdf. 19p

Act 1994)」에 따라 노숙하는 사람들 및 주거환경이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의 자활을 돕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거지원프로그램(Supported Accomodation Assistance Program, SAAP)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하지만 이들은 거주 주소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등록을 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등록을 하였다고 해도 이들이 선거일에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음. 137)

- 하노버 복지 서비스(Hanover Welfare Services)의 2007년 선거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89%가 선거권이 있고, 그중 57%가 실제로 투표를 하였으며, 선거권을 행사한 여성의 비율(65%)이 남성의 비율(45%)보다 높다고 함.138)
- 투표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선거인명부 등록이 안 되어 있음을 꼽고 있고(60%), 그 외에도 투표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절차가 필요함(32%), 선거에 관심이 없음(19%)의 이유도 지적되고 있음.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 호주선거위원회에서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주체¹³⁹⁾와 주 혹은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선거정보를 제공함. 2007년에는 호주선거위원회는 주거지원프로그램(Supported Accomodation Assistance Program, SAAP) 기관을 통해 거주불명등록자들에게 선거정보가 든 메일을

137) 호주 국회 보고서, 호주원주민과 거주불명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homeless electors) 챗터6.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esentatives_Committees?url=em/elect07/report2/chapter_6.pdf, 16p.

138) 호주 국회 보고서, 호주원주민과 거주불명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homeless electors) 챗터6.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esentatives_Committees?url=em/elect07/report2/chapter_6.pdf, 17p

139) 2007년에는 Homeless Australia, PILCH, the Saint Vincent de Paul Society, Big Issue, Centacare, Uniting Care Australia, Havover Welfare Services가 참여하였음.

전송하였음.

- 빅토리아주 선거위원회에서는 각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단체들과 협업하여 거주불명등록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돕고 있는데 다양한 복지서비스 단체들에 선거정보를 비치하여 거주불명등록자들이 선거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¹⁴⁰⁾
 - 거주불명자의 선거인명부 등록 안내용 포스터를 배포. 여기에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 안에 거주불명등록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후보에 대한 선거정보 책자도 비치됨.
 - 2007년 멜버른에서는 (Home is Where the Heart is) 페스티벌을 열어서 선거절차와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인명부 등록을 돕는 서비스를 하였음.

4. 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참여 방안

- 연방선거법에 의하면 이동투표는 병원과 교도소를 제외하고 호주의 외딴 지역에서만 허용이 되며 도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하지만 거주불명자 및 호주 원주민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투표를 손꼽고 있으며 실제 빅토리아 주선거위원회에서는 2006년 동안에 멜버른에 이동투표소를 설치하여 68명의 선거인이 참여하였으며¹⁴¹⁾ 2010년에는 퍼스 선거위원회에서 3개의 홈리스쉼터와 연계하여 이동투표를 실시하였음.
- 호주선거위원회(AEC) 홈페이지에서 거주불명등록자 신청하는 서류를 쉽게

140) 호주 국회 보고서, 호주원주민과 거주불명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homeless electors) 챕터6.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esentatives_Committees?url=em/elect07/report2/chapter_6.pdf, 24p.

141) 호주 국회 보고서, 호주원주민과 거주불명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homeless electors) 챕터6.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esentatives_Committees?url=em/elect07/report2/chapter_6.pdf, 26p.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 서류에는 투표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놓았음.

- 거주불명등록자가 원하는 선거구의 주/준주에 신청을 한 경우 선거인등록을 한 선거구의 투표소에서 일반투표를 하거나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음. 또한 만약 선거기간에 등록 신청을 한 주/준주에 있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을 때 사전선거를 하거나 우편투표 신청을 하여 우편투표를 대신 할 수 있음.

○ 공공선주거환경(Public Interest Law Clearing House, PILCH)의 연구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자들의 54% 이상이 연방선거에 선거인명부 등록을 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름과 주소가 선거인명부에 올랐을 때 예상되는 안전 문제 때문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들의 32%는 가정폭력과 불화와 관련되어 있고, 25%는 체포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가려주거나 투표장소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¹⁴²⁾

5. 신청등록제(선거인명부 작성방법)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거주 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안내 방안

○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홈페이지에서 의무등록제인 선거인명부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로 ‘거주불명자의 선거인명부 등록(Enrolment for people with no fixed address)’¹⁴³⁾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응답의 방식으로 안내하면서, 신청 조

142) 호주 국회 보고서, 호주원주민과 거주불명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homeless electors) 챕터6.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esentatives_Committees?url=em/elect07/report2/chapter 6.pdf](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esentatives_Committees?url=em/elect07/report2/chapter%206.pdf), 18p.

143) 호주선거위원회(AEC)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에서 특별한 선거인등록 경우 중 거주불명등록자를 위한 설명.

건이나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18세 이상인 호주시민이면서 정해진 거주지가 없거나 노숙을 하면서 지내더라도 호주에서 여행 중이거나 농장일 혹은 광산, 원양어업 종사자와 같이 일정한 시간을 옮겨 다니는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자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는 없음.
 - 위와 같이 호주를 여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기간에 거주지에 있지 않음을 지방선거위원회에 고지함으로써 선거인명부에 적법한 선거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해당 기간에 해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에 참여하여 의무투표제 하에서 의무를 다할 수 있음.
- 주/준주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신청서류는 각기 다르며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등록하고 싶은 주/준주의 거주불명등록자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거주불명등록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 마지막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했던 거주지 주소나, (b)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주소나, (c) 신청자의 출생지에 해당하는 선거구나, (d) 호주 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장 관련이 있는 선거구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http://www.aec.gov.au/enrolling_to_vote/special_category/enrolment_with_no_fixed_address.htm 2015년 7월 검색.



Enrolment for persons with no fixed address in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12

Office use only –
Date received

Instructions

CATS **1** Notation ACK **N** NIN

Approved Not approved Signature _____ Title _____ Date: / /

1 Your current name Mr Mrs Miss Ms Other

Use a where appropriate.
Use black or blue pen and
BLOCK LETTERS

Family name

Given name(s)

If notifying a change of name

Previous family name

Previous given name(s)

2 Date of birth (dd/mm/yyyy) • • Gender

3 I am using this form to enrol because:

I have no fixed address
or
 I am homeless

4 I am applying to enrol for the address where:
Please select the **FIRST** statement that applies to you and show the relevant address at Question 6

A I was last eligible to be enrolled

B one of my next of kin is currently enrolled as I have not previously been eligible to be enrolled
Full name of next of kin

C I was born, as neither A nor B applies

D I have the closest connection, as none of the above statements apply
Note: (D) can only apply to persons born outside Australia

5 If you selected option B, C or D, please provide

〈사진 1〉 호주수도지역에 제출하는 거주불명등록자 신청서¹⁴⁴⁾

- 만약 호주 안에서의 일정한 거주지가 생기고 그곳에서의 거주기간이 1달 이상이 되면 해당 선거인은 거주불명등록자가 아닌 일반선거인등록을 다시 해야 함.

144) 호주선거위원회(AEC)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거주불명등록자 신청 서류 중에 호주수도지역의 경우 예시.

http://www.aec.gov.au/Enrolling_to_vote/pdf/forms/no-fixed-address/er016nfaw-act-0413.pdf 2015년 7월 검색.

6. 그 밖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안내 및 선거참여 관련 제도

- 호주선거위원회가 후원하고 멜버른에 위치한 몇 개의 복지재단이 모여서 거주불명등록자의 선거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해 ‘선거날(voting day)’ 이벤트를 개최하였음. 이는 해당 선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정보를 알려 주고 그 이후에는 사전선거를 할 수 있는 장소까지 교통을 제공함.
- 50여명의 거주불명등록자가 참석하였고 이에 호주선거위원회에서는 이 행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이동개표소 설치 할 수 있는지를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¹⁴⁵⁾

145) 호주 국회 보고서, 호주원주민과 거주불명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homeless electors) 챕터6.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esentatives_Committees?url=em/elect07/report2/chapter_6.pdf, 22p.

5. 일본



일본 연구관 : 송재현

1. 재외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1) 명부작성 주체 및 구체적인 작성 방법

- 재외선거 선거인 명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권자 본인이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 후, 일본 국내의 주소지의 시군구(市町村)청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함.
- 국외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명부는 일반 선거인 명부와 동일하게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함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30조의 2¹⁴⁶⁾).
 - 재외 선거인 명부는 등록 신청을 한 유권자에 한해서 기재됨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30 조의 2 의 3¹⁴⁷⁾).
 - 등록 신청이 가능한 유권자는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30 조의 4¹⁴⁸⁾).

1. 만 20세 이상(2016년도부터 만 18세 이상¹⁴⁹⁾)

146) 공직선거법 제 30조 2: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이외에, 재외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보관을 행한다.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選挙人名簿のほか」在外選挙人名簿の調製及び保管を行う。)

147) 공직선거법 제 30조 2의 3: 시군구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 30조 5의 1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거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을 행한다.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第三十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に基づき」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を行うものとする)

148) 공직선거법 제 30조의 4: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은,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연령 만 20세 이상의 일본국민으로,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은, 해당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의 관할구역내에 연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는 자에 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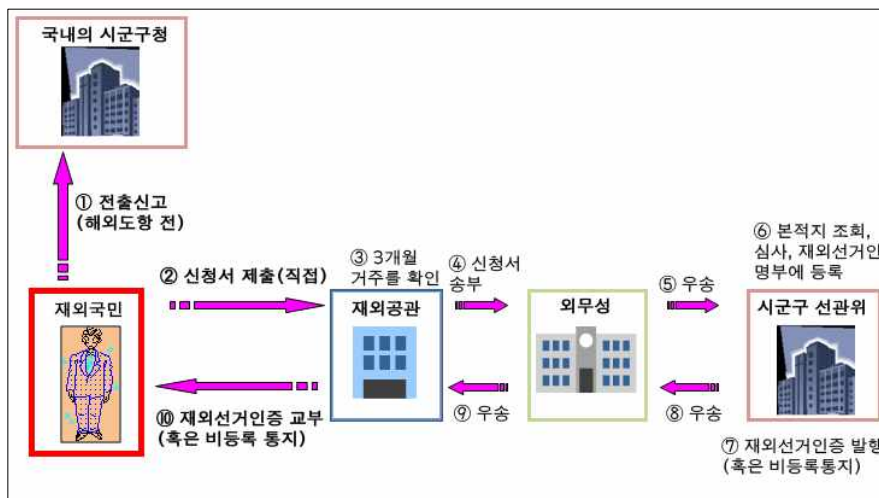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は「在外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ない年齢満二十年以上の日本国民で」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の申請に関しその者の住所を管轄する領事官の管轄区域内に引き続き三箇月以上住所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行う。)

149) 2015년 6월 17일 참의원 가결 사항.

2. 재외 선거인 명부 등록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재외 선거인 등록절차 (그림 1참조)

1. 해외 도항전 각 자지체의 시군구청(市区町村役場)에 진출신고
2.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 직접 출두하여 제출
3. 재외공관에서 신청자가 3개월 이상 거주하였는지를 확인
4. 외무성에 신청서를 송부한 후, 이를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5.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본적지 조회 및 심사 후,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
6. 등록 후, 재외 선거인증을 발행. 신청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비등록 통지 발행
7. 재외선거인증 혹은 비등록통지를 외무성에 송부한 후, 이를 각 재외공관에 송부
8. 신청자에게 재외선거인증 혹은 비등록통지를 교부



〈그림 1〉 재외선거인 등록절차

－ 재외선거인 명부 기재내용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30 조의 3¹⁵⁰⁾)

참고: 아사히 신문, 2015년 6월 17일, "18세 선거권 성립,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 접속일자: 2015년 7월 28일, URL: <http://www.asahi.com/articles/ASH6J41T7H6JUTFK001.html>

150) 공직선거법 제 30조의 3: (제 1항) 재외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최종주소 혹은 신청시의 본적, 성별 및 생년월일등을 기재하여야한다. (제 2항)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의 구역을 나누어서 투표구를 설치한 경우에,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편제하는 한 곳이상의 투표구를 지정하여야한다. (제 3항) 앞의 2항이 규정하는 것 이외에, 재외선거인 명부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在外選挙人名簿には 選挙人の氏名 最終住所又は申請の時における本籍 性別及び生年月日等の記載をしなければならぬ)

1. 선거인의 성명
2. 선거인의 최종 주소 (전출 신고 직전의 주민표에 기재된 주소)
3. 신청시의 본적
4. 성별 및 생년월일
5.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투표구로 구성되어있을 경우, 명부를 작성할 1개 이상의 투표구를 지정해야함

- 명부는 인쇄매체로 작성하나, 정령(政令)에 의거하여 자기 디스크로 제작이 가능함.

○ 신청시기, 작성기간, 명부열람 등

- 신청시기: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으나 구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먼저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항 전에 신청하여야함.
- 작성기간: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허가가 난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작성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30조의 6¹⁵¹⁾).
- 명부의 열람: 일반 선거인 명부와 동일하게 선거인 명부 초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선거인, 정치단체, 후보자, 연구자 등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명부 열람을 허가하여야 함(「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30조의 12」¹⁵²⁾).
- 이의 신청 및 소송: 일반 선거인 명부와 동일함(「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30조의 8¹⁵³⁾ 및 9¹⁵⁴⁾). 선거인 명부 등록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

이° 2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 市町村の区域を分けて数投票区を設けた場合には 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在外選挙人名簿を編製する一以上の投票区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 在外選挙人名簿の様式その他必要な事項は 政令で定める°)

151) 공직선거법 제 30조의 6: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유권자가 해당 시군구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을 가지는 자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여야 함.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請をした者が当該市町村の在外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る資格を有する者である場合には 遅滞なく 当該申請をした者を在外選挙人名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152) 공직선거법 제 30조의 12: 제 28조의 2부터 제 28조 4까지의 규정은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해서 준용함.

(第二十八条の二から第二十八条の四までの規定は 在外選挙人名簿について準用する°)

153) 공직선거법 제 30조의 8: 제 24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 준용함. (第二十四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に関する異議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154) 공직선거법 제 30조의 9: 제 25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은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우에는 종람기간내에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이로 인한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이 가능함.

2) 영구명부제 도입여부

- 재외선거의 경우 일반 선거와 동일하게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있음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30 조의 2 의 2¹⁵⁵⁾).

 - 다만 이하의 조건에 한하여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가 됨
 1. 사망 혹은 일본국적의 상실
 2. 국내의 거주지 이동. 다만, 즉시 명부에서 말소되는 것이 아닌, 4개월 후에 말소
 3. 등록 시, 부당하게 등록한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명부에서 말소가 되지 아니하며, 선거권이 박탈되었음을 표기함. 선거권이 회복 될 경우, 표시를 제거.

3) 명부 갱신 방법

- 일반 선거인명부가 매년 4회 갱신을 하는데 반하여¹⁵⁶⁾, 재외선거인명부의 경우, 재외선거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 갱신되지 아니함.

 - 즉, 한 번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는 해당 유권자의 신청이 없는 이상, 영구히 보존 됨.

준용함.(第二十五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は 在外選挙人名簿の登録に関する訴訟について準用する°)

155) 공직선거법 제 30조 2의 2: 재외선거인 명부는 영구히 보존하는 것으로 하며, 또한 중의원 및 참의원의원 선거에 있어서 유일한 명부로 함.

(在外選挙人名簿は 永久に据え置くものとし かつ 衆議院議員及び参議院議員の選挙を通じて一の名簿とする°)

156) 공직선거법 제 19조의 2: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보관의 임무를 가지며,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및 선거를 행할 선거인 명부를 등록한다.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 選挙人名簿の調製及び保管の任に当たるものとし 毎年三月 六月 九月及び十二月並びに選挙を行う場合に 選挙人名簿の登録を行うものとする°)

4) 영구명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방식

- 재외 선거인에 관한 영구명부제에 의한 문제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음.
 - 재외선거에 한정하지 않았을 경우, 주소지 이전후의 선거인명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문제가 있었음¹⁵⁷⁾.
 - 다만 이는 영구명부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매년 4회씩 갱신하는 현행 제도에 의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던 해당 유권자는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표 관리인에게 이를 전하여 투표용지를 배부 받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구 주소지에서의 투표권임. 즉 해당 유권자는 투표권이 있으나 신 주소지가 아닌 구 주소지의 투표권으로, 전출 후 최장 3개월간은 구 주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임.

2.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정의 등

1) 거주불명자 등록제도 도입 여부

- 거주불명등록자는 일본의 경우 주소부정(住所不定)이라 불림.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적인 문제로 취급됨.
- 거주불명자 등록제도는 달리 존재하지 않으며, 거주지가 확실치 않은 주민은 신문 및 방송보도 등에서, 일반적으로 「주소부정(住所不定)」이라 불리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같이 취급 함¹⁵⁸⁾.
- 즉, 거주불명자는 있으나 행정적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거주불명 「등록자」는

157) 요미우리 신문. 2010년 7월 11일. "명부미등록 여성에게 용지배부... 사전투표." 접속일자:2015년 7월 15일.
URL: <http://www.yomiuri.co.jp/election/sangiin/2010/news/20100711-OYT1T00552.htm>

158) 처음에는 마스크에서 사건의 용의자 및 범인의 주민표가 없을 경우 「주소부정」이라 표현하였으나 점차 일반적으로 정착된 용어임.

일본에 없음. 단, 이하에서는 편의상 거주불명등록자로 표기함.

2)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되나 실질적으로는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본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각 가정에 투표소 입장권(그림2참조)이 엽서형식으로 발송되나,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장권을 배부할 수 없음.

投票所入場券の例

(例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名簿番号</td> <td style="width: 50%;">市 町</td> </tr> <tr> <td>受取人住所</td> <td>町 区</td> </tr> <tr> <td></td> <td>村 字</td> </tr> <tr> <td></td> <td>番 地</td> </tr> <tr> <td>受取人氏名</td> <td></td> </tr> </table>	名簿番号	市 町	受取人住所	町 区		村 字		番 地	受取人氏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名簿番号</td> <td style="width: 50%;">市 町</td> </tr> <tr> <td></td> <td>番 地</td> </tr> <tr> <td></td> <td>町 区</td> </tr> <tr> <td></td> <td>村 字</td> </tr> <tr> <td></td> <td>番 地</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何 選 挙 投 票 入 場 券</td> </tr> <tr> <td colspan="2">投票の日時 年 月 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td> </tr> <tr> <td colspan="2">投票の場所</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選挙管理委員会 印</td> </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1 投票には、この入場券を必ず本人が所持して下さい。 2 氏名を詐称し、その他詐術の方法をもって投票し、又は投票しようとした者は罰せられますから十分に注意下さい。 3 本券を紛失したときは、投票所でその旨を届け付け係に申し出て下さい。 </p>	名簿番号	市 町		番 地		町 区		村 字		番 地	何 選 挙 投 票 入 場 券		投票の日時 年 月 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の場所		選挙管理委員会 印	
名簿番号	市 町																												
受取人住所	町 区																												
	村 字																												
	番 地																												
受取人氏名																													
名簿番号	市 町																												
	番 地																												
	町 区																												
	村 字																												
	番 地																												
何 選 挙 投 票 入 場 券																													
投票の日時 年 月 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の場所																													
選挙管理委員会 印																													

(例 2)

<p style="text-align: center;">郵便はがき</p> <p style="text-align: center;">○△郵便局</p> <p style="text-align: center;">料金後納郵便</p> <p style="text-align: center;">選挙事務 方 様</p> <p style="font-size: x-small;"> 1. この入場券は、世帯の選挙人を連記してありますから大切に保管し、投票当日切取線から切りはなし必ず本人が持参して受付に提示してください。入場券をなくしたり、忘れたときには投票所で申し出て下さい。 2. 投票当日、出張・入院予定・その他止むを得ない理由で投票ができない人は、不在者投票の制度がありますので選挙管理委員会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3. その他、不明の点等がありましたら下記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p> <p style="font-size: x-small;">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選挙管理委員会 電話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内線〇〇〇番 </p>	<p style="text-align: center;">選挙投票所入場整理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氏名</td> <td style="width: 10%;">姓</td> <td style="width: 10%;">名</td> <td style="width: 10%;">投票日</td> <td style="width: 10%;">月</td> <td style="width: 10%;">日</td> <td style="width: 10%;">名簿別録印</td> </tr> <tr> <td>名簿</td> <td></td> <td>投票日</td> <td>午前</td> <td>時から</td> <td>午後</td> <td>時まで</td> </tr> <tr> <td>投票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キリトリ)</td> </tr> <tr> <td>氏名</td> <td>姓</td> <td>名</td> <td>投票日</td> <td>月</td> <td>日</td> <td>名簿別録印</td> </tr> <tr> <td>名簿</td> <td></td> <td>投票日</td> <td>午前</td> <td>時から</td> <td>午後</td> <td>時まで</td> </tr> <tr> <td>投票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キリトリ)</td> </tr> <tr> <td>氏名</td> <td>姓</td> <td>名</td> <td>投票日</td> <td>月</td> <td>日</td> <td>名簿別録印</td> </tr> <tr> <td>名簿</td> <td></td> <td>投票日</td> <td>午前</td> <td>時から</td> <td>午後</td> <td>時まで</td> </tr> <tr> <td>投票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キリトリ)</td> </tr> <tr> <td>氏名</td> <td>姓</td> <td>名</td> <td>投票日</td> <td>月</td> <td>日</td> <td>名簿別録印</td> </tr> <tr> <td>名簿</td> <td></td> <td>投票日</td> <td>午前</td> <td>時から</td> <td>午後</td> <td>時まで</td> </tr> <tr> <td>投票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氏名	姓	名	投票日	月	日	名簿別録印	名簿		投票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所							(キリトリ)							氏名	姓	名	投票日	月	日	名簿別録印	名簿		投票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所							(キリトリ)							氏名	姓	名	投票日	月	日	名簿別録印	名簿		投票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所							(キリトリ)							氏名	姓	名	投票日	月	日	名簿別録印	名簿		投票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所						
氏名	姓	名	投票日	月	日	名簿別録印																																																																																																				
名簿		投票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所																																																																																																										
(キリトリ)																																																																																																										
氏名	姓	名	投票日	月	日	名簿別録印																																																																																																				
名簿		投票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所																																																																																																										
(キリトリ)																																																																																																										
氏名	姓	名	投票日	月	日	名簿別録印																																																																																																				
名簿		投票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所																																																																																																										
(キリトリ)																																																																																																										
氏名	姓	名	投票日	月	日	名簿別録印																																																																																																				
名簿		投票日	午前	時から	午後	時まで																																																																																																				
投票所																																																																																																										

〈그림 2〉 투표소 입장권의 예 (도쿄도(東京都))

- 투표소 입장은 원칙적으로 투표소 입장권을 제시하여야 하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투표소에서 명부를 조회한 후 투표가 가능함.
- 다만 선거인 명부에서도 누락되어있을 경우 투표가 불가능함.
- 선거인명부는 주민표를 기반으로하여 작성되며 년 4회 갱신되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서 주민표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음.

- 즉,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주민표가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가 갱신되기 전까지는 전 거주지의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에 주소가 없더라도 투표가 가능함.

3) 거주불명등록자 현황관리 실태 및 관리주체

- 각 주민의 거주지는 「주민기본대장법(住民基本台帳法)」 제 5조 159)에 의거하여 각 시군구에서 관리함.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주민표(住民票)에는 각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소등이 기재되어있으나, 주소부정은 이 주민표가 없음을 뜻함.
 - 주민표가 없어지는 경우로는
 1. 가족 등의 신청(실종등)에 의한 삭제
 2. 납세 여부, 우편물 도착 여부등의 실태조사에 의해 삭제
 3. 전출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각 시군구에 의해 주민표가 직권삭제(職權消除)됨.

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지위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불명등록자를 위한 선거 정보는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및 관련 규정(「공직선거법시행령(公職選挙法施行令)」, 「공직선거법시행규칙(公職選挙法施行規則)」,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법시행집행규정(公職選挙法施行執行規程)」)에서

159) 주민기본대장법 제 5조: 시정촌(시군구)은 주민기본대장을 갖추며, 그 주민에 대하여 제 7조 및 제 30조 45에 의해 규정된 기재사항을 기록하여야함.(= 市町村は「住民基本台帳を備え」その住民につき「第七条及び第三十条の四十五の規定により記載をすべきものとされる事項を記録するものとする。°)

보장되지 않음.

- 단, 일반적인 선거정보 중, 거주불명등록자가 접할 수 있는 선거정보가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매체를 소개함.

1)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선거정보 제공 실태

- 학술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선거정보는 36 종류¹⁶⁰⁾로 나뉨 (사카이야 2006¹⁶¹⁾).
 - 거주불명등록자는 선거공약, 투표소 입장권 등과 같이 우편을 통해 배부되는 선거정보를 제공받지 않음.
 - 다만, 언론이나 방송매체와 같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는 제한받지 않음.

① 언론, 방송 매체 이용

- 방송을 통한 선거정보는 선거인명부가 아닌 지역에 기반하여 송출하기 때문에 거주 불명등록자 또한 선거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종류는 크게 정견방송과 경력방송으로 나뉨.
 - 정견방송: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150조¹⁶²⁾에 의거. 후보자 혹은 정치단체(정당 등)가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방송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송출 됨(그림 3 참조).

160) 후보자 포스터, 후보자 전단지, 선거공보(선거공약), 연호(連呼), 가두연설, 정당 전단지 및 포스터, 후보자 엽서, 개인 연설회, 정당 엽서, 후원회의 추천 및 의뢰, 정당기관지, 정당가두연설, 정당연설회, 가족과의 대화, 지인 및 친척의 추천, 열성 지지자로부터의 권유, 직장에서의 대화, 직업관련 단체의 추천, 근처의 평판, 자치회등의 추천, 노동조합의 추천, 그 외의 단체로부터의 추천, 상사 혹은 유력자로부터의 추천, 후보자 경력방송, 후보자 신문광고, 정당 정견방송, 텔레비전 선거 보도, 신문 선거 보도, 정당신문광고, 당수 토론회, 후보자 경력방송(라디오), 후보자 정견방송(라디오), 라디오 선거정보, 잡지 선거정보, 전화권유, 인터넷

161) 사카이야 시로. 2006. 정치적 정보와 선거과정. 목탁사 (= 境家史郎. 2006. 『政治的情報と選挙過程』. 木鐸社)

162) 공직선거법 제 150조: 중의원 소선거구선출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낸 정당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중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의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 설비에 의하여 공익을 위하여 정견을 무료로 방송하는 것이 가능함.

(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においては「候補者届出政党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選挙運動の期間中日本放送協会及び基幹放送事業者のラジオ放送又はテレビジョン放送の放送設備により」公益のため「その政見を無料で放送することができる。」)

- 수신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거주불명등록자 또한 시청 가능.
- 경력방송 :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151조¹⁶³⁾에 의거. 후보자 경력을 소개하는 방송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송출 됨.
- 정견방송과 마찬가지로 수신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거주불명등록자 또한 시청 가능.



〈사진 1〉 정견방송의 예

② 시설물 이용

○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정보로는 후보자 포스터가 있음.

-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144조의 2¹⁶⁴⁾에 의거해, 각 후보자는 시군구(市町村)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포스터 게시장에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음.
- 거주불명등록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나, 포스터가 배타적 성격을 띄지않는 공공재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또한 이를 통해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있음.

163) 공직선거법 제 151조: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 참의원 선거구 선출 의원 및 도도부현지사 선거시, 일본 방송협회는 법에 따라 공직 후보자의 성명, 연령, 당파별, 주요한 경력등을 관련 구역의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방송을 함. (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 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おいては 日本放送協会は そ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公職の候補者の氏名 年齢 党派別 主要な経歴等を関係区域の選挙人に周知させるため 放送をするものとする。)

164) 공직선거법 제 144조의 2: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 및 참의원 선거구 선출 의원 및 도도부현지사 선거시,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43조 제 1항 제 5호의 포스터 게시장을 설치하여야 함. (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 参議院(選挙区選出)議員又は都道府県知事の選挙においては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 第四百四十三条第一項第五号のポスターの掲示場を設け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인쇄 매체 이용

- 선거공약 : 선거공약과 같이 우편으로 배부되는 선거정보는 주민표가 아닌 선거인명부에 기반하여 배부됨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제 170조¹⁶⁵⁾¹⁶⁶⁾).
 - 선거인 명부는 주민표에 기반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주민표가 없는 거주 불명등록자는 인쇄물등에 의한 선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 단,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사이에 선거가 있고, 그 사이에 선거인 명부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구 주소지의 선거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음¹⁶⁷⁾.
- 신 문 : 신문을 통한 선거정보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접할 수 있음.
 - 신문을 통한 선거정보는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제 149 조¹⁶⁸⁾에 의해 중의원, 참의원, 도도부현 (都道府県) 지사 선거에 한해서 무료로 게재 가능하며, 각 도도 부현 (都道府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를 통해 게시가 가능함.
 - 신문을 통한 선거정보로는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광고 또한 포함됨.
- 소식지 : 많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広報;광보)를 제작해서 배부함.
 - 선거가 있는 달 혹은 그전달의 소식지에는 투표방법등에 대한 안내가 기재

165) 공직선거법 제 170조: 선거공보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에 이용하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가 속하는 각 세대에 대하여 선거의 이틀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選挙公報は 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 当該選挙に用いべき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た者の属する各世帯に対して 選挙の期日前二日までに 配布するものとする。)

166) 다만, 중의원 선거나 참의원 선거와 같은 국정선거가 아닌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이나 시군구(市町村)에서 조례로 지정함.

167) 다만 이 경우에도 선거공약은 구 주소지로 발송됨.

168) 공직선거법 제 149조: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시, 후보자는 총무성령에 따라 동일한 크기에 하나의 신문사에 선거운동 기간 중, 5회에 한하여 선거과 관하여 광고할 수 있음.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도 동일 하나 횟수는 총무성령으로 정함.

(衆議院 (小選挙区選出) 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 候補者は 総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同一寸法で いずれかの新聞に 選挙運動の期間中 五回を限り 選挙に関して広告をし 候補者届出政党は 総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当該都道府県における当該候補者届出政党の届出候補者の数に応じて総務省令で定める寸法で いずれかの新聞に 選挙運動の期間中 総務省令で定める回数を限り 選挙に関して広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되어 있음.

- 주민표에 등록된 거주자의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나,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市町村)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가능.
- 우편으로 배송되는 경우라도 인터넷이나 직접 수령이 가능한 이상 거주 불명등록자 또한 이를 열람 가능.

④ 기타 매체 이용

○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정보가 제공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기존의 선거정보는 각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정보로 한정되어있었음.
-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군구(市町村)청 홈페이지의 일부 페이지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선거 관리위원회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홈페이지도 있음 (오키나와(沖縄)현의 이제나(伊是名)촌 등).
-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선거절차와 같은 제도적 혹은 선거행정적인 정보, 과거 선거의 투표표 결과 등에 한정되며 거주불명등록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홈페이지에 한정하였을 경우 확인되지 않음.

2)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정보 제공 실태

① 언론, 방송 매체

○ 국정선거의 선거기간에 일부 정당은 텔레비전 광고를 송출하기도 함.

- 다만 광고제작 비용등으로 인해 일부 정당에서만 활용하고 있음¹⁶⁹⁾. 텔레비전 이외에도 인터넷(YouTube 등) 광고도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당이 공개하고 있음(그림 4~7 참조).



〈사진 2〉 2014년 자민당 광고(1)



〈사진 3〉 2014년 자민당 광고(2)



〈사진 4〉 2014년 민주당 광고(1)



〈사진 5〉 2014년 민주당 광고(2)

② 시설물

- 선거기간을 불문하고 일반 사유지에 정당 및 특정 인물의 포스터를 부착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함.(사진 6 참조)
 - 사유지에 정당 포스터 등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허가가 있어야함.
 - 다만, 소유주의 당파성에 맞는 정당의 포스터만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길거리 등지에 설치된 매체인 만큼 거주불명등록자도 볼 수 있음.

169) 정전방송이나 경력방송과는 달리 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음. 따라서 충분한 의석수로 인해 많은 정당 조성금을 지급받는 대정당에게 유리함.



〈사진 6〉 편의점 벽에 부착된 정당 포스터

③ 인쇄매체

- 주요 정당은 정당기관지를 통하여 유권자에게 선거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불명등록자 또한 열람 가능함.

정 당 명	기 관 지 명
자유민주당 (自由民主党)	자유민주 (自由民主)
민주당 (民主党)	프레스 『민주』 (プレス『民主』)
공명당 (公明党)	공명신문 (公明新聞)
일본공산당 (日本共産党)	신문 붉은 깃발 (しんぶん赤旗)
사회민주당 (社会民主党)	사회신보 (社会新報)
신사회당 (新社会党)	주간 신사회 (週刊新社会)
오키나와 사회대중당(沖縄社会大衆党)	사회대중 (社会大衆)

〈표 1〉 일본 주요 정당의 기관지

- 정당 기관지의 대부분은 일정의 구독료를 지불할 경우 구독이 가능함. 따라서 거주불명등록자 또한 구독 가능.
- 일부 기관지는 인터넷으로도 구독 가능

④ 기타 매체

- 2013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가

- 인터넷 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
-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정보 또한 각 정당 및 후보자에 의해 인터넷으로도 제공되었으나, 선거 기간 중에는 금지되어 있었음.
 - 2013년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개정에 의해 선거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한 정당 및 후보자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음¹⁷⁰⁾.
 - 이 또한 거주불명등록자를 위한 제도 개정은 아니나, 이와 같은 유권자의 선거정보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참여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투표참여 방안

- 일본의 경우, 거주불명등록자는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음.
 - 이는 일본 법률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에 의거함.
- 투표참여를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또한 원칙적으로 투표 소 입장권을 소지한 채로 투표소에 입장을 해야함. 다만, 투표소 입장권을 분실했을 경우,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인 명부 조회 후, 투표가 가능함¹⁷¹⁾.
- 상술한 바와 같이 선거인 명부는 호적이 아닌 주민표에 기반에 작성¹⁷²⁾되기 때문에 주민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주불명등록자는 실질적인 투표권이 없음.
- 다만, 주민표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선거인 명부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음.

170)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총무성 홈페이지. 2015년 7월 10일 열람.

URL: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22254.pdf

171) 오사카(大阪)시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뷰. 2015년 7월 1일.

172) 직권삭제에 의해 주민표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호적은 유지됨. 호적은 국적 상실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지지 않음.

- 7월 초 : 이사로 인한 구주소지에 전출신고(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주민표를 삭제)
- 7월 말 : 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¹⁷³⁾
(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주민표가 없음)
- 위와 같은 경우, 전출신고로부터 전입신고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선거인명부는 매년 3, 6, 9, 12 월에 갱신(「공직선거법(公職選舉法)」 제 19조의 2)이 되기 때문에 7월 시점에서는 6월에 작성한 명부에 등록이 되어있음.
- 선거가 7월 중순에 있을 경우, 구 주소지의 선거구내의 선거인명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 투표가 가능함.

2) 정당, 후보자의 투표참여 방안

- 정당, 후보자 등에서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투표참여 운동 등은 실시되지 않고 있음.

5. 신청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인등록 신청 안내 방안

- 일본 국내의 선거인명부는 시군구(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나, 재외 선거인 명부에 한해서 신청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재외 선거인명부는 거주지가 확실한 국민, 거주불명등록자의 구분 없이 개별적 인 안내를 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거주불명등록자 또한 거주지가 특정 가능한 국민처럼 같이 국내의

173) 「주민기본대장법(住民基本台帳法)」 제 22조에 의하면 전입후 14일내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해당 국가의 영사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6. 그 밖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안내 및 선거참여 관련 제도

- 주된 거주불명등록자로는 노숙자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제한된 상태임. 이들 또한 생활의 본거지로 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으나 이를 「주소」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12년 중의원 제 180회 국회 질의응답¹⁷⁴⁾에 의하면 「주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거주 사실의 기초로 하여 해당 거주자의 주관적 거주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다만 그 거주지가 「안정적」 이어야 함으로 실질적으로 노숙자의 거주인정을 드물다고 할 수 있음.
 - 2005년에는 카나가와(神奈川)현 카와사키(川崎)시의 한 노숙자 시설이 시설주소를 각 노숙자의 주소로 등록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안정된 거주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됨¹⁷⁵⁾

174) 질문본문 정보. 「홈리스의 공민권 보장 등에 관한 질문주의서」. 중의원 홈페이지. 접속일자: 2015년 7월 31일.
URL: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80120.htm

175) 요미우리 신문. 2005년 9월 3일. “주민등록인정을... 구청에 요청(「住民登録認めて」区に要望へ)”

Ⅲ. 정책선거 추진실태 및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1. 영국 / 170
2. 독일 / 183
3. 미국 / 205
4. 호주 / 218
5. 일본 / 229



국가별 개요

1. 영국(United Kingdom)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 정부재정운영상황은 영국 내의 다양한 재정관련 조직에 의해, 각기 다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연례 혹은 수시로 공개되며, 선거 시기를 특정한 관련 규정은 없음.
-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 제2조, 「정부자원 및 회계법 2000」 제9조 등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예산안 및 재정보고서를 제출, 공개, 출간하도록 규정함.
- 주요정당별 공약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과 관련, 비정부 독립 연구기관인 재정연구소(IFS)에서 주요 보고서를 발간함.

2) 국가 ·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 영국 전역에 약 200여개가 넘는 정책연구소가 산재함.
- 특정 정당과 연계된 조직에서부터 모든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조직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정책연구소는 대부분 채리티(charity) 기관의 형태로 운영됨.
- 주요 싱크탱크들은 대부분 후원자들의 기부, 출판 산업, 컨퍼런스 및 각종 행사, 투자수입 등을 통해 재정을 조달함.

2.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 선거관련 법률에서 정부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음.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포털사이트인 'Haushaltssteuerung.de'에는 각 정당의 공약에 소요가 예상되는 예산규모의 재정추계를 분석한 사항은 없고, 예산정책, 세금정책 등과 같이 공약에 대한 분석만을 게재하고 있음.¹⁷⁶⁾
- 쾰른의 독일경제연구소(IW Köln)의 공약분석자료에는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해서 요약비교하고 있으며, 해당 공약에 필요한 재정추계를 간략하게 포함하고 있음.

2) 국가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 현재 6개의 정당이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 혹은 '근정당 재단(Parteinahe Stiftung)' 과 연계하여 독일 사회의 여론형성과 정책개발을 담당함.
- 자민당의 프리이드리히 나우만 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정당 정책연구소의 법률상 형식은 '재단(Stiftung)'이 아니라 등록된 협회(e.V.)로 연방의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의 예산에서 정당과 연계된 정치재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각 정치재단의 규모에 따라 지급됨.

176) 해당 사이트에서도 2009년 연방하원선거의 각 정당공약에 대해 비교한 사항 (<http://www.haushaltssteuerung.de/dokumente/analyse-bundestagswahlprogramme-2009.pdf>)까지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있고 2013년 선거에 대한 사항은 게재되지 않았음.

3.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 미국의 경우, 정부로 하여금 선거 이전에 재정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 역시 선거 공약의 예상 비용을 추산하여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참고로,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 정부는 선거 전 재정정보고 및 정당의 공약 이행 추정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 2014년 총선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2) 국가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 현재 미국에는 1,800개 이상의 정책연구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이들의 상당수는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계되어 있고 정부와 연계된 정책연구소나 정당 소속의 정책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적음.
- 정부 내에 설립된 정책연구소 외에 독립기관들은 내국세법의 501(c)(3)에서 정하는 비영리집단으로 분류되어,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재정 운영 상황 및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음. 정부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이는 정책연구소 전체 수입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재원은 개인 혹은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충당됨.

4. 호주(Australia)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 1998년부터 「예산공개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에 따라 선거전 재무부에서 정책의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국회예산처를 설립하여 각 재정추계사항을 공개함.
- 선거 전에 정당에서 정책비용 요구 시 국회예산처는 지체없이 정당의 요구사항과 정책비용을 공개해야 함.
- 국회예산처는 국회에 등록된 정당에 대해 정당공약 리스트 및 비용, 이에 대한 의견을 선거후 보고서(Post-election report)에 작성하여야 하며 ‘2013년 선거후 보고서’는 국회예산처 웹사이트에서 공개.

2) 국가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 주요 정당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공식연구소인 치플리 리서치 센터(Chifley Research Centre)와 노동당과 느슨한 연계를 맺고 있는 호주 페이비언 소사이어티(Australian Fabian Society)가 있음. 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에는 멘지스 리서치 센터(Menzies Research Centre), 국민당에는 페이지 리서치 센터(Page Research Centre)가 있음.
- 정책연구소들은 주로 정책과 정치개혁에 관한 리서치를 맡고 있으며, 주 정부나 호주 연방정부에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를 제공하는 등 호주 지역에서 제기되는 현안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음.

5. 일본(Japan)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 일본의 경우, 선거를 전후하여 정부재정상황을 공개하는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부재정상황에 대한 공개에 관한 법률로는 「헌법」 제 91조 및 「재정법」 제 46조가 있음.
- 재정운영상황 공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의 공약(매니페스토)에는 재정상황에 관한 사항이 실려 있지 않음.
 - 주요 4당의 2014년 중의원(하원)선거 정당공약에 정부의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없으며, 공명당이 정부재정상황 공개에 관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음.

2) 국가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국가의 정책 연구소는 일부 성청(省庁; 한국의 「부/청」에 해당)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음.
- 정책연구소의 대부분은 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혹은 정부기관 산하의 연구소이며, 정당 산하의 정책연구소는 현재 일본공산당 뿐임.
- 정책연구소는 별도의 법인형태가 아닌 영리법인, 공익법인과 같은 기존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설립모체의 위탁연구 혹은 재정지원으로 조달되며, 국고보조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음.

1. 영국



영국 연구관 : 윤성원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1) 선거전 정부재정운영상황 공개 여부 및 관련법

- 정부재정운영상황은 영국 내의 다양한 재정관련 조직에 의해 각기 다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연례 혹은 수시로 공개되며, 선거 시기를 특정한 관련 규정은 없음.
 - 「의회 고정임기법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라 총선일자가 5월 첫째 목요일로 고정되고, 전통적으로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4월 5일 이전 재무장관에 의해 발표됨.
 - 선거전 정부 예산안이 촉박하게 발표될 경우, 의회 해산 전 새로운 재정법안 통과를 위한 의회 내 관련 토론절차 등이 줄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¹⁷⁷⁾
- 「예산책임 및 감사법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제2조, 「정부자원 및 회계법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제9조 등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예산안 및 재정보고서를 제출, 공개, 출간하도록 규정함.
 -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은 정부 재정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입안되었으며, ‘과거 재정정책의 법적 기반인 1998년 재정

177) Antony Seely, The Budget and the annual Finance Bill,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00813 (10 July 2015).

법과 재정안정화 준칙의 규정을 대체 혹은 갱신'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178)

- 「정부자원 및 회계법 2000」은 1921년 이후 정부회계처리를 위해 마련된 가장 주요한 법안으로 평가됨. 179)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회계'를 의무화 함. 180)

[참고조문]

「예산책임 및 감사법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제2조 연간 예산안

- (1) 재무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재정보고서 및 예산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2) 재정보고서 및 예산안의 내용은 헌장에 규정된 조항 취지와 반드시 합치해야 한다.*
- (3) 재무부는 재정보고서 및 예산안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4) 재무부는 재정보고서 및 예산안을 반드시 출간해야 한다.

Section 2 Annual Budget documents

- (1) The Treasury must prepare a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for each financial year.
- (2) The contents of a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must conform to any provision set out in the Charter.
- (3) The Treasury must lay each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before Parliament.
- (4) The Treasury must publish each 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으로 재정정책 및 국가채무관리 정책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규정.

2) 선거 시기의 정부재정운영상황 공개 사례

- 2015년 5월 총선을 전후해 공개된 정부재정운영 관련 사례로는 예산안, 정부전체계정(Whole of Government Accounts), 공공지출통계분석(Public

178) 홍승현, 권나현, 영국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2010.12), p. 106.

179) Bradley and Ewing,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15th ed.), (Essex: Longman, 2011), p. 351.

180) 홍승현, 권나현, 영국의 재정제도, p. 59.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es; 7월) 등이 있음.

○ 예산안(Budget)은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에 의해 매년 3월경 발표되는 가장 주요한 재정 및 경제 보고서임. 재무장관은 예산안 발표를 통해 현 경제상황, 공공재정 상황 및 정부의 경제목표에 따른 진행상황 등을 의회와 국민에 보고하게 됨.¹⁸¹⁾

- 2010년 예산안은 총선(5월 6일)을 42일 앞둔 3월 24일에 발표됨. 이후 4일 간의 의회토론을 거쳐 3월 30일 예산결의안이 통과됨 (의회해산 4월 12일). 그러나 동 예산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 등은 총선결과 집권하게 된 보수-자민 연립 정부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연립 정부는 총선 이후 6월 수정 예산안을 발표함. 2015년 예산안 역시 2010년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뤄졌으며, 총선결과 집권한 보수당 주도로 동년 7월 8일 추가 예산안이 발표됨.¹⁸²⁾

- 예산안은 △정부세입 및 세출 예측치 △조세수입 내역 △주요 조세 구간 및 세율 △경제상황 분석 및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 전망 등을 포함.¹⁸³⁾

○ 재무부는 「정부자원 및 회계법 2000」에 따라 흔히 WGA로 명명되는 정부 전체계정의 출간을 담당함. 2013-2014 회계연도 보고서는 2015년 3월에 출간됨.

- WGA는 영국 전역에 걸친 약 5,500여개의 공공부문 회계를 통합한 재정운영 자료임. 예산안이 공공지출에 대한 거시적 부분만을 주로 다루는 반면, WGA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중앙정부부처, 지방정부기관, 영국은행(Bank of England)과 같은 공공기업체 등의 세입과 세출, 자산 및 부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제공함.¹⁸⁴⁾

181) Department of Information Services, House of Commons Budget Debates and Finance Bills, House of Commons Library, SN/PC/02271 (10 July 2014).

182) Antony Seely, The Budget and the annual Finance Bill, pp. 15-18.

183) 홍승현, 권나현, 영국의 재정제도, p. 94.

184) 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 (검색일: 2015.8.21.); CIPFA Briefing,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March 2015).

- 공공지출통계분석(PESA) 역시 연례보고서로 부처별 예산 및 서비스부문 지출 등에 근거해 산출됨. 최근 실적액과 직전 회계연도 추정치, 현재 회계연도 계획치 등을 비교하여 제시함.¹⁸⁵⁾

3) 정부나 출연기관 등의 정당공약 재정추계 분석공개상황

- 주요정당별 공약에 따른 재정추계 분석과 관련, 비정부 독립 연구기관인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y: IFS)에서 각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IFS를 포함, 주요 언론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공개됨.
 - IFS는 2015년 총선 전 각 정당의 공약집을 바탕으로 세계개혁 및 공공 재정 등에 관한 비교분석을 실시함.
 - IFS의 2015년 4월 출간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등 주요 4개 정당 모두 차기 정부를 구성할 경우 정부차입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으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함.¹⁸⁶⁾
 - 동 보고서는 각 정당별 집권시 향후 5년 간 예상되는 순차입, 순부채, 세입, 총지출, 사회보장지출, 정부기관별 지출 등을 항목별로 추계·분석함 (<그림 1,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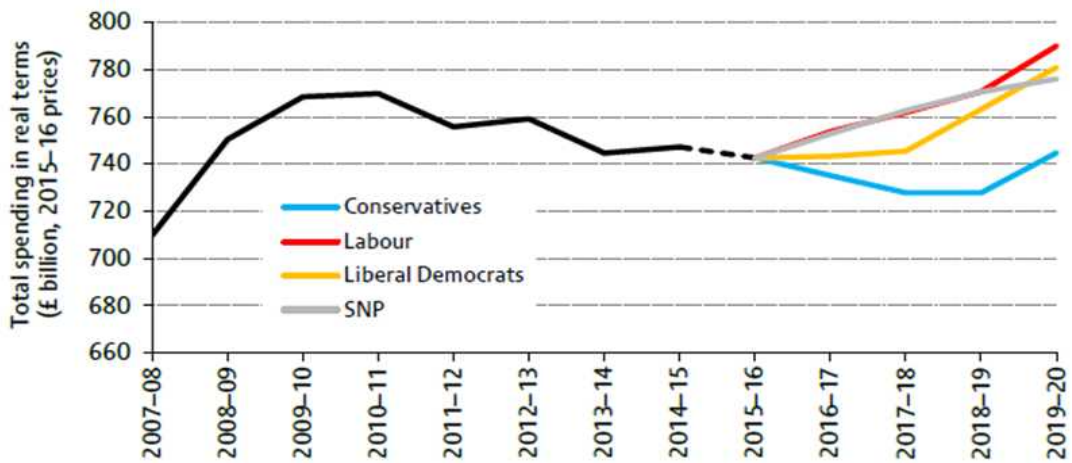
4) 재정운영상황 등의 공개가 선거공약 작성에 미치는 영향

- 정부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총선 이후 구성되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 실행 방향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총선 전 주요 정당의 공약사항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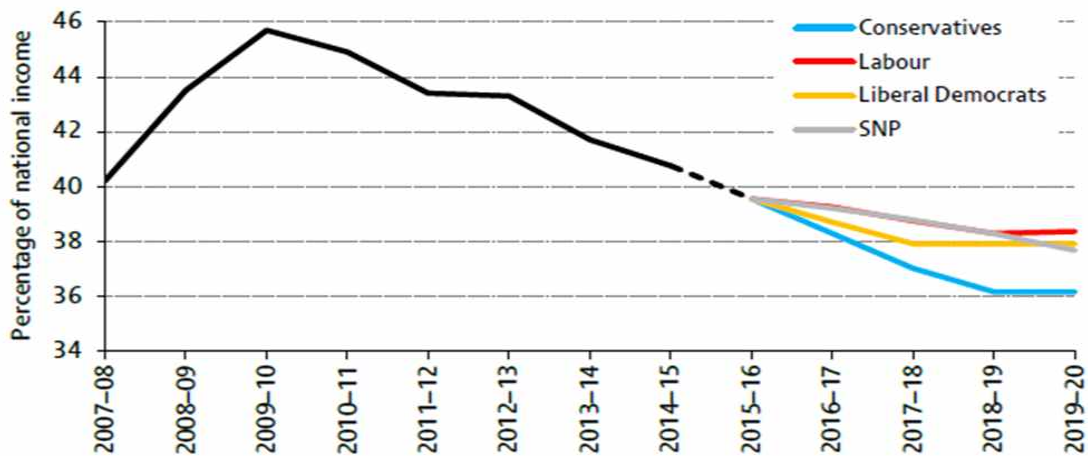
185)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public-expenditure-statistical-analyses-2015> (검색일: 2015.8.22.)

186) Rowena Crawford eds., Post-election Austerity: Parties' Plans Compared, IFS Briefing Note BN 170 (April 2015).

○ 보수자민 연립정부 구성 후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에 의해 설치된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경제 및 공공재정에 대한 5년 경제전망 보고서(five-year forecast)를 발간함. 동 보고서의 발간은 각 정당들로 하여금 경제전망에 따른 재정정책 공약을 마련하도록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함.¹⁸⁷⁾



〈그림 1〉 주요 정당별 총지출 재정추계 비교 (실질단위)¹⁸⁸⁾



〈그림 2〉 주요 정당별 총지출 재정추계 비교 (국민소득 대비)¹⁸⁹⁾

187) <http://www.ippr.org/juncture/how-to-conduct-fiscal-policy-in-the-next-parliament> (검색일: 2015.8.20.)

188) Rowena Crawford eds., Post-election Austerity: Parties' Plans Compared, p. 18.

- 총선 전 정부 예산안 발표는 야당들로 하여금 여당과의 정책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각 정당의 재정정책 공약 작성을 위한 기저를 이룸. 이와 관련, 2015년 3월 보수-자민당 연정의 예산안 발표 당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지난해 영국은 세계 다른 어떤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야당 지도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¹⁹⁰⁾
 -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당수: “재무장관의 수사와 국민들의 삶의 질 간 격차가 이보다 큰 적은 없었다.”
 - 에드 볼즈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 “실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2010년보다 더 낮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 “재정적자를 근절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장기적 경제계획을 운운하며 기한 설정을 또 미뤘다.”
 - 스튜어트 호지 스코틀랜드 국민당 부대표: “오스본은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실패한 정책인 긴축재정에만 초점을 맞췄다.”

5) 정부의 재정추계 및 공약분석 공개관련 제도개선 의견

- 영국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예산 및 재정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음.¹⁹¹⁾
- 그러나 재정상황 공개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행태가 종종 도마에 오름.
 - 영국정부는 2002-03 회계연도 이후 발표한 25차례의 경제전망 가운데 총 21차례나 추계기간 종료시까지 구조적 재정흑자(structural surplus)를

189) *ibid.*

190) BBC, Budget 2015: Reaction in quotes (18 March 2015);

<http://www.bbc.co.uk/news/uk-politics-31949561> (검색일: 2015.8.20.)

191) IBP, Budget Survey 2012: <http://internationalbudget.org/> (검색일: 2015.8.23.);

<http://www.publicfinance.co.uk/opinion/2015/02/election-2015-open-books-uk-plc> (검색일: 2015.8.20.)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구조적 재정수지는 해당 기간 내내 적자를 기록함.¹⁹²⁾

-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한 세간의 불신과 관련, 정부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실시간 정보 독점을 무기로 대응해 왔으나, 지난 2010년 설립된 예산책임청(OBR)은 동일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후 독자적인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¹⁹³⁾

○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별 공약 관련 개선사항은 제도 및 기관 측면에서 전개됨.

- 정부재정상황 공개와 관련, 정부전체계정(WGA)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됨. WGA는 의회 내에서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평가를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됨. 의회는 재정건전화 달성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요인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재무부가 WGA를 보다 철저히 활용할 것을 주문함 (세금공제 및 연금보조금 관련 비리 척결).¹⁹⁴⁾
- WGA는 최신 회계연도가 아닌 1년 혹은 2년 전 정부재정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선거 시기를 비롯한 보다 최신의 상황을 반영하는 재정보고서(interim financial statements)를 3개월 단위로 발간하자는 의견도 있음.¹⁹⁵⁾
- 예산책임청의 권한을 정부재정추계 평가에 국한하지 않고, 야당 정책과 선거공약 평가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음.¹⁹⁶⁾

192) Cathy Corrie eds., *The debt ratchet, Reform* (March 2014), p. 3.

193) Robert Chote, *Britain's fiscal watchdog: a view from the kennel* (9 May 2013), p. 4.

194)

<http://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public-accounts-committee/news/report-whole-government-accounts-2012-13/> (검색일 2015.8.23.)

195) <http://www.publicfinance.co.uk/opinion/2015/02/election-2015-open-books-uk-plc> (검색일: 2015.8.20.)

196) Cathy Corrie eds., *The debt ratchet*, p. 4.

2. 국가 ·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1) 정책연구소 현황 및 관계법

- 영국 싱크탱크들은 다른 국가의 정책연구소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정책 분석 및 향후 정책을 전망·평가하고, 언론에 해당 내용을 홍보하며, 정부관료 및 야당에 정책조언을 제공함. 2014년 기준 영국 전역에 약 200여개가 넘는 싱크탱크들이 각종 분야에서 정책형성과정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¹⁹⁷⁾
- 영국의 싱크탱크들은 특정 정당과 연계된 조직에서부터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조직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정책연구소 혹은 싱크탱크를 기관 자체로 규정하는 관계법령은 부재함. 다만, 대부분의 싱크탱크가 채리티(charity)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바 싱크탱크 형태의 채리티를 설립할 경우 「채리티법 (Charities Act 2011)」 등에 의해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함.¹⁹⁸⁾
 - 채리티 기관은 주로 빈곤구제·교육진흥과 같은 공익목적을 위한 민간단체들로 구성되나, 사단, 유한회사 또는 특별법인 역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경우 채리티 기관으로 인정됨.¹⁹⁹⁾
 - 공익성의 기준이 다소 혼란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 싱크탱크와 압력단체 (pressure groups)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음.²⁰⁰⁾ 아울러 채리티 기관은 주로 비영리단체로 이해할 수 있으나, 특권계층의 사립학교가 채리티 기관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²⁰¹⁾

197) Hartwig Pauz, UK think tanks look to achieve influence first and foremost academic partners:

<http://blogs.lse.ac.uk/impactofsocialsciences/2014/06/28/uk-think-tanks-policy-public-opinion/> (검색일: 2015.8.26.)

198) 채리티 기관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정부기관인 채리티 위원회(Charity Commission) 안내문 참조:

<https://www.gov.uk/guidance/how-to-set-up-a-charity-cc21a>

199) 김동춘 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04. 11), pp. 26-27.

200) Paul Jeater, 'Extension UK think tanks', Politics review, Vol.22, No.4 (April 2013).

201) 김동춘 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p. 28.

- 주요 정책연구기관 중 Compass, Tax Payers' Alliance 등은 비영리 캠페인 단체(not-for-profit group)로 등록돼 있음.

2) 주체별 정책연구소 설립연도 및 역사(목표 및 이념)

- Centre for Policy Studies: 1974년 설립됐으며, 국가 및 공공영역의 역할 축소를 주장함. 초당적 정책(non-partisan)을 표방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사고 전파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당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²⁰²⁾
- Fabian Society: 1884년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싱크탱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동당보다 앞서 설립됨. 사회주의적(socialism)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노동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동 단체의 세금 위원회는 지난 2000년 노동당 정부가 공공 서비스 증진을 위한 세금 인상안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함.²⁰³⁾
- 자유민주당은 'Centre Forum', 녹색당은 'Greenhouse' 등과 각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노동당과 주로 제휴해 온 'Compass' (2003년 설립)는 지난 2011년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다른 정당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²⁰⁴⁾
- 이밖에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에 의해 선정된 주요 싱크탱크들의 이념적 성향은 아래와 같음.²⁰⁵⁾
 - Demos (1993년 설립): 진보성향을 지닌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독립·교육 채리티 기관임. 초당적 싱크탱크로 현대정치의 고질적 갈등구조를 진단하고, 각 정당의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유권자들 사이의 인식차 해소를

202) Paul Jeater, 'Extension UK think tanks'

203) Telegraph, The top twelve think tanks in Britain (24 January 2008):

<http://www.telegraph.co.uk/news/politics/1576447/The-top-twelve-think-tanks-in-Britain.html> (검색일: 2015.8.5.)

204) Paul Jeater, 'Extension UK think tanks'

205) Guardian, List of thinktanks in the UK (30 September 2013); Telegraph, The top twelve think tanks in Britain (24 January 2008).

표방함.²⁰⁶⁾

- Policy Exchange (2002년 설립): 보수당 당수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가장 좋아하는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음. 교육 채리티 기관으로, ‘네오콘 전 투견’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함. 공공정책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해결을 추구함.
- Reform (2001년 설립): 중도보수적 성향을 지닌 독립 정책연구 채리티 기관으로 분류됨.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출 상황을 우려하고 합리적 비용을 통한 관련 부문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음.²⁰⁷⁾
- Social Market Foundation (1989년 설립): 진보성향을 지닌 초당적 독립 정책연구 채리티 기관으로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음.²⁰⁸⁾

3) 정책연구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 주요 정책연구소들은 주로 임원/스태프(executive team), 정책자문단(advisory group), 이사진(trustees) 등으로 구성됨.
 - 싱크탱크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며, 비교적 큰 규모의 정책연구소도 약 4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음.²⁰⁹⁾
 - 정책자문단 및 이사진의 구성은 상하원의원, 교수, CEO 등으로 다양함.
- 사실상 특정 정당과 연계된 싱크탱크들 역시 초당적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정책자문단 및 이사진 등을 다양한 정당 출신들로 구성하고 있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당파적 싱크탱크(academic think tanks) 소속 연구

206) <http://www.demos.co.uk/about> (검색일: 2015.8.25.)

207) <http://www.reform.uk/about/directors-introduction/> (검색일: 2015.8.25.)

208) <http://www.smf.co.uk/about-us/> (검색일: 2015.8.25.)

209) <http://www.careers.ox.ac.uk/options-and-occupations/sectors-and-occupations/think-tanks/> (검색일: 2015.8.25.)

자들은 주로 학계와 언론계를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다른 싱크탱크와의 교류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하원 의원들과 잦은 교류를 갖는다고 응답한 학계 연구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다만 보다 선명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정책 연구소(advocacy think tanks)의 경우 하원의원 및 중앙지방 공무원들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류를 추구하고 있음.²¹⁰⁾

4) 주요 정책개발 활동 사례

○ 주요 정책연구소들의 최근 정책개발 활동은 아래와 같음.

- Centre Forum (2015년 7월): 정부의 교육개혁이 주로 커리큘럼과 교육의 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지적하고, 각 지역사회 내의 전체 아동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School Plus’ 프로그램을 개발함.²¹¹⁾
- Fabian Society (2015년 8월): 과세제도와 관련한 담론이 대중으로부터 고립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진보적·효율적이고 투명한 세제담론 형성을 위한 ‘Tax for our Times’ 를 출간함.²¹²⁾
- Policy Exchange (2015년 8월): 2020년까지 풍력발전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85/MWh→£60/MWh)을 예측, 이에 따른 내륙 풍력발전 정책 진흥 필요성을 촉구함.²¹³⁾

210) Hartwig Pautz, ‘Surprisingly, UK think tanks don’t often communicate with elected officials’, Democratic Audit UK (25 June 2014): <http://www.democraticaudit.com/?p=6215>

211) <http://centreforum.org/index.php/toppublications> (검색일: 2015.9.2.)

212) <http://www.fabians.org.uk/publications/tax-for-our-times-2/> (검색일: 2015.9.2.)

213) <http://policyexchange.org.uk/publications/category/item/powering-up-the-future-of-onshore-wind-in-the-uk> (검색일: 2015.9.2.)

5) 정부의 국고보조 여부, 재정현황 및 조달방법

- 채리티 기관인 정책연구소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 다만 사안별·기관별 상황에 따라 중앙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채리티 기관으로의 재정지원이 가능함.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과 관련한 활동의 경우 각 채리티 기관의 입찰 신청이 가능함.²¹⁴⁾
 - 채리티 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과 관련, 채리티위원회에 등록되면 세법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²¹⁵⁾
- 정당과 연계된 싱크탱크 역시 각 정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 정당의 정책 의뢰에 따른 연구수행 및 해당 정당 기부자에 의한 개별적 싱크탱크 지원은 가능함. 각 정당의 정책개발은 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책팀을 통해 이루어짐.²¹⁶⁾
- 주요 싱크탱크들은 대부분 후원자들의 기부, 출판 산업, 컨퍼런스 및 각종행사, 연구 활동, 기타 투자수입 등을 통해 재정을 조달하며, 이 가운데 기부금액이 수입원의 상당 부분을 구성함. 해당 수입·지출 상세 내역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통해 공개함.
 - 정책연구소의 재정 투명성을 감독평가하는 기관인 ‘Who Funds You’는 영국 내 20개 주요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투명성 평가를 진행, A~E (A: 최고등급, E: 최저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함 (<표 1> 참조).²¹⁷⁾

214) 채리티 기관의 공공서비스 관련 사업 입찰 신청 및 재정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https://www.gov.uk/guidance/public-service-delivery-rules-for-charities> 참조.

215) 김동춘 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p. 27.

216) 영국 자민당(Liberal Democrats) 전 공보담당관 Samuel Barratt과의 인터뷰 (2015.8.4.)

217) <http://whofundyou.org/> (검색일: 2015.9.2.)

A	B	C	D	E
CentreForum Compass Fabian Society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New Economics Foundation Progress Social Market Foundation	Demos Policy Network Reform Resolution Foundation	Civitas Smith Institute	Centre for Policy Studies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Policy Exchange	Adam Smith Institute Centre for Social Justice ResPublica TaxPayers' Alliance

〈표 1〉 영국 주요 싱크탱크 재정투명성 평가표

- 〈표 1〉에 포함된 주요 정책연구소의 재정현황 및 재정관리 공개 현황은 〈표 2〉와 같음.²¹⁸⁾

기관명	연간소득 (£)	재정조달방안 (기관 웹사이트)	기관 기부 명단	기관 기부 금액	개인 기부 명단	개인 기부 금액
Centre Forum	673,394	No	Yes	Yes	Yes	Yes
Fabian Society	745,350	Yes	Yes	Yes	Yes	Yes
Compass	231,734	Yes	Yes	Yes	Yes	Yes
Social Market Foundation	664,894	Yes	Yes	Yes	Yes	Yes
Demos	1,222,672	Yes	Yes	No	Yes	No
Reform	1,328,458	Yes	Yes	Yes	No	No
Smith Institute	No	Yes	Some	No	Some	No
Centre for Policy Studies	580,518	No	No	No	No	No
Policy Exchange	2,519,915	No	No	No	No	No
Adam Smith Institute	No	No	No	No	No	No
Centre for Social Justice	No	No	No	No	No	No

〈표 2〉 영국 주요 싱크탱크 재정 공개현황 (2014년 기준)

218) *ibid.*

2. 독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1) 선거전 정부재정운영상황 공개 여부 및 관련법

- 정부의 재정 결산 및 감사 등 재정상황 공개를 선거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는 없음.
- 선거관련 법률에서 정부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음.
- 독일의 연방재정은 예산법률주의(「기본법 제110조제2항」)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산기본법(Haushaltsgrundgesetz), 연방 예산법(Bundeshaushaltsgesetz) 및 연방 예산법 시행령(Bundeshaushaltsordnung)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결산 등이 이루어짐.

[참고조문]

독일 기본법(GG)

제110조(연방의 예산안)

제1항 연방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연방기업 및 특별재산에 대해서는 단지 편입 또는 교부가 기재되면 족하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항 단일 또는 다수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연도별로 나누어 최초 회계연도개시 이전에 예산법률로 확정해야 한다. 예산안의 일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별로 구분되어 상이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제1문에 의한 법률안과 예산법률 및 예산안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연방하원에 의하여 연방상원에 접수됨과 동시에 제기된다. 연방상원은 통상 6주 이내에, 개정법률안일 경우

에는 3주 이내에 그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4항 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예산법률의 기간에 관련된 규정만 게재하여야 한다.

예산법률은 그 다음 예산법률의 공포에 의하거나 또는 제115조에 의한 전권위임에 의하여 장래의 시기에 실효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GG Art 110

(1) Alle Einnahmen und Ausgaben des Bundes sind in den Haushaltsplan einzustellen; bei Bundesbetrieben und bei Sondervermögen brauchen nur die Zuführungen oder die Ablieferungen eingestellt zu werden. Der Haushaltsplan ist in Einnahme und Ausgabe auszugleichen.

(2) Der Haushaltsplan wird für ein oder mehrere Rechnungsjahre, nach Jahren getrennt, vor Beginn des ersten Rechnungsjahres durch das Haushaltsgesetz festgestellt. Für Teile des Haushaltsplanes kann vorgesehen werden, daß sie für unterschiedliche Zeiträume, nach Rechnungsjahren getrennt, gelten.

(3) Die Gesetzesvorlage nach Absatz 2 Satz 1 sowie Vorlagen zur Änderung des Haushaltsgesetzes und des Haushaltsplanes werden gleichzeitig mit der Zuleitung an den Bundesrat beim Bundestage eingebracht; der Bundesrat ist berechtigt, innerhalb von sechs Wochen, bei Änderungsvorlagen innerhalb von drei Wochen, zu den Vorlagen Stellung zu nehmen.

(4) In das Haushaltsgesetz dürfen nur Vorschriften aufgenommen werden, die sich auf die Einnahmen und die Ausgaben des Bundes und auf den Zeitraum beziehen, für den das Haushaltsgesetz beschlossen wird. Das Haushaltsgesetz kann vorschreiben, daß die Vorschriften erst mit der Verkündung des nächsten Haushaltsgesetzes oder bei Ermächtigung nach Artikel 115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ußer Kraft treten.

2) 선거 시기의 정부재정운영상황 공개 사례(방법, 시기, 대상 등 상세)

- 독일의 경우 선거 시기에 별도로 정부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나 법률은 없음.
-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기본법 제110조제1항제1호」), 이러한 예산은 일회계연도 또는 다회계연도별로 분리되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으로 확정됨(「기본법 제110조제2항제1호」).
- 독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여 회계연도 전 7월 1일까지 연방상원의회에 제출함.
- 연방상원의회는 3주 이내에 의견을 결정하여 정부에 이송하며, 내각은 연방상원의 수정안 및 그에 대한 내각의 의견을 첨부하여 연방하원의회에 10월 5일까지 제출함.
- 연방의회의 예산심사에는 재무부장관이 참석하여 소위 '재무보고(Finanzbericht)'를 하며, 이 때에 예산법안의 내용과 함께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재정 상황 및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짐.
- 예산에 대한 의회심사는 여타 법안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본회의에서의 1독회, 예산위원회심사, 본회의 2독회 및 3독회를 거쳐 이루어짐.
- 예산위원회는 3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례상 제1야당의 의원이 역임하여 정부 지출의 통제자 역할을 담당함.
- 독일의 경우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관계로 현재는 기민/기사당연합(CDU/CSU)과 사민당(SPD)이 여당으로 분류되며, 좌파당(Die Linke)과 녹색당(Grüne)이 야당임.
- 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좌파당(Die Linke) 소속의원인 Gesine Löttsch 박사가 역임하고 있음.
- 예산위원회는 매 의회의 회기마다 예산의 각 분야별로 보고위원을 임명하며, 이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전체 임기동안 해당분야의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정부의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는 독립기관인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이 담당함.
-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연방정부에도 제출되며, 예산위원회 및 동위원회 소속 결산 소위원회(Audit sub-committee)는 정부의 의견과 함께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음.
- 예산위원회는 연방하원의 본회의를 통해 결산관련 사후보고를 수행함.
-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받음(「기본법 제114조제2항제1문」).

-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의 결산이 종료되면 감사결과를 요약한 의견서(Bemerkungen)를 의회에 제출함.
- 정부의 예산과 결산내역 등에 대해서는 연방재정부(Bundesfinanzministerium)²¹⁹⁾와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²²⁰⁾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조문]

「독일 기본법(GG)」

제110조(연방의 예산안)

제1항 연방의 모든 세입 및 지출은 이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연방기업 및 특별재산에 대해서는 단지 편입 또는 교부가 기재되면 족하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항 단일 또는 다수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연도별로 나누어 최초 회계연도개시 이전에 예산법률로 확정해야 한다. 예산안의 일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별로 구분되어 상이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제1문에 의한 법률안과 예산법률 및 예산안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연방하원에 의하여 연방상원에 접수됨과 동시에 제기된다. 연방상원은 통상 6주 이내에, 개정법률안일 경우에는 3주 이내에 그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4항 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예산법률의 기간에 관련된 규정만 기재하여야 한다. 예산법률은 그 다음 예산법률의 공포에 의하거나 또는 제115조에 의한 전권위임에 의하여 장래의 시기에 실효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114조(결산보고, 회계감사)

제1항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책임면제를 위하여 그 다음 회계연도 중에 총수입 및 총지출과 자산(Vermögen) 및 부채(Schuld)에 관하여 연방하원과 상원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사법적 독립성을 가지는 구성원으로 조직되는 연방회계감사원은 결산과 예산 및 재정 집행의 경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 이외에 직접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방회계감사원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219) 2015~2019년의 예산 및 재정지출계획에 대한 사항은 연방재정부의 자료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Abt_2/2015-03-18-PM-daten-fakten.pdf?__blob=publicationFile&v=3) 참조.

220)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결산보고서는 연방회계감사원 홈페이지 (<https://www.bundesrechnungshof.de/de/veroeffentlichungen/bemerkungen-jahresberichte/jahresberichte/berichte-2000-2014>) 참조.

「GG」

Art 110

(1) Alle Einnahmen und Ausgaben des Bundes sind in den Haushaltsplan einzustellen; bei Bundesbetrieben und bei Sondervermögen brauchen nur die Zuführungen oder die Ablieferungen eingestellt zu werden. Der Haushaltsplan ist in Einnahme und Ausgabe auszugleichen.

(2) Der Haushaltsplan wird für ein oder mehrere Rechnungsjahre, nach Jahren getrennt, vor Beginn des ersten Rechnungsjahres durch das Haushaltsgesetz festgestellt. Für Teile des Haushaltsplanes kann vorgesehen werden, daß sie für unterschiedliche Zeiträume, nach Rechnungsjahren getrennt, gelten.

(3) Die Gesetzesvorlage nach Absatz 2 Satz 1 sowie Vorlagen zur Änderung des Haushaltsgesetzes und des Haushaltsplanes werden gleichzeitig mit der Zuleitung an den Bundesrat beim Bundestage eingebracht; der Bundesrat ist berechtigt, innerhalb von sechs Wochen, bei Änderungsvorlagen innerhalb von drei Wochen, zu den Vorlagen Stellung zu nehmen.

(4) In das Haushaltsgesetz dürfen nur Vorschriften aufgenommen werden, die sich auf die Einnahmen und die Ausgaben des Bundes und auf den Zeitraum beziehen, für den das Haushaltsgesetz beschlossen wird. Das Haushaltsgesetz kann vorschreiben, daß die Vorschriften erst mit der Verkündung des nächsten Haushaltsgesetzes oder bei Ermächtigung nach Artikel 115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ußer Kraft treten.

Art 114

(1)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hat dem Bundestage und dem Bundesrate über alle Einnahmen und Ausgaben sowie über das Vermögen und die Schulden im Laufe des nächsten Rechnungsjahres zur Entlastung der Bundesregierung Rechnung zu legen.

(2) Der Bundesrechnungshof, dessen Mitglieder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besitzen, prüft die Rechnung sowie die Wirtschaftlichkeit und Ordnungsmäßigkeit der Haushalts- und Wirtschaftsführung. Er hat außer der Bundesregierung unmittelbar dem Bundestage und dem Bundesrate jährlich zu berichten. Im übrigen werden die Befugnisse des Bundesrechnungshofes durch Bundesgesetz geregelt.

3) 정부나 출연기관 등의 주체별 정당공약 재정추계 분석공개상황

-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공약을 대상으로 소요될 재정 또는 예산규모를 분석하는 기관은 없음.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포털사이트인 'Haushaltssteuerung.de'에서도 각 정당의 공약에 소요가 예상되는 예산규모의 재정추계를 분석한 사항은 없고, 예산정책, 세금정책 등과 같이 공약에 대한 분석만을 게재하고 있음.²²¹⁾
- 쾰른의 독일경제연구소(IW Köln)의 공약분석자료에서는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해서 요약비교하고 있으며, 해당 공약에 필요한 재정추계를 간략하게 포함하고 있음.²²²⁾
- 쾰른 독일 경제연구소(IW Köln)는 사설 연구기관으로 2013년 연방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위해 공약의 분석 자료를 발간한 바 있지만, 매 선거마다 정당의 공약에 대해 분석하는 정책(정치) 관련 연구기관은 아님.
- 매 선거마다 공약분석자료를 발간하는 기관의 공약분석자료는 각 정당의 정책내용을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으며, 공약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추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세금정책, 사회보험정책, 노동시장(기업)정책과 같은 경제 및 정부예산 관련 정책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쾰른 독일 경제연구소(IW Köln)의 자료 외에는 없음.
- 지난 2013년 연방하원선거시기에 각 정당의 공약에 기초한 재정추계는 다음과 같음.

221) 해당 사이트에서도 2009년 연방하원선거의 각 정당공약에 대해 비교한 사항 (<http://www.haushaltssteuerung.de/dokumente/analyse-bundestagswahlprogramme-2009.pdf>)까지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있고 2013년 선거에 대한 사항은 게재되지 않았음.

222)

http://www.iwkoeln.de/_storage/asset/118537/storage/master/file/3159431/download/Analyse+Wahlprogramme+2013.pdf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자민당	기민/기사당
소득세	9.4	13.5	30.0	-5.5	-9.4
재산세	11.5	11.5	80.0		
금융관련세	3.0	3.0	3.0		
핵발전세	2.0				
성장촉진법	5.0				
세제감면 철회	10.0				
교통부담금		8.5			
기업세		1.0	35.0		
농경세		4.5	7.0		
영업세			15.0		
거래세		3.5	1.0		
계	40.9	45.5	171.0	-5.5	-9.4

(출처: IW-Köln)

〈표1〉 정당공약에 기초한 세금수입 영향평가(단위: 10억 유로)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자민당		기민/기사당	
	5년	장기	5년	장기	5년	장기	5년	장기	5년	장기
연금급여인상	9.8	20.3	7.3	17.4	9.8	20.3			17.2	1.0
건강보험 추가부담금 폐지	2.9		2.9		2.9					
법정요양보험	5.5		4.0		-22.9		4.0		4.0	
계	18.2	20.3	14.2	17.4	-10.2	20.3	4.0		21.2	1.0

(출처: IW-Köln)

〈표2〉 정당공약에 기초한 사회보장세 영향평가(단위: 10억 유로)

4) 재정운영상황 등의 공개가 선거공약작성에 미치는 영향

- 재정운영내역의 경우 선거와 관련하여 공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관계로 각 정당의 공약작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독일의 경우 단일정당으로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간 연합을 통해 정부가 구성되는 관계로 연합정부 내에서 예산이 수립될 때에 1차적인 조정을 거

치게 됨.

- 예산의 분배 및 재정수입을 위한 세율개편 등은 선거에 있어 정당을 선택하는 주요한 정책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정부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음.

5) 정부의 재정추계 및 공약분석 공개관련 제도개선 의견

- 독일의 경우 예산 및 재정지출 내역에 대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추계 또는 선거공약과 예산의 관련성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은 없음.
- 독일은 EU의 구제금융, 정부의 부채상황 등 예산내역 또는 재정지출내역과 관련한 내용적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내용의 공개방식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나 개선의견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2. 국가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1) 국가정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소 현황 및 관계법

- 각 정당의 정책개발은 정당의 부설 재단, 연구소 등을 통해 이루어짐.
- 현재 6개의 정당이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 혹은 ‘근정당재단(Parteinaher Stiftung)’ 으로서 독일 사회의 여론형성과 정책개발에 큰 영향정당재단은 각 정당과 연계되어 연구 및 정치교육을 담당함.
- 각 정당의 정책연구 및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재단의 명칭은 다음과 같음.

정당	재단
사민당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k-Ebert-Stiftung)
자민당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k-Naumann-Stiftung)
기민당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기사당	한스 자이델 재단(Hans-Seidel-Stiftung)
녹색당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ell-Stiftung)
좌파당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exemburg-Stiftung)

- 자민당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정당 정책연구소의 법률상 형식은 '재단(Stiftung)'이 아니라 등록된 협회(e.V.)에 해당함.
- 자민당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사법(私法) 상의 독립재단에 해당함.
- 정당의 부설 재단은 정치교육, 정책개발, 국제교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주체별(정당, 재단) 정책연구소 설립연도 및 역사(목표 및 이념)

- 각 정당의 정책연구 및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재단의 설립연도는 다음과 같음.

정당	재단	설립연도
사민당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k-Ebert-Stiftung)	1925
자민당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k-Naumann-Stiftung)	1958
기민당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1964
기사당	한스 자이델 재단(Hans-Seidel-Stiftung)	1967
녹색당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ell-Stiftung)	1996
좌파당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exemburg-Stiftung)	1998

- 정당재단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도의 홍보기관은 아님.
- 이들 연구소 또는 부서에서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준 학술적이고 정책개발 지향적인 보고서와 페이퍼들을 통해 재단 내에서 해당주제와 관련한 실천을

행하는 부서들에게 도움을 줌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도 관련분야의 전문 분석 자료로 연구적, 실천적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k-Ebert-Stiftung)

- 사민당(SPD) 산하의 정치단체임.
- 1925년에 설립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단체의 명칭인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제국대통령을 역임한 독일의 사민주의 정치인이었음.
- 재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모든 시민이 출신, 성별, 종교와 무관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차원에서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누리며,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사회
 - 활력 있고 탄탄한 민주주의,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더 많은 교육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삶에서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복지국가
 -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사회 진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
- 주요 활동내용은 정치교육, 정책개발, 국제협력, 청년지원, 역사연구지원 등이 있음.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k-Naumann-Stiftung)

- 자민당(FDP) 산하의 정치재단임.
- 독일의 초대 대통령(Bundespräsident)을 역임한 테오도르 호이스(Theodor Heuss)에 의해 1958년 설립됨.
- 재단의 정치적 기본원칙은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활동한다.” 고 설립헌장에서 기술하고 있음.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주의 이념과 그 교육을 위한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통일 독일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 속에 내재한 자유 원칙이 더 공고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해외 기관들과도 협력하도록 함.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 기민당(CDU) 산하의 정치단체임.
- 자유, 정의, 연대를 기본적인 모토로 하고 있음.
- 1952년부터 설립움직임이 시작되어 정치교육과 정강정책 등의 홍보를 위한 재단으로 성장하였음.
- 1955년 기독교적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단체(Gesellschaft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Bildungsarbeit e.V.)를 거쳐 1958년 아이히홀츠 정치 아카데미(Politische Akademie Eichholz e. V.)로 그 규모를 키워감.
- 1962년에는 별도로 국제연대를 위한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 연구소(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olidarität der Konrad -Adenauer -Stiftung(IIS))를 설립하였음.
- 1964년 아이히홀츠 정치 아카데미의 명칭을 정치교육 및 연구촉진을 위한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für politische Bildung und Studienförderung e.V.)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한스 자이델 재단(Hans-Seidel-Stiftung)

- 기사당(CSU) 산하의 정치단체임.
- 민주주의, 평화, 발전을 위한 기여를 모토로 함.
- 기독교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독일 국민들의 민주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재단의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적 책임과 연대라는 가치, 그리고 자유로운

자아실현과 자주의식을 갖춘 인간상을 토대로 하고 있음.

- 재단의 기본적인 활동은 정치 및 시사아카데미, 정치교육연수원, 대외관계연구소 및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ell-Stiftung)

- 녹색당 산하의 정치단체임.
- 초기의 움직임은 1970년대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던 반핵운동이 모태가 됨.
- 1980년대 초반 녹색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 단위의 재단을 설립한 것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후반에 설립된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재단과 주 재단의 연방연합, 쾰른을 거점으로 한 하인리히 뵐 재단(1987년)이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연대하여 활동하였고 이 연대체를 녹색당이 근정당 재단으로 인정하였음.
- 1996년 연대의 형식이었던 위 세 재단을 통합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재단의 목표 및 지향점은 녹색이념을 구체화 할 정책을 생산하며, 녹색 환경운동을 추구하는 전세계 생태주의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녹색 환경운동을 민주주의 및 인권과 결합시켜 확대하고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exemburg-Stiftung)

- 좌파당 산하의 정치단체임.
-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1990년 베를린에 세워진 단체인 사회분석 및 정치교육 단체(Gesellschaftsanalyse und politische Bildung e. V.)를 모태로 함.
- 단체의 목표는 정치교육을 조직화하고 세계화 시대에서의 사회적 협력을 홍보하며,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 분석의 장소가 되며, 독일 및 전 세계적으로 좌파 사회주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포럼을 개최하며,

청년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자치적·사회적 정치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정의와 연대,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사회참여를 지원함.

3) 정책연구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k-Ebert-Stifung)

- 시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4년 기준으로 본과 베를린의 사무소, 아카데미, 주 단위 및 지역단위 사무소, 국외 사무소에 총 6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재정 규모는 2013년 기준 1억 5,300만 유로임.
- 국외 사무소는 총 106개국에 설치되어 있음.
- 임원진은 위원장, 2명의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및 7명의 임원, 전임위원장 2명으로 구성됨.
- 정치교육부, 국제협력부, 학술부, 행정부의 4개 상위부서로 구성됨.
- 정치교육부 산하에는 정치아카데미, 정치토론, 경제 및 사회정책의 하위 부서가 속함.
- 국제협력부는 국제 발전협력, 국제토론 부서가 속함.
- 학술부에는 장학지원과 시민 기록 부서 및 도서관이 속함.
- 행정부에는 인사와 재정 및 조직 부서가 속함.

Organisationsplan der Friedrich-Ebert-Stiftung

Stand: August 2015

Vorstand Vorsitzender: MPA D. Kurt Beck Stellvertretende Vorsitzende: MPAin Hannalore Kraft, Michael Sommer Geschäftsführendes Vorstandsmitglied: Dr. Roland Schmidt		Mitgliederversammlung des Vereins der Friedrich-Ebert-Stiftung Kuratorium							
Politische Bildung und Beratung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Wissenschaftliche Arbeit		Verwaltung			
Politische Akademie	Politischer Dialog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Internationale Entwicklungszusammenarbeit	Internationaler Dialog	Studienförderung	Archiv der sozialen Demokratie	Finanzen und Organisation	Personalabteilung	
Rainhard Weil	Dr. Manuela Ehart	Dr. Andrea Garber	Christiane Keuper	Dr. Alexander Kallweit	Pia Bungarten	Dr. Anja Krüke	Dr. Roland Schwartz	Dr. Beate Bartholdus	
Kommunikation und Grundsatzfragen ¹ Vera Rodic Pressestelle Berlin Peter Duranski	Akademie für Soziale Demokratie Dr. Christian Krell Akademie Management und Politik Karin Matuschek Medienpolitik Nobert Böker JournalistenAkademie Carla Schulte-Reckert OnlineAkademie Tobias Fasi Forum Jugend und Politik Dr. Stefanie Henke Ina Koopmann Akademie für Arbeitsmarktwirtschaft Rebecca Demaris KommunaAkademie Dr. Markus Tommer Landes-/Regionalbüros Brandenburg (Potsdam) Eugen Mackel Baden-Württemberg Fritz-Eber-Forum (Stuttgart) Dr. Sabine Fandrych Bayern BayernForum (München) Alina Fuchs Regensburg Harald Zintl Hessen (Wiesbaden) Nicole Nestler Nordrhein-Westfalen (Bonn) Petra Wilke Rheinland-Pfalz/Saarland (Mainz) Dr. Martin Graf Gesellschaft für Politische Bildung e.V. ² (Akademie Frankenwarte, Würzburg) Vors. Walter Kolbow Georg von Vollmar-Akademie e.V. ² (Kochel am See/München) Vors. Carmen König-Rothermund	Forum Politik und Gesellschaft Dr. Stefanie Eiles Familien- und Geschlechterpolitik, Jugendpolitik und Antidiskriminierung, Forum Demokratie Neue Gesellschaft / Frankfurter Hefte Prof. Dr. Thomas Meyer Forum Berlin Dr. Ina Klotz Rechtspolitik, Innere Sicherheit, Berlinpolitik, Staatsmodernisierung, Gegen Rechtsbestremsung, Integration und Teilhabe, Empirische Sozialforschung, Religion und Politik, Kulturpolitik Landes-/Regionalbüros Mecklenburg-Vorpommern (Schwerin) Friedric Wierner Niedersachsen (Hannover) Ulrich Überschar Sachsen (Leipzig) Matthias Eisel (Außenstelle Dresden) Christoph Wielepp Sachsen-Anhalt (Magdeburg) Dr. Ringo Wagner Thüringen (Erfurt) Dr. Paul Pasch	Arbeit und Qualifizierung Ruth Brändherm Soziales, Gesundheit, Gender, Familie, Jugend, Senioren Severin Schmidt Altersicherung Max Ostermeyer Gewerkschaften Matthias Klein Klima / Energie / Umwelt, Digitalisierung Dr. Philipp Fink Migration / Integration Günther Schultze Verbraucher, Unternehmen / Mittelstand Dr. Robert Philipp Räumliche Entwicklung, Demographischer Wandel René Bornmann Wirtschafts- und Finanzpolitik / Europäische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Markus Schreyer Managerkreis der Friedrich-Ebert-Stiftung Dr. Marc Menardus	Afrika Manfred Ohm Gewerkschaften: Henning Effner Asien und Pazifik Jürgen Skottan Gewerkschaften: Martin Albers Lateinamerika und Karibik Dr. Swanga Blanke Gewerkschaften: Kaja Meyer Näher und Mittlerer Osten, Nordafrika Dr. Ralf Hevel Gewerkschaften: Hannah Stemfeldt Globale Politik und Entwicklung Jochen Steinbriber Globalisierung, Thomas Matzig Frieden und Sicherheit, Matias Müller-Henning Klima und Energie Manuela Mattheß Menschenrechte Hubert Schilling Koordinierungsaufgaben GewerkschaftsKoordinations International Mirko Herberg Evaluierung/ Qualitätsmanagement: Cathina Schläger	Westeuropa/Nordamerika Michele Auga Mittel- und Osteuropa Dr. Reinhard Krumm Internationale Politikanalyse Dr. Michael Bröning Koordinierungsaufgaben Gewerkschaften Jörg Bergstermann Ehemalige, Berufsorientierung, journalistische Nachwuchsförderung Ina Figenwald Vertrauensdozent_innen Anja Schradowinkel Öffentlichkeitsarbeit und Neue Medien Johanna Niesyto Community Portal Ines Herr Bildungs- und Hochschulpolitik Marek John-Ohnesorg	Auswahl Marianne Braun Beratung und Betreuung Elena Espinosa Promotionsförderung Dr. Ursula Bittago Ausländische Stipendiat_innen Kathrin Holscher Ideelle Förderung und stipendiatistisches Netzwerk Jens-Uwe Hettmann Ehemalige, Berufsorientierung, journalistische Nachwuchsförderung Ina Figenwald Vertrauensdozent_innen Anja Schradowinkel Öffentlichkeitsarbeit und Neue Medien Johanna Niesyto Community Portal Ines Herr Bildungs- und Hochschulpolitik Marek John-Ohnesorg	Organisationsbestände Michael Oberstadt Personenbestände und Sammlungen Harry Scholz Public History Dr. Meik Woyke Karl-Marx-Haus Trier Elisabeth Neu Bibliothek Jacques Papano Katalog und wissenschaftliche Dienste Regine Schoch Periodika / Benutzung Jacques Papano	Controlling und Organisation Axel Schmidt Informationstechnologien Peter Bujny IT-Basisdienste Peter Bujny IT-Prozessunterstützung: Hasan Polat Finanzbuchhaltung Carola Marten-Vogt Projektbuchhaltung Jutta Klammer Hausmanagement Diana Gohle Koordinations Konferenz-zentrum Berlin Timo Ernst	Grundsatzfragen Maria Theodosiou Abrechnung Ausland Jule Bullesfeld Katharina Kohr Michael Kramer Ariane Rodel Sabina Tang Abrechnung Inland Sener Dogan Reinhold Mer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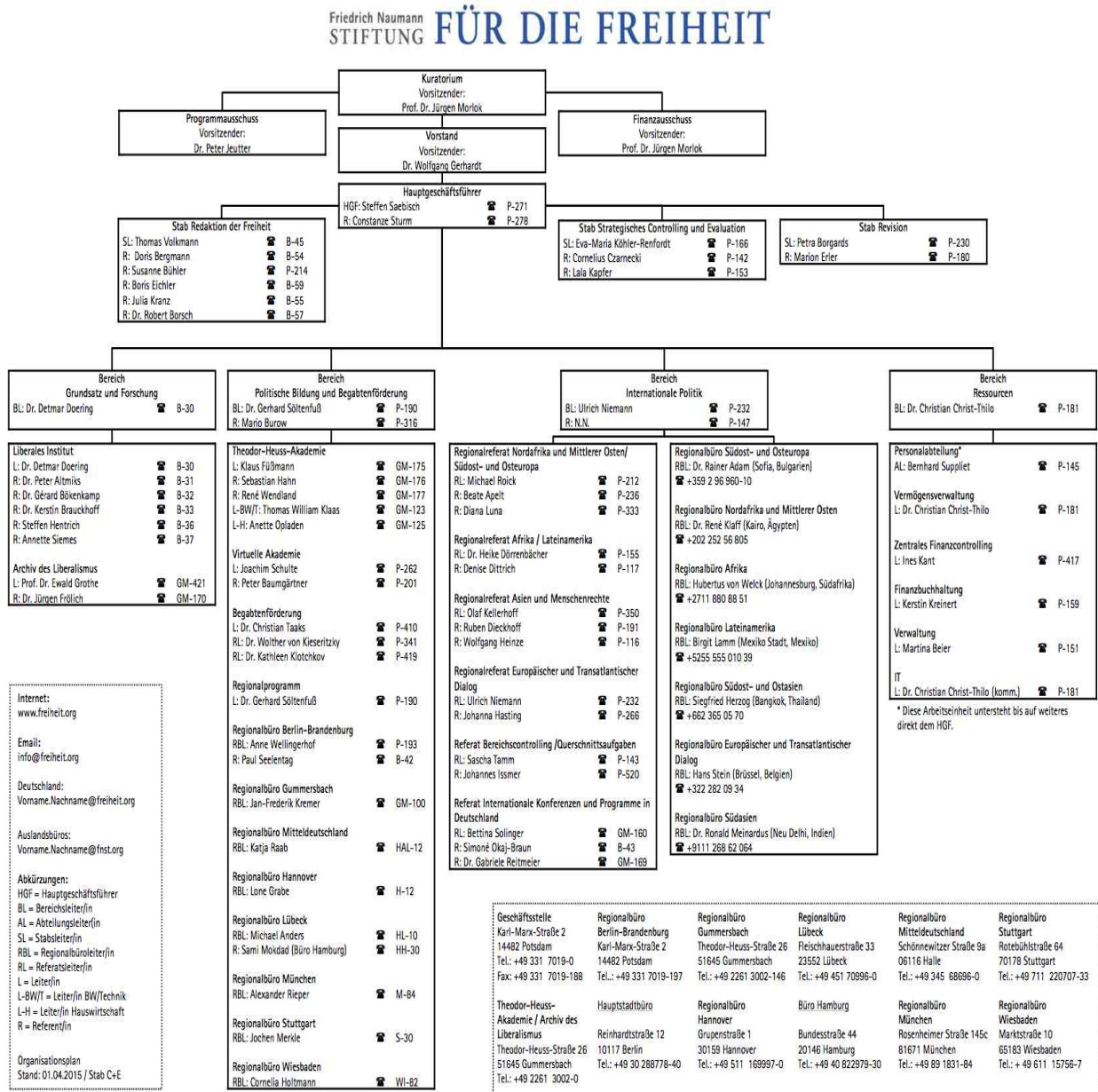
¹ Direkt dem Geschäftsführer unterstellt
² Durch die FES gefördert

(출처: Friedrich-Ebert-Stiftung, 2015)

〈그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조직도

②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k-Naumann-Stiftung)

- 재단의 감사위원회가 조직의 가장 상위에 위치함.
- 감사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6년임.
- 관리위원회 산하에 임원진과 재정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로 구성됨.
- 임원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재무담당자 및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부서의 구성은 크게 기초와 연구, 정치교육과 영재양성, 국제정치, 재정을 담당하는 4개 분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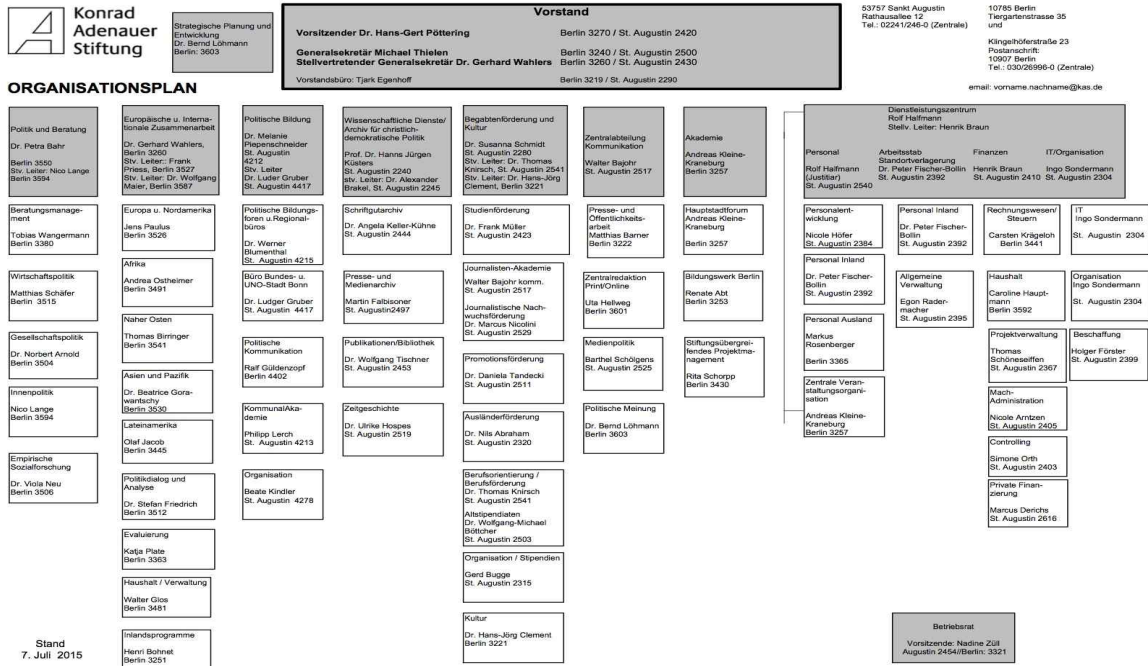
(출처: Friedrich-Naumann-Stiftung, 2015)

〈그림2〉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조직도

③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 연방 전체에 18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본과 베를린에 주소를 두고 있음.
- 총 10개의 주요 부서에 총 5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80명의 담당자가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임원진은 총 22으로 구성되며 1명의 위원장, 3명의 부위원장, 비서, 재무담당 등으로 구성됨.
- 조직은 정치 및 상담, 유럽 및 국제협력, 정치교육, 학술 및 기독교민주정치사, 영재교육 및 문화, 홍보, 아카데미 및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업무부서로 구성됨.



(출처: Konrad-Adenauer-Stiftung, 2015)

〈그림 3〉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조직도

④ 한스 자이델 재단(Hans-Seidel-Stiftung)

- 한스 자이델 재단은 워싱턴, 브루셀, 모스크에 각각 3개의 연락 지국을 두고 있고, 세계 60여 국가에서 9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통해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조직은 정치 및 시사아카데미, 정치교육연수원, 대외관계연구소, 장학재단으로 구성됨.
- 재단의 구성원은 최대 40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 임원진은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 재무담당자 및 서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조직은 5개의 부서와 중앙교육부로 구성됨.

ORGANISATIONSPLAN HANNS-SEIDEL-STIFTUNG		VORSTAND		L1 BÜRO DER VORSITZENDEN/ INTERKULTURELLER DIALOG	
1. Oktober 2014		Prof. Ursula Münne Staatsministerin a. D. Vorsitzende Tel: 320/319, Fax: 375		Dr. Philipp W. Hildmann Tel: 348, Fax: 375	
Hanns Seidel Stiftung		GESCHÄFTSFÜHRUNG		L2 BÜRO BERLIN	
		Dr. Peter Witterauf Hauptgeschäftsführer Tel: 220/221, Fax: 356		Unter den Linden 78, 10117 Berlin Dr. Alexander Wolf Tel: +49 (0) 30 72 24 013, Fax: 72 32 00 22	
				L3 BÜRO FÜR VERBINDUNGSSTELLEN WASHINGTON, BRÜSSEL, WESKAU/ INTERNATIONALE KONFERENZEN Ludwig Mallinger Tel: 202, Fax: 368 Armin Höller Tel: 204, Fax: 368	
Abteilung I ZENTRALE AUFGABEN		Abteilung II AKADEMIE FÜR POLITIK UND ZEITGESCHEHEN		Abteilung III INSTITUT FÜR PÖLITISCHE BILDUNG	
2A-1 KOMMUNIKATION, ORGANISATION, RECHT & IT Hans W. Greiner Tel: 312, Fax: 426		Prof. Dr. Reinhard Meier-Walser Tel: 240/241, Fax: 469		Dr. Franz Guber Tel: 230/231, Fax: 338	
Referat I/1 Presse- und Öffentlichkeitsarbeit, Publikationen, Internet Hubertus Kilingsbögl Tel: 262, Fax: 363		Referat II/1 Deutsche Außenpolitik, Internationale Beziehungen und Sicherheitspolitik		Referat III/1 Politisches Management und Kommunikation, Medien und Innovation Tel: 311	
Referat I/2-A Personal Ausland Hans W. Greiner Tel: 312, Fax: 426		Referat II/2 Wirtschaft, Finanzen, Arbeit und Soziales Jutta Röhrlein Tel: 233		Referat III/2 Wirtschaft, Finanzen, Arbeit und Soziales Jutta Röhrlein Tel: 233	
Referat I/2-S Organisationsentwicklung, Recht & Compliance Hans W. Greiner Tel: 312, Fax: 426		Referat II/3 Europäische Integration, Europa- und Völker- recht, Bürgerrechte und Verfassungsstaat N. N. Tel: 244		Referat III/3 Kommunalpolitik, politische Rhetorik und Öffentlichkeitsarbeit, Film und Ethik Artur Kolbe Tel: 303	
Referat I/3 Elektronische Datenverarbeitung Pierre Recklinger Tel: 335, Fax: 439		Referat II/4 Wirtschaft und Finanzen Dr. Claudia Schlembach Tel: 309		Referat III/4 Politische Grundlagen und Grundwerte, Schule und Bildung, Regionalbeauftragte Stefanie von Wining Tel: 492	
Referat I/2-1 Personal Inland Susanne Eckhorst Tel: 259, Fax: 426 Direkt der Geschäftsführung unterstellt		Referat II/5 Bildung und Erziehung Paula Bodensteiner Tel: 264		Referat III/5 Recht, Geschichte und Kultur Dr. Birgit Strobl Tel: 229	
2A-2 FINANZEN, DIENSTLEISTUNGEN, KONFERENZENZENTRUM Andreas Sturm Tel: 394, Fax: 480		Referat II/6 Technologie, Medien und Kultur, Jugend und Gesundheit Prof. Dr. Siegfried Höfling Tel: 246		Referat III/6 Familie, Frauen, Senioren, Religion und Gesellschaft, Integration Dr. Bok-Suk Ziegler Tel: 232	
Referat I/4 Beschaffung, Bau, Liegenschaften, Innere Dienste Norbert Holtz Tel: 288, Fax: 439		Referat II/7 Umwelt, Klima, Ländlicher Raum, Ernährung und Verbraucherschutz Silke Franke Tel: 226		Referat III/7 Ehrenamt und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Jugend im politischen Dialog Johann Fröhling Tel: 227	
Referat I/5 Haushalt, Finanzen und Controlling Andreas Sturm Tel: 394, Fax: 480		Referat II/8 Arbeit und Soziales, Demographischer Wandel, Familie, Frauen und Senioren Dr. Susanne Schmid Tel: 213		Referat III/8 Agrar-, Umwelt- und Energiepolitik, Verbraucherschutz Wolfgang Schwirz Tel: 238	
Referat I/6 Projektbewirtschaftung Ausland Stephanie Wilkinson-Ünlüer Tel: 282		Referat II/9 Politische Studien/ Wissenschaftliche Publikationen Barbara Fürbeth Tel: 315		Referat III/9 Europ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Erich J. Kornberger Tel: 493	
Konferenzzentrum München www.konfmuc.de Anja Scheerke Tel: 402, Fax: 407		Referat I/8 Archiv für Christlich-Soziale Politik (ACSP), Bibliothek, Informations- und Dokumentationsstelle Dr. Renate Höpfinger Tel: 279			
				Abteilung IV INSTITUT FÜR BEGABTENFÖRDERUNG	
				Prof. Hans-Peter Niedermeier Tel: 300/301, Fax: 403	
				Referat IV/1 Auslandstipendiaten Dr. Michael Czepalla Tel: 322	
				Referat IV/2 Promotions- und Hochschulförderung (HAW) Dr. Rudolf Pfeifferath Tel: 302	
				Referat IV/3 Univertitätsförderung Dr. Gabriele-Maria Ehrlich Tel: 330	
				Referat IV/4 Internationale Studiengänge (Uni) und MINT-Fächer (Uni) sowie Medienpolitik Prof. Hans-Peter Niedermeier Tel: 272	
				Referat IV/5 Journalistisches Förderprogramm für Stipendiaten/Fachforen Isabel Köfer Tel: 354	
				Referat IV/6 Altstipendiaten Prof. Hans-Peter Niedermeier Tel: 400	
				Abteilung V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Dr. Susanne Luther Tel: 280/281, Fax: 359	
				Referat V/1 Grundsatfragen, Büro Brüssel Dr. Dietmar Ehm Tel: 284	
				Referat V/2 Mittel-, Ost- und Südosteuropa, Kaukasus, Zentralasien Dr. Klaus Piesinger Tel: 440	
				Referat V/3 Afrika südlich der Sahara Klaus Liepert Tel: 366	
				Referat V/4 Lateinamerika Prof. Dr. Klaus Georg Binder Tel: 310	
				Referat V/5 Süd-/Südostasien Hanns Böhrer Tel: 287	
				Referat V/6 Nordostasien Willi Lange Tel: 326	
				Referat V/7 Nahe Osten, Nordafrika N. N. Tel: 475	
				Referat V/8 Evaluierung Klaus Heine Tel: 369	
				BILDUNGSZENTREN	
				Bildungszentrum Kloster Banz 96221 Bad Staffelstein Tel: +49 (0) 95 73 337-0, Fax: 337-733 www.klosterbanz.de Michael Möstlein	
				Bildungszentrum Wildbad Kreuth 83708 Kreuth Tel: +49 (0) 80 29 17-0, Fax: 17-534 www.wildbadkreuth.de Martin Reising	
				Hausanschrift: Hanns-Seidel-Stiftung e.V. Lazarettstraße 33 80636 München +49 (0) 89 12 58-0 +49 (0) 89 12 58-356 info@hss.de www.hss.de	

(출처: Hans-Seidel-Stiftung, 2015)

〈그림 4〉 한스 자이델 재단 조직도

- 중앙사무소인 뮌헨과 베를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67명, 크로이츠와 반츠에 위치한 중앙교육센터의 직원은 82명이며, 국외에 위치한 사무소의 직원이 34명임.

⑤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ell-Stiftung)

- 재단구성은 49명이며, 감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초기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는 없이 3명의 위원장(2명의 여성할당)이 임원진을 구성하였음.
- 2002년부터는 2명의 위원장(1명의 여성할당)으로 임원진이 운영됨.
- 조직은 국제협력, 국내 정치교육, 연구, 행정부서로 구성됨.

Organisationsplan der Heinrich-Böll-Stiftung e.V., Stand: 30. April 2015 Schumannstraße 8, 10117 Berlin T 030-28534-0 F 030-28534-109 www.boell.de info@boell.de, presse@boell.de, besuchergruppen@boell.de Kontakt: Nachname@boell.de			
Mitgliederversammlung 49 Mitglieder		Aufsichtsrat 9 Mitglieder	
Verband		Geschäftsführung	
Ralf Fücks Dr. Tamara Dr. Sekretariat: Anke Bremer (-105)		Barbara Unmüßig Jana Prossinger Sekretariat: Kathrin Klaua (-114)	
Gemeinschaftsaufgaben		Gremien und Fachbeiräte	
Geschlechterdemokratie Henning von Bergen		Freundinnen und Freunde Ulrike Ciochen (-112) Interne Redaktion Susanne Raukamp Christina Drifflern Projekt Fiona Dr. Kristina Heße Náveeva Saho Katja Hamel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Politische Bildung Inland	
Leitung: Steffen Heilmann Sandra Jackson Ina Bogusz (-302)		Leitung: Peter Siller Petra Steppeman (-248) Andrea Mesch, Vertretung: Carmen Herzog	
Regionaleferat Asien		Regionaleferat Lateinamerika	
Leitung: Karin Altmeyer Joel Pachaly Petra Zimmermann, Ella Sosaanto Clemens Kuntze, Inka Bosch Büro Bangkok: Manfred Hornung Büro Islamabad (zuständig auch für Afghanistan) Marion Müller Büro Neu Delhi: Dr. Axel Hammett-Silvers Büro Phnom Penh: Ali Al-Nasani Büro Peking: Christina Sadeler		Leitung: Ingrid Spiller Petra Tapia, Ines Thomssen, Iciar Quiñena, Julia Ziesche Büro Mexiko-Stadt: Annette von Schönfeld Büro Rio de Janeiro: Dr. Ingrid Bartelt Büro Santiago de Chile: Dr. Ingrid Wehr Regionaleferat EU/Nordamerika Leitung: Dr. Sergey Logodinsky Dr. Christine Peitz Eva Petela, Sigrid Lukaschus, Christian Schwab, Sabine Hämmerling Büro Brüssel: Klaus Linsenmeier Büro Istanbul: Dr. Ulrike Duffer (bis 04/15) Kristian Brakel (ab 05/15) Büro Prag: Eva van der Raak Büro Thessaloniki: Olga Drosow Büro Warschau: Irene Hahn-Fuhr Büro Washington: Bastian Herrmann	
Regionaleferat Afrika		Regionaleferat Ozeanien und Südamerika	
Leitung: Kiran Maaz-Albert Beate Adorf, Nicola Eggelhof, Nik Stelling Büro Kapstadt: Layla Ai-Zubaidi Büro Nairobi: Karin Seidel Büro Abidjan: Christine K Regionaleferat Nahost und Nordafrika Leitung: Dr. Antonie Nord Jan-Baake Baumann Birgit Arnhold, Sandra Nenninger, Michaela Birk, Nino Pevzlin Büro Tel Aviv: Kerstin Müller Büro Ramallah: Dr. René Wildängel Büro Tunis: Joachim Paul Büro Rabat: Dr. Dorothea Rischewski Büro Beirut: Dr. Bente Scheller		Leitung: Dr. Anne Ulrich Stephan Depping Archiv Grünes Gedächtnis Leitung: Dr. Christoph Becker Sozialpolitik Dorothee Schulte-Basta (ab 03/14) Dr. Lisa Beyer Heinrich Böll Leben und Werk (König) Dr. Joachim Schaubert Markus Schäfer Haas Langenbrinck Sigrun Reckhaus Ökologie und Nachhaltigkeit Dorothee Landgrebe, Vertretung: Stefanie Groß Rita Hoppe, Zoha Aghamohi Wirtschaft und Finanzen Ute Brömmel Monika Steins Stadtpolitik und Stadtentwicklung Sabine Drees Andrea Meinecke Programmteam III (Schwerpunkt: Digitaler Wandel) Demokratie Dr. Anne Ulrich Eike Botta-Vehharst Kulturpolitik und Neue Medien Christiane Bernstedt Christine Weiß Francesca Schmidt Weiterbildungskademie EreignisCampus Leitung: Christian Neuner-Dutenhofer Wolfgang Pohl (Kommunalpolitik) Paulina Berndt (Interne Weiterbildung) Marta Japónik, Barbara Heikämper	
Regionaleferat Europa/Transatlantik		Studienwerk	
Leitung: Ulrike Ciochen (-112) Interne Redaktion Susanne Raukamp Christina Drifflern Projekt Fiona Dr. Kristina Heße Náveeva Saho Katja Hamel		Leitung: Dr. Ulla Siebert Bärbel Karger (-400) Kathrin Hohmann-Mehring	
Unternehmensdienste		Studienwerk	
Kommunikation Leitung: Annette Maemel Natalie Krennath (-200)		Studienförderung Gabriele Felsbach Elisabeth Zylla Kerstin Simanis Anja Schleich Birgit Kahleu Angelika Steinborn Malgorzata Lewandowska Sabina Anastasio Christian Polzin Promotionsförderung Susanne Dittlich Layout/Marketing Eike Paul, Lisa Krutener, Aygen Schrauffeneiger (Besuchergruppen) Alumni-Programm Dr. Janina Bach Verbleibende (bis 04/15) Dr. Janina Bach Sabrina Horn Finanzen Lietta Thill	
Haushalt und Finanzen		IT/Technische Dienste	
Leitung: Patrick Berg Karin Suwert (-143)		Leitung: Bert Bloss Martina Kulla (-170)	
Operative Finanzbuchhaltung		Personal	
Michaela Kretsch Julia Rickmann Valerian Rautenberg Marianne Brahe Hans-Jörg Wilhelm Munkizul Togmid Silke Richter Richtlinien Dr. Gerd Frickenheim		Leitung: Petra Nibbe Server- und Netzbetrieb Dietmar Grabbert Gabriele Holländer Bettina Schwarze Christopher Golze Lutz Melich Petra Tesch Technische Dienste Martina Kulla, Annett Kretschmann, Aline Streiwilk, Mamadou Lamine Kane	

(출처: Heinrich-Boell-Stiftung, 2015)

〈그림 5〉 하인리히 뵐 재단 조직도

⑥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exemburg-Stiftung)

- 재단의 임원진은 1명의 위원장, 2명의 부위원장, 1명의 운영위원장 및 최소 8명에서 최대 1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됨.
- 조직은 재단운영부서를 비롯하여 3개의 주요 운영부서와 5개의 전문분야로

구성됨.

- 운영부서는 정치적 연계, 연방업무, 재정 및 IT부서로 구성됨.
- 전문분야는 정치교육 아카데미, 도서관 및 민주적 사회주의사, 사회분석 연구소, 학술, 국제협력부서로 구성됨.

Mitgliederversammlung															
Vorstand			Büro Vorstand/ Geschäftsführung				Wissenschaftlicher Beirat								
Vorsitzende: Dr. Dagmar Enkelmann Stellv. Vorsitzende: Thomas Händel, MdEP Stellv. Vorsitzende: Dr. Sabine Reiner			Heide Hummel Tel. 44310-161 Viola Siebeck Tel. 44310-139 Dr. Julian Pfennach Tel. 44310-125 Axel Krummey Tel. 44310-469 Dr. ERF Böhke Tel. 44310-473				Vorsitzende: Prof. Dr. Irene Dölling Stellv. Vorsitzende: Dr. Thomas Seibert								
Personalstab Lehren Dr. Annegret Rohwede Tel. 44310-469		Geschäftsführendes Vorstandsmitglied Dr. Florian Wels Tel. 44310-164		Büro Vorstand/ Geschäftsführung Dr. Julian Pfennach Tel. 44310-125 Axel Krummey Tel. 44310-469 Dr. ERF Böhke Tel. 44310-473		Innenrevision Jörn Jan Ledecker Tel. 44310-461 Surayyo Kabilova Tel. 44310-468		Baustab Leitung: Axel Krummey Tel. 44310-468		Focusstele Rosa Luxemburg Leitung: Dr. Evelyn Wittich		Datenschutzbeauftragter Gerhard Zichau Tel. 44310-415		Betriebsrat der RLS Vorsitzender: Peter Osthoth Stellv. Vors.: Dr. Jane Angerjörv	
Archiv/ Bibliothek Leiterin Christine Gohsammann Tel. 44310-131		Politische Kommunikation Leiterin Dr. Sabine Nuss Tel. 44310-448		Finanzen - IT - zentrale Aufgaben Leiter/ Stellv. Geschäftsführer Gerd-Rüdiger Stephan Tel. 44310-428		Bundesweite Arbeit (Regionalbüros) Leiter Dr. Lutz Kirschner Tel. 44310-146		Akademie für Politische Bildung Direktorin Silke Voth Tel. 44310-163		Institut für Gesellschaftsanalyse Direktor Dr. Mario Candelas Tel. 44310-179		Studienwerk Stellv. Direktorin Dr. Helia Hertzfeldt Tel. 44310-134		Zentrum für Internationalen Dialog Direktorin Wilfried Telkämper Tel. 44310-132	
Stellv. Leiter/ Bibliothek Uwe Fichtel Tel. 44310-166		Stellv. Leiter/ Öffentlichkeitsarbeit Stefan Thimm Tel. 44310-534		Stellv. Leiter/ Referat Rechnungswesen Hermann Tietz Tel. 44310-101		Stellv. Leiter Andreas Thomsen Tel. 44310-542		Stellv. Direktor/ Migration Kory Tímaz-Gohry Tel. 44310-471		Stellv. Direktorin Parteien und soziale Bewegungen Cornelia Hübner Tel. 44310-168		Stellv. Direktorin Dr. Karin Gabbert Tel. 44310-445		Stellv. Direktorin Dr. Karin Gabbert Tel. 44310-445	
Bibliothek Gerhard Zichau Tel. 44310-415		Sekretariat/ Budgetkoordination Karin Maliniaux Tel. 44310-123		Sekretariat Andrea Fuernberg/ Bernd Sachse Tel. 44310-156/ -537		Koordinatorin Externe Projekte Lucie Billmann/ Angela Müller Tel. 44310-429/ -158		Nachfolge- und Sozialbiologischer Umbau Steffen Kühne Tel. 44310-402		Stellv. Direktorin/ Zeitschrift Luxemburg (Hrsg. Vorstand RLS) Dr. Barbara Fried Tel. 44310-404		Mitarbeiterin des Direktors Hana Pfennig/ Lisa Albrecht Tel. 44310-537		Mitarbeiterin des Direktors Hana Pfennig/ Lisa Albrecht Tel. 44310-537	
Archiv Udo Wolter Tel. 44310-476 Andrea Paul Tel. 44310-422		Medienreferent Henning Heine Tel. 44310-130		Referat IT und Kommunikation Olaf Barz Tel. 44310-407		Zeitgeschichte und Geschichtspolitik Dagmar Russch Tel. 44310-158		Zentrale Einwahl/ Budgetkoordination Dagmar Russch Tel. 44310-158		Assistentin Direktorin Uta Tackenberg Tel. 44310-438		Förderprogramm Dr. Jane Angerjörv Tel. 44310-142		Planung, Monitoring, Evaluation David Kosselbacher/ Anja Schenk Tel. 44310-431	
Jörn Runkel Tel. 44310-423		Pressereferent Janina Hamilton Tel. 44310-479		Referat Verwaltung/ Vergabe Katrin Odeken Tel. 44310-411		Baden-Württemberg Kayser Schögel/ Carsten Krinn Tel. 07141-99792090		Internationale Politik Dr. Stefanie Kopp Tel. 44310-526		Demokratie und Staat Dr. Lutz Kirschner Tel. 44310-120		Ehemaligenarbeit Prof. Dr. Michael Rie Tel. 44310-240		Referat Globale Aufgaben und Sondermitter Udo Wulsdorf Tel. 44310-443 Andrea Paschel Tel. 44310-522	
Katharina Köpping Tel. 44310-424		Online-Redaktion Peter Osthoth Tel. 44310-169		Referat Veranstaltungsmangement Henning Obens Tel. 44310-435		Bayern Julia Klett Tel. 089-451996353		Neonazismus und Strukturen/ Ideologien der Ungleichwertigkeit Friedrich Bartsche Tel. 44310-183		Theorie und Geschichte sozialistischer Transformation Prof. Dr. Michael Rie Tel. 44310-167		Bildungspolitik/ Förderprogramm Dr. Marcus Heintz Tel. 44310-457		Referat Afrika Dr. Arndt Hoffmann Tel. 44310-444	
Karin Schmidt Tel. 44310-425		Publikationen Martin Beck Tel. 44310-241		Referat Haushalt/ Controlling Wolfgang Haack Tel. 44310-558		Bremen Norbert Schepers Tel. 0521-3929263		Europäische Politik Ramona Heine Tel. 44310-417		Friedens- und Sicherheitspolitik Dr. Erhard Crome Tel. 44310-185		Förderprogramm Christoph Lemmer Tel. 44310-136		Referat Asien Marlies Link Tel. 44310-155	
Linke Medienakademie Vorsitzende: Tilo Hehal Kontakt: http://www.linke-medienakademie.de		Referent für Öffentlichkeitsarbeit Ulrike Hengel Tel. 44310-463		Referat Michael Schumann-Stiftung Vorsitzende: Heide Vietze Kontakt: Dr. Jörn Schützumpf Tel. 030-29298433		Hessen Horst Cakar Tel. 069-27135977		Zeitgeschichte/ historisch-biographisches Lernen Dr. Cornelia Doppenhage Tel. 44310-129		Solidarische Ökonomie Dr. Judith Dehnen Tel. 44310-120		Förderprogramm Dr. Sandra Thame Tel. 44310-456		Referat Lateinamerika Dr. Karin Gabbert Angeli Isgründing Tel. 44310-440/ -460	
Karl Dietz Verlag Berlin Geschäftsführer: Dr. Jörn Schützumpf Tel. 030-29298433		Michael Schumann-Stiftung Vorsitzende: Heide Vietze		Niedersachsen Barbel Reilmann Tel. 0511-2929934		Nordrhein-Westfalen Heide Stütz/ Inger Nickel Tel. 0203-3177293		Geschlechterverhältnisse Dr. Eva Schärer Tel. 44310-133		Internetredaktion Dr. Markus Euskirchen Tel. 44310-462		Förderprogramm Songül Bils Tel. 44310-418		Referat Lateinamerika Dr. Karin Gabbert Angeli Isgründing Tel. 44310-440/ -460	
Gesprächskre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benszeit - Arbeitszeit • Parteien und soziale Bewegungen • Nachbarschaft und regionaler Entwicklung • Rechts • Kulturforum der RLS • Geschichte • Philosophie und Bildung/ Kollodium Wissenschaft • Arbeitsgesetzbuch/ Arbeitsrecht • Städtepolitik • Gewerkschaf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gration • Bildungspolitik • Landesreferat • Politische Bildung • Frieden und Sicherheit • Frauen und Politik • Geschichte für die Zukunft • Klassen- und Sozialanalyse • Europapolitik 		Rheinland-Pfalz Dr. Salvador Zehausen Tel. 06131-5274703		Politische Weiterbildung Renate Höner Tel. 44310-149/ -141		Das Öffentliche/ Sozialstrukturanalyse Horst Kahrs Tel. 44310-436		Internationale Politik Dr. Michael Rie Tel. 44310-120		Förderprogramm Songül Bils Tel. 44310-418		Referat Lateinamerika Dr. Karin Gabbert Angeli Isgründing Tel. 44310-440/ -460	
Landesstiftungen/ Stiftungsverb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sa-Luxemburg-Stiftung Baden-Württemberg - Forum für politische Bildung und Kultur e.V. • Kurt-Eisner-Verein für politische Bildung - Rosa-Luxemburg-Stiftung Bayern • Heide Panke e.V. - Rosa-Luxemburg-Stiftung Berlin Tel.: 030-47538724 • Rosa-Luxemburg-Stiftung Brandenburg e.V. Tel.: 0331-8170432 • Rosa-Luxemburg-Stiftung Bremen - Bremer Forum für Bildung, Gesellschaftsanalyse und -Kritik e.V. • Rosa-Luxemburg-Stiftung Hamburg - Forum für Analyse, Kritik und Utopie e.V. • Rosa-Luxemburg-Stiftung Hessen - Forum für Bildung und Analyse e.V. • Forum für politische und interkulturelle Bildung e.V. - Die Rosa-Luxemburg-Stiftung in M.-V. • Rosa-Luxemburg-Stiftung Niedersachsen e.V. • Rosa-Luxemburg-Stiftung NRW e.V. • Peter-Jannat-Gesellschaft e.V. - Die Rosa-Luxemburg-Stiftung im Saarland Tel.: 0341-9608531 • Rosa-Luxemburg-Stiftung Sachsen e.V. • Rosa-Luxemburg-Stiftung Sachsen-Anhalt e.V. • Rosa-Luxemburg-Stiftung Schleswig-Holstein - Werkstatt Utopie und gedächtnis e.V. • Rosa-Luxemburg-Stiftung Thüringen e.V. 		Saarland Ralf Beyer/ Gisela Ruge Tel. 0681-5923892		Politikmanagement Stefan Kalming Tel. 44310-147		Feministische Gesellschafts- und Kapitalismusanalyse Katharina Puhf Tel. 44310-472		Politische Ökonomie der Globalisierung Dr. Thomas Szabowski Tel. 44310-129		Stipendiaten/ Arbeitskreise des Studienwerkes		Referat Naher und Mittlerer Osten, Nordafrika, Türkei Naher und Mittlerer Osten, Türkei Jörg Schultz Tel. 44310-154		Referat Lateinamerika Dr. Karin Gabbert Angeli Isgründing Tel. 44310-440/ -460	
Legen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hrenamtliche Strukturen • Leihungsstrukturen • Hauptamtliche Strukturen • Treuhänderfunktionen 		Sprecher/Innenreferent der Landesstiftungen Vorsitzende: Ulrike Dotjahn Stellv. Vorsitzende: Stefanie Götzke		Thüringen Bernd Löffler Tel. 0361-5504115		Kommunalpolitik Katharina Weiss Tel. 44310-470		Sozialökologische Transformation Dr. Tadzio Müller Tel. 44310-430		Prekariätforschung Hilmar Paschke Tel. 44310-404		Auswahlkreis des Studienwerkes		Referat OECD, EU, Vereinte Nationen und Nordamerika Johanna Busener Tel. 44310-432	
Regionalreferat Ost-, Mittel-, und Südosteuropa Udo Georgiev Tel. 44310-446		Harald-Breuer-Stiftung Vorsitzende: Dr. Evelyn Wittich		Mecklenburg-Vorpommern Dr. Michael Herms/ Anja Gerst Tel. 0381-4092450		Jugendbildung Ulrich Schuppel/ Suzanne Vogel-Vitzthum Tel. 0431-2607 943		Sozialökologische Transformation Dr. Tadzio Müller Tel. 44310-430		Kulturforum der RLS Michaela Klingberg Tel. 44310-160		Regionalreferat Ost-, Mittel-, und Südosteuropa Udo Georgiev Tel. 44310-446		Europäische Union, Brüssel/ Dr. Martin Ströwen Dr. Christoph Köhn UNO/ Nordamerika, New York Dr. Stefanie Ehmser/ Dr. Albert Schabert	

Rosa-Luxemburg-Stiftung Gesellschaftsanalyse und Politische Bildung e. V. • 10243 Berlin • Tel. 030-44310-0 • Fax 030-44310-182 • www.rosalux.de • E-Mail: info@rosalux.de • E-Mail: Nachname@rosalux.de • Tel.: 030-44310-

(출처: Rosa-Lexemburg-Stiftung, 2015)

〈그림6〉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조직도

- 2014년 기준 재단 직원은 211명으로 정규직은 183명이었으며, 지역 사무소는 19개, 국제사무소는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각 재단은 내부적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institute)을 별도로 두고 정책개발 기능을 보다 더 특화시켜 수행토록 하거나, 전체 부서 가운데

일부를 정책개발 관련 업무부서로 특정하여 운영.

4) 주요 정책개발 활동 사례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 2014년에는 토론회, 전문학회, 박람회 등 총 2,800여회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약 22만 명이 참여하였음.
 - 2014년 기준 분석집, 연구논문, 잡지 등 총 1,000여 권의 출판물을 발행함.
 - 총 2,868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287명의 외국인임.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 2014년 자료 기준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발간된 도서는 48권이었고, 1,642회의 행사가 개최되었음.
 - 지원 장학생 수는 12,681명.
 - 아카데미에서 개최한 164회의 행사에는 15,596명이 참여.
- 한스 자이델 재단(Hans-Seidel-Stiftung)
 - 2014년 기준으로 정치 및 역사 아카데미의 행사는 82회 개최되었으며 6,212명이 참여.
 - 정치교육 연구소의 행사는 1,324회 개최되었고 43,849명이 참석함.
 - 영재교육 연구소의 행사는 170회 개최되었고 4,175명이 참석함.
 - 국제협력 연구소에서는 4,447회의 행사가 개최되었고 208,850명이 참여함.
 - 국제컨퍼런스는 91회 개최되었고 6,078명이 참석하였음.

5) 정부의 국고보조 여부, 재정현황 및 조달방법

- 연방의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의 예산에서 정당과 연계된 정치재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각 정치재단의 규모에 따라 지급됨.

- 2014년 지급된 재정은 총 4억 6,600만 유로임.
- 2014년 기준으로 각 정치재단에 지급된 재정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사민당) 1억 4,390만 유로, 콘라드 아데나워(기민당) 1억 3,000만 유로, 프리드리히 나우만(자민당) 및 하인리히 뵐(녹색당)이 각각 4,940만 유로, 한스 자이델(기사당) 4,750만 유로, 로자 룩셈부르크 4,810만 유로가 지급되었음.
- 이러한 지원금은 정부 부처의 예산에서 지급되며, 경제협력 및 발전부(BMZ), 내무부(BMI), 환경부(BMU), 외무부(AA)가 분담함.
- 2014년 각 부처의 분담금액을 살펴보면 경제협력 및 발전부가 2억 5,440만 유로, 내무부가 1억 1,600만 유로, 환경부가 8,070만 유로, 외무부가 1,720만 유로를 담당하였음.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 2010년 기준 재정의 98.3%가 정부 재정을 통해 마련되며, 나머지가 회비 또는 개별 후원 등으로 마련됨.
 - 공공 재정의 78%는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금액임.
 - 재정의 0.15%는 기부금, 0.95%는 회비로 충당하고 있음.
 - 재정의 약 22%는 재단의 연구지원금으로 지출됨.
 - 2013년 결산 기준 정부지원금 총액은 134,040,632유로였으며, 기부금은 330,882유로, 회비는 2,032,883유로, 기타 수입 1,718,703유로 등으로 구성됨.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 사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3년 결산기준 총 152,949,600 유로의 수입이 있었음.
 - 정부 지원금이 147,471,126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732,590유로, 회비 737,068유로 등으로 구성됨.
- 한스 자이델 재단(Hans-Seidel-Stiftung)

- 2013년 결산 재정수입 총액은 59,246,173유로였고, 이 중 정부지원금은 51,987,320유로, 기부금 23,469유로, 회비 968,112유로였음.
-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ell-Stiftung)
 - 2014년 결산 재단의 수입은 총 54,908,647유로였고 지출은 총 52,951,647유로였음.
-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exemburg-Stiftung)
 - 2014년 결산 재단의 총 수입은 48,420,769유로였으며, 이중 정부의 재정지원이 48,284,774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부금이 8,892유로, 회비가 15,090유로, 기타 수입이 140,375유로였음.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Stiftung)
 - 2014년 결산 재단의 총 수입은 5,430만 유로였음.(정부의 재정지원 5,020만 유로, 주 재정 100만 유로, 기타 수입 310만 유로)

3. 미 국



미국 연구관 : 박천호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1) 선거전 정부재정운영상황 공개 여부 및 관련법

- 미국의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은 선거 이전의 정부 재정 상황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연방 재무부는 연방법이 규정한 바에 의해 행정부의 활동 및 재정상황을 매년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1994년에 제정된 『정부관리개혁법(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 of 1994)』은 각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무부와 관리예산처는 제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각 정부 기관들의 지출 및 관련된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재무제표(Governmentwide Financial Statement)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정부관리개혁법

4편 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

405조 연례재정보고(Annual Financial Reports)

a.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a) 1997년 3월 1일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매년마다 이 장의 901(b)항에 명시된 행정기관의 장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부서의 회계 및 활동을 포괄

하는 재무제표를 관리예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c) 국가재무제표(Governmentwide Financial Statement)

1. 1998년 3월 31일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매년마다 재무부장관은 관리예산처장과의 협조 하에 이전 회계연도 동안 연방정부의 행정부에 소속된 모든 부서의 회계 및 활동을 포괄하는 재무제표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로,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 뉴브런스윅 주는 각각 2004년과 2014년에 주 정부로 하여금 선거 전 정부의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법률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온타리오 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재정에 대한 선거 전 보고서

10. (1)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는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온타리오 주의 재정상황에 대한 선거 전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2004, c. 27, s. 10 (1))

내용

(2) 선거 전 보고서는 가장 최근의 재정 계획으로부터 갱신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정 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 사용된 거시경제적 전망 및 가정과 그러한 가정들과 전망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한 기술.
2. 재정 계획에 정리된 온타리오 주의 예산 및 지출의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한 주 예산 및 지출의 추정치.
3. 세부 조항 5의 (4)에 기술된 예비비에 대한 세부 사항.
4. 주의 총생산 대비 주의 부채 비율에 대한 정보. (2004, c. 27, s. 10 (2))

감사관의 검토

(3) 감사관은 선거전 보고서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즉시 이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2004, c. 27, s. 10 (3, 5))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법률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뉴브런스윅 주, 캐나다)

정기선거 실시 연도의 재정 보고

- 18 (1) 정기 선거 실시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재무부 장관은 감사관 법 11조에 의거하여 감사관이 소견을 제출한 지난 회계연도의 주 재무제표를 공개하여야 한다.
- (2) 정기 선거 실시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재무부 장관은 현재 회계연도에 대한 주요 추정치를 포함하는 최신 버전의 다년간 재정 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 (3) 이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된 다년간 재정 계획은 등록 정당이 해당 법의 2장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선거 공약과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선거 시기의 정부재정운영상황 공개 사례

- 미국의 경우, 선거 시기 혹은 이전에 정부로 하여금 재정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례 역시 없음.
- 참고로,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에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법률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이 제정된 이후, 주 재무부는 2014년 9월 22일에 예정된 주의 정기 선거 90일 이전인 6월 24일에 “선거 전 경제 및 재정 전망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발표 하였음. 이 보고서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법에서 규정 하는 바대로 각 정당들이 선거공약의 비용을 추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된 것임.
- 이 보고서는 2014-2015년의 회계연도로부터 2017-2018년까지의 경제 및 재정 전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당들이 선거공약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세입 및 세출 지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²²³⁾

223) Department of Finance,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2015 to 2017-2018. 2014. 6. 24. <http://www2.gnb.ca/content/dam/gnb/Departments/fin/pdf/Publications/PreElectionEconomicAndFiscalOutlook.pdf> (검색일: 2015. 8. 12)

3) 정부나 출연기관 등의 주체별 정당공약 재정추계 분석상황

- 미국의 정부 및 연관 기관들이 각 정당의 공약의 예상 소요비용 등을 추산하여 이에 대한 재정추계를 분석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음.
- 2008년 경제위기와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 시 공화당 롬니 후보의 보건의료보험 부문 정책(Affordable Care Act, ACA의 폐지)이 실시될 경우 재정 상황 변화에 대하여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초에 ACA가 폐지될 경우, 향후 2022년까지 10년 간 8,9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이 감소하지만, 약 1조 달러의 정부 수입이 마찬가지로 감소함에 따라 추가로 약 1,09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하였음.²²⁴⁾
- CBO가 결과적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이행에 따른 향후의 재정 추이 변화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하원에서 심의 및 의결된 법안의 향후 효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이를 선거 공약의 비용 및 재정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4) 재정운영상황 등의 공개가 선거공약작성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2012년 선거에서 세제개편안 등의 조세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거 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음. 그러나 이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정부 또한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재정운영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상

224)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2, "Letter to Honorable John Boehner Speaker of the House."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2th-congress-2011-2012/costestimate/43471-hr6079_0.pdf,
검색일: 2015. 8. 15)

황이 선거공약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상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의 경우에는 각 정당이 주 재무부에서 공개한 재정 보고서 및 향후 경제 및 재정 전망을 근거로 하여 선거공약의 비용을 추산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다음은 (캐나다) 자유당의 2014년 뉴브런스윅 주 총선 공약집에서 공약 이행에 따른 비용 및 향후 재정 변화에 대한 추산을 공개한 것임.²²⁵⁾
- 다음 표의 1번째 줄은 정부에서 발표한 향후 재정 전망에 근거한 재정적자(흑자) 예측치이며, 다음의 4번째 줄은 공약 이행에 따른 세입 및 비용 절약에 따른 추가 수입을 나타냄. 6, 7, 9번째 줄은 공약 이행에 의한 추가 예상 지출이며, 마지막 줄의 숫자는 공약에 따른 총 정부 순부채의 변화를 예측한 것임.

225) New Brunswick Liberal Party, 2014, "2014 New Brunswick Liberal Party Platform," p.7.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impact on the province's finances by implementing our platform through the next six budgets.

	\$ millions					
	2015-16	2016-17	2017-18	2018-19 ¹	2019-20 ¹	2020-21 ¹
Projected surplus (deficit) in base budget	(387.0)	(354.0)	(181.0)	(102.5)	(19.5)	68.5
Revenue measures in platform	56.6	63.6	64.2	64.8	65.4	66.0
Revenue impacts from platform commitments	52.7	90.4	91.5	149.9	148.8	146.0
Savings measures in platform	34.0	34.0	34.0	34.0	34.0	34.0
Strategic review	0.0	250.0	250.0	250.0	250.0	250.0
New program spending in platform	(99.1)	(169.6)	(181.6)	(166.6)	(179.1)	(153.1)
Contingency fund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Ordinary account surplus (deficit)	(492.8)	(235.6)	(72.9)	79.6	149.6	261.4
New capital spending in platform	(150.0)	(157.0)	(159.0)	(159.0)	(150.0)	(150.0)
Impact on net debt ²	(642.8)	(392.6)	(231.9)	(79.4)	(0.4)	111.4

Notes:

1: The government's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provided revenue and expenditure projections through 2017-18. For the purposes of this table, we have applied the average annual rates of growth in those projections from 2014-15 through 2017-18 in revenue and expenditure to project base budget figures for 2018-19, 2019-20 and 2020-21.

2: Assumes base capital spending built into the government's fiscal framework for future is similar to 2014-15 levels.

5) 정부의 재정추계 및 공약분석 공개관련 제도개선 의견(캐나다 사례)

-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의 경우, 정부의 선거 전 재정보고 및 정당 공약의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영향에 대한 법률이 작년엔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가. 선거 전 재정 보고

- (캐나다) 작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한 이후, 주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Roger Melanson은 주 재무부는 선거 전 정부 재정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법률,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을 폐기하더라도 계속해서 분기별 재정 상황을 보고할 것이며, 선거 전 재정보고를 강제하는 법률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전 보수당 정부의 재무 장관이었던 Blaine Higgs는 선거 전 재정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사라질 경우, 주 정부는 장차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률의 존속을 주장하였음.²²⁶⁾

나. 정당 공약의 비용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영향의 추계

- (캐나다) 2014년의 총선에서 공개된 정당 공약의 비용에 대한 추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던 바 있음.
-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결과를 회계 법인에 제출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나, 정당들이 제출한 추정안을 검토한 회계법인들은 모두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 이는 각 정당들이 제출한 추계의 방식이 많은 부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임.
- 집권 이후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현 집권당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지적됨. 집권당은 현재 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야당의 경우 정확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임.²²⁷⁾

226) <http://www.cbc.ca/news/canada/new-brunswick/roger-melanson-blaine-higgs-spar-over-fiscal-transparency-bill-1.2990007> (검색일: 2015. 8. 15).

227) <https://aimsblogst.wordpress.com/2014/09/16/eye-on-new-brunswick-costing-election-promises/> (검색일: 2015. 8. 22).

- 또한, 자유당은 보수당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할 때, 법률의 정하는 바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보수당은 자유당이 공약의 전체 비용을 축소하여 추정하였다고 비판하였음.
-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법률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를 입안한 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의 당수 Dominic Cardy는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면서, 이는 법률의 제정으로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인들의 진실성과 그들이 집권 이후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자발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²²⁸⁾

2. 국가 ·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1) 국가 · 정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소 현황 및 관계법

- 2014년 기준으로 1,830개 가량의 정책연구소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396개가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음.²²⁹⁾
- 정책연구소의 기관 소속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음. 소속 기관의 유무와 그 유형에 따라 정부 소속, 정당 소속, 사기업 소속, 대학 기관, 상기의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싱크탱크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²³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정책연구소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머지의 상당수는 국가 혹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정책연구소임.
- 대부분의 정책연구소는 내국세법 501(c)(3)에 규정된 바 비영리집단으로서

228)

<http://www.cbc.ca/news/canada/new-brunswick/accounting-firms-aren-t-endorsing-campaign-promises-1.2767153>
(검색일: 2015. 8. 22)

229) McGann, James G. 2014. "2014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p.10, p.57.

230) McGann, James G. 2005. "Think Tanks and Policy Advice in the US."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내국세법에 명시된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를 받을 수 있음.

- 미국에서 정부와 연계된 정책연구소나 정당 소속의 정책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적음. 미국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와 미국 의회 내의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하와이의 동서 문화센터(East-West Center) 등이 대표적으로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정책 연구소임.²³¹⁾
- 공식적으로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정책연구소는 거의 없음.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와 신민주당 네트워크(New Democrat Network) 등이 민주당과 연계된 싱크탱크로 분류할 수 있음.²³²⁾

2) 주체별(정당, 재단) 정책연구소 설립연도 및 역사(목표 및 이념)

- 정책연구소들의 성향은 창립 목표 및 추구 이념에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객관적 연구에 근거한 정보의 전달과 같이 뚜렷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다음의 표는 주요 정책연구소들의 설립연도 및 이념적 성향을 정리한 것임.²³³⁾

기 관	설립연도	이념적 성향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43	보수
Brookings Institution	1916	중도좌파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10	중도좌파
Carter Center	1982	중도좌파
CATO Institute	1977	자유지상주의/보수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04	진보

231) McGann, James G. 2014. "2014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p.114.

232) McGann, James G. 2014. "2014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 p.129.

233) McGann, James G. 2005. "Think Tanks and Policy Advice in the US."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pp.5-6, 11-13.

기 관	설립연도	이념적 성향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1972	진보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62	중도우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21	중도
Economic Policy Institute	1986	진보
Economic Strategy Institute	1989	중도
Heritage Foundation	1973	보수
Hoover Institution	1918	보수
Hudson Institute	1961	보수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963	진보
New America Foundation	1999	중도좌파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1989	중도
RAND Corporation	1948	중도우파
Resources for the Future	1952	중도
Urban Institute	1968	중도좌파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1985	중도우파
Worldwatch Institute	1974	진보

-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 PPI)는 1989년에 월 마셜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클린턴의 뉴데모크라트(New Democrats)에게 미국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진보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²³⁴⁾
-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1973년에 창립된 연구 및 교육 재단으로, 기업의 자유, 정부의 제한, 개인의 자유, 미국의 전통적 가치, 강한 국가안보 등의 원리에 근거한 보수적인 공공정책을 구성,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목표는 미국의 건국 원리와 이념을 보존 및 강조되어야 한다는 헤리티지 재단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이러한 원리에 있다고 주장함.²³⁵⁾

234) <http://www.progressivepolicy.org/about/> (검색일: 2015. 9. 2)

235) <http://www.heritage.org/about/> (검색일: 2015. 9. 2)

3) 정책연구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²³⁶⁾

- 미국의 정책연구소는 주로 1인의 소장 혹은 최고경영자에 의해 대표됨. 싱크 탱크의 소장은 프로젝트, 싱크탱크의 규정의 적용, 신규직원 임용과 같은 싱크탱크의 일상적인 업무에 책임이 있으며, 2인 이상의 부소장 혹은 연구실장들이 소장을 지원함.
- 소장은 해당 기관의 이사회 혹은 평의회에 업무에 대한 설명 혹은 해명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짐. 이사회는 주로 재계, 학계의 주요 인사, 전직 백악관 간부, 전직 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소장의 임명, 예산 승인, 장기계획 수립 등에 책임이 있음. 또한, 이사회는 수행 프로그램이 해당 기관의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고, 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이사회는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함.
- 정책연구소 내의 조직을 구성하고 실무자들에게 직급을 부여하여 이들을 배치하는 방법은 다양함. 예를 들어, 헤리티지 재단의 경우 연구원들을 경제적 자유 및 기회(the Institute for Economic Freedom and Opportunity), 가족, 공동체, 기회(the Institute for Family, Community, and Opportunity),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The Kathryn and Shelby Cullom Davi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등 3개의 연구소로 배치하여 연구원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음.²³⁷⁾
- 연구원들은 주로 상근직(resident fellows/scholars)과 방문직(visiting fellows), 비상근직(associates/adjunct or nonresident scholars) 등으로 분류됨.

236) McGann, James G. 2005. "Think Tanks and Policy Advice in the US."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pp.13-15.

237) <http://www.heritage.org/about> (검색일: 2015. 9. 2)

4) 정부의 국고보조 여부, 재정현황 및 조달방법

가. 국고보조 등 자금 조달 방법

- 미국의 정책연구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관 운영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정부 내에 설립된 정책연구소 외에 독립기관들은 내국세법의 501(c)(3)에서 정하는 비영리집단으로 분류되어,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재정 운영 상황 및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음. 또한, 기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이는 정책연구소 전체 수입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재원은 개인 혹은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충당됨.
- 브루킹스 연구소는 2014년 수입의 약 86%를 기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²³⁸⁾ 헤리티지 재단의 경우, 2013년 수입의 약 90%가 개인, 재단,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이며, 이 가운데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함.²³⁹⁾ CATO 연구소의 2014년 수입 가운데 약 95%를 개인, 재단,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음.²⁴⁰⁾ 미국기업연구소의 경우 기관의 특성상 여타의 싱크탱크에 비해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며(53%), 기업 기부금의 비중이 높음(20%).²⁴¹⁾
-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대형 정책연구소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이는 2013년 수입의 8%에 불과함.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 기관의 2013년 수입에서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며, 타국 정부 등 해외로부터의

238) <http://www.brookings.edu/~media/About/Content/annualreport/2014annualreport.pdf> (검색일: 2015. 9. 6)

239) http://thf_media.s3.amazonaws.com/2014/pdf/2013annualreport.pdf (검색일: 2015. 9. 6)

240) <http://object.cato.org/sites/cato.org/files/pubs/pdf/annual-report-2013.pdf> (검색일: 2015. 9. 6)

241) http://www.aei.org/wp-content/uploads/2014/01/-aei-annual-report-2013_08452994952.pdf (검색일: 2015. 9. 6)

재원 및 재단,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이 수입의 약 92%를 차지함.²⁴²⁾

나. 재정현황

○ 다음의 표는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CATO 연구소, 세계자원연구소 등에서 공개한 해당 회계연도의 총 사업수입, 총사업비용, 순자산 등의 재정현황을 정리한 것임.

(단위: US Dollar)

기관	총 사업수입	총 사업비용	순자산
Brookings Institute (2014)	\$107,562,000	\$98,984,000	\$443,217,000
Heritage Foundation (2013)	\$84,940,547	\$77,128,395	\$194,250,663
CATO Institute (2014)	\$29,145,000	\$25,290,000	\$62,588,000
World Resource Institute (2013)	\$48,038,000	\$47,875,000	\$70,014,000

242) http://www.wri.org/sites/default/files/WRI_2013_Annual_Report_fulldraft_100314.pdf (검색일: 2015. 9. 6)

4. 호 주



호주 연구관 : 김리라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1) 선거전 정부재정운영상황 공개 여부 및 관련법

- 호주 국회에는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국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를 두어 예산주기 및 재정정책을 분석하여 얻은 그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받음(국회서비스법 64B²⁴³).
- 선거전에 정당에서 정책비용을 국회예산처에 요구하면 국회예산처는 지체 없이 정당의 요구사항과 정책비용을 공개적으로 게재해야 함(국회서비스법 64L조2).
 - 일반 선거의 선거기간(caretaker period²⁴⁴)중에 국회 정당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원은 국회예산처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정당 정책의 비용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국회서비스법 64J조2)²⁴⁵. 비용을 요구하는 때에 형식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세한 조항에 대한 세부 비용과 정책의 목적을 명시해야 함(국회서비스법 64J조6).
 - 국회예산처가 선거일 전에 정책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a) 국회예산처는 선거일 전에 위 상황과 그 효과에 대해 공포해야하고, (b) 선

243) Parliamentary Service Act 1999

244) caretaker period란 일반선거에서 선거영장이 발부되는 시기부터 해당 선거 선거일에 개표소 닫는 시간까지를 일컫음.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part3)

245) 무소속 의원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정책의 비용을 마련하도록 국회예산처에 요구할 수 있으며(국회서비스법 64J조5) 그 방법은 위와 동일함(국회서비스법 64J조9).

거일에 공개요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며, (c) 선거일 혹은 선거일 이후에 국회예산처는 정책비용 산정요청 및 공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음.(「국회서비스법」 64L조 3)

2) 선거 시기의 정부재정운영상황 공개 사례²⁴⁶⁾

- 국회예산처는 일반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국회에 등록된 정당에 대해 선거후보고서(Post-election report)를 작성하여야 함(국회서비스법 64MA조1).
 - 그 내용은 국회예산처의 판단 하에 (a) 해당 정당의 선거공약이, (b) 총 선거공약에 든 비용이 연방정부의 현 예산부터 향후 3년간 예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추산하고, 이를 통해 국회예산처는 (a) 선거기간에 정당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b) 복수 정당이 합작하여 정책비용을 요구하였을 때와 같이 해당 선거에 참여한 등록된 정당의 수를 다시 검토할 수 있음.
- 각 정당은 선거일 전날 오후 5시 전까지 해당 정당이 선거 후에 달성하기로 제시한 정당공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국회예산처에 서면으로 제출함(국회서비스법 64MA조3). 그러면 선거일 다음날 국회예산처는 (a) 서면으로 제출된 정당공약 리스트와, (b) 만약 정당이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이에 갈음하는 의견서를 공공에 게재함(국회서비스법 64MA조4).
 - 정당공약 리스트 및 국회예산처의 의견서는 국회예산처 웹사이트²⁴⁷⁾에서 확인할 수 있음.

246)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예산처 부분에 올라온 2013년 선거에 대한 선거후 보고서(Post-election report of election commitments) 참고.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Budget_Office/2013_Election 2015년 8월 검색.

247) 호주 국회예산처 홈페이지 주소.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Budget_Office 2015년 8월 검색.

- 일반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고 30일이 지나기 전 기간 동안에 선거후 보고서가 준비되는 대로 국회예산처에서는 이를 공포해야 함. 이를 공포하기 적어도 48시간 전에 국회예산처에서는 각 정당에 해당 정당공약이 있는 부분의 보고서 부분을 제시해야 함(국회서비스법 64MC조)
 - 각 정당은 국회예산처의 리스트를 받은 지 사흘 안에 국회예산처에 리스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함.



〈그림〉 2013년 선거후보고서를 볼 수 있는 웹페이지 첫 화면²⁴⁸⁾

3) 정부나 출연기관 등의 주체별 정당공약 재정추계 분석공개상황²⁴⁹⁾

- 1998년부터 「예산공개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에 따라 선거전

248) 2013년 선거후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웹페이지 주소.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Budget_Office/2013_Election 2015년 8월 검색.

249) ‘호주의 선거전 정책공약 재정추계 메커니즘(Pre-election Policy Costing Mechanism in Australia-Whitehall in Year Five of the Coalition :Lessons from Elsewhere) ‘ 보고서, Institute for Government, March, 2014.

http://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inal%20-%20Australia_0.pdf 2015년 8월 검색.

재무부에서 각 정당이 제출하는 정책의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음. 이 현장은 정치적 투명성과 선거 매니페스트를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음과 같은 약점이 있었음.

- 정책재정비용이 자동적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정당이 정책을 비용으로 산정,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국민의 심판을 덜 두려워하게 되고,
 - 이 과정이 선거 시작 전 4-6주안에 급하게 진행되어 정당이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수정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 두 개의 큰 정당에만 해당될 뿐 중소정당과 무소속 의원은 이를 활용할 수 없었음.
- 이에 2010년 선거 전에 이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새로운 국회예산처를 설립하여 이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함.
-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등하게 데이터 정보와 시스템 활용에 접근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정책재정비용 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정당은 정책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정책토론을 활성화시키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책개발 과정의 좋은 시작점이 됨.

4) 재정운영상황 등의 공개가 선거공약작성에 미치는 영향

-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통해 이전에는 정치인과 재정부 장관만이 알 수 있던 정책비용과 실행상황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됐다(250) 공공의 정책토론을 이끌어낸다는 의미를 가짐.

250) 호주의 선거전 정책공약 재정추계 메커니즘(Pre-election Policy Costing Mechanism in Australia-Whitehall in Year Five of the Coalition :Lessons from Elsewhere) ‘보고서, Institute for Government, March, 2014.
http://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inal%20-%20Australia_0.pdf 2015년 8월 검색.

- 하지만 정책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정책토론을 이끌어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

5) 정부의 재정추계 및 공약분석 공개관련 제도개선 의견

- 2014년에 발간된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의 보고서에 따르면²⁵¹⁾ 호주 재정추계 및 공약분석을 맡고 있는 국회예산처의 공개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음.
 - 선거주기에 정책비용이 공개되고 나면 정당은 국회예산처의 감사를 덜 의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선거공약 형성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경쟁 정당이 제시한 정책의 비용을 더 부풀리거나 비현실적으로 만드는데 공개제도를 악용할 수 있음.
 - 국회예산처는 실행비용을 포함한 정책제안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자세한 의견이나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반면, 정책형성 과정에서 비재정적 부분이나 정책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같은 부분은 고려하지 못함.

2. 국가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1) 국가정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소 현황 및 관계법

- 주요전략과 국방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정부의 정책연구소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 Strategy public Institute)를 두고 있음. 정책

251) '호주의 선거전 정책공약 재정추계 메커니즘(Pre-election Policy Costing Mechanism in Australia-Whitehall in Year Five of the Coalition :Lessons from Elsewhere) ' 보고서, Institute for Government, March, 2014.
http://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inal%20-%20Australia_0.pdf 2015년 8월 검색.

연구소의 운영과 방침은 「연방과 기업에 관한 법 1997 (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1997)」에 따라야 하며 연구소의 대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앤서머스(Anne Summers) 리포트에서는²⁵²⁾ 연구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고 있으며, 동 리포트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취하는 연구소로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와 로이 국제 정책 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를 꼽고 있음.
- 주요 정당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공식연구소인 치플리 리서치 센터(Chifley Research Centre) 및 노동당과 느슨한 연계를 맺고 있는 호주 페이비언 소사이어티(Australian Fabian Society)가 있음. 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에는 멘지스 리서치 센터(Menzies Research Centre), 국민당에는 페이지 리서치 센터(Page Research Centre)가 있음.

2) 주체별(정당, 재단) 정책연구소 설립연도 및 역사(목표 및 이념)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 Strategy Public Institute)²⁵³⁾는 2001년에 호주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호주 내의 전략 전문가를 대담, 연구에 참여시키고 연구결과가 공공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전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적 이슈에 대해 호주가 취할 관점을 고안해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음.
-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²⁵⁴⁾는 정부와 시장을 아우르는 이슈를 비

252) 특별기획 호주 싱크탱크에 대한 보고서(An incisive guide to Australia's think tanks), Anne Summers Report, 42p, <http://www.annesummers.com.au/pdf/asr11/thinktaenks.pdf> 2015년 9월 검색.

253) 호주전략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주소, <https://www.aspi.org.au/> 2015년 9월 검색.

당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정부와 시장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멜버른 대학교에서 그라탄길(Grattan Street)에 연구소 공간을 제공했고 도로 이름을 따서 연구소 이름이 탄생하였음. 이 연구소는 2008년에 설립되어,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 검증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정확성, 정부가 호주시민의 삶 증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을 연구소의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음.

- 로이 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²⁵⁵⁾는 2003년에 호주의 유명한 사업가인 프랭크 로이(Mr Frank Lowy AC)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는 현재까지 연구소에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호주 페이비언 소사이어티(Australian Fabian Society)²⁵⁶⁾는 가장 오래된 정치 싱크탱크로서 1947년 설립되어 정책과 정치개혁에 관한 리서치를 맡고 있으며 빅토리아주와 호주 연방정부에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를 제공하고 있음. 고프 윌틀람(Gough Whitlam)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페이비언의 이념을 채택하였으며 호주 국민들에게 제공된 가장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그의 이념은 1972년 윌틀람 정치연설에 드러나 있음.
- 치플리 리서치 센터(Chifley Research Centre)²⁵⁷⁾는 노동당의 공식 싱크탱크로, 벤 치플리(Ben Chifley)가 ‘우리는 이기기를 바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를 센터의 기본 이념으로 만들었음.
- 멘시스 리서치 센터(Menzies Research Centre)는 가장 오랜 기간 수상을 지낸 로버트 멘시스(Sir Robert Menzies)의 이름을 따서 1994년에 설립되었음. 개인의 자유와 말할 권리, 기업경쟁력, 제한된 정부권력, 민주주의, 안정된 사회의 토대로서 건강한 가정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 토론을 통해 자유당의 싱크탱크로의 역할을 함.

254) 그라탄 연구소 홈페이지 주소, <http://grattan.edu.au/>, 2015년 9월 검색.

255) 로이 국제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주소, <https://www.lowyinstitute.org/> 2015년 9월 검색.

256) 호주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홈페이지 주소, <http://www.fabians.org.au/> 2015년 8월 검색.

257) 치플리 리서치 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www.chifley.org.au/> 2015년 8월 검색.

- 페이지 리서치 센터(Page Research Centre)²⁵⁸)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리서치센터의 전신인 얼 페이지 기금(Sir Earle Page Memorial Trust)의 활동을 이어받아 호주 지역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음.

3) 정책연구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 Strategy public Institute)에서는 정직원보다 주로 단기 계약 연구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연구소의 출판물은 연구원 개인의 이름이 아닌 연구소 이름으로 게재되며, 저자의 견해는 포럼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CEO와 6개의 정책분야를 총괄하는 6명의 디렉터, 20여명의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 연구소의 운영 방식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변화시키는 토론을 개최하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음. 그 리포트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온라인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음.
- 로이 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는 호주 외교정책에 관해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리서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함. 또한 각 이슈에 관련된 이벤트와 포럼을 개최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활동도 활발함²⁵⁹).
- 치플리 리서치 센터(Chifley Research Centre)에서는 이사회의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리서치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소수의 스텝이 있음. 페이지 리서치 센터(Page Research Centre)에서는 10명의 디렉터와 호주 지방정치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258) 페이지 리서치 센터의 홈페이지 주소. <http://page.org.au/> 2015년 8월 검색.

259) 'interpreter' 라는 로이 연구소의 온라인 잡지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잡지는 세계적으로 상위 30위 안에 들 정도로 훌륭한 연구성과를 자랑함. <http://www.lowyinterpreter.org/>

4) 주요 정책개발 활동 사례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 Strategy public Institute)에서는 정부에서 요청하는 특정 프로젝트나 개인 혹은 기관이 개최하는 강연, 세미나, 공공토론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국제 전략의 대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이끌고 있음. 특히 호주의 전략 및 국방정책결정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정부의 관련 정책형성 과정에 도움을 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가미함으로써 호주 국민들로 하여금 전략 및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도와줌.
-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은 7개의 정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주 전망, 도시정책, 에너지정책, 의료정책, 상위교육정책, 성장률, 학교교육정책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이슈를 선택한 것은 각 정책프로그램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임.
- 호주 페이비언 소사이어티(Australian Fabian Society)에서는 7월 26일에 프로젝트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는데 평등에 관한 주제('Towards Equality: Can Australians have a healthy future?')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나누면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음.
- 치플리 리서치 센터(Chifley Research Centre)에서는 연방선거 후에 호주의 혁신적이고 중장기적 플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혁신적인 호주(Progressive Australia), 국내외 리더들의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노동당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치플리 아이디어 서클 및 담화(Chifley Ideas Circle and Chifley Conversation),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면서 이를 통해 얻어진 아젠다도 제기하는 홈페이지(New Progressive Thinking), 25세 이하의 리더 15명으로 이루어져 호주의 미래 비전을 나누는 프로그램(Young Progressive Leaders Progam),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노동당의 역사와 노동당 총리의 시청각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는 아카이브(Labor History) 활

동을 하고 있음. 또한 비유엔 국가로서 유일하게 유럽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유럽혁신당연구(European Progressive Studies)도 함께 하고 있음.

- 멘지스 리서치 센터(Menzies Research Centre)는 사회안전, 정부신뢰, 교육정책, 애보리진의 경제발전, 인구변화, 주거정책에 관련한 컨퍼런스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새 콜롬보플랜(New Colombo Plan)²⁶⁰⁾을 발표하였음.
- 페이지 리서치 센터(Page Research Centre)에서 2005년에 발간한 텔레커뮤니케이션 보고서²⁶¹⁾는 호주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대한 브로드밴드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해 대국민 토론을 이끌어내었고, 같은 해 발간한 페이지 워터 플랜²⁶²⁾은 여러 지방정부의 물 정책을 바꾸었음. 또한 2007년에는 페이지 리서치 센터 아카이브²⁶³⁾를 만들어 호주 지방정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서류, 일지, 메모, 신문기사, 사진, 음성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5) 정부의 국고보조 여부, 재정현황 및 조달방법²⁶⁴⁾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 Strategy public Institute)는 국방부의 보조금과 개인의 후원금, 회원제도시스템에서 나오는 기금, 광고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연방정부와 빅토리아주 정부에서 각각 1천5백만 달러, 기업(BHP Billiton)에서 4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260) 새로운 콜롬보 플랜은 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호주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학생이 각 지역의 기업, NGO, 각 기관의 인턴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향후 5년간 1억불의 장학금을 지급함. <http://www.menziesrc.org./news/item/new-colombo-plan-paper-and-policy> 2015년 8월 검색.

261) ‘호주 비도시지역의 미래형 텔레커뮤니케이션(Future-proofing telecommunications in non-metropolitan Australia)’ 페이지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

http://page.org.au/wp-content/uploads/2013/11/PRC_Telecomms_Paper.pdf 2015년 8월 검색.

262) ‘페이지 워터 플랜에 관한 토론보고서(Discussion paper: the PAGE Waer Plan).

http://page.org.au/wp-content/uploads/2013/11/water_proposal_discussion_paper.pdf 2015년 8월 검색.

263) 페이지 리서치 센터의 자료 아카이브 주소. <http://page.org.au/for-researchers/page-research-library/> 2015년 8월 검색.

264) 페이지 리서치 센터(Page Research Centre)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음.

이는 연구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함. 기부금의 운영은 사외이사의 관리 하에 있으며 기금은 재투자되거나 연구소 운영비로 쓰임.

- 로이 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는 설립 첫째 플랭크 로이(Mr Frank Lowy AC)의 기금만으로 운영되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로이가의 기부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으로 재정이 충당됨. 총재정 중에 52%가 개인 및 가계의 기부금, 28%가 호주 정부와 미국의 존과 캐서린 재단(John D.와 Catherine T. McArthur Foundation)의 기금, 13%가 회비, 4%가 기금의 이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호주 페이비언 소사이어티(Australian Fabian Society)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싱크탱크에 대한 후원금은 세금환급이 불가능함. 치플리 리서치 센터(Chifley Research Centre)는 연방정부와 재무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세법 1997(Income Tax Act 1997)하에 센터의 모든 기부금은 세금환급이 가능함. 멘지스 리서치 센터(Menzies Research Centre)는 비영리단체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이 외에 재무부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음.

5. 일 본



일본 연구관 : 송재현

1. 정부재정상황 공개 및 정당 등의 공약 분석상황

- 일본의 경우, 선거를 전후하여 정부재정상황을 공개하는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정부재정상황에 대한 공개에 관한 법률로는 「헌법」 제 91조 및 「재정법」 제46조가 있음.

「헌법(憲法)」 제 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국가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야함.(内閣は、國會及び國民に對し、定期に、少くとも毎年一回、國の財政狀況について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재정법(財政法)」 제 46조

1. 내각은 예산이 성립되는 즉시 전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및 공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 잔고와 그 외의 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인쇄물, 강연,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아니함.(内閣は、予算が成立したときは、直ちに予算、前前年度の歳入歳出決算並びに公債、借入金及び國有財産の現在高その他財政に關する一般の事項について、印刷物、講演その他適当な方法で國民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전 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내각은 적어도 4분기에 한 번씩 예산 사용의 상황, 국고 상황,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여야함.(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外、内閣は、少くとも毎四半期ごとに、予算使用の狀況、國庫の狀況その他財政の狀況について、國會及び國民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위의 법률에 의거한 예산 및 재정상황은 재무성 홈페이지²⁶⁵⁾266)를 통해

265) 재정법 46조에 의거한 국민 재정보고, 재무성, URL:

http://www.mof.go.jp/budget/report/46_report/index.htm (접속일: 2015/09/09)

일반에 공개함.

- 각 정당의 공약(매니페스토)에는 정부재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재정운영상황 공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의 공약에는 재정상황에 관한 사항이 실려 있지 않음.
 - 주요 4당[자민당(自民党), 민주당(民主党), 공명당(公明党), 유신당(維新の党)]의 2014년 중의원(하원)선거 정당공약(그림 1~4 참조)을 보았을 때, 정부의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없으며, 공명당이 정부재정상황 공개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음.
- 기타 독립연구기관에 의한 정당공약의 분석으로는 PHP종합연구소의 매니페스토 백서(マニフェスト白書)가 있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도 발행하였으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평가 및 달성도를 기준으로 매니페스토를 평가함. 평가항목은 형식과 내용의 구체성이며 재정에 대한 부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²⁶⁷).

266) 예산상황 상황. 재무성. URL: http://www.mof.go.jp/budget/report/budget_use/index.htm (접속일: 2015/09/09)

267) 다만 내용의 구체성은 「What」, 「Why」, 「How」로 구성되며, 「How」 부분에 재원 조달 방법 등이 포함되나 조달 방법의 타당성이 아닌 언급여부가 평가 대상이 됨.



自民党
www.jimin.jp

あなたの一票を自民党に。

景気回復、この道しかない。

政権公約 2014

自民党

자유민주당의 정권공약



MANIFESTO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民主党的政策公約 マニフェスト

今こそ、流れを変える時。

民主党

민주당의 정권공약



manifesto 2014

衆院選 重点政策 公明党

公明党

공명당의 정권공약



増税ストップで、身を切る改革。実のある改革。

ISHIN 維新の党 JAPAN INNOVATION PARTY

維新が変えた。維新が変える。

橋下徹 代表

江田憲司 代表

유신당의 정권공약

2. 국가,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 활동 상황

1) 국가, 정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소 현황 및 관계법

-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가지지 않음.
- 국가의 정책 연구소는 일부 성청(省庁; 한국의 「부/청」에 해당)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음.
- 일본 내 법률상, 싱크탱크는 특정한 형태의 법인이 아닌, 공익법인, 사단 및 재단법인 등 기존의 법인형태에 해당함. 또한, 위와 같은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로서 임의단체(任意団体)²⁶⁸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싱크탱크 또한 다수 존재함.
- 싱크탱크는 크게 나누어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소, 민간 정책연구소로 나뉘어 지며,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현재 일본공산당의 사회과학연구소만 활동하고 있음.
 - 싱크탱크의 법적 지위는 각 싱크탱크의 운영형태에 따라 각 법인격(法人格)에 맞는 법률이 적용됨.
 - 예1) 구상일본(構想日本)은 재단법인으로서 「일반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의 적용을 받음.
 - 예2) 일본경제연구센터(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는 일반 기업인 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을 설립모체로 하나, 사업목적의 50%이상이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사단법인으로 분류되며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인정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의 적용을 받음.
 - 예3) PHP연구소의 경우 임의단체로 분류되며, 법률상 권리 및 의무가 없기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268) 임의단체는 주로 조합(組合)과 권력능력이 없는 사단(権力能力なき社団)로 나뉨. 조합은 민법 667조에 의해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부여되나 후자의 경우, 법률상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실질적인 성질은 사단법인에 가까우나,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권리 및 의무가 없음.

가. 정부 관련 정책연구소

관할 기관	연구소명(한국어)	연구소명(일본어)
내각부	경제사회 종합연구소	經濟社會總合研究所
경제산업성	경제산업 연구소	經濟産業研究所
경제산업성	지역산업문화 연구소	地域産業文化研究所
재무성	재무종합 정책연구소	財務總合政策研究所
총무성	행정관리 연구센터	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
일본은행	일본은행 금융연구소	日本銀行金融研究所
외무성	일본 국제문제 연구소	日本國際問題研究所
방위성	방위 연구소	防衛研究所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 학술정책연구소	科學技術 · 學術政策研究所

특정 정부기관이 관할하는 정책연구소는 아니나 복수의 정부 기관 및 민간의 출자로 이루어진 정책연구소로 종합연구개발기구(綜合研究開發機構; NARI)가 있음. 이는 정책연구소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일본 내 싱크탱크의 네트워크 역할을 겸하고 있음.

나. 정당 정책연구소

관할 기관	연구소명(한국어)	연구소명(일본어)
일본공산당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研究所

-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의 「싱크탱크 2005 · 일본(シンクタンク2005 · 日本)」와 민주당(民主党)의 「공공정책 플랫폼(公共政策プラットフォーム)」은 각각 2011년, 2009년에 해산.

2) 주체별 (정당, 재단) 정책연구소 설립연도 및 역사 (목표 및 이념)

○ 종합연구개발기구에 따르면 일본 내 싱크탱크는 약 300여곳 있으며, 대부분이 경영 컨설팅이나 IT 솔루션 등에 사업분야를 집중시키고 있음. 이하는 그 중,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소를 선정해서 간략히 설명함.

○ 상세한 내용은 부록의 표 참조

가. 정당 연구소

사회과학 연구소	
관할	일본공산당
설립	1970년
목표	과학적 사회주의에 근거한 일본 공산당의 이론 활동 추진

싱크탱크 2005 · 일본(해산)	
관할	자유민주당
설립	2006년
해산	2011년

공공정책 플랫폼(해산)	
관할	민주당
설립	2005년
해산	2009년 ²⁶⁹⁾
목표	각 정책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 등의 연구자, 오피니언 리더, 실무 전문가 등과 그 분야의 정책 책임자인 국회의원과 함께 기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함.

269) 다만, 해산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음. 홈페이지가 삭제된 것으로 보아 해산 혹은 일시적인 활동 정지로 추정됨.

나. 민간 연구소

PHP 종합연구소(PHP總合研究所)	
계열	파나소닉 그룹
설립	1946년
목표	민간 독립의 입장에서 정책, 행정, 재정, 경제, 외교, 안전보장, 지역경영, 경영과 같은 폭 넓은 분야에 걸친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함.
홈페이지	http://research.php.co.jp

독립종합연구소(獨立總合研究所)	
계열	독립형 싱크탱크
설립	2002년
목표	모든 조직과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어떠한 보조금도 취하지 아니하며, 공평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업, 사회, 일본, 세계에 기여하는 연구조사의 수행
홈페이지	http://www.dokken.co.jp

일본 경제연구 센터(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계열	일본 경제신문
설립	1963년
목표	국내외의 재정, 금융, 경제, 산업, 경영 등의 문제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 일본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홈페이지	http://www.jcer.or.jp

구상 일본(構想日本)	
계열	독립계 싱크탱크
설립	1997년
목표	정책 제시를 넘어서 정책을 실현하여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홈페이지	http://kosonippon.org

도쿄 재단(東京財団)	
계열	일본재단
설립	1997년 국제연구장학재단으로 출범 후, 1999년 동경재단으로 명칭 변경
목표	다양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그와 동시에 생활 및 현장의 감각을 중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목적으로 함.
홈페이지	http://www.tkfd.or.jp

미래공학 연구소(未来工学研究所)	
계열	독립형 싱크탱크
설립	1971년
목표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조류의 창출을 목표로 하며, 과학 기술과 사회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경영 및 정책적 혁신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
홈페이지	http://www.ifeng.or.jp

3) 정책연구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 정책연구소는 법인형태와 연구분야, 연구에 대한 비중 등에 있어 다양함. 이하의 설명은 종합연구개발기구(総合研究開発機構)의 「싱크탱크 정보 2014(シ

ンクタンク情報2014)²⁷⁰⁾²⁷¹⁾」에 의거함.

가. 조직 형태

- 조사 대상인 181개 싱크탱크 중, 영리법인이 82개 기관, 재단법인이 65개 기관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사단법인(16개 기관), 기타(3개 기관.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및 학교법인)임.
- 연구에 중점을 주는 정도로는 반 이상의 기관이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연구사업이 주력이거나 연구사업에만 종사하는 기관의 수는 103개 기관이며, 연구사업을 부수적으로 행하는 기관은 19개 기관, 나머지는 연구사업과 기타 사업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연구소는 동경(東京)을 중심으로 한 칸토(關東)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113개 기관), 오사카(大阪) 중심의 킨키(近畿)지방에 22개 기관, 나고야(名古屋)중심의 추부(中部)지방에 16개 기관이 위치해 있음. 지방에 위치한 연구소 대부분이 지방의 정책 및 행정에 관련된 연구소임을 감안 할 때, 정책연구소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한 층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 됨.

홋카이도 (北海道)	토호쿠 (東北)	칸토 (關東)	도쿄 (東京)	추부 (中部)
5	5	16	97	16
킨키 (近畿)	츄고쿠 (中国)	시코쿠 (四国)	큐슈 (九州)	
22	4	5	11	

270) 종합연구개발기구. 싱크탱크 정보 2014. http://www.nira.or.jp/pdf/tt2014_gaiyo.pdf (= 総合研究開発機構. 『シンクタンク情報2014』)

271) 약 300여개의 싱크탱크 중,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상세히 응답한 181개 싱크탱크를 기준으로 함.

나. 연구분야

- 각 기관이 주력하고 있는 연구 분야로는 경제, 종합, 국토개발 및 이용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93개 기관).

경제	종합	국토 개발	산업	정치/ 행정	환경	교통
34	31	28	20	12	10	10
국제 문제	국민 생활	자원/ 에너지	문화 예술	복지/교육/ 의료	과학 기술	정보 통신
7	7	6	5	5	3	3

- 181개 기관의 2012년도 연구 성과를 종합할 경우, 총 2726건의 연구성과 중 경제(731건), 국토 개발 및 이용(332건), 산업(297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경제	국토 개발	산업	환경	국제 문제	정치/ 행정	복지/교육/ 의료
731	332	297	230	176	173	167
국민 생활	교통	자원/ 에너지	문화 예술	정보 통신	과학 기술	
165	161	153	59	53	29	

다. 연구형태

- 연구의 형태로는 자주연구, 위탁연구, 조성연구로 구분됨.
- 2726건의 연구성과 중 위탁연구가 1,610건으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며, 자주연구는 1,067건으로 약 39%, 조성연구는 49건으로 2%에 불과함.
- 연구분야별로 볼 경우, 경제 관련 연구와 국제문제 관련 연구의 절반 이상의 자주연구이며, 그 외의 연구분야는 대부분이 위탁연구임.
- 조직 형태의 측면에서 볼 경우, 비영리법인 연구소가 주로 자주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약 57%), 영리법인의 경우 자주연구의 비율이 낮음(약 23%).

라. 연구의뢰의 주체

- 위탁연구 1,610건 중 대부분의 의뢰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함(769건). 이는 많은 정책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이라 추측됨.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연구의뢰 주체로는 중앙정부(369건, 약 23%), 정부기관 및 공익법인(201건, 약 12%), 영리법인(175건, 약 11%)등이 있음.

4) 주요 정책개발 활동 사례

○ 종합연구개발기구(総合研究開発機構; NIRA)에 등록된 10만 5천여건의 연구성과 중 주요 정책에 대해 간략이 설명함.

- 싱크탱크가 개발한 정책 중 실제로 법제화 되는 경우는 한정적임. 대부분이 타당성 조사와 같은 조사용역임.

가. 사업 분할(事業仕分け)

- 구상일본(構想日本)이 주력하는 정책으로 복수의 영역에 걸친 사업을 효율적으로 담당 부서 및 기관에 할당하는 것을 의미함.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연구에 해당됨. 현재까지 약 1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해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도네시아 국회; JICA 위탁)도 있음.

나. 성청설치법(省廳設置法)

- 구상일본(構想日本)이 제안한 정책으로, 전후 최대의 개혁 중 하나인 행정기관의 재편에 관해 1997년에 정책안을 발표, 1999년 7월 「중앙성청개혁 기본법(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의 성립으로 실현.

다. 매니페스토 백서(マニフェスト白書)

- PHP연구소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해 온 정책제안 및 각 정당의

정책평가서로서 소속 연구원들이 현재의 쟁점에 관한 의견 및 개선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끝부분에 주요 양대 정당(자유민주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평가함.

라. 아베 외교를 향한 15가지 시점(安倍外交への15の視点)

- 도쿄재단(東京財団)이 2013년 발표한 정책제안으로 제시된 정책 중 상당수는 법제화 되었음. NSC설치를 통한 위기관리기능의 제도화, 기밀정보 관련 법제화와 같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NSC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国家安全保障會議設置法)」를 근거로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강화²⁷²⁾ 및 「특정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特定機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의 성립으로 실현됨. 다만 도쿄재단의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부터 법제화에 관한 움직임이 있었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함.

5) 정부의 국고보조 여부, 재정현황 및 조달방법

- 대부분의 연구소는 연구 위탁을 받음으로써 그 재원을 조달하며, 일부는 설립 모체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함.
- 종합연구개발기구(総合研究開発機構; NIRA)가 2002년 약 250여개 기관으로부터 각 연구소의 재정상황을 조사한 보고서²⁷³⁾와 2008년 동향 보고서²⁷⁴⁾를 기반으로 설명함.
 -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124개 공익법인 연구소 대상)²⁷⁵⁾

272) 안전보장회의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 185회 중의원 국회. URL: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18520131204089.htm

273) <http://www.nira.or.jp/past/icj/doukou/2002/doukou02a.html>

274) <http://www.nira.or.jp/pdf/doukou2008.pdf>

275) 예를 들어 영리법인 위탁의 열을 보면, 61%의 연구소가 영리법인으로부터 위탁받는 연구로 인한 수입이 총 수입의 0%를 차지하며, 6%의 연구소가 총 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함.

연구수입 비율	자주 연구사업	공공기관 위탁	영리법인 위탁	회비 및 자산운용	기타
0%	62%	14%	61%	18%	45%
~30%	27%	36%	25%	52%	27%
30~50%	4%	15%	7%	12%	12%
50~70%	4%	12%	3%	7%	6%
70%~	2%	23%	6%	11%	11%

-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109개 영리법인 연구소 대상)

연구수입 비율	자주 연구사업	공공기관 위탁	영리법인 위탁	회비 및 자산운용	기타
0%	79%	3%	12%	84%	71%
~30%	15%	32%	42%	12%	13%
30~50%	2%	17%	12%	4%	6%
50~70%	3%	11%	15%	0%	4%
70%~	2%	38%	18%	0%	6%

- 상기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연구위탁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 위탁으로 인한 수입이 공익법인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공익법인은 영리법인에 비해 회비 및 자산운용으로 인한 재정조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설립 모체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한정적임. 공익법인의 경우 약 60%의 연구소가 설립 모체로부터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약 66%에 달함.
- 다만 설립 모체로부터 연구 위탁을 받는 형식으로 재원 조달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공익법인의 경우 약 73%, 영리법인의 경우 약 74%가 설립

- 모체가 발주하는 위탁 연구로 인한 수입이 총 수입의 30%이상을 차지함.
- 위탁 연구의 발주액은 위탁 주체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최저 250만 엔(기타 민간기업)에서 최고 1500만엔(국가 혹은 복수 기관)까지 다양함 (2006년 기준).

6) 일본 내 주요 싱크탱크 연표

연도	
1912	• 재팬 투어리스트 뷰로(Japan Tourist Bureau) 설립
1919	• 오하라(大原) 사회문제 연구소 설립
1921	• 노동과학연구소 설립
1922	• 도쿄 시정연구소 설립
1932	• 미츠비시(三菱) 경제연구소 설립
1933	• 손해보험사업연구소 설립
1942	•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学) 경제연구소 설립 • 동아농업연구소 설립
1945	• 국민경제연구협회 설립
1946	• 일본경제연구소 설립 • 큐슈(九州) 경제조사협회 설립 • PHP종합연구소 설립 • 지방자치협회 설립
1947	• 통계연구소 설립 • 자유인권협회 설립 • 재정경제협회 설립
1948	• 추고쿠(中国) 지방종합조사소 설립
1951	• 오사카(大阪) 시정연구소 설립 • 퍼시픽 컨설턴트(Pacific Consultant) 설립 • 전력중앙연구소 설립
1953	• 일본 복지대학 복지사회개발연구소 설립
1955	• 일본 생산성 본부 설립
1957	• 타카사키 경제대학(高崎經濟大学) 부속 산업연구소 설립 • 홋카이학원대학(北海学園大学) 개발연구소 설립
1958	• 칸사이대학(関西大学) 경제·정치연구소 설립 • 아시아 경제연구소 설립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도시센터 설립 • 공업개발 연구소 설립 • 일본 부동산연구소 설립 • 기타큐슈 시립대학(北九州市立大学) 도시정책연구소 설립 • 카나가와현(神奈川県) 자치종합연구센터 설립 •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学) 산업연구소 설립 • 일본 국제문제 연구소 설립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연구소 설립 • 홋카이도 개발 컨설턴트 설립 • 일본 리서치 센터 설립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닛츠(日通) 종합연구소 설립 • 토호쿠(東北) 경제개발센터 설립 • 일본 통계 센터 설립 • 노동조사연구소 설립 • 일본증권 경제연구소 설립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입지센터 설립 • 일본경제조사협의회 설립 • IRM설립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즈오카(静岡) 경제연구소 설립 • 건설기술연구소 설립 • AAP설립 • 호쿠리쿠(北陸) 경제조사회 설립 • 일본경제연구센터 설립
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개발센터 설립 • 일본지역개발센터 설립 • 도시경제연구소 설립 • 계량계획연구소 설립 • 기계진흥협회 경제연구소 설립 • 칸사이(関西) 경제연구센터 설립

1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로긴(ひろぎん) 경제연구소 설립 •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설립 • 지역개발연구소 설립 • 환경녹지설계연구소 설립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에너지 경제연구소 설립 • 유통경제연구소 설립 • 과학기술화 경제의 모임 설립 • 추부(中部) 개발센터 설립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동구무역회 설립 • 지역계획건축연구소 설립 • 식품수급연구센터 설립 • 공업시장연구소 설립 •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 설립 • 전기통신종합연구소 설립 • 다이이치칸킨(第一勧銀) 경영센터 설립
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나가와(神奈川) 경제연구소 설립 • 서일본 리서치 센터 설립 • 환경디자인연구소 설립 • 운송경제연구센터 설립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보서비스 설립 • 조요(常陽) 산업개발센터 설립 • 사회공학연구소 설립 • 해양산업연구회 설립 • 국제 컴퓨터사이언스 설립 • UG도시설계 설립 • 도시문제경영연구소 설립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컨설턴트 설립 • 일본공항 컨설턴트 설립 • 미츠비시(三菱) 종합연구소 설립 • 후요(芙蓉) 정보센터 설립

<p>19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사이 정보센터 설립 • 도시환경연구소 설립 • 일본종합연구소 설립 • 일본시스템 개발연구소 설립 • 산업입지연구소 설립 • CDI설립 • 개발계획연구소 설립 • 산업시스템 연구소 설립
<p>19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공학연구소 설립 • 스미토모(住友) 비즈니스 컨설팅 설립 • 엑스(エックス) 도시연구소 설립 • 농촌개발기획위원회 설립 • 식료·농업정책연구센터 설립 • 도시환경계획연구소 설립 • 쿠마모토(熊本) 개발연구센터 설립 • 정책과학연구소 설립 • 소켄(創建) 인간환경연구소 설립 • 지역문제연구소 설립
<p>19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과학연구소 설립 • 교토(京都) 디자인센터 설립 • 여가개발센터 설립 • 도쿄도(東京都) 노인종합연구소 설립 • 사회시스템연구소 설립 • 일본개발구상연구소 설립 • 칸사이(関西) 물류근대화 센터 설립 • 21세기 효고(ひょうご)창조협회 설립 • 플렉(プレック) 연구소 설립
<p>19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개발종합연구소 설립 • 주(住)환경계획 연구소 설립 • 니이가타(新潟) 경제사회연구센터 설립

<p>19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타치(日立) 종합계획연구소 설립 • 오사카(大阪) 자치체문제연구소 설립 • 홋카이도(北海道) 환경보전 엔지니어링센터 설립 • 일본국제교류센터 설립 • 지방행정종합연구센터 설립 • 어반 플래닝(Urban Planning) 설립 • 사회경제국민회의 설립
<p>19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계획센터 설립 • 종합연구개발기구 설립 • 기후현(岐阜県) 싱크탱크 설립 • 야마이치(山一) 증권 경제연구소 설립 • 미에(三重) 사회경제연구센터 설립 • 단(ダン) 계획연구소 설립 • 입지평가연구소 설립 • 야마구치(山口) 경제연구소 설립 • 중동경제연구소 설립 • 아사히(旭) 리서치센터 설립 • 아시아태평양연구회 설립 • 서일본 과학기술연구소 설립
<p>197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스(ジャス) 설립 • 리저널 플래닝 팀(Regional Planning Team) 설립 • 고베(神戸) 도시문제 연구소 설립 • 일본계획기구 설립 • 홋카이도(北海道) 개발문제연구조사회 설립 • 오이타현(大分県) 중소기업정보센터 설립 • 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 설립
<p>19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어세스먼트(Assessment) 센터 설립 • 지역진흥연구소 설립 • 일본해 컨설턴트 설립 • 에히메현(愛媛県) 사회경제연구재단 설립

<p>19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란드(オストランド) 설립 • 홋카이도(北海道) 미래종합연구소 설립 • 다이어 리서치마켓(ダイヤーリサーチマーケット) 설립 • 칸사이(関西)공항 연구회 설립
<p>197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문제연구소 설립 • 아사히카와대학(旭川大学) 지역연구소 설립 • 일본 리서치종합연구소 설립 • 카나가와현(神奈川県) 지방자치연구센터 설립 • 멧츠(メッツ) 연구소 설립 • 오카야마(岡山) 경제연구소 설립 • 행정관리연구센터 설립 • 오키나와(沖縄) 계획기구 설립 • 기타큐슈(北九州) 도시협회 설립
<p>197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슈(九州) 환경기술센터 설립 • 연금제도연구개발기금 설립 • 시가(滋賀) 종합연구소 설립 • 호쿠리쿠(北陸) 경제연구소 설립 • 에너지 종합공학연구소 설립 • 지역계획연구소 설립 • 북방권센터 설립 • 테크노바(テクノバ) 설립 • 아오모리(青森) 지역사회연구소 설립 • 자연환경연구센터 설립 • 성 에너지(省エネルギー; 에너지 절약)센터 설립 • 평화·안전보장 연구소 설립
<p>19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현(岐阜県) 지역문제연구소 설립 • 도시방재연구소 설립 • 지방채협회 설립 • 아키타(秋田) 경제연구소 설립 • 생활구조연구소 설립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종합계획연구소 설립 • 와카타케 마치즈쿠리(若竹まちづくり) 연구소 설립 • RPI지역계획종합연구소 설립 • 센트럴 경영 센터 설립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가와(香川) 국제경제연구소 설립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어프라이드 리서치 연구소 설립 • 사가(佐賀) 경제조사협회 설립 • 하쿠호도(博報堂) 생활종합연구소 설립 • 와카야마(和歌山) 사회경제 연구소 • 비교법연구센터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슈(九州) 지역계획 건축연구소 설립 • 다이와(大和)증권 경제연구소 설립 • 아시아 인구·개발협회 설립 • 후쿠시마(福島) 경제연구소 설립 • 기업경영연구소 설립 • 정보과학연구 센터 설립 • 칸사이(関西) 계획기술연구소 설립 • 이와테(岩手) 경제연구소 설립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데코(パデコ) 설립 • 효고(兵庫) 경제연구소 설립 • 군마(群馬) 경제연구소 설립 • 히가시미카와(東三河) 지역연구센터 설립 • 나가긴(長銀) 경영연구소 설립 • 종합계획기구 설립 • 종합환경연구소 설립 • 숲과 마을의 모임 설립 • 평화경제계획회의 설립 • 센리(千里) 문화재단 설립 • 오이타현(大分県) 지역기술진흥재단 설립

<p>19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토(南都) 경제센터 설립 • 시가긴(しがぎん) 경제문화 센터 • 나가노(長野) 경제연구소 설립 • 탄세이(丹青) 종합연구소 설립 • 일본능률협회 종합연구소 설립 • 홋카이도(北海道) 고령자문제연구협회 설립 • IRS 설립 • 산업사회연구센터 설립 • 다이낙스(ダイナックス) 도시환경연구소 설립 • 소프트화 경제센터 • 시즈오카(静岡) 종합연구기구 설립 • 금융정보 시스템센터 설립 • 사이타마(埼玉) 종합연구기구 설립
<p>19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징 종합연구 센터 • 도쿠시마(徳島) 경제연구소 설립 • 지역환경연구소 설립 • 정보통신종합연구소 설립 • 햅쿠고(百五) 경제연구소 설립 • 랜드마리타임(ランドマリタイム) 설립 • 산인(山陰) 경제경영연구소 설립 • 산와(三和) 종합연구소 설립
<p>198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계획연구소 설립 • 아мага사키(あまがさき) 미래협회 설립 • 놀드(ノルド) 사회환경연구소 설립 • 플렛처(フレッチャー) 홋카이도 프로그램 센터 설립 • 후지츠(富士通) 시스템 종합연구소 설립 • 토레(東レ) 경영연구소 설립 • 미츠이긴(三井銀) 종합연구소 설립 • 가계경제연구소 설립

<p>198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가스(東京ガス) 도시생활연구소 설립 • 아사히긴(あさひ銀) 종합연구소 설립 • 토큐(東急) 종합연구소 설립 • 소프트웨어정보센터 설립 • 상공종합연구소 설립
<p>19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정보연구소 설립 • 교토(京都) 종합경제연구소 설립 • 칸사이대학(関西大学) 법학연구소 설립 • 일본국제포럼 설립 • 이코마(生駒)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설립 • 야스다(安田) 종합연구소 설립 • 트러스트(トラスト)60 설립 • 다이와긴(大和銀) 종합연구소 • 덴츠(電通) 종합연구소 설립 • 국제해양과학기술협회 설립 • 지역정보시스템 연구소 설립 • 스미토모(住友)생명 종합연구소 설립 • 렌고(連合)종합생활개발연구소 설립 • 도시미래종합연구소 설립
<p>19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DI 설립 • 이요긴(いよぎん) 지역연구센터 설립 • 디자인종합연구소 히로시마(広島) 설립 • 도치기(とちぎ) 종합연구기구 설립 • 일본복지대학 치타(知多)반도 종합연구소 설립 • NTT데이터 시스템과학 연구소 설립 • 세계평화연구소 설립 • 스미신(住信) 기초연구소 설립 •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종합진흥기구 설립 • 닛세이(ニッセイ) 기초연구소 설립 • 하마긴(浜銀) 종합연구소 설립

<p>19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오카(福岡) 도시과학연구소 설립 • 추부(中部) 산업·노동정책연구회 설립 • 후지(富士) 종합연구소 설립 • 시모노세키(下関) 21세기협회 설립
<p>19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쇼 해상기초연구소 설립 • MBC종합연구소 설립 • 지역유통경제연구소 설립 • 나가사키 경제연구소 설립 • 다이와 종합연구소 설립 • 국제 동아시아연구센터 설립 • CIS계획연구소 설립 • 효고현 장수사회 연구기구 설립 • 생협 종합연구소 설립 • 일본 인텔리전트 트러스트 설립
<p>19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노동연구기구 설립 • 치바긴(ちばぎん) 종합연구소 설립 • 국제개발고등교육기구 설립 • 카고시마(鹿児島) 지역경제연구소 설립 • 휴먼 르네상스 연구소 설립 • 다이긴(大銀) 경제경영연구소 설립 • 지역진흥 플래닛 설립 • KDD종합연구소 설립 • 아테나(アテナ) 설립
<p>19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조사 설립 • 도요타(豊田) 도시교통연구소 설립 • 농협 공제종합연구소 설립 • 정보환경연구소 설립 • 플래닝 네트워크 토호쿠 설립 • 메이지(明治)생명 파이낸슈어런스(Finansurance) 연구소 설립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고야(名古屋) 도시센터 설립 • 다이이치칸긴(第一勧銀) 종합연구소 설립 • 메소드(メソッド) 설립 • 오키나와(沖縄) 지역공학연구소 설립 • 오사카만(大阪湾) 베이에리어 개발 추진기구 설립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홋카이도(北海道)신문 정보연구소 설립 • 유통연구소 설립 •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지역경제종합연구소 설립 • 교세이(ぎょうせい) 종합연구소 설립 • 일본 로지스틱스 시스템 협회 설립 • 고치현(高知県) 정책종합연구소 설립 • 사카이(堺) 도시정책연구소 설립 • 도시문화연구소 설립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야기현 지역진흥센터 • 하이라이프 연구소 설립 • 나가긴(長銀) 종합연구소 컨설팅 설립 • 신 구상연구회 설립 • 문화과학연구소 • 환(環)일본해 경제연구소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술연구소 설립 • 기타구니(北國) 종합연구소 설립 • 지방자치종합연구소 설립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키 미래조성(いわき未来づくり) 센터 설립 • 시가현립대학(滋賀県立大学) 지역조성 조사연구센터 설립 • 죠요(常陽) 산업연구소 설립 • 토토리(とっとり) 정책종합연구센터 설립 • 시민활동정보센터 설립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연구기구 설립

<p>19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쿠시마(徳島) 지역정책연구소 설립 • 미에긴(三重銀) 종합연구소 설립 • 토호쿠대학(東北大学) 동북아시아 연구센터 설립 • 교리츠(共立) 종합연구소 설립
<p>1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일본 설립 • 도쿄(東京) 자치연구센터 설립 • 후쿠시마(ふくしま) 자치연수센터 - 싱크탱크 후쿠시마(ふくしま) 설립 • 애슬릭(アスリック) 설립 • 키시와다(きしわだ) 도시정책연구소 설립 • 사회안전연구소 설립 • NPO정책연구소 설립 • 국제연구장학재단 설립 •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기념협회 설립
<p>19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마나시(山梨) 종합연구소 설립 • 히로시마 시립대학(広島市立大学) 히로시마(広島) 평화연구소 설립 •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 사회시스템 연구소 설립 • 쇼긴(荘銀) 종합연구소 설립 • 에코 어시스트 설립 • JR화물·리서치센터 설립 • 사회시스템연구소 해산 • 야마이치(山一) 증권 경제연구소 해산
<p>19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이타현(大分県) 산업창조기구 설립 • 쿠시로공립대학(釧路公立大学) 지역경제연구센터 설립 • NPO 군마(ぐんま) 설립 • 사이노 쿠니 사이타마(彩の国さいまた) 인재조성 광역연합 창설 • 순환사회연구소 설립 • 기후 네트워크 설립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계획연구소 해산 • 사이타마(埼玉) 종합연구기구 해산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히메(えひめ) 지역정책연구센터 설립 • 기후현(岐阜県) 산업경제진흥센터 설립 • 조에즈시(上越市) 창조행정연구소 설립 • 리사이클 원 설립 • 환경자치체회의 환경정책연구소 설립 • 교토타치바나대학(京都橘大学) 문화정책연구센터 설립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에너지 정책연구소 • 경제산업연구소 설립 • 투어리즘 마케팅 연구소 설립 • 아오모리현민(あおもり県民) 정책네트워크 설립 • 숲의 에너지 연구소 설립 • 정책과정연구기구 설립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종합연구소 설립 • 토요대학(東洋大学) 지역활성화연구소 설립 • 요코스카(横須賀) 도시정책연구소 설립 • 토요대학(東洋大学) 현대사회종합연구소 설립 • 나가사키(ながさき) 지역정책연구소 설립 • 일본종합연구소 설립 • 미에(三重) 사회경제센터 폐지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비즈니스 컨설턴트 설립 • 마을연구 공방 설립 • 사가미하라(さがみはら) 도시 미래연구소 설립 • 호세이대학(法政大学) 지역연구센터 설립 • 미우라(みうら) 정책연구소 설립 • 노동정책연구소·연수기구 설립 • 자유시간 디자인협회(여가개발센터의 후신) 해산 • 신 구상연구회 해산 • 일본노동연구기구 통폐합

<p>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키긴(おきぎん) 경제연구소 설립 • 전국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 설립 • 덴츠(電通) 종합연구소 설립 • 미즈호(みずほ) 정보종합연구소 설립 • 국민경제연구협회 해산 • 사회공학연구소 해산
<p>20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마모토(熊本) 정책창조연구교육 센터 설립 • 큐슈대학(九州大学) 아시아종합정책 센터 설립 • 공공정책 플랫폼 설립 • 식료·농업정책연구센터해산 • 쿠마모토(熊本) 개발연구센터 해산 • 아시아태평양연구회 해산 • 소프트화 경제센터 활동정지 • 스미토모생명(住友生命) 종합연구소 해산 • 고치현(高知県) 정책종합연구소 폐지 • 토치기(とちぎ) 종합연구기구 해산
<p>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크탱크 2005·일본 설립 • 호쿠리쿠(北陸) 경제조사회 해산 • 시가(滋賀) 종합연구소 해산 • 카고시마(鹿児島) 종합연구소(MBC종합연구소의 후신) 해산
<p>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카노구(中野区) 정책연구기구 설립 • 니이가타시(新潟市) 도시정책연구소 설립 • 세타가야(せたがや) 자치정책연구소 설립 • 산업창조연구소(공업개발연구소의 후신) 해산 • 국제통신경제연구회 해산(멀티미디어진흥센터로 통합) • 기타큐슈(北九州) 도시협회 해산
<p>20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학연구소 해산

IV. 정당의 구성 및 활동 등에 대한 제도 및 운영실태

1. 영국 / 264
2. 독일 / 277
3. 미국 / 337
4. 호주 / 346
5. 일본 / 361



국가별 개요

1. 영국(United Kingdom)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국민대표법 1983」 등에 따라 정당등록 행위는 법률상 의무를 수반함.
- 기존 정당의 표어 및 상징 등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신규 정당, 정당 명이 6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경우 등은 정당 등록이 제한됨.
- 선관위는 정당관리용 보안 데이터베이스 PEF(Party Election Finance) 시스템을 통해 정당 운영을 관리함.

2) 위헌(법) 정당 해산 제도

- 정당해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3) 정당 재정지원 제도 및 후보자 추천 방법

-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에 따라 최소 2석 이상의 하원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개발보조금(PDGs)을 지급함.
- 전통적으로 후보자 추천 권한은 지구당이 가지고 있으나, 소수민족 또는 여성의 정치참여 촉진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전(全)여성 최종후보자 목록(AWS)등 제도 도입 노력이 있음.

2.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 정당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적 기초는 기본법 제21조와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의 헌법적 지위와 과제, 정당의 개념 등에 대한 구체사항은 연방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정당 구성원의 수, 조직 구성, 지역 소재지 등에 대한 정당법상 규정이 있으며, 신설되는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 명칭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 등의 제한 있음.

2) 위헌(법) 정당 해산 제도

- 2차 세계대전 이후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당해산 심판제도를 1949년 독일 기본법에 규정하였음.
- 해산심판 관할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위헌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함.
- 2011년 외국인 및 이민족에 대한 테러조직인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NSU)이 독일국가민주당 하부조직임이 드러나 2013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현재 절차 진행중)

3) 정당 재정 지원 제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방법

- 선거결과와 정당수입을 기준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며, 정당법을 통해 정당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연방의회 의장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하고 있음.
- 정당의 선거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 「정당법」 및 「연방의회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각 지역구별 당원집회 또는 대표자 집회에 의해 선출

3.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 정당의 창당 요건은 각 주의 법률에 의해 규정됨. 주로 일정 수 이상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당을 창당할 수 있음.

2) 위헌(법) 정당 해산 제도

- 연방 및 주 단위에서 위헌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미국 공산당을 불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자 통제법』이 제정된 바 있으나, 이 법이 실제로 행정권력을 통해 집행된 적은 없음.

3) 정당 재정 지원 제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방법

- 정당의 상시적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대통령 선거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보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함.
- 각 정당은 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코커스 혹은 예비선거 등 대통령 및 의회 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같은 주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이 다른 방식의 후보자 선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
- 상원과 하원 공히 전체 의원 대비 약 20% 가량이 여성의원이며, 2015년 기준으로는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호주(Australia)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 정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① 정당원 중 한 명 이상이 연방 국회에 속해 있거나, ② 혹은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으며 연방선거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있는 정당원이 500명 이상 있어야 함. 정당의 동일(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2) 위헌(법) 정당 해산 제도

- 헌법 75조 연방대법원의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이 정당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다투는 경우, 그 심사를 관할하고 있다고 규정하나, 구체적으로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은 없음.

3) 정당 재정 지원 제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방법

- 선거 득표수에 따라 받는 선거자금에 있고, 정당의 사무국과 무소속 의원이 정당 사무소관리, 선거 사무소 운영과 언론 등을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음.
- 비례대표제는 여성이 당선될 확률을 높여주며, 적극적 정책의 일환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여성 후보자를 예비선택하거나, 성별쿼터를 도입하는 정당도 있음.
- 호주 국회에서 여성비율은 1/3을 밑돌고 있으며, 상원, 하원의원 모두 호주노동당과 자유당 소속의 여성의원이 가장 많음.

5. 일본(Japan)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 정당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정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정치단체」 중, 5인 이상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의 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한 단체를 정당으로 인정함.
- 정당의 창당 및 조직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지역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임.

2) 위헌(법) 정당 해산 제도

- 구체적인 정당법이 없을뿐더러 헌법상에도 정당의 지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현재까지 국가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예는 없음.

3) 정당 재정 지원 제도 및 후보자 추천 방법

- 「정당조성법」에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를 규정함.
- 각 정당 교부금의 액수는 선거에서의 득표율 및 보유한 의원수에 비례하며 정당교부금의 총액은 인구수에 250엔을 곱한 액수임.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정당 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함. 또한 동일 정당일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독자적인 후보자 추천방식을 취하기도 함.
-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참여에 관한 지원 규정은 없으며, 현재 일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 쿼터 실시 방안을 고려중임.

1. 영국



영국 연구관 : 윤성원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규제

1) 정당의 창당 및 운영실태

-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에 따라 정당등록 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수반함.²⁷⁶⁾
- 정당 형태로는 등록 정당과 군소 정당이 있으며, 등록 정당은 지방선거 및 총선, 유럽의회 선거까지 후보자를 낼 수 있는 반면, 군소 정당은 지방의회(parish/community council)를 구성하는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음.²⁷⁷⁾
 - 등록 정당들은 반드시 선거비용 및 보고서 제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등록 정당들은 당대표, 회계 담당자, 인사권자를 반드시 지명해야 함.
-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및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은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 및 상징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기하고 있음.²⁷⁸⁾
 - 표어 및 상징 사용은 선택사항이나, 하나의 정당은 최대 세 개의 상징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원만한 조직 운영을 위한 보안 데이터베이스(PEF: Party Election Finance) 시스템을 운영·가동함.²⁷⁹⁾

276) Electoral Commission, Process for registering a political party, p. 5.

277) Electoral Commission, Introduction to registering a political party, pp. 7-8.

278)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party names, descriptions and emblems, pp. 5-6.

279) Electoral Commission, PEF Online: getting started, pp. 3-5.

- 각 정당은 PEF Online 시스템을 통해 정당명·표어·상징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등록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거비용보고서, 회계 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
- 각 정당은 정당 업무 담당자 가운데 PEF Online 시스템 관리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음.

[참고조문]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제24조 선행요건

(1) 각 등록정당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 (a) 당대표
- (b) 인사권자
- (c) 회계 담당자

다만 당대표로 등록한 자는 인사권자 및 회계 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다.

(2) 당대표로 임명된 자는 반드시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 (a) 당의 총괄지도자, 또는
- (b) 총괄지도자가 부재한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당 내 지도자

(3) 인사권자로 등록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혐의 책임을 져야 한다

- (a) 당 내 선거 후보자 목록 제출
- (b) 동 법 제22조(6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 (c) 후보자 지명 및 투표용지에 쓰이는 당 표어 및 상징에 대한 승인

(4) 회계 담당자로 등록된 자는 다음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 (a) 회계요건 및 기부금 관리에 대한 조항
- (b) 동 법 제25조에 따른 당 내 선거운동 담당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선거비용, 제3자 비용 및 국민투표 조항

Section 24 Preliminary requirements

(1) For each registered party there shall be

- (a) a person registered as the party' s leader;
- (b) a person registered as the party' s nominating officer; and
- (c) a person registered as the party' s treasurer;

but the person registered as leader may also be registered as nominating officer or

treasurer (or both).

(2) The person registered as a party' s leader must be

(a) the overall leader of the party; or

(b) where there is no overall leader of the party, a person who is the leader of the party for some particular purpose.

(3) The person registered as a party' s nominating officer must have responsibility for the arrangements for

(a) the submission by representatives of the party of lists of candidates for the purpose of elections;

(b) the issuing of such certificates as are mentioned in section 22(6); and

(c) the approval of descriptions and emblems used on nomination and ballot papers at elections.

(4) The person registered as a party' s treasurer shall be responsible for compliance on the part of the party—

(a) with the provisions of Parts III and IV (accounting requirements and control of donations), and

(b) unless a person is registered as the party' s campaigns offic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25, with the provisions of Parts V to VII (campaign expenditure, third party expenditure and referendums) as well.

* 등록정당의 선거 후보자는 당 인사권자가 발급한 지명서류를 지참해야 함.

2) 정당 활동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

- 등록 정당은 매년 PEF Online 시스템을 통해 정당 운영 관련 사항 등의 변경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음. 연례 등록확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당은 등록 정당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²⁸⁰⁾
 - 등록 정당의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정당의 회계 담당자는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에 따라 선거비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80)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maintaining party details, pp. 4-9.

- 기존 정당의 표어 및 상징 등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신규 정당의 등록은 제한됨. 이밖에 정당명이 6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로마자가 아닌 경우,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경우,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방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등에도 정당 등록이 제한됨.
 - 2015년 5월 총선 당시 각종 선거쟁점(세제, 연금, 고용 등)의 머리글자를 따서 창립한 정당 ‘Crumpet’ 은 정당명이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함.²⁸¹⁾

2. 위헌(법) 정당해산 제도

1) 정당해산 제도 존재 여부 및 사례

- 영국은 정당해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다만 2010-2015 보수당-자유민주당 연정 시기 특정 강령을 추구하는 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진정이 접수된 바 있음.
 - 영국 정부 및 의회 기록에 따르면 2015년 3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의 유럽의회 진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진정이 접수됨. 이는 유럽연합을 반대하는 정당이 유럽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영국 내에서 관련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여타의 민주적 방안이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함.²⁸²⁾

281) Metro, Political party is banned because its name is ‘offensive to women’ (4 May 2015):metro.co.uk/2015/03/04/political-party-is-banned-because-its-name-is-offensive-to-women-5087983/(검색일: 2015.10.12.)

282) <https://petition.parliament.uk/archived/petitions/62699> (검색일: 2015.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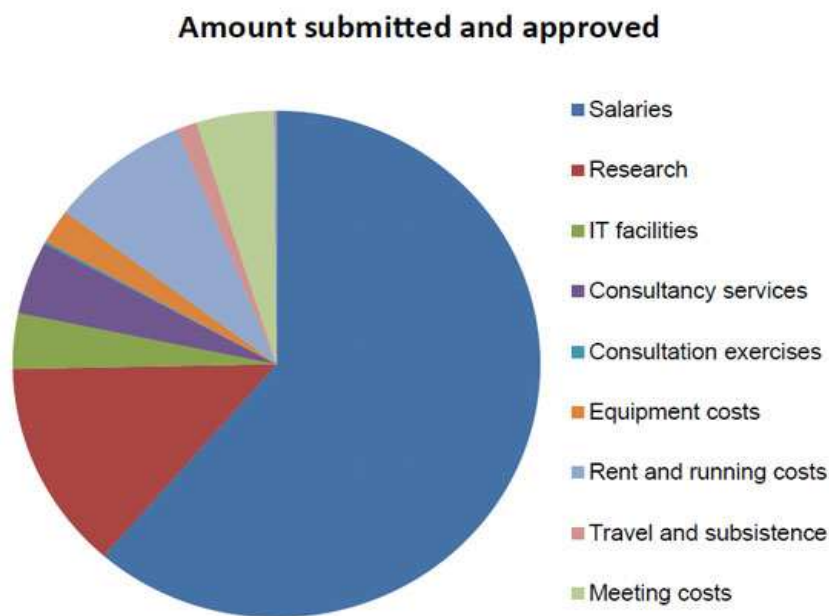
3. 정당 재정지원 제도²⁸³⁾

1)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 현황

- 영국 정당은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회비로 운영됨. 그러나 정치 무관심 계층의 증가에 따른 당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불가결한 상황임.
-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제12조는 정부로 하여금 정당들의 정책 개발 및 선거운동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⁸⁴⁾
 - 해당 국고지원은 정책개발보조금(Policy Development Grants)이라는 이름으로 각 정당에 배분됨. 주로 정책개발과 관련된 인력운용, 연구자료 수집·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는 형태이나, 총선 및 지방선거, 유럽의회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서도 활용됨 (<그림 1> 참조).
 - 정책개발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 정당은 최소 2석 이상의 하원의석을 확보해야 하며, 「의회서약법(Parliamentary Oaths Act 1866)」에 따른 서약을 준수해야 함. 2015년 기준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을 포함해 총 8개의 정당이 해당 보조금을 수령함.

283) 해당 내용 중 일부는 본 연구관의 2014년 과제 '선거비용(선거자금) 조사' 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임.

284) <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find-information-by-subject/political-parties-campaigning-and-donations/public-funding-for-parties> (검색일: 2015.10.10.)



〈그림 1〉 정책개발보조금 사례별 승인현황 (2012-2013년)²⁸⁵⁾

2) 국고지원 배분방법 및 규모

- 정당에 배분되는 보조금 총 금액은 200만 파운드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균일한 금액으로 각 정당에 배분됨. 나머지 100만 파운드는 지역별 등록 유권자 수에 비례해 해당 지역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에 배분되며, 각 정당들의 지역별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스코틀랜드의 경우 별도로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 1998)」을 통해 집권당을 제외한 야당의 의회활동 지원비를 책정함.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13-2014년 기준 1석당 £7,591.91로 책정됨.²⁸⁶⁾

285) <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find-information-by-subject/political-parties-campaigning-and-donations/public-funding-for-parties/policy-development-grants> (검색일: 2015.10.10.)

286) <http://www.scottish.parliament.uk/msps/58477.aspx> (검색일: 2015.10.10.)

3) 위법 또는 위헌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 제도

- 정당 재정 운영과 관련한 위법 사항은 주로 정당 및 개별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규모와 연계됨.²⁸⁷⁾
 - 이와 관련, 「국민대표법 1983」은 선거비용 상한선 제한(제76조) 및 보고서 제출(제81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은 정당의 재정 운영 관련 각종 위법사항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
 - 각 정당은 선거 후 선관위에 선거비용 지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할 경우 해당 보고서는 반드시 별도의 회계 감사 절차를 거친 것이어야 함.²⁸⁸⁾
- 「정당 및 선거법(The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제정 이후 정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및 제재 권한이 대폭 확충됨. 선관위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취할 수 있음.²⁸⁹⁾
 - £200 이상 £20,000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28일 이내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이 증가됨.
 - 준수(compliance) 및 복구(restoration) 명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향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 받는 절차로, 이에 불응할 경우 벌금 부과 등의 추가 제재 절차에 착수함. 또 위법 행위 관련자들에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활동중지 명령: 선관위의 시정 명령을 준수할 때까지 위법 행위 관련자

287) 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__data/assets/pdf_file/0006/106737/Table-of-offences-and-sanctions_for_EP.pdf (검색일: 2015.10.11.)

288) 총수입 또는 총지출이 £250,000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은 별도의 독립 감사를 통과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250,000 이하인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와 관련해서는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accounts for accounting unit treasurers*, pp. 5-6 참조.

289) Electoral Commission, *Use of new investigatory powers and civil sanctions* (July 2012); Electoral Commission, *Enforcement Policy* (December 2010).

들의 특정 활동을 금지할 수 있음.

- 정책개발보조금을 포함한 정당재정지원상의 잔여 금액은 재무부(HM Treasury)로 귀속됨. 선관위가 정당의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등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 역시 재무부에 의해 관할되는 통합국고기금(Government Consolidated Fund)으로 귀속됨.²⁹⁰⁾ 통합국고기금 사용은 반드시 하원의 승인이 필요함.

4.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법

1)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법

- 정당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각 정당의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선정함.
- 보수당(Conservative)
 - 중앙당이 전통적으로 ‘적격후보자 목록(Approved List)’ 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궤원이 발생한 지역구에 적합한 인물을 총원하는 방식을 채택해 옴. 그러나 실제로는 목록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구당 위원회에 의해 후보자 선정이 이뤄짐으로써 적격후보자 목록이 사문화되는 경향이 발생함.²⁹¹⁾
 - 지구당 간부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후보자 선정은 후보자군(群)의 다양성 추구보다는 지역 내 특권을 지니고 연줄이 있는 남성들이 공천권을 주로 획득하는 결과로 나타남.
 - 2000년대 이후 보수당은 당내 여성 및 소수민족 후보자 등의 의회진출

290) 영국 선관위 지도고문 Christopher Neate와의 인터뷰 (2015.10.14.).

291) Rhys Williams & Akash Paun, *Party People: How do - and how should - British political parties select their parliamentary candidates?* (November 2011), p. 14.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진력해 왔으며, 지구당의 공천 권한을 약화하는 대신 선거본부(CCHQ)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격 후보자 선정을 위한 의회평가위원회(PAB)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꾀함.²⁹²⁾

- 의회평가위원회에서는 △적격심사 인터뷰 △공중 스피치 △그룹평가 △심리테스트 등을 통해 예비후보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및 지적·사회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함.
- 보수당 공직 후보직을 희망하는 자가 적격후보자 목록에 오르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선거본부에 신청서 제출 (추천서 3부) △정당 인사와의 비공식 인터뷰 △의회평가위원회 심사(5시간 소요) (심사비 £250) 등²⁹³⁾

○ 노동당(Labour)²⁹⁴⁾

- 지구당 차원에서 후보군이 선정되는 것은 보수당과 유사하나, 최종 후보자 결정은 전통적으로 개별 당원들의 투표가 아닌 각 지구당 및 관련 산하 단체, 노조(trade union) 등을 대표하는 당원들이 모인 총회(General Committee)에서 이뤄진 바 있음.
- 1993년 당헌 개정 이후에는 후보자 선정에 있어 1인 1투표(OMOV)의 원칙이 적용돼 왔음. 그러나 2010년 보수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완전국민경선제(open primaries) 도입 등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방법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다시 격화됨. 이와 관련, 2011년 전당대회에서 당원자격과는 구분되는 등록지원자네트워크(registered supporters network) 그룹을 창설함. 동 그룹은 일반 당원처럼 의회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권한은 없으나, 당대표 경선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지님.

292) *ibid.*, p. 15.

293) Conservatives, *Guide to becoming a conservative MP* (October 2012), pp. 1-4.

294) Williams & Paun, *Party People*, pp. 27-28.

○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s)²⁹⁵⁾

- 보수당,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지구당위원회가 의회선거 후보군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전체 당원들의 투표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됨.
- 다만 자민당 지구당위원회는 중앙당이 공시한 적격후보자 목록(approved candidates list) 외의 인물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지난 2008년 이후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개편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보수당의 PAB 평가제와 유사한 후보자 적격 심사 제도를 도입·운영함.

2) 여성 또는 소수자(이민족, 장애인 등) 정치참여 관련 지원규정

○ 2015년 5월 총선 결과 여성 및 소수 이민자 출신의 하원의회 진출이 뚜렷하게 증가함.²⁹⁶⁾

- 2015 총선 결과 전체 하원의석 가운데 29%를 여성의원이 차지하였으며, 이는 2010년 총선 당시 2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표 1> 참조). 여성의원의 약진은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내 여성 당선자 비율 증가에 기인함 (노동당 43%, SNP 36%가 여성의원).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스웨덴(45%), 벨기에(41.3%), 아이슬란드(39.7%)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소수 이민자 출신 하원의원 수 또한 지난 2010년 27명(4.2%)에서 2015년 42명(6.6%)으로 증가함.

295) *ibid.*, pp. 33-35.

296) Guardian, *Record numbers of female and minority-ethnic MPs in new House of Commons* (8 May 2015):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15/may/08/record-numbers-female-minority-ethnic-mps-commons> (검색일: 2015.10.9.)

연도	남성(%)	여성(%)
1965	97.71	2.29
1970	96.71	3.29
1975	96.21	3.79
1980	96.98	3.02
1985	96.13	3.87
1990	93.34	6.66
1995	90.32	9.68
2000	81.61	18.39
2005	80.34	19.66
2010	78	22
2015	70.62	29.38

〈표 1〉 영국 하원의원 남녀 성비 변화 (1965년 이후)²⁹⁷⁾

- 보수당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가 지난 2005년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A-List로 불리는 ‘우선목록(priority list)’ 제도를 도입함.²⁹⁸⁾
 - A-List는 적격후보자 명단에 여성 및 소수민족(BAME: Black and Minority Ethnic) 후보자들을 많이 포함시켜 각 지구당이 해당 명단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지구당 위원들로부터 “지역 내 유능한 후보자들을 제외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 는 불만을 야기하는 등 시행에 난관을 겪음.
 - 캐머런 당수는 최종후보자 명단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全)여성 최종 후보자(AWS)’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함. 보수당은 이에 따라 지구당위원회가 후보자 선정의 최종 선택권을 갖되, 선정 과정에서 최소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A-List를 활용할 수

297) <http://myparliament.info/Historical/Commons#contentTabs:trends> (검색일: 2015.10.8.)

298) Williams & Paun, *Party People*, pp. 17-19.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본부(CCHQ)의 권한 강화에 진력함.

- 노동당은 보수당에 비해 보다 조직적으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 지원활동을 전개해 옴.²⁹⁹⁾
 - 이미 1980년대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권장함. 이후 1993년 ‘전(全)여성 최종후보자(AWS)’ 제도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됨. ‘전(全)여성 최종후보자(AWS)’ 제도를 통해 노동당은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지역구의 최소 5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지정함.
 - ‘전(全)여성 최종후보자(AWS)’ 는 그러나 소수자(이민족,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지원에는 한계를 노정함. 이에 따라 전체 적격후보자가 소수자로 구성된 ‘all-BAME shortlists’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다만 ‘전(全)여성 최종후보자(AWS)’ 제도의 활용에 따른 소수자의 정치 참여 실적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 (2005년: 13명, 2010년: 16명, 2015년: 23명 등). 노동당 내에서는 소수자 출신의 하원의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³⁰⁰⁾

299) *ibid.*, pp. 28-30.

300) Labourlist, Labour must double the number of BAME MPs, says Yvette Cooper (26 June, 2015): <http://labourlist.org/2015/06/labour-must-double-the-number-of-bame-mps-says-yvette-cooper/> (검색일: 2015.10.10.)

3) 정당별 의원정수 대비 여성의원수³⁰¹⁾

의원정수		정당명	여성의원수		비고
하원	상원		하원	상원	
330	227	Conservative	68	48	
232	211	Labour	99	65	
55	0	Scottish National Party	19	0	
8	4	Democratic Unionist Party	0	1	
8	101	Liberal Democrat	0	35	
4	0	Sinn Fein	0	0	
3	2	Plaid Cymru	1	0	
3	0	Social Democratic & Labour Party	1	0	
2	175	Independent(하원)/Crossbench(상원)	2	37	무소속
2	2	Ulster Unionist Party	0	0	
1	1	Green Party	1	0	
1	0	Speaker	0	0	
1	3	UK Independence Party	0	0	
650	726	합 계	191	186	

301) <http://www.parliament.uk/mps-lords-and-offices/mps/current-state-of-the-parties/>
<http://www.parliament.uk/mps-lords-and-offices/lords/composition-of-the-lords/>
<http://myparliament.info/Historical/Commons#contentTabs:membership-by-gender>(검색일: 2015.10.8.)

2. 독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1) 정당의 창당 및 운영 실태

○ 정당 창당의 법적 요건(정당법 등)

- 정당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적 기초는 기본법 제21조와 정당법 (Parteiengesetz)임.
- 정당에 관한 사항, 특히 정당의 헌법적 지위와 과제 및 정당의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방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기본법 제21조제3항」).
- 정당의 명칭, 정당의 내부적 질서, 국가적 재정지원의 원칙과 그 범위, 재정보고서의 작성 및 위헌적 정당의 금지조치의 집행 등과 같은 정당 관련 사항은 정당법(Parteiengesetz)에서 규율하고 있음.
- 정당의 목적은 정강에 명시되어야 함(「정당법 제1조제3항」).
- 정당의 개념은 「정당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
- 법인은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자연인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음 (「정당법 제2조제1항」).

[관련 조문]

「기본법」

제21조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적

질서는 민주주의적 기본원칙들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자신의 자금 및 자산의 출처와 사용에 대해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정당의 목적 또는 정당 지지자들의 행동에 비추어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고자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 여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 (3) 세부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GG」

Artikel 21

- (1) Die Parteien wirken bei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des Volkes mit. Ihre Gründung ist frei. Ihre innere Ordnung muß demokratischen Grundsätzen entsprechen. Sie müssen über die Herkunft und Verwendung ihrer Mittel sowie über ihr Vermögen öffentlich Rechenschaft geben.
- (2) Parteien, die nach ihren Zielen oder nach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arauf ausgeh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zu beeinträchtigen oder zu beseitigen oder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fährden, sind verfassungswidrig. Über die Frage der Verfassungswidrigkeit entscheide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3) Das Nähere regeln Bundesgesetze.

「정당법」

제1조(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임무)

- (1) 정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상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대해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이바지함으로써 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되고 보장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 (2) 정당은 특히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문화를 진작·심화시키며 정치적 생활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공적책임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고 연방·주 및 자치단체와 관련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의회와 정부의 정치적 발전에 영향을 주며 정당을 통해 추구된 정치적 목적을 국가 의사형성과정에 도입하고 국민과 국가기관간의 항구적이고 활발한 결합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공적생활영역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형성에 협력한다.
- (3) 정당은 그 목적을 정강에 명기한다.
- (4) 정당은 그 자금을 기본법과 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제2조(정당의 개념)

- (1) 정당이라 함은 연방 또는 주 의회에 대해 영속적 또는 상당한 기간동안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실질적관계의 총체로 특히 그 조직의 규모와 확고성, 구성원 수 및 여론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볼 때 이러한 목적을 진지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충분한 보장이 있고 독립연방하원 또는 주 의회에서 국민의 대표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시민들의 단체를 말한다. 정당의 구성원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 (2) 단체가 6년 동안 연방하원 의원선거나 주 의회 의원선거에 자기 후보자를 추천하여 참가하지 아니하면 정당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상실한다.
- (3) 다음 각 호와 같은 정치적 단체들은 정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당원 또는 집행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2. 소재지 또는 업무집행지가 이 법률의 적용범위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

「PartG」

§ 1 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und Aufgaben der Parteien

- (1) Die Parteien sind ein verfassungsrechtlich notwendiger Bestandteil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Sie erfüllen mit ihrer freien, dauernden Mitwirkung an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des Volkes eine ihnen nach dem Grundgesetz obliegende und von ihm verbürgte öffentliche Aufgabe.
- (2) Die Parteien wirken an der Bildung des politischen Willens des Volkes auf allen Gebieten des öffentlichen Lebens mit, indem sie insbesondere auf die Gestaltung der öffentlichen Meinung Einfluß nehmen, die politische Bildung anregen und vertiefen, die aktive Teilnahme der Bürger am politischen Leben fördern, zur Übernahme öffentlicher Verantwortung befähigte Bürger heranbilden, sich durch Aufstellung von Bewerbern an den Wahlen in Bund, Ländern und Gemeinden beteiligen, auf die politische Entwicklung in Parlament und Regierung Einfluß nehmen, die von ihnen erarbeiteten politischen Ziele in den Prozeß der staatlichen Willensbildung einführen und für eine ständige lebendige Verbindung zwischen dem Volk und den Staatsorganen sorgen.
- (3) Die Parteien legen ihre Ziele in politischen Programmen nieder.
- (4) Die Parteien verwenden ihre Mittel ausschließlich für die ihnen nach dem Grundgesetz und diesem Gesetz obliegenden Aufgaben.

§ 2 Begriff der Partei

- (1) Parteien sind Vereinigungen von Bürgern, die dauernd oder für längere Zeit für den Bereich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auf die politische Willensbildung Einfluß nehmen und an der Vertretung des Volkes im Deutschen Bundestag oder einem Landtag mitwirken wollen, wenn sie nach dem Gesamtbild der tatsächlichen Verhältnisse, insbesondere nach Umfang und Festigkeit ihrer Organisation, nach der Zahl ihrer Mitglieder und nach ihrem Hervortreten in der Öffentlichkeit eine ausreichende Gewähr für die Ernsthaftigkeit dieser Zielsetzung bieten. Mitglieder einer Partei können nur natürliche Personen sein.
- (2) Eine Vereinigung verliert ihre Rechtsstellung als Partei, wenn sie sechs Jahre lang weder an einer Bundestagswahl noch an einer Landtagswahl mit eigenen Wahlvorschlägen teilgenommen hat.
- (3) Politische Vereinigungen sind nicht Parteien, wenn
 1. ihre Mitglieder oder die Mitglieder ihres Vorstandes in der Mehrheit Ausländer sind oder
 2. ihr Sitz oder ihre Geschäftsleitung sich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befindetet.

○ 정당의 구성 및 성립요건

- 기본법 제21조제1항제2문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정당의 설립을 위해서는 정당 설립을 원하는 참여자의 설립정관이 작성 되어야 하며, 정당 설립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연인만 가능함.
- 정당은 연방 또는 주 의회에 지속적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적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당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판단은 조직의 규모, 구성원의 수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정당법 제2조제1항」).
- 정당의 설립요건으로서 발기인 또는 당원 숫자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와 지역별 조직이 얼마나 갖춰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상의 구체적인 규

정은 없음.

- 다만 법원은 「정당법 제2조」의 해석적용을 통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원 숫자로서 55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연방의회선거에서는 당시 당원 숫자가 61명이었던 정당명 “Nein!-Idee”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연방의회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된 바 있음.³⁰²⁾
- 신설되는 정당의 명칭은 기존정당의 명칭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정당법 제4조」).
- 정당은 서면으로 작성된 당규와 정강을 보유하여야 함(「정당법 제6조제1항」).

[관련조문]

「정당법」

제4조(명칭)

(1) 정당의 명칭은 기존정당의 명칭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약칭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거운동 및 선거절차에 있어서는 당헌에 규정된 명칭이나 그 약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부가의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조 (당규 및 정강)

(1) 정당은 서면으로 작성된 당규와 정강을 지녀야 한다. 각각의 상급 지역조직의 당규에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조직들이 독자적인 당규에 의거하여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하 생략)

「PartG」

§ 4 Name

(1) Der Name einer Partei muß sich von dem Namen einer bereits bestehenden Partei deutlich unterscheiden; das gleiche gilt für Kurzbezeichnungen. In der Wahlwerbung und im Wahlverfahren darf nur der satzungsmäßige Name oder dessen Kurzbezeichnung geführt werden; Zusatzbezeichnungen können weggelassen werden.

302) https://de.wikipedia.org/wiki/Politische_Partei#cite_note-26

(이하 생략)

§ 6 Satzung und Programm

(1) Die Partei muß eine schriftliche Satzung und ein schriftliches Programm haben. Die Gebietsverbände regeln ihre Angelegenheiten durch eigene Satzungen, soweit die Satzung des jeweils nächsthöheren Gebietsverbandes hierüber keine Vorschriften enthält.

(이하 생략)

○ 정당의 등록 및 승인절차

- 정당의 설립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게 신고해야 함.
- 설립단계에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입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해당 정당이 실제로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가 심사되며, 정당으로 승인을 받은 단체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8조제2항」).
- 독일 연방의회 또는 주 의회에 직전 선거일 이후부터 중단 없이 자신의 선거입후보자 명단에 기초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선거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의 신고 없이 정당으로서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선거 시마다 참여를 통보하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으로서의 심사를 거침(「연방선거법 제18조제2항」).
- 선거참여를 신청한 정당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서는 신고 후 지체 없이 우선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이 서류의 형식적 요건들에 대해 심사를 하고, 치유할 수 있는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여 치유하게 함(「연방선거법 제18조제3항」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33조제1항」).
-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킨 유효한 신고서를 제출한 정당에 대해 연방선

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승인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며, 그 결과는 선거일 79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제18조제4항).

- 구체적인 심사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당의 당규와 정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정당이 정당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특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당 고유성에 대한 심사와 기타 선거참여절차상의 흠결에 대한 심사는 구분되며, 정당 고유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타 절차상의 흠결 치유는 의미가 없음(「연방선거법 제18조제3항」).
- 연방선거위원회의 심사는 기본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정당들과 평등하게 선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급적 보장하여야 하며, 정당으로서의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방선거위원회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함(「연방선거법 제18조제4항」).
- 정당의 선거참여 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후보자 추천권을 보유한 정당 또는 단체로서 인정함(「정당법 제18조제4a항」).

[관련 조문]

「연방선거법」

제18조 (선거입후보권, 선거참여신고)

- (1) 선거입후보자 명단은 정당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 (2) 독일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에 직전 선거일 이후부터 중단없이 자신의 선거입후보자 명단에 기초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당들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선거일 97일 18시 전까지 연방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에의 참여를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의 정당으로서의 특질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거입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정당이 어떠한 명칭으로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신고서에는 당대표와 그 대행자를 포함하여 당의 연방조직 지도부 3명 이상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정당에 연방조직 지도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최상급 정당조직의 지도부가 연방조직 지도부를 대신한다. 서면으로 작성된 정당의 당규와 정강 및 당 지도부가 당 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정당법 제2조제1항제1문에 따른 정당의 자격에 관한 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신고서상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 지도부에 알리고 치유할 수 있는 흠결의 제거를 요구한다.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유효하게 접수된 신고서상의 흠결만이 치유될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제2항의 형식 내지는 기한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2. 정당의 명칭이 없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유효한 서명들 및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결여된 경우, 다만 정당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들로 인해 이러한 서류들을 적시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당 지도부 구성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당으로서의 특질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어떠한 하자치유도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당 지도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9일 전까지 모든 선거관리기관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속력 있게 확정한다.

1. 어떠한 정당들이 독일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에 직전 선거일 이후부터 중단없이 자신의 선거 입후보자 명단에 기초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2. 어떠한 단체들이 제2항에 따라 선거참여를 신고하였으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승인받았는지에 대한 사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심사결과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의 발표로 확정된다. 심사결과는 공표된다.

(4a) 후보자추천서의 제출을 저지하도록 하는 제4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정당 또는 단체는 공표 후 4일 이내에 연방헌법재판소에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 또는 단체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장 59일까지는 선거후보자 추천권이 있는 정당으로서 취급된다.

(5) 정당은 각각의 선거구에 한 명만의 후보자를 낼 수 있으며 각 주별로 정당비례대표명단을 제출

할 수 있다.

「BWahlG」

§ 18 Wahlvorschlagsrecht, Beteiligungsanzeige

(1) Wahlvorschläge können von Parteien und nach Maßgabe des § 20 von Wahlberechtigten eingereicht werden.

(2) Parteien, die im Deutschen Bundestag oder einem Landtag seit deren letzter Wahl nicht auf Grund eigener Wahlvorschläge ununterbrochen mit mindestens fünf Abgeordneten vertreten waren, können als solche einen Wahlvorschlag nur einreichen, wenn sie spätestens am siebenundneunzigsten Tage vor der Wahl bis 18 Uhr dem Bundeswahlleiter ihre Beteiligung an der Wahl schriftlich angezeigt haben und der Bundeswahlausschuß ihre Parteieigenschaft festgestellt hat. In der Anzeige ist anzugeben, unter welchem Namen sich die Partei an der Wahl beteiligen will. Die Anzeige muß von mindestens drei Mitgliedern des Bundesvorstandes, darunter dem Vorsitzenden oder seinem Stellvertreter, persönlich und handschriftlich unterzeichnet sein. Hat eine Partei keinen Bundesvorstand, so tritt der Vorstand der jeweils obersten Parteiorganisation an die Stelle des Bundesvorstandes. Die schriftliche Satzung und das schriftliche Programm der Partei sowie ein Nachweis über die satzungsgemäße Bestellung des Vorstandes sind der Anzeige beizufügen. Der Anzeige sollen Nachweise über die Parteieigenschaft nach § 2 Absatz 1 Satz 1 des Parteiengesetzes beigefügt werden.

(3) Der Bundeswahlleiter hat die Anzeige nach Absatz 2 unverzüglich nach Eingang zu prüfen. Stellt er Mängel fest, so benachrichtigt er sofort den Vorstand und fordert ihn auf, behebbare Mängel zu beseitigen. Nach Ablauf der Anzeigefrist können nur noch Mängel an sich gültiger Anzeigen behoben werden. Eine gültige Anzeige liegt nicht vor, wenn

1. die Form oder Frist des Absatzes 2 nicht gewahrt ist,

2. die Parteibezeichnung fehlt,

3. die nach Absatz 2 erforderlichen gültigen Unterschriften und die der Anzeige beizufügenden Anlagen fehlen, es sei denn, diese Anlagen können infolge von Umständen, die die Partei nicht zu vertreten hat, nicht rechtzeitig vorgelegt werden,

4. die Vorstandsmitglieder mangelhaft bezeichnet sind, so daß ihre Person nicht feststeht.

Nach der Entscheidung über die Feststellung der Parteieigenschaft ist jede

Mängelbeseitigung ausgeschlossen. Gegen Verfügungen des Bundeswahlleiters im Mängelbeseitigungsverfahren kann der Vorstand den Bundeswahlausschuß anrufen.

(4) Der Bundeswahlausschuß stellt spätestens am neunundsiebzigsten Tage vor der Wahl für alle Wahlorgane verbindlich fest, 1,

welche Parteien im Deutschen Bundestag oder in einem Landtag seit deren letzter Wahl auf Grund eigener Wahlvorschläge ununterbrochen mit mindestens fünf Abgeordneten vertreten waren,

2, welche Vereinigungen, die nach Absatz 2 ihre Beteiligung angezeigt haben, für die Wahl als Parteien anzuerkennen sind; für die Ablehnung der Anerkennung als Partei für die Wahl ist eine Zweidrittelmehrheit erforderlich.

Die Feststellung ist vom Bundeswahlleiter in der Sitzung des Bundeswahlausschusses bekannt zu geben. Sie ist öffentlich bekannt zu machen.

(4a) Gegen eine Feststellung nach Absatz 4, die sie an der Einreichung von Wahlvorschlägen hindert, kann eine Partei oder Vereinigung binnen vier Tagen nach Bekanntgabe Beschwerde zum Bundesverfassungsgericht erheben. In diesem Fall ist die Partei oder Vereinigung von den Wahlorganen bis zu ein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längstens bis zum Ablauf des neunundfünfzigsten Tages vor der Wahl wie eine wahlvorschlagsberechtigte Partei zu behandeln.

(5) Eine Partei kann in jedem Wahlkreis nur einen Kreiswahlvorschlag und in jedem Land nur eine Landesliste einreichen.

「연방선거법시행령」

제33조 (연방선거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정당의 선거참여 통고, 흠결의 치유)

(1) 연방선거위원장은 각각의 참여통고에 접수날짜를 표시하고 통고가 연방선거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심사한다. 연방선거위원장이 흠결을 확인하면 즉시 정당 지도부에게 통보하고 보완 가능한 흠결은 적시에 치유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경우에 연방선거위원장은 연방선거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1. 통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유효한 통고 그 자체의 흠결만이 치유될 수 있다.
2. 정당의 자격에 대한 확정결정 이후에는 어떠한 흠결의 치유도 배제된다.
3. 정당 지도부는 연방선거위원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연방선거위원회를 제소할 수 있다.

(2) 연방선거위원장은 선거참여를 통고한 단체가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연방선거위원장은 회의의 소환장에 회의에서의 결정사항과 그 법적결과에 대한 공시사항을 적시한다. 연방선거위원장은 연방선거위원회에 이들의 선거참여 통고내용을 제출하고

예비심사의 결과를 보고한다. 최종결정 이전에 출석한 참석자에게는 그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한다.

- (3) 연방선거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확인과 관련하여 연방선거위원장은 연방선거위원회의 결정을 회의에서 간략한 이유를 제시하여 고지한다. 연방선거위원장은 해당결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 또는 단체가 위 결정으로 후보자추천서의 제출이 중단된 경우, 연방선거위원장은 연방선거법 제18조제4a항에 따른 항고로 인하여 후보자추천 자격의 유지기한과 항고에 따른 법적 결과 등 임시적 법적조치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한다.
- (4) (연방선거법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회의에 대한 기록은 지체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기록에는 중요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방선거위원장은 정당 또는 단체에게 연방선거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후보자추천서의 제출이 저지된다는 사실에 대해 지체 없이, 늦어도 연방선거위원회의 회의가 종결된 날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회의록 중 해당 정당 또는 단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3항제2문에 따라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BWO」

§ 33 Beteiligungsanzeige der in § 18 Abs. 2 des Bundeswahlgesetzes genannten Parteien, Beseitigung von Mängeln

(1) Der Bundeswahlleiter vermerkt auf jeder Beteiligungsanzeige den Tag des Eingangs und prüft unverzüglich, ob sie den Anforderungen des Bundeswahlgesetzes entspricht. Stellt er Mängel fest, so benachrichtigt er sofort den Vorstand der Partei und fordert ihn auf, behebbare Mängel rechtzeitig zu beseitigen; dabei hat er darauf hinzuweisen, dass nach der Bestimmung des § 18 Abs. 3 des Bundeswahlgesetzes

1. nach Ablauf der Anzeigefrist nur noch Mängel an sich gültiger Anzeigen behoben werden können,

2. nach der Entscheidung über die Feststellung der Parteieigenschaft jede Mängelbeseitigung ausgeschlossen ist,

3. der Vorstand der Partei gegen Verfügungen des Bundeswahlleiters den Bundeswahlausschuss anrufen kann.

(2) Der Bundeswahlleiter lädt die Vereinigungen, die ihre Beteiligung an der Wahl angezeigt haben, zu der Sitzung, in der über ihre Anerkennung als Partei für die Wahl entschieden wird. In der Ladung weist er auf die Bekanntgabe der Entscheidung in der Sitzung und die Rechtsfolgen hin. Er legt dem Bundeswahlausschuss die Beteiligungsanzeigen vor und berichtet über das Ergebnis der Vorprüfung. Vor der Beschlussfassung ist den erschienenen Beteiligten Gelegenheit zur Äußerung zu geben.

(3) Im Anschluss an die Feststellung nach § 18 Abs. 4 des Bundeswahlgesetzes gibt der Bundeswahlleiter die Entscheidung des Bundeswahlausschusses in der Sitzung unter kurzer Angabe der Gründe bekannt. Ist eine Partei oder Vereinigung wegen der Feststellung an der Einreichung von Wahlvorschlägen gehindert, weist er dabei auf den Rechtsbehelf der Beschwerde nach § 18 Absatz 4a des Bundeswahlgesetzes, die hierfür geltende Frist und die Rechtsfolgen einer Beschwerde hin. Die Entscheidung ist vom Bundeswahlleiter öffentlich bekanntzumachen.

(4) Die Niederschrift über die Sitzung (§ 5 Absatz 7) ist unverzüglich auszufertigen. In der Niederschrift sind die tragenden Gründe darzustellen. Der Bundeswahlleiter übermittelt Parteien oder Vereinigungen, die durch die Feststellung des Bundeswahlausschusses an der Einreichung von Wahlvorschlägen gehindert sind, unverzüglich, spätestens am Tag nach der Sitzung des Bundeswahlausschusses auf schnellstem Wege eine Ausfertigung des sie betreffenden Teils der Niederschrift mit den nach Absatz 3 Satz 2 erforderlichen Hinweisen.

○ 정당의 조직 운영 관련 근거 내용(관련법, 규정)

- 정당의 필수적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에 정한 기본적 사항 외에 일반적 구조 및 조직구성은 각 정당의 당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현재 각 정당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연방조직, 주(州)조직, 지역조직(시, 군, 구)으로 나뉘어 구성됨.
- 연방조직, 주(州)조직, 지역조직들에는 각각 대표자와 지도부가 존재하며, 당 대표 및 지도부는 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됨.
- 당의 최고 의결기구는 당원총회이며, 연방조직과 주(州)조직 및 지역 조직간에는 형식적으로는 명령, 지도 체계가 존재하지는 않음.
- 「정당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당의 조직으로는 당원총회 및 대의원회(「정당법 제9조 및 제13조」), 지도부(「정당법 제11조」), 당 위원회(「정당법 제12조」), 정당중재재판소(「정당법 제14조」)가 있음.

- 당원총회는 정당 및 정당 지구당의 필수적인 기관에 해당함(「정당법 제8조제1항」).
- 지구당이 없이 한정된 지역(도시 주-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을 대상으로 조직된 정당이 25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당원총회로 같음할 수 있음(「정당법 제8조제1항」).
- 각 지구당의 의사형성을 위해 자유롭게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여 당헌에 규정되어야 함(「정당법 제8조제2항」).
-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는 각 지구당의 최고기구에 해당함(「정당법 제9조제1항」).
- 정당의 상위 조직범위의 당원 또는 대의원총회는 “전당대회(Parteitag)”로 지칭하며, 이러한 전당대회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함(「정당법 제9조제1항」).
- 전당대회는 최소 2년마다 정당지도부의 활동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의결함(「정당법 제9조제5항」).
- 전당대회에서는 회계감사관을 선출하여 정당지도부의 활동보고서 중 재정 부문에 대해 감사를 수행함(「정당법 제9조제5항」).
- 「정당법 제11조」는 정당의 지도부에 선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당 지도부 선출은 매 2년마다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정당법 제11조제1항」).
- 지도부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장단(Präsidium)을 당 지도부 내에 구성할 수 있음(「정당법 제11조 제4항」).
- 정당의 정치적, 조직적 문제의 심의 또는 결정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진 일반적인 당위원회 및 이와 유사한 기관의 구성은 당헌에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정당법 제12조」).

- 대의원회 또는 조직 구성원의 전체나 일부가 지구당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관의 구성에 대해서는 당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정당법 제13조제1항」).
- 정당 또는 지구당 당원간의 분쟁 및 당헌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당중앙재판소를 각 정당과 최상위 지구당에 설치해야 함(「정당법 제14조제1항」).
- 정당중재재판소 위원은 최장 4년의 임기로 선출됨(「정당법 제14조제2항」).
- 정당중재재판소 위원은 정당 또는 지구당 지도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정당 또는 지구당과 고용관계를 맺을 수도 없으며, 정당 또는 지구당으로부터 기타 정기적인 급부를 받을 수도 없음(「정당법 제14조제2항」).
- 중재재판소의 활동에 관한 중재재판소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심원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헌으로 규정할 수 있음(「정당법 제14조제4항」).
- 각 기관의 의사형성과 관련하여 법률 또는 당헌에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단순다수결을 원칙으로 함(「정당법 제15조제1항」).

[관련 조문]

「정당법」

제 7 조 (정당의 구성) (1) 정당은 지구당으로 구성된다. 지구당의 규모와 범위는 당헌으로 정한다. 지역적인 조직은 각 당원이 정당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1개의 정당조직이 도시 주(Stadtstaat)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구당을 두지 아니한다. 즉, 그 조직은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정당이다. 정당조직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다수 지구당의 조직적 연합은 허용된다.

(2) 정당에 주지구당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주지구당과 관련된 규정은 그 정당의 직근 하위 지구당에 적용된다.

제 8 조 (정당의 기관) (1) 당원총회(Mitgliederversammlung)와 이사회는 정당과 지구당의 필수적인 기관이다. 최소단위 이상의 지구당은 그의 직근 하위 지구당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에서 최고 2년의 임기로 선출된 대의원회의가 당원총회를 대리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규정할 수 있다. 지구당이 없는 주정당(제7조제1항제4문)은 25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경우 대의원회의를 당원총회로 같음할 수 있다. 대의원회의는 당원이 250명 이상인 최소단위 지구당(Ortsverband) 또는 구역이 넓은 지구당에 설치될 수 있다.

(2) 각 지구당의 의사형성을 도모하는 그 밖의 제도(기관)를 당헌에 규정할 수 있다. 그 기관들의 기능은 당헌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9 조(당원총회와 대의원회의<전당대회, 총회>) (1)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전당대회, 총회)는 각 지구당의 최고기구이다.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는 상위 지구당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최하위지구당의 경우에는 "총회"라고 칭한다. 전당대회에 관한 다음의 규정은 총회에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전당대회는 적어도 2년에 1회 소집한다.

(2) 이사, 지구당의 기타 기관의 구성원 및 제11조제2항에 열거된 인적 범위에 속하는 자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헌에 규정된 회의구성원 총수의 5분의 1에 한하여 표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전당대회는 그 정당 내부의 지구당의 권한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강, 당헌, 기부금 규정, 중재재판소규정, 해산 및 다른 정당과의 합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4) 전당대회는 이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구당위원장, 부위원장 및 기타 이사회 회의 구성원, 그 밖의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 및 상위 지구당 기관에의 대표를 선출한다.

(5) 당대회는 최소한 2년마다 이사회의 활동보고서를 받고 이를 의결한다. 당해 보고의 재정부문은 보고하기 전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회계감사관(Rechnungsprüfer)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이사회) (1) 이사는 적어도 2년마다 선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에 의하여 그 직위나 의석을 취득한 의원과 기타 당인사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될 수 있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는 이사의 비율은 전체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정당의 총재(Vorsitzender)와 재무국장(Schatzmeister)은 그 정당 산하의 정치재단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지구당을 법률과 당헌 및 그의 지구당의 상위기관의 의결에 따라 지도하고 당무를 관장한다.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26조제1항제2문 및 제3문에 의하여 지구당을 대표한다.

(4)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특히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 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집행이사회(의장단, Präsidium)를 둘 수 있다. 간부회의 구성원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선출되거나 당헌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일반적인 당위원회) (1) 당헌에 의해 정당의 정치적 그리고 조직적 문제의 심의 또는 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당위원회 및 이와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은 마찬가지로 하위 지구당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다.

(2) 이사 및 제11조제2항에 열거한 자들은 당헌에 의하여 일반 당위원회 및 그 유사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비율은 그 기관 구성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권만을 가진 구성원의 비율은 3분의 1이 초과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기구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는 못한다.

(3) 제1항에서 언급한 기관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의 임기는 최고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의 또는 전체나 그 일부가 지구당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타 기관의 구성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정한다. 지구당의 대의원수는 1차적으로 대표당원의 수에 따라 배정한다. 나머지 대의원은 대의원총수의 반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최근에 실시된 연방하원의원선거에서 당해 지구당의 지역에서 획득한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지구당에 배정하는 것을 당헌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권의 행사는 지구당의 당비 납부의무의 이행과 관련시킬 수 있다.

제 14 조 (정당중재재판소) (1) 정당 또는 지구당 당원간의 분쟁 및 당헌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한 정당과 최상위 지구당에는 중재재판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단위(Kreisstufe)의 여러 지구당을 위해서 공동중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중재재판소 위원은 최고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중재위원은 정당 또는 지구당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정당이나 지구당과 고용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정당이나 지구당으로부터 정기적인 급부를 받을 수 없다. 중재위원은 독립적이며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3) 중재재판소는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분쟁당사자들에 의하여 동등한 수로 지명된 배심원을 둘 수 있음을 당헌으로 정할 수 있다.
- (4) 중재재판소의 활동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청문, 정당한 절차, 그리고 불공정을 이유로 중재재판소에의 참석거부 등을 보장하는 중재재판소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 15 조 (기관의 의사형성) (1) 정당의 기관은 법률 또는 당헌에 의하여 특별다수결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단순다수결로 의결한다.

- (2) 이사 및 대의원회의와 상위 지구당의 기관에 파견할 대표의 선출은 비밀투표로 한다. 기타의 사항들은 이의가 없는 한 공개투표로 의결한다.
- (3) 발의권은 민주적인 의사형성이 보장되고, 특히 소수파들도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상위 지구당의 집회에서는 적어도 2개의 직근 하위 지구당의 대표들에게는 발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 타 기관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PartG」

§ 7 Gliederung

(1) Die Parteien gliedern sich in Gebietsverbände. Größe und Umfang der Gebietsverbände werden durch die Satzung festgelegt. Die gebietliche Gliederung muß so weit ausgebaut sein, daß den einzelnen Mitgliedern eine angemessene Mitwirkung an der Willensbildung der Partei möglich ist. Beschränkt sich die Organisation einer Partei auf das Gebiet eines Stadtstaates, braucht sie keine Gebietsverbände zu bilden; sie ist Partei im Sinne dieses Gesetzes. Organisatorische Zusammenschlüsse mehrerer Gebietsverbände, die den verbandsmäßigen Aufbau der Parteiorganisation nicht wesentlich beeinträchtigen, sind zulässig.

(2) Soweit in einer Partei Landesverbände nicht bestehen, gelten die in diesem Gesetz für Landesverbände getroffenen Regelungen für die der Partei folgenden nächstniedrigen Gebietsverbände.

§ 8 Organe

(1) Mitgliederversammlung und Vorstand sind notwendige Organe der Partei und der Gebietsverbände. Durch die Satzung kann bestimmt werden, daß in den überörtlichen Verbänden an die Stelle der Mitgliederversammlung eine Vertreterversammlung tritt, deren Mitglieder für höchstens zwei Jahre durch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en der nachgeordneten Verbände gewählt werden. Landesparteien ohne Gebietsverbände (§ 7 Abs. 1 Satz 4) können die Mitgliederversammlung durch eine Vertreterversammlung ersetzen, wenn sie mehr als 250 Mitglieder haben. Vertreterversammlungen können auch für Ortsverbände von mehr als 250 Mitgliedern oder mit großer räumlicher Ausdehnung gebildet werden.

(2) Die Satzung kann weitere der Willensbildung des jeweiligen Gebietsverbandes dienende Einrichtungen (Organe) vorsehen. Sie sind in der Satzung ausdrücklich als solche zu bezeichnen.

§ 9 Mitglieder- und Vertreterversammlung (Parteitag, Hauptversammlung)

(1) Die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Parteitag, Hauptversammlung) ist das oberste Organ des jeweiligen Gebietsverbandes. Sie führt bei Gebietsverbänden höherer Stufen die Bezeichnung "Parteitag", bei Gebietsverbänden der untersten Stufe die Bezeichnung "Hauptversammlung"; die nachfolgenden Bestimmungen über den Parteitag gelten auch für die Hauptversammlung. Die Parteitage treten mindestens in jedem zweiten Kalenderjahr einmal zusammen.

(2) Vorstandsmitglieder, Mitglieder anderer Organe des Gebietsverbandes sowie Angehörige des in § 11 Abs. 2 genannten Personenkreises können einer Vertreterversammlung kraft Satzung angehören, dürfen aber in diesem Fall nur bis zu einem Fünftel der satzungsmäßigen Gesamtzahl der Versammlungsmitglieder mit Stimmrecht ausgestattet sein.

(3) Der Parteitag beschließt im Rahmen der Zuständigkeiten des Gebietsverbandes innerhalb der Partei über die Parteiprogramme, die Satzung, die Beitragsordnung, die Schiedsgerichtsordnung, die Auflösung sowie die Verschmelzung mit anderen Parteien.

(4) Der Parteitag wählt den Vorsitzenden des Gebietsverbandes, seine Stellvertreter und die übrigen Mitglieder des Vorstandes, die Mitglieder etwaiger anderer Organe und die Vertreter in den Organen höherer Gebietsverbände, soweit in diesem Gesetz nichts anderes zugelassen ist.

(5) Der Parteitag nimmt mindestens alle zwei Jahre einen Tätigkeitsbericht des Vorstandes entgegen und faßt über ihn Beschluß. Der finanzielle Teil des Berichts ist vor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echnungsprüfer, die von dem Parteitag gewählt werden, zu überprüfen.

§ 11 Vorstand

(1) Der Vorstand wird mindestens in jedem zweiten Kalenderjahr gewählt. Er muß aus mindestens drei Mitgliedern bestehen.

(2) Dem Vorstand können Abgeordnete und andere Persönlichkeiten aus der Partei kraft Satzung angehören, wenn sie ihr Amt oder ihr Mandat aus einer Wahl erhalten haben. Der Anteil der nicht nach § 9 Abs. 4 gewählten Mitglieder darf ein Fünftel der Gesamtzahl der Vorstandsmitglieder nicht übersteigen. Vorsitzender und Schatzmeister einer Partei dürfen nicht in einer der Partei nahestehenden politischen Stiftung vergleichbare Funktionen ausüben.

(3) Der Vorstand leitet den Gebietsverband und führt dessen Geschäfte nach Gesetz und Satzung sowie den Beschlüssen der ihm übergeordneten Organe. Er vertritt den Gebietsverband gemäß § 26 Absatz 1 Satz 2 und 3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soweit nicht die Satzung eine abweichende Regelung trifft.

(4) Zur Durchführung der Beschlüsse des Vorstandes sowie zur Erledigung der laufenden und der besonders dringlichen Vorstandsgeschäfte kann aus der Mitte des Vorstandes ein geschäftsführender Vorstand (Präsidium) gebildet werden. Seine Mitglieder können auch vom Vorstand gewählt oder durch die Satzung bestimmt werden.

§ 12 Allgemeine Parteiausschüsse

(1) Die Mitglieder von allgemeinen Parteiausschüssen und ähnlichen Einrichtungen, die nach der Satzung umfassende Zuständigkeiten für die Beratung oder Entscheidung politischer und organisatorischer Fragen der Partei besitzen, können auch von nachgeordneten Gebietsverbänden gewählt werden.

(2) Der Vorstand und Angehörige des in § 11 Abs. 2 genannten Personenkreises können einem solchen Organ kraft Satzung angehören. Der Anteil der nicht gewählten Mitglieder darf ein Drittel der Gesamtmitgliederzahl des Organs nicht übersteigen; er kann um weitere Mitglieder mit nur beratender Stimme erhöht werden, muß jedoch auch dann noch unter der Hälfte der Gesamtmitgliederzahl des Organs liegen.

(3) Das Amt der gewählten Mitglieder der in Absatz 1 genannten Organe dauert höchstens zwei Jahre.

§ 13 Zusammensetzung der Vertreterversammlungen

Die Zusammensetzung einer Vertreterversammlung oder eines sonstigen Organs, das ganz oder zum Teil aus Vertretern von Gebietsverbänden besteht, ist in der Satzung festzulegen. Die Zahl der Vertreter des Gebietsverbandes ist in erster Linie nach der Zahl der vertretenen Mitglieder zu bemessen. Die Satzung kann bestimmen, daß die restliche Zahl der Vertreter, höchstens die Hälfte der Gesamtzahl, nach dem Verhältnis der im Bereich des Gebietsverbandes bei vorausgegangenen Wahlen zu Volksvertretungen erzielten Wählerstimmen auf die Gebietsverbände aufgeschlüsselt wird. Die Ausübung des Stimmrechts kann von der Erfüllung der Beitragspflicht des Gebietsverbandes abhängig gemacht werden.

§ 14 Parteischiedsgerichte

(1) Zur Schlichtung und Entscheidung von Streitigkeiten der Partei oder eines Gebietsverbandes mit einzelnen Mitgliedern und Streitigkeiten über Auslegung und Anwendung der Satzung sind zumindest bei der Partei und den Gebietsverbänden der jeweils höchsten Stufe Schiedsgerichte zu bilden. Für mehrere Gebietsverbände der Kreisstufe können gemeinsame Schiedsgerichte gebildet werden.

(2) Die Mitglieder der Schiedsgerichte werden für höchstens vier Jahre gewählt. Sie dürfen nicht Mitglied eines Vorstandes der Partei oder eines Gebietsverbandes sein, in einem Dienstverhältnis zu der Partei oder einem Gebietsverband stehen oder von ihnen regelmäßige Einkünfte beziehen. Sie sind unabhängig und an Weisungen nicht

gebunden.

(3) Die Satzung kann vorsehen, daß die Schiedsgerichte allgemein oder im Einzelfall mit Beisitzern besetzt werden, die von den Streitteilen paritätisch benannt werden.

(4) Für die Tätigkeit des Schiedsgerichts ist eine Schiedsgerichtsordnung zu erlassen, die den Beteiligten rechtliches Gehör, ein gerechtes Verfahren und die Ablehnung eines Mitglieds des Schiedsgerichts wegen Befangenheit gewährleistet.

§ 15 Willensbildung in den Organen

(1) Die Organe fassen ihre Beschlüsse mit einfacher Stimmenmehrheit, soweit nicht durch Gesetz oder Satzung erhöhte Stimmenmehrheit vorgeschrieben ist.

(2) Die Wahlen der Vorstandsmitglieder und der Vertreter zu Vertreterversammlungen und zu Organen höherer Gebietsverbände sind geheim. Bei den übrigen Wahlen kann offen abgestimmt werden, wenn sich auf Befragen kein Widerspruch erhebt.

(3) Das Antragsrecht ist so zu gestalten, daß eine demokratische Willensbildung gewährleistet bleibt, insbesondere auch Minderheiten ihre Vorschläge ausreichend zur Erörterung bringen können. In den Versammlungen höherer Gebietsverbände ist mindestens den Vertretern der Gebietsverbände der beiden nächstniedrigen Stufen ein Antragsrecht einzuräumen. Bei Wahlen und Abstimmungen ist eine Bindung an Beschlüsse anderer Organe unzulässig.

2) 정당 활동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

○ 정당 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정

- 기본법에 기초하여 독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의 성격에 기초하여(「정당법 제1조제1항 내지 제2항」), 정당 구성원 또는 정당 지도부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나 독일 연방법률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으로 인정되지 않음(「정당법 제2조제3항」).
- 소극적 요건으로서 6년 이상 연방하원선거 또는 주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아니하면 정당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함(「정당법 제2조제2항」).

- 신설되는 정당의 명칭은 기존정당의 명칭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정당법 제4조」).

[관련조문]

「정당법」

제2조(정당의개념)

- (1) 정당이라 함은 연방 또는 주 의회에 대해 영속적 또는 상당한 기간동안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실질적관계의 총체로 특히 그 조직의 규모와 확고성, 구성원 수 및 여론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볼 때 이러한 목적을 진지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충분한 보장이 있고 독일연방하원 또는 주 의회에서 국민의 대표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시민들의 단체를 말한다. 정당의 구성원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 (2) 단체가 6년 동안 연방하원 의원선거나 주 의회 의원선거에 자기 후보자를 추천하여 참가하지 아니하면 정당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상실한다.
- (3) 다음 각 호와 같은 정치적 단체들은 정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1. 당원 또는 집행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 2. 소재지 또는 업무집행지가 이 법률의 적용범위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

제4조(명칭)

- (1) 정당의 명칭은 기존정당의 명칭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약칭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거 운동 및 선거절차에 있어서는 당헌에 규정된 명칭이나 그 약칭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부가의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PartG」

§ 2 Begriff der Partei

- (1) Parteien sind Vereinigungen von Bürgern, die dauernd oder für längere Zeit für den Bereich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auf die politische Willensbildung Einfluß nehmen und an der Vertretung des Volkes im Deutschen Bundestag oder einem Landtag mitwirken wollen, wenn sie nach dem Gesamtbild der tatsächlichen Verhältnisse, insbesondere nach Umfang und Festigkeit ihrer Organisation, nach der Zahl ihrer Mitglieder und nach ihrem Hervortreten in der Öffentlichkeit eine ausreichende Gewähr für die Ernsthaftigkeit dieser Zielsetzung bieten. Mitglieder einer Partei können nur natürliche Personen sein.

(2) Eine Vereinigung verliert ihre Rechtsstellung als Partei, wenn sie sechs Jahre lang weder an einer Bundestagswahl noch an einer Landtagswahl mit eigenen Wahlvorschlägen teilgenommen hat.

(3) Politische Vereinigungen sind nicht Parteien, wenn

1. ihre Mitglieder oder die Mitglieder ihres Vorstandes in der Mehrheit Ausländer sind oder
2. ihr Sitz oder ihre Geschäftsleitung sich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befindet.

§ 4 Name

(1) Der Name einer Partei muß sich von dem Namen einer bereits bestehenden Partei deutlich unterscheiden; das gleiche gilt für Kurzbezeichnungen. In der Wahlwerbung und im Wahlverfahren darf nur der satzungsmäßige Name oder dessen Kurzbezeichnung geführt werden; Zusatzbezeichnungen können weggelassen werden.

(이하 생략)

○ 정당 활동의 주요 위법 사례(판례 분석)

- 위헌정당 내지 위헌적 조직으로 인정되어 해산의 대상이 된 것 이외에 정당명칭의 문제(「정당법 제4조」) 또는 정당 구성원이나 소재지의 문제(「정당법 제2조제3항」)로 심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

2. 위헌(법) 정당 해산 제도

1) 정당 해산 제도 존재 여부(헌법 및 법률 규정)

○ 정당의 자진해산

- 각 정당의 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해산에 대한 사항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정당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

[관련조문]

「정당법」

제6조(당헌과 정강)

- (1) 생략
- (2) 당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1~10호 생략

11. 전당대회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지구당 해산, 또는 다른 정당과의 합당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 당원의 직접투표와 그 절차. 전당대회의 의결사항은 이 직접투표의 결과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된다.

12. 생략

- (3) 지도부는 다음 사항을 연방선거위원회에게 통지한다.

1~2호 생략

3. 정당 또는 지구당의 해산

위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사항의 변경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누구든지 연방선거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자료의 사본은 신청에 의해 무료로 교부될 수 있다.

「PartG」

§ 6 Satzung und Programm

- (2) Die Satzungen müssen Bestimmungen enthalten über

1 ~ 10 (생략)

11. eine Urabstimmung der Mitglieder und das Verfahren, wenn der Parteitag die Auflösung der Partei oder des Gebietsverbandes oder die Verschmelzung mit anderen Parteien nach § 9 Abs. 3 beschlossen hat. Der Beschluß gilt nach dem Ergebnis der Urabstimmung als bestätigt, geändert oder aufgehoben,

12. (생략)

- (3) Der Vorstand hat dem Bundeswahlleiter

1. ~ 2 (생략)

3. Auflösung der Partei oder eines Landesverbandes

mitzuteilen. Änderungen zu Satz 1 Nr. 1 und 2 sind bis zum 31. Dezember des jeweiligen Kalenderjahres anzuzeigen. Die Unterlagen können beim Bundeswahlleiter von jedermann eingesehen werden. Abschriften dieser Unterlagen sind auf Anforderung gebührenfrei zu erteilen.

(이하 생략)

○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기초

-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음.
- 독일은 나치당의 집권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인정한 정당해산 심판제도를 1949년 독일 기본법에 규정하였음.
-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1조제2항」의 해석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도출하였음.
- 「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기 위한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구성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정당의 해산 및 그에 수반되는 조치들을 매우 폭넓고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음.
- 위헌정당 또는 조직의 해산심판 관할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있음(「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제1항」).

○ 위헌정당의 해산

- 위헌정당 또는 조직의 확인심판에는 대체조직에 대한 금지명령과 함께 해당 조직의 재산몰수를 명령할 수 있음(「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제3항」).
- 위헌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함(「연방선거법 제46조제1항 제5호」)
- 위헌으로 확인된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던 의원은 당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명부상의 승계권자인 경우에는 승계권을 상실함(「연방선거법 제46조제4항」).
-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에는 공석으로 남겨둠(「연방선거법 제46조제4항」).
-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당사자는 재입후보가 허용되지 않음(「연방선거법 제46조제4항」).

○ 대체조직의 금지

- 위헌정당에 해당하여 금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지된 정당의 위헌적인 행위를 대신하여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조직(대체조직)을 창설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대체조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금지됨(「정당법 제33조제1항」).
- 위헌정당 또는 조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체조직의 결성금지명령도 부가됨(「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제3항」).

[관련조문]

「기본법」

제21조

- (1) (생략)
- (2) 정당의 목적 또는 정당 지지자들의 행동에 비추어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고자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 여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 (3) 세부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GG」

Artikel 21

- (1) (생략)
- (2) Parteien, die nach ihren Zielen oder nach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arauf ausgeh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zu beeinträchtigen oder zu beseitigen oder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fährden, sind verfassungswidrig. Über die Frage der Verfassungswidrigkeit entscheide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3) Das Nähere regeln Bundesgesetze.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

- (1)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이 위헌임을 확인한다.
- (2) 이 확인은 정당의 법적 또는 조직적으로 독립된 부분에 한정할 수 있다.
- (3) 이 확인에는 정당 또는 정당의 독립된 부분의 해산 및 그 대체조직의 결성금지를 부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외에도 정당 또는 정당의 독립된 부분의 재산을 공익

목적에 위하여 연방이나 지방을 위해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BVerfGG」

- § 46 (1) Erweist sich der Antrag als begründet, so stell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est, daß die politische Partei verfassungswidrig ist.
- (2) Die Feststellung kann auf einen rechtlich oder organisatorisch selbständigen Teil einer Partei beschränkt werden.
- (3) Mit der Feststellung ist die Auflösung der Partei oder des selbständigen Teiles der Partei und das Verbot, eine Ersatzorganisation zu schaffen, zu verbind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kann in diesem Fall außerdem die Einziehung des Vermögens der Partei oder des selbständigen Teiles der Partei zugunsten des Bundes oder des Landes zu gemeinnützigen Zwecken aussprechen.

「정당법」

- 제 32 조(집행) (1)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면 주정부가 정한 관청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부수적인 집행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 최고행정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관할하는 다른 관청과 업무부서에 대해 무제한적 지시권을 갖는다.
- (2) 위헌판결을 받은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나 활동이 1개주의 영역을 넘어서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연방내무장관은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3)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 (4) 집행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은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어느 행정재판소의 절차가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중요한 관련을 갖는 문제에 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단하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이 명령한 특별집행조치를 실시하는 종류와 이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관해서도 결정한다.
- (5) 재산몰수의 경우에는 1964년 8월 5일의 공적결사에관한 법률(BGBI. I S.593)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지행정청은 주최고행정청으로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연방내무장관으로 한다.
- 제 33 조 (대체조직의 금지) (1) 연방헌법재판소에관한 법률 제46조와 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정당의 위헌적인 행위를 그 정당에 대신하여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조직(대체조직)을 창설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대체조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금지된다.
- (2) 원래의 정당에 대한 금지 전에 대체조직이 존재한 정당인 경우이거나 연방하원 또는 주의회에 대표를 보내고 있는 정당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당해 조직을 금지된 대체조직으로 간주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관한 법률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와 제46조제3항 및 이

법률의 제3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3) 다른 정당 또는 단체법(vereinsgesetz) 제2조에서 규정한 결사로서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은 단체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PartG」

§ 32 Vollstreckung

- (1) Wird eine Partei oder eine Teilorganisation einer Partei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so treffen die von den Landesregierungen bestimmten Behörden im Rahmen der Gesetze alle Maßnahmen, die zur Vollstreckung des Urteils und etwaiger zusätzlicher Vollstreckungsregel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erforderlich sind. Die obersten Landesbehörden haben zu diesem Zweck unbeschränktes Weisungsrecht gegenüber den Behörden und Dienststellen des Landes, die für die Wahr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zuständig sind.
- (2) Erstreckt sich die Organisation oder die Tätigkeit der Partei oder d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Teils der Partei über das Gebiet eines Landes hinaus, so trifft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die für eine einheitliche Vollstreckung erforderlichen Anordnungen.
- (3)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kann die Vollstreckung nach § 35 des Gesetzes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bweichend von den Vorschriften der Absätze 1 und 2 regeln.
- (4)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Vollstreckungsmaßnahmen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Betrifft ein verwaltungsgerichtliches Verfahren eine Frage, die für die Vollstreckung des Urteils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ist, so ist das Verfahren auszusetzen und die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einzuhol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t auch über Einwendungen gegen die Art und Weise der Durchführung der von ihm angeordneten besonderen Vollstreckungsmaßnahmen.
- (5) Im Falle der Vermögenseinziehung werden die §§ 10 bis 13 des Vereinsgesetzes vom 5. August 1964 (BGBl. I S. 593) entsprechend angewendet. Verbotsbehörde ist die oberste Landesbehörde, im Fall des Absatzes 2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 33 Verbot von Ersatzorganisationen

- (1) Es ist verboten, Organisationen zu bilden, die verfassungswidrige Bestrebungen einer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in Verbindung mit § 46 des Gesetzes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verbotenen Partei an deren Stelle weiter verfolgen (Ersatzorganisation) oder bestehende Organisationen als Ersatzorganisationen fortzuführen.
- (2) Ist die Ersatzorganisation eine Partei, die bereits vor dem Verbot der ursprünglichen Partei bestanden hat oder im Bundestag oder in einem Landtag vertreten ist, so stell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est, daß es sich um eine verbotene Ersatzorganisation handelt; die §§ 38, 41, 43, 44 und 46 Abs. 3 des Gesetzes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 32 dieses Gesetzes gelten entsprechend.
- (3) Auf andere Parteien und auf Vereine im Sinne des § 2 des Vereinsgesetzes, die Ersatzorganisationen einer verbotenen Partei sind, wird § 8 Abs. 2 des Vereinsgesetzes entsprechend angewandt.

「연방선거법」

제 46 조(연방하원의원자격의 상실) (1) 연방하원의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독일연방하원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의원자격의 취득이 무효로 된 경우
 2. 선거결과가 새로이 확정된 경우
 3.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4. 사임한 경우
 5. 소속 정당 또는 그 정당의 일부조직이 기본법 제21조제2항제2문에 의하여 위헌임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다른 법적규정에 의원자격의 상실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생략)
- (3) (생략)
- (4) 어느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기본법 제21조제2항제2문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위반으로 선언된 경우, 의원이 제소(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그에 대한 선고(연방헌법재판소에관한법률 제46조)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그 정당이나 일부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에는 그 의원은 독일연방하원의원직을 상실하며 명부상의 후임자는 그 승계권을 상실한다. 제1문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선거구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서의 의원선거는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재 실시 된다. 제1문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제1문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위헌판결을 받을 정당이나 그 일부조직의 주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의석은 그대로 공석이 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이 적용된다.

「BWahlG」

§ 46 Verlust der Mitgliedschaft im Deutschen Bundestag

(1) Ein Abgeordneter verliert die Mitgliedschaft im Deutschen Bundestag bei 1.

Ungültigkeit des Erwerbs der Mitgliedschaft,

2. Neufeststellung des Wahlergebnisses,

3. Wegfall einer Voraussetzung seiner jederzeitigen Wählbarkeit,

4. Verzicht,

5.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Partei oder der Teilorganisation einer Partei, der er angehört,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ach Artikel 21 Abs. 2 Satz 2 des Grundgesetzes.

Verlustgründe nach anderen gesetzlichen Vorschriften bleiben unberührt.

(2) (생략)

(3) (생략)

(4) Wird eine Partei oder die Teilorganisation einer Partei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ach Artikel 21 Abs. 2 Satz 2 des Grund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verlieren die Abgeordneten ihre Mitgliedschaft im Deutschen Bundestag und die Listennachfolger ihre Anwartschaft, sofern sie dieser Partei oder Teilorganisation in der Zeit zwischen der Antragstellung (§ 43 des Gesetzes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er Verkündung der Entscheidung (§ 46 des Gesetzes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ngehört haben. Soweit Abgeordnete, die nach Satz 1 ihre Mitgliedschaft verloren haben, in Wahlkreisen gewählt waren, wird die Wahl eines Wahlkreisabgeordneten in diesen Wahlkreisen bei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44 Abs. 2 bis 4 wiederholt; hierbei dürfen die Abgeordneten, die nach Satz 1 ihre Mitgliedschaft verloren haben, nicht als Bewerber auftreten. Soweit Abgeordnete, die nach Satz 1 ihre Mitgliedschaft verloren haben, nach einer Landesliste der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oder Teilorganisation der Partei gewählt waren, bleiben die Sitze unbesetzt. Im übrigen gilt § 48 Abs. 1.

2) 위헌(법) 정당 해산 사례(결정 및 판례 분석)

○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판결(BVerfGE 2,1)

- 사회주의제국당은 1949년 10월 2일 설립됨.
- 사회주의제국당의 정치적 활동은 설립 초기부터 연방 및 각 주에서 서독 정부의 정책에 대립하는 것이었음.
- 서독 연방정부는 사회주의제국당이 서독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으로 확신하여 1951년 5월 4일 의결을 통해 사회주의제국당이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임을 확인함.
- 1951년 11월 19일 서독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함.
- 심판청구서에서 서독 연방정부는 사회주의제국당이 나치당의 후속정당으로서 나치당과 동일 내지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함.
- 청구사항은 1) 사회주의제국당의 위헌성 확인, 2) 사회주의제국당 및 그의 모든 하부조직 해산, 3) 사회주의제국당과 그 하부조직인 제국전선, 제국청년단, 사회주의제국당여성동맹의 위장조직 및 대체조직 설립 금지, 4) 사회주의제국당과 그 하부조직의 재산을 연방에 귀속시켜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함.
- 이상의 청구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우선적으로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하였음.
-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형태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자주적 결정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구성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판시함.

-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기본적 원리로서 헌법에 의해 구체화된 인권, 생명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개인 권리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책임정치, 행정의 합법률성, 법원의 독립, 다수결원리, 복수정당제, 모든 정당의 기회균등 등이 있음.
-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사회주의제국당의 정강이 나치당과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구성원들의 성향과 정당 및 추종자들의 행동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함.
- 구체적으로는 1) 인종차별의 부활을 도모하는 추종자들의 행동을 통해 인권을 경시하고 있으며, 2)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복수정당제 자체를 공격하고 있고, 3) 내부 조직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4) 정강이 본질적으로 나치당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시함.
- 결과적으로 1952년 10월 23일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하였고 소속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되었음.

○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판결(BVerfGE 5, 85)

- 독일의 사회주의정당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정당인 독일공산당(KPD)과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온건 사회주의 정당인 사민당(SPD)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은 서독의 아데나워 정부의 정치질서를 공산주의적 시각에서 독점자본주의적 계급지배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독일공산당의 통일전략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함.
- 서독 연방정부는 1951년 11월 28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독일공산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956년 8월 17일에 내려짐.

- 5년여의 재판기간 동안 구체화된 사안의 내용은 판례집 기준으로 약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정당의 해산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포함한 판시가 이루어짐.
-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함.
- 서독지역의 독일공산당(KPD)은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동독공산당(SED)과의 유사성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동독공산당(SED)의 주장을 답습하였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독일공산당(KPD)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그 위헌성을 확인하였음.
- 해당 판례는 1) 독일 공산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배경과 절차에 대해, 2) 독일공산당의 목표와 활동 분석, 3) 연방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으로 나누어 판시하고 있음.
- 독일공산당(KPD)의 해산 이후 독일공산당의 재건움직임도 있었으나 대체정당 금지조항(「정당법 제33조」)으로 직접적인 연속성을 가진 정당의 재건은 불가능하였음.
- 서독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1968년 9월 25일 공산독일당(DKP)이 설립됨.
- 공산독일당(DKP)에 1971년 9월 독일공산당(KPD) 대표였던 MAX Reimann이 가입하면서 독일공산당과 정치적 동일성을 나타냄.
- 독일공산당(KPD)와는 달리 공산독일당(DKP)에 대해서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지 않음.
- 다만 서독 정부는 공산독일당(DKP)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소위 '급진주의자명령(Radikalenerlass)'을 통해 헌법적대적인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 공직취임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함.

○ 2001년 독일국가민주당(NPD)의 정당해산심판

-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 이후 나치 후속정당의 성격을 가진 독일국가민주당(NPD)이 1964년 설립됨.
- 독일국가민주당은 나치당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적 태도를 공공연하게 표방하였음.
- 1969년 연방의회선거에서는 비례의석 기준인 5% 지지조항에 거의 육박하는 4.3%를 득표하면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후 지지율의 하락으로 연방의회 진출가능성이 낮아지며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자제하며 자연스러운 소멸을 기대함.
-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신나치주의가 다시금 세력을 확장하며 독일국가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아짐.
-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7월 27일 발생한 유태인에 대한 폭탄테러의 배후에 독일국가민주당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다시금 검토됨.
- 2001년 1월 30일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게 됨.
-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있는 후 독일국가민주당의 주요 간부가 연방헌법수호청(BfV)과 연계되어 정보수집활동을 넘어 독일국가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며,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3년 3월 18일 심판절차를 중단하게 됨.
- 2011년 11월 외국인 및 이민족에 대한 테러조직인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NSU)이 독일국가민주당의 하부조직임이 드러나며 다시금 위헌정당심판청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연방상원의회에서 2012년 12월 14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독일국가민주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의함.

- 1차 청구와는 달리 연방정부 및 연방하원의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 동의하지 않으며, 2013년 12월 3일 연방상원의회 단독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함.
- 아직 독일국가민주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3. 정당 재정 지원 제도

1)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 현황

○ 독일 주요정당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다음과 같음³⁰³⁾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CDU(기민당)	42,892,692.46 (31.08%)	44,641,547.45 (41.67%)	46,435,135.82 (33.88%)	48,051,765.29 (31.80%)
CSU(기사당)	9,610,057.63 (27.46%)	10,411,577.43 (28.11%)	11,302,359.01 (29.65%)	12,008,720.44 (25.22%)
SPD(사민당)	38,975,194.80 (26.48%)	42,407,424.88 (27.24%)	45,585,641.47 (30.10%)	47,898,405.53 (29.11%)
Grüne(녹색당)	11,415,217.32 (36.54%)	13,814,822.37 (37.51%)	15,154,545.27 (39.46%)	15,056,822.65 (37.50%)
Die Linke(좌파연합)	10,835,567.16 (38.90%)	12,130,761.23 (42.23%)	12,252,446.85 (41.16%)	11,142,415.75 (40.40%)

〈표〉 괄호안의 %는 정당의 총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액수가 차지하는 비율(단위: 유로)

- 「정당법 제23조 내지 제24조」를 통해 정당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한 회계장부의 작성 및 연방의회 의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정하고 있음.
- 회계보고의 자세한 항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수입내역에는 국가의 보조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정당법 제24조」).

303) 2010년/2011년 -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23/1712340.pdf>

2012/2013년 -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8/043/1804300.pdf>

- 회계보고는 매년 이루어지나 그 공개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음 「정당법 제23조 제4항」).
- 제출된 회계보고서는 연방의회 의장이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함 (「정당법 제23조 제3항 및 제23a조」).

「정당법」

제23조 (재정보고서 공개 의무)

- (1) 정당의 중역진은 자금의 원천과 사용에 대해, 그리고 정당의 자산현황에 대해서 회계년도의 마지막에 진실에 부합하게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 연방의회에 재정보고서가 송부되기 전에 정당의 중역진 내부에서 해당 재정보고서가 논의되어야 한다. 정당의 중역진은 자금의 원천과 사용에 대해, 그리고 정당의 자산현황에 대해서 회계년도의 마지막에 진실에 부합하게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 연방의회에 재정보고서가 송부되기 전에 정당의 중역진 내부에서 해당 재정보고서가 논의되어야 한다. 정당의 연방 중역진과 각 주(州)의 중역진 및 주(州) 정당조직에 상응하는 지역조직의 정당 중역진들은 각각 재정보고서 제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 (2) 생략
- (3) 독일 연방의회 의장은 제23a조에 의거하여 재정보고서가 제5장의 법률규정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 (4) 독일 연방의회 의장은 매2년마다 독일 연방의회에 정당재정의 변화 및 정당의 재정보고서에 대한 리포트를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추가적으로 정당의 수입과 지출 및 재산관계에 대한 약식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들은 연방의회 공식문서로서 분류된다.

제23a조 재정보고서 심사

- (1) 독일 연방의회 의장은 제출된 재정보고서의 형식상, 내용상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의장은 재정보고서가 제5장의 규정들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새로운 심사는 제24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 (2) 생략
- (3) 생략
- (4) 심사의 절차가 종료된 후, 연방의회 의장은 재정보고서의 부적절함을 확인하고 잘못된 보고에 따른 액수를 확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결정에는 부적절한 보고가 수입과 지출 계산에 대한 규정들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자산 대차대조표 또는 설명부분(제24조 7항)에서의 위반에 기초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 (5) 재정보고서에 부적절한 보고 내용을 포함시킨 정당은 보고서를 바로잡아야 하며 독일 연방의회 의장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새로운 재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수정되어야 할 금액이 개별건당 10,000유로를 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총 50,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해당 재정보고서의 정정은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6) 수정된 재정보고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의회 공식문서로서 공개, 발행되어야 한다.

(7) 생략

제24조 재정보고서

(1) 재정보고서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계산에 기초한 결산계산서와 이에 결합된 자산 대차대조표 또는 설명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재정보고서는 규정에 부합하는 부기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정당의 자금 원천과 지출 및 자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생략

(3) 생략

(4) 수입 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당원회비
2. 의회의원 회비 및 이와 유사한 규칙적인 회비들
3. 자연인의 기부금
4. 법인의 기부금
5. 기업적 활동을 통한 수입과 지분
6. 특별자산을 통한 수입
7. 행사, 인쇄물 및 출판물 판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밖의 활동을 통한 수입
8. 국가 보조금
9. 그 밖의 수입
10. 산하 정당조직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11. 1호부터 10호까지의 총 수입

(5) 지출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인건비
2. 활동비
 - a) 경과된 정당활동
 - b) 일반적인 정치적 연구
 - c) 선거운동
 - d)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는 자산관리 비용
 - e) 기타 이자
 - f) 기타 지출
3. 산하 정당조직에 지급한 보조금
4. 1호부터 3호까지의 전체 지출

(6) 자산 대차대조표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1. 소유항목:
 - A. 고정자산
 - I. 부동산
 1. 건물 및 토지자산
 2. 당사무소 설비

- II. 금융자산
 - 1. 기업에 대한 지분
 - 2. 기타 금융자산
 - B. 유동자산
 - I. 산하 정당조직에 대한 채권
 - II. 국가 재정보조에 기인한 채권
 - III. 현금
 - IV. 기타 자산 사항
 - C. 전체 소유항목(A와 B의 합)
 - 2. 채무항목
 - A. 예비비:
 - I. 연금 채무
 - II. 기타 예비비
 - B. 채무
 - I. 산하 정당조직에 대한 채무
 - II. 국가 재정보조에 기인하는 환급채무
 - III. 신용기관에 대한 채무
 - IV. 그 밖의 대출자에 대한 채무
 - V. 기타 채무
 - C. 전체 채무항목(A와 B의 합)
 - 3. 순자산(+ 또는 -)
- (7)항 이하 생략

[독일어 원문]

§ 23 Pflicht zur öffentlichen Rechenschaftslegung

(1) Der Vorstand der Partei hat über die Herkunft und die Verwendung der Mittel sowie über das Vermögen der Partei zum Ende des Kalenderjahres (Rechnungsjahr) in einem Rechenschaftsbericht wahrheitsgemäß und nach bestem Wissen und Gewissen öffentlich Rechenschaft zu geben. Der Rechenschaftsbericht soll vor der Zuleitung an den 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im Vorstand der Partei beraten werden. Der Bundesvorstand der Partei sowie die Vorstände der Landesverbände und die Vorstände der den Landesverbänden vergleichbaren Gebietsverbände sind jeweils für ihre Rechenschaftslegung verantwortlich. Ihre Rechenschaftsberichte werden vom Vorsitzenden und einem vom Parteitag gewählten für die Finanzangelegenheiten zuständigen Vorstandsmitglied oder von einem für die Finanzangelegenheiten nach der Satzung zuständigen Gremium gewählten Vorstandsmitglied unterzeichnet. Diese für die Finanzangelegenheiten zuständigen

Vorstandsmitglieder versichern mit ihrer Unterschrift, dass die Angaben in ihren Rechenschaftsberichten nach bestem Wissen und Gewissen wahrheitsgemäß gemacht worden sind. Der Rechenschaftsbericht der Gesamtpartei wird von einem vom Parteitag gewählten für die Finanzangelegenheiten zuständigen Vorstandsmitglied des Bundesvorstandes oder von einem für die Finanzangelegenheiten nach der Satzung zuständigen Gremium gewählten Mitglied des Bundesvorstandes zusammengefügt und unterzeichnet.

(2) (생략)

(3) Der 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 prüft gemäß § 23a, ob der Rechenschaftsbericht den Vorschriften des Fünften Abschnittes entspricht. Das Ergebnis der Prüfung ist in dem Bericht nach Absatz 4 aufzunehmen.

(4) Der 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 erstattet dem Deutschen Bundestag alle zwei Jahre über die Entwicklung der Parteienfinanzen sowie über die Rechenschaftsberichte der Parteien Bericht. Zusätzlich erstellt er vergleichende jährliche Kurzübersichten über die Einnahmen und Ausgaben sowie über die Vermögensverhältnisse der Parteien. Die Berichte werden als Bundestagsdrucksachen verteilt.

§ 23a Prüfung des Rechenschaftsberichts

(1) Der 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 prüft den vorgelegten Rechenschaftsbericht auf formale und inhaltliche Richtigkeit. Er stellt fest, ob der Rechenschaftsbericht den Vorschriften des Fünften Abschnittes entspricht. Eine erneute Prüfung ist nur vor Ablauf der in § 24 Abs. 2 bestimmten Frist zulässig.

(2) (생략)

(3) (생략)

(4) Nach Abschluss des Verfahrens erlässt der 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 einen Bescheid, in dem er gegebenenfalls Unrichtigkeiten des Rechenschaftsberichts feststellt und die Höhe des den unrichtigen Angaben entsprechenden Betrages festsetzt. In dem Bescheid ist anzugeben, ob die Unrichtigkeit auf der Verletz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Einnahme- und Ausgaberechnung, der Vermögensbilanz oder des Erläuterungsteils (§ 24 Abs. 7) beruht.

(5) Eine Partei, in deren Rechenschaftsbericht unrichtige Angaben enthalten sind, hat den Rechenschaftsbericht zu berichtigen und nach Entscheidung des 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teilweise oder ganz neu abzugeben. Dieser ist von einem Wirtschaftsprüfer oder einer 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 einem vereidigten Buchprüfer oder einer Buchprüfungsgesellschaft durch einen Vermerk zu bestätigen. Übersteigt der zu berichtigende Betrag im Einzelfall nicht 10 000 Euro und im Rechnungsjahr je Partei nicht 50 000 Euro, kann abweichend von den Sätzen 1 und 2 die Berichtigung im Rechenschaftsbericht für das folgende Jahr vorgenommen werden.

(6) Berichtigte Rechenschaftsberichte sind ganz oder teilweise als Bundestagsdrucksache

zu veröffentlichen.

(7) (생략)

§ 24 Rechenschaftsbericht

(1) Der Rechenschaftsbericht besteht aus einer Ergebnisrechnung auf der Grundlage einer d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entsprechenden Einnahmen- und Ausgabenrechnung, einer damit verbundenen Vermögensbilanz sowie einem Erläuterungsteil. Er gibt unter Beachtung der Grundsätze ordnungsgemäßer Buchführung entsprechend den tatsächlichen Verhältnissen Auskunft über die Herkunft und Verwendung der Mittel sowie über das Vermögen der Partei.

(2) (생략)

(3) (생략)

(4) Die Einnahmerekchnung umfasst:

1. Mitgliedsbeiträge,
2. Mandatsträgerbeiträge und ähnliche regelmäßige Beiträge,
3. Spenden von natürlichen Personen,
4. Spenden von juristischen Personen,
5. Einnahmen aus Unternehmenstätigkeit und Beteiligungen,
6. Einnahmen aus sonstigem Vermögen,
7. Einnahmen aus Veranstaltungen, Vertrieb von Druckschriften und Veröffentlichungen und sonstiger mit Einnahmen verbundener Tätigkeit,
8. staatliche Mittel,
9. sonstige Einnahmen,
10. Zuschüsse von Gliederungen und
11. Gesamteinnahmen nach den Nummern 1 bis 10.

(5) Die Ausgaberekchnung umfasst:

1. Personalausgaben,
2. Sachausgaben
 - a) des laufenden Geschäftsbetriebes,
 - b) für allgemeine politische Arbeit,
 - c) für Wahlkämpfe,
 - d) für die Vermögensverwaltung einschließlich sich hieraus ergebender Zinsen,
 - e) sonstige Zinsen,
 - f) sonstige Ausgaben,
3. Zuschüsse an Gliederungen und
4. Gesamtausgaben nach den Nummern 1 bis 3.

(6) Die Vermögensbilanz umfasst:

1. Besitzposten:
 - A. Anlagevermögen:

- I. Sachanlagen:
 - 1. Haus- und Grundvermögen,
 - 2. Geschäftsstellenausstattung,
 - II. Finanzanlagen:
 - 1. Beteiligungen an Unternehmen,
 - 2. sonstige Finanzanlagen;
 - B. Umlaufvermögen:
 - I. Forderungen an Gliederungen,
 - II. Forderungen aus der staatlichen Teilfinanzierung,
 - III. Geldbestände,
 - IV. sonstige Vermögensgegenstände;
 - C. Gesamtbesitzposten (Summe aus A und B);
 - 2. Schuldposten:
 - A. Rückstellungen:
 - I. Pensionsverpflichtungen,
 - II. sonstige Rückstellungen;
 - B. Verbindlichkeiten:
 - I.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Gliederungen,
 - II. Rückzahlungsverpflichtungen aus der staatlichen Teilfinanzierung,
 - III.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Kreditinstituten,
 - IV.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sonstigen Darlehensgebern,
 - V. sonstige Verbindlichkeiten;
 - C. Gesamte Schuldposten (Summe von A und B);
 - 3. Reinvermögen (positiv oder negativ).
- (이하 생략)

- 회계보고서의 기부금 내역이 부정확하게 작성된 경우 기부금 액수에 따라 배당된 국가보조금을 환수함(「정당법 제31a조」).
- 회계보고서의 부정확한 작성으로 인해 실제 내역과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벌적 부과금이 부과됨(「정당법 제31b조」).

「정당법」

제31a조 (국가적 재정보조의 환수)

- (1) 회계보고서 상에 기부금(제18조 제3항 제1문 제3호) 내역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게 귀속되는 국가적 보조금의 액수가 부정확하게 확정된 경우에는, 연방의회 의장은 제19a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결정된 국가적 보조금의 확정액수를 환수한다. 이러한 점은 다음 연도를 위한 회계보고서 상에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제23a조 제5항 제3문)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제24조 제2항에서 정해진 기간의 경과 후에는 환수가 배제된다.
- (3) 환수결정과 함께 연방의회 의장은 정당에 의해 배상될 금액을 행정행위를 통해 확정한다. 그 밖의 국가적 재정보조와 관련하여 잘못된 계산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은 정당에 대한 다음 번 분할불 지급 시에 청산되어야 한다.
- (4) 그 밖의 정당들에 대한 확정과 지불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5) 정당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들이 주(州)정당조직 또는 그 하위의 지역조직들에 의해 야기된 경우의 규율들을 정관에 담고 있어야 한다.

[독일어 원문]

§ 31a Rückforderung der staatlichen Finanzierung

- (1) Soweit im Rechenschaftsbericht Zuwendungen (§ 18 Abs. 3 Satz 1 Nr. 3) zu Unrecht ausgewiesen worden sind und dadurch der Betrag der der Partei zustehenden staatlichen Mittel unrichtig festgesetzt worden ist, nimmt der 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 die gemäß § 19a Abs. 1 erfolgte Festsetzung der staatlichen Mittel zurück. Dies gilt nicht, wenn die Berichtigung im Rechenschaftsbericht für das folgende Jahr erfolgt (§ 23a Abs. 5 Satz 3). § 48 Abs. 2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findet keine Anwendung.
- (2) Nach Ablauf der in § 24 Abs. 2 bestimmten Frist ist die Rücknahme ausgeschlossen.
- (3) Mit der Rücknahme setzt der 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 den von der Partei zu erstattenden Betrag durch Verwaltungsakt fest. Ergibt sich im Zuge der weiteren staatlichen Finanzierung eine Verrechnungslage, ist der Unterschiedsbetrag mit der nächsten Abschlagszahlung an die Partei zu verrechnen.
- (4) Die Festsetzungen und Zahlungen an die übrigen Parteien bleiben unverändert.
- (5) Die Parteien sollen in die Satzungen Regelungen für den Fall aufnehmen, dass Maßnahmen nach Absatz 1 durch Landesverbände oder diesen nachgeordnete Gebietsverbände verursacht werden.

- 「정당법 제31b조」에 따라 회계보고서 상에 부정확하게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2배를 징벌적 부과금으로 징수하며, 자산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부과금으로 징수함.

「정당법」

제31b조 회계보고서 부정확성

연방의회 의장은 제23a조에 따른 심사의 범위 내에서 회계보고서의 부정확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당에 대해 부정확한 보고내용에 해당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자산대차대조표 또는 세부항목 상에서 건물 및 토지자산 내지는 기업에의 지분 등의 부정확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제시된 자산가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해당 금액의 지불에 대한 정당의 의무를 행정행위를 통해 확정한다. 제31a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 31b Unrichtigkeit des Rechenschaftsberichts

Stellt der 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 im Rahmen seiner Prüfung nach § 23a Unrichtigkeiten im Rechenschaftsbericht fest, entsteht gegen die Partei ein Anspruch in Höhe des Zweifachen des den unrichtigen Angaben entsprechenden Betrages, soweit kein Fall des § 31c vorliegt. Betreffen Unrichtigkeiten in der Vermögensbilanz oder im Erläuterungsteil das Haus- und Grundvermögen oder Beteiligungen an Unternehmen, beträgt der Anspruch 10 vom Hundert der nicht aufgeführten oder der unrichtig angegebenen Vermögenswerte. Der Präsident stellt die Verpflichtung der Partei zur Zahlung des Betrages durch Verwaltungsakt fest, § 31a Abs. 2 bis 5 gilt entsprechend.

2) 국고지원 배분 방법 및 규모

- 국가로부터 정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형식은 선거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과 정당 수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있음.
- 국가에 대한 재정보조의 신청자격으로서 선거의 최종결과가 유럽연합의회 선거 또는 연방의회선거에서 최소한 0.5% 이상, 그리고 주 의회선거에서는 최소한 1%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함.
-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활동은 “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의무화된 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음(「정당법 제18조 제1항」).
- 선거 득표수에 따른 재정지원
 - 근거규정은 독일 「정당법 제18조」
 - 득표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선거는 유럽의회선거, 연방의회

선거, 주 의회선거임.

- 선거에서 정당비례대표명부에 따라 얻은 유효득표수 1개당 4백만 표까지는 0.85유로를, 그 이상에 대해서는 0.70유로가 지급됨.
- 정당의 비례대표명부가 없는 주(州)에서는 하나의 선거구 또는 투표구에서 얻은 유효득표수 1개당 4백만 표까지는 0.85유로를, 그 이상에 대해서는 0.70유로가 지급됨.

○ 정당의 수입에 기초한 재정보조

- 근거규정은 독일 「정당법 제18조」
- 당비(일반당원당비, 의원특별당비) 및 후원금(기부금)의 금액에 따라 재정보조가 이루어짐.
- 당비 및 후원금 1유로당 0.38유로의 보조를 받고 있음.
- 자연인으로서 기부금이 3,300유로가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은 재정보조의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정당에게 최대 지급될 수 있는 국가보조금의 연간 최대 한도액은 2011년에는 1억 4,190만 유로이며, 2012년에는 1억 5,080만 유로임(절대적 상한액).

○ 절대적 상한액은 매년 인상되며, 첫 해인 2013년에는 이전 해에 전형적으로 정당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10% 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물가지수의 기준은 일반소비자 물가의 70%와 지역공법인의 단체협약상 노동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급여 지수의 30%로 구성됨.
- 독일 통계청장은 늦어도 매년 4월 30일까지 독일 하원에 이전 해의 물가지수 변동률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연방하원의장은 늦어도 매년 5월 31일까지는 유로화의 절대적 상한액을 연방하원 인쇄물로 공표하여야 함.
- 2013년 정당보조금의 절대적 상한액은 1억 5,411만 7,600유로였고,

2014년에는 1.7% 인상된 1억 5,673만 7,599유로였음.

- 정당보조금은 매년 지급될 수 있는 절대적 상한액 이외에도 정당보조금의 액수가 「정당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수입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대적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정당법 제18조 제5항」).
- 상대적 상한액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정당보조금은 정당재정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방대통령은 정당보조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정당법 제18조 제6항」).
-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가 아닌 무소속 내지 선거연합 후보의 경우
 - 연방의회선거의 경우 「연방의회선거법 제49b조」에 근거하여 선거비용을 지원함.
 - 최소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득표수 1표당 2.80유로의 보조를 받고 있음.
- 주 의회선거 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 각 주의 「주 의회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정당은 각 주 정당조직을 대상으로 하게 됨.

「참고조문」

「정당법」

제18조 국가적 재정보조의 원칙과 범위

- (1) 정당들은 기본법에 의해 정당이 행하는 활동들에 대한 재정보조를 받는다. 국가적 재정보조금의 분배를 위해 기준이 되는 것은 각 정당이 유럽의회선거, 연방의회선거 및 주의회선거에서 얻은 득표수 및 당원의 당비 및 의원특별당비 및 후원금의 액수이다.
- (2) 모든 정당에게 최대 지급될 수 있는 국가보조금의 연간 최대 한도액은 2011년에는 1억 4,190만 유로이며, 2012년에는 1억5,080만 유로이다(절대적 상한액). 이 절대적 상한액은 매년 인상되며, 첫 해인 2013년에는 이전 해에 전형적으로 정당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10% 까지 인상된다. 물가지수의 기준은 일반소비자 물가의 70%와 지역

공법인의 단체협약상 노동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급여 지수의 30%로 구성된다. 독일 통계청장은 늦어도 매년 4월 30일까지 독일 하원에 이전 해의 물가지수 변동율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하원의장은 늦어도 매년 5월 31일까지는 유로화의 절대적 상한액을 연방하원인쇄물로 공표하여야 한다.

- (3) 각 정당들은 매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국가적 보조금을 받는다.
1. 각각의 정당비례대표명부에 따라 얻은 유효득표수 1개당 0.70유로 또는
 2. 정당의 비례대표명부가 없는 주(州)에서는 하나의 선거구 또는 투표구에서 얻은 유효득표수 1개당 0.70유로, 그리고
 3. 기부금(당원 당비 또는 의원특별당비 또는 적법한 기부금)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 1유로당 0.38유로; 다만 자연인의 기부금은 1인당 3,300유로까지만 재정보조의 대상으로서 고려된다. 1호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은 자신이 얻은 유효득표수 4백만표까지는 1표당 0.85유로의 재정보조를 받는다.
- (4) 최종적인 선거결과에 의거하여 유럽연합의회선거 또는 연방의회선거에서 최소한 0.5% 이상, 그리고 주의회선거에서 최소한 1%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만이 제3항 1호 및 3호에 따른 국가적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1문 1호 및 2문에 따른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정당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각각의 선거에서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최종적인 선거결과에 의거하여 하나의 선거구 또는 투표구에서 최소한 10%의 유효득표를 얻은 정당만이 제3항 2호에 따른 국가적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1문과 2문의 규정은 국가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당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국가적 재정보조의 최고액은 제24조 4항 1호부터 7호까지에 따른 정당의 수입금액을 넘을 수 없다(상대적 상한액). 모든 정당들에 대한 재정보조의 총합은 절대적 상한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 (6) 연방대통령은 정당보조금에 대해 심사할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하 생략)

「PartG」

§ 18 Grundsätze und Umfang der staatlichen Finanzierung

- (1) Die Parteien erhalten Mittel als Teilfinanzierung der allgemein ihnen nach dem Grundgesetz obliegenden Tätigkeit.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r staatlichen Mittel bilden der Erfolg, den eine Partei bei den Wählern bei Europa-, Bundestags- und

Landtagswahlen erzielt, die Summe ihrer Mitglieds- und Mandatsträgerbeiträge sowie der Umfang der von ihr eingeworbenen Spenden.

(2) Das jährliche Gesamtvolumen staatlicher Mittel, das allen Parteien höchstens ausgezahlt werden darf, beträgt für das Jahr 2011 141,9 Millionen Euro und für das Jahr 2012 150,8 Millionen Euro (absolute Obergrenze). Die absolute Obergrenze erhöht sich jährlich, jedoch erstmals für das Jahr 2013, um den Prozentsatz, abgerundet auf ein Zehntel Prozent, um den sich der Preisindex der für eine Partei typischen Ausgaben im dem Anspruchsjahr vorangegangenen Jahr erhöht hat. Grundlage des Preisindexes ist zu einem Wägungsanteil von 70 Prozent der allgemeine Verbraucherpreisindex und von 30 Prozent der Index der tariflichen Monatsgehälter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bei Gebietskörperschaften. Der Präsident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legt dem Deutschen Bundestag hierzu bis spätestens 30. April jedes Jahres einen Bericht über die Entwicklung des Preisindexes bezogen auf das vorangegangene Jahr vor. Der Bundestagspräsident veröffentlicht bis spätestens 31. Mai jedes Jahres die sich aus der Steigerung ergebende Summe der absoluten Obergrenze, abgerundet auf volle Eurobeträge, als Bundestagsdrucksache.

(3) Die Parteien erhalten jährlich im Rahmen der staatlichen Teilfinanzierung

1. 0,70 Euro für jede für ihre jeweilige Liste abgegebene gültige Stimme oder
2. 0,70 Euro für jede für sie in einem Wahl- oder Stimmkreis abgegebene gültige Stimme, wenn in einem Land eine Liste für diese Partei nicht zugelassen war, und
3. 0,38 Euro für jeden Euro, den sie als Zuwendung (eingezahlter Mitglieds- oder Mandatsträgerbeitrag oder rechtmäßig erlangte Spende) erhalten haben; dabei werden nur Zuwendungen bis zu 3.300 Euro je natürliche Person berücksichtigt.

Die Parteien erhalten abweichend von den Nummern 1 und 2 für die von ihnen jeweils erzielten bis zu vier Millionen gültigen Stimmen 0,85 Euro je Stimme.

(4) Anspruch auf staatliche Mittel gemäß Absatz 3 Nr. 1 und 3 haben Parteien, die nach dem endgültigen Wahlergebnis der jeweils letzten Europa- oder Bundestagswahl mindestens 0,5 vom Hundert oder einer Landtagswahl 1,0 vom Hundert der für die Listen abgegebenen gültigen Stimmen erreicht haben; für Zahlungen nach Absatz 3 Satz 1 Nr. 1 und Satz 2 muss die Partei diese Voraussetzungen bei der jeweiligen Wahl erfüllen, Anspruch auf die

staatlichen Mittel gemäß Absatz 3 Nr. 2 haben Parteien, die nach dem endgültigen Wahlergebnis 10 vom Hundert der in einem Wahl- oder Stimmkreis abgegebenen gültigen Stimmen erreicht haben. Die Sätze 1 und 2 gelten nicht für Parteien nationaler Minderheiten.

(5) Die Höhe der staatlichen Teilfinanzierung darf bei einer Partei die Summe der Einnahmen nach § 24 Abs. 4 Nr. 1 bis 7 nicht überschreiten (relative Obergrenze). Die Summe der Finanzierung aller Parteien darf die absolute Obergrenze nicht überschreiten.

(6) Der Bundespräsident kann eine Kommission unabhängiger Sachverständiger zu Fragen der Parteienfinanzierung berufen.

(이하 생략)

「연방의회선거법」

제49b조 그 밖의 선거구후보자에 대한 국가적 재정보조

- (1) 제18조 이하 제20조의 규정의 기준에 따라 투표권자들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최소한 10% 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유효득표수 1표당 2.80유로의 재정보조를 받는다. 이 보조금은 연방예산에서 지급된다.
- (2) 국가적 재정보조의 확정 및 지불은 연방의회의 소집 후 2개월 안에 후보자에 의해 연방의회의 의장에서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한다; 이후에 접수된 신청은 검토되지 않는다. 액수는 연방의회 의장에 의하여 확정되며 지급된다.
- (3) 절대적 상한액 및 상대적 상한액에 관한 정당법의 규정들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BWahlG 제49b조 원문」

§ 49b Staatliche Mittel für andere Kreiswahlvorschläge

- (1) Bewerber eines nach Maßgabe der §§ 18 und 20 von Wahlberechtigten eingereichten Wahlvorschlages, die mindestens 10 vom Hundert der in einem Wahlkreis abgegebenen gültigen Erststimmen erreicht haben, erhalten je gültige Stimme 2,80 Euro. Die Mittel sind im Bundeshaushaltsplan auszubringen.
- (2) Die Festsetzung und die Auszahlung der staatliche Mittel sind von dem Bewerber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dem Zusammentritt des Deutschen Bundestages beim 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schriftlich zu beantragen; danach eingehende

Anträge bleiben unberücksichtigt. Der Betrag wird von dem 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festgesetzt und ausgezahlt.

(3) Die Vorschriften des Parteiengesetzes über die absolute und relative Obergrenze finden keine Anwendung

3) 위법 또는 위헌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 제도(국고 및 잔여재산 처분 절차 포함)

○ 위헌정당금지의 집행

- 위헌정당 또는 조직의 확인심판에는 대체조직에 대한 금지명령과 함께 공익을 목적으로 해당 조직의 재산몰수를 명령할 수 있음(「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제3항」).
- 재산몰수의 실행절차는 공적결사에관한법률(VereinsG)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함(「정당법 제32조제5항」).
-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위헌정당으로 선고되면 해당 판결 및 부수적인 집행규정의 실행은 주 정부가 지정한 관청이 담당함(「정당법 제32조제1항」).
- 위헌정당금지 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 단위 최고행정기관은 무제한적인 지시권을 행사하게 됨(「정당법 제32조제1항」).
- 위헌으로 결정된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1개 주를 넘어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연방내무부장관이 필요한 명령의 관할권을 가짐(「정당법 제32조제2항」).
- 행정관청과는 별개로 연방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집행을 결정할 수 있음(「정당법 제32조제3항」).
- 일반적인 행정집행절차와는 달리 위헌정당에 대한 집행조치는 이의신청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정당법 제32조제4항」).

-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도 해당 판결을 담당할 연방헌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짐(「정당법 제32조제4항」)

[관련조문]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

- (1)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이 위헌임을 확인한다.
- (2) 이 확인은 정당의 법적 또는 조직적으로 독립된 부분에 한정할 수 있다.
- (3) 이 확인에는 정당 또는 정당의 독립된 부분의 해산 및 그 대체조직의 결성금지를 부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외에도 정당 또는 정당의 독립된 부분의 재산을 공익 목적을 위하여 연방이나 지방을 위해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BVerfGG」

- § 46 (1) Erweist sich der Antrag als begründet, so stell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est, daß die politische Partei verfassungswidrig ist.
- (2) Die Feststellung kann auf einen rechtlich oder organisatorisch selbständigen Teil einer Partei beschränkt werden.
 - (3) Mit der Feststellung ist die Auflösung der Partei oder des selbständigen Teiles der Partei und das Verbot, eine Ersatzorganisation zu schaffen, zu verbind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kann in diesem Fall außerdem die Einziehung des Vermögens der Partei oder des selbständigen Teiles der Partei zugunsten des Bundes oder des Landes zu gemeinnützigen Zwecken aussprechen.

「정당법」

- 제 32 조(집행) (1)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면 주정부가 정한 관청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부수적인 집행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 최고행정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관할하는 다른 관청과 업무부서에 대해 무제한적 지시권을 갖는다.

- (2) 위헌판결을 받은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나 활동이 1개주의 영역을 넘어서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연방내무장관은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3)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 (4) 집행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은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어느 행정재판소의 절차가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중요한 관련을 갖는 문제에 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단하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이 명령한 특별집행조치를 실시하는 종류와 이행방법에 대한 이의에 관해서도 결정한다.
- (5) 재산몰수의 경우에는 1964년 8월 5일의 공적결사에관한 법률(BGBI. I S.593)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지행정청은 주최고행정청으로하며 제2항의 경우에는 연방내무장관으로 한다.

「PartG」

§ 32 Vollstreckung

- (1) Wird eine Partei oder eine Teilorganisation einer Partei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so treffen die von den Landesregierungen bestimmten Behörden im Rahmen der Gesetze alle Maßnahmen, die zur Vollstreckung des Urteils und etwaiger zusätzlicher Vollstreckungsregel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erforderlich sind. Die obersten Landesbehörden haben zu diesem Zweck unbeschränktes Weisungsrecht gegenüber den Behörden und Dienststellen des Landes, die für die Wahr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zuständig sind.
- (2) Erstreckt sich die Organisation oder die Tätigkeit der Partei oder d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Teils der Partei über das Gebiet eines Landes hinaus, so trifft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die für eine einheitliche Vollstreckung erforderlichen Anordnungen.
- (3)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kann die Vollstreckung nach § 35 des Gesetzes ü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bweichend von den Vorschriften der Absätze 1 und 2 regeln.
- (4)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Vollstreckungsmaßnahmen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Betrifft ein verwaltungsgerichtliches Verfahren eine Frage, die für die Vollstreckung des Urteils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ist, so ist das Verfahren auszusetzen und die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einzuhol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t auch über Einwendungen gegen die Art und Weise der Durchführung der von ihm angeordneten besonderen Vollstreckungsmaßnahmen.

(5) Im Falle der Vermögenseinziehung werden die §§ 10 bis 13 des Vereinsgesetzes vom 5. August 1964 (BGBl. I S. 593) entsprechend angewendet. Verbotsbehörde ist die oberste Landesbehörde, im Fall des Absatzes 2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4.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방법

1)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방법(관련법, 규정)

- 정당의 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법률규정은 「정당법」 및 「연방의회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정당법 제17조」에서는 선거 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비밀투표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선거법과 각 정당의 당규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연방의회선거법 제21조」는 선거 후보자의 선출 등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연방의회 선거 후보자는 각 지역구별 당원집회 또는 대표자집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함.
 - 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원집회는 소집 당시 독일 연방의회선거의 해당 선거구 안에서 선거권을 지니고 있는 당원들의 집회
 - 대표자집회는 당원집회를 통해 당원 중에 선출된 대표자들의 집회
 - 후보자 선출 및 대표자집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의 선출은 모두 반드시 비밀투표로 시행되어야 함.
 - 후보자 선출은 아무리 빨라도 현행 독일 연방의회 회기의 개시 후 32개월 후부터, 대표자집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은 아무리 빨라도 29개월 후부터 할 수 있음.
 - 지역구별 당원집회 또는 대표자집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州)정당

조직 등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투표가 시행되어야 하고, 재투표 결과는 최종적 효력이 있음.

- 주 의회선거의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주의 선거법들에 규율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연방의회선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정당법」

제17조 선거후보자 선출

국민대표자를 뽑는 선거의 후보자 선출은 비밀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 선출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각 정당의 당규가 적용된다.

「PartG」

§ 17 Aufstellung von Wahlbewerbern

Die Aufstellung von Bewerbern für Wahlen zu Volksvertretungen muß in geheimer Abstimmung erfolgen. Die Aufstellung regeln die Wahlgesetze und die Satzungen der Parteien.

「연방선거법」

제21조 정당의 후보자 선출

- (1) 지역구 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원집회 또는 특별 대표자집회 내지는 일반 대표자집회에서 선출되었으며 다른 당의 당원이 아닌 자만을 지역구 선거입후보시에 정당후보자라고 부를 수 있다. 지역구 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원집회는 소집 당시 독일 연방의회선거의 해당 선거구 안에서 선거권을 지니고 있는 당원들의 집회를 말한다. 특별 대표자집회는 당원집회의 방식을 통해 당원 중에 선출된 대표자들의 집회를 말한다. 일반 대표자집회는 정당의 당규(정당법 제6조)에 따라 임박한 선거를 위해 당원집회의 방식을 통해 일반적으로 소집되는 집회를 말한다.
- (2) 다수의 선거구를 포괄하는 행정구 및 행정구가 없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가 행정구의 경계 또는 행정구 없는 도시의 경계를 분할하지 않는 한, 이러한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들의 공동 당원집회 또는 공동 대표자집회를 통해 선출될 수 있다.
- (3) 후보자와 대표자집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투표권을 지닌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후보자로 입후보할 권한을 지닌다. 후보자들에게는 적당한 시간 내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후보자 선출은 아무리 빨라도 현행 독일 연방의회 회기의 개시 후 32개월 후부터, 대표자집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은 아무리 빨라도 29개월 후부터 할 수 있다; 독일 연방의회가 조기에 해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4) 주(州) 정당조직 지도부, 또는 주(州) 정당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관할범위로 하는 하위 지역조직의 지도부 또는 이 경우를 대비하여 정당의 당규에서 미리 정해놓은 다른 조직 등이 당원집회 또는 대표자집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재투표의 결과는 최종적 효력을 갖는다.

- (5) 대표자집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 당원집회 또는 대표자집회의 소집과 결정권한, 후보자선출의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정당의 당규에 따른다.
- (6) 후보자 선출에 관한 의사록은 집회의 장소와 시간, 소집의 형태, 참석한 당원의 숫자와 투표의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은 지역구 선거후보자 등록 시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집회의 주재자와 집회 참석자 중 2명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 앞에서 동조 제3항 제1문부터 제3문에 따른 사항들이 준수되었음을 선서에 갈음하여 보증해야 한다.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서에 갈음하는 그러한 보증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말하는 행정청으로 간주된다.

「BWahlG」

§ 21 Aufstellung von Parteibewerbern

- (1) Als Bewerber einer Partei kann in einem Kreiswahlvorschlag nur benannt werden, wer nicht Mitglied einer anderen Partei ist und in einer Mitgliederversammlung zur Wahl eines Wahlkreisbewerbers oder in einer besonderen oder allgemeinen Vertreterversammlung hierzu gewählt worden ist. Mitgliederversammlung zur Wahl eines Wahlkreisbewerbers ist eine Versammlung der im Zeitpunkt ihres Zusammentritts im Wahlkreis zum Deutschen Bundestag wahlberechtigten Mitglieder der Partei. Besondere Vertreterversammlung ist eine Versammlung der von einer derartigen Mitgliederversammlung aus ihrer Mitte gewählten Vertreter. Allgemeine Vertreterversammlung ist eine nach der Satzung der Partei (§ 6 des Parteiengesetzes) allgemein für bevorstehende Wahlen von einer derartigen Mitgliederversammlung aus ihrer Mitte bestellte Versammlung.
- (2) In Kreisen und kreisfreien Städten, die mehrere Wahlkreise umfassen, können die Bewerber für diejenigen Wahlkreise, deren Gebiet die Grenze des Kreises oder der kreisfreien Stadt nicht durchschneidet, in einer gemeinsamen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gewählt werden.
- (3) Die Bewerber und die Vertreter für die Vertreterversammlungen werden in geheimer Abstimmung gewählt. Jeder stimmberechtigte Teilnehmer der Versammlung ist hierbei vorschlagsberechtigt. Den Bewerbern ist Gelegenheit zu geben, sich und ihr Programm der Versammlung in angemessener Zeit vorzustellen. Die Wahlen dürfen frühestens 32 Monate, für die Vertreterversammlungen frühestens 29 Monate nach Beginn der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stattfinden; dies gilt nicht, wenn die Wahlperiode vorzeitig endet.
- (4) Der Vorstand des Landesverbandes oder, wenn Landesverbände nicht bestehen, die Vorstände der nächstniedrigen Gebietsverbände, in deren Bereich der Wahlkreis liegt, oder eine andere in der Parteisatzung hierfür vorgesehene Stelle können gegen den Beschluß einer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Einspruch erheben. Auf einen solchen Einspruch ist die Abstimmung zu wiederholen. Ihr Ergebnis ist endgültig.
- (5) Das Nähere über die Wahl der Vertreter für die Vertreterversammlung, über die

Einberufung und Beschlußfähigkeit der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sowie über das Verfahren für die Wahl des Bewerbers regeln die Parteien durch ihre Satzungen.

- (6) Eine Ausfertigung der Niederschrift über die Wahl des Bewerbers mit Angaben über Ort und Zeit der Versammlung, Form der Einladung, Zahl der erschienenen Mitglieder und Ergebnis der Abstimmung ist mit dem Kreiswahlvorschlag einzureichen. Hierbei haben der Leiter der Versammlung und zwei von dieser bestimmte Teilnehmer gegenüber dem Kreiswahlleiter an Eides Statt zu versichern, dass die Anforderungen gemäß Absatz 3 Satz 1 bis 3 beachtet worden sind. Der Kreiswahlleiter ist zur Abnahme einer solchen Versicherung an Eides Statt zuständig; er gilt als Behörde im Sinne des § 156 des Strafgesetzbuches.

○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각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조직 또는 해당 선거구에 선거구를 가진 당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각 정당의 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각 정당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선관위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음.
- 국가의 일반적인 정당 재정지원제도 외에 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대해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절차는 각 정당의 당규에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정당인 기민당과 사민당의 후보자 선출에 관한 절차 규정은 다음과 같음.

「관련규정」

「기민당 당규」

제20조 (후보자 지명)

- (1) 후보자 지명과 후보자 지명을 위한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할 권한이 있는 자는, 당해 선출을 위한 각각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으로 국한되는데, 다만 이는 각각의 선거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그러하다.
- (2)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절차(이 당규의 제18조 제7항 제2호)는 최소한 아래의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각 선거구 범위가 기민당 지역조직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가 하나의 기민당 지역조직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하나의 선거구가 다수의 기민당 지역조직 범위와 일치하거나 또는 다수의 기민당 지역조직의 일부를 포괄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각의 후보자선출의 유형과 방법의 확정,
 2. 의결권, 투표의 유형과 방법, 필요한 득표수, 후보자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당원집회 내지는 대표자집회의 의사록 및 입후보자 명단에 대한 심사, 승인 및 제출 등에 관한 의사록의 작성과 승인 등에 대한 규정,
 3. 공직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집회의 유형에 대한 규정,
 4. 선거구 대표자집회의 대표자 선출,
 5. 선거구 및 주(州) 단위의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당원집회 또는 대표자집회의 소집과 진행,
 6. 의사일정 정보를 담은 소집안내 서면, 이 경우 소집 기한은 일주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부의 결의를 통해 3일로 단축시킬 수 있다,
 7. 후보자선출을 위한 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각각 기준이 되는 당원의 숫자를 계산하는 기준 일자의 확정
- (3) 유럽연합의회선거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 지도부가 모든 주에 적용되는 공동명부(연방명부)를 제출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럽연합의회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은 연방 대표자집회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후보자 명단 작성에 대해서는, 선거법들에 반하지 않는 한, 당규 제28조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연방 대표자집회의 소집, 의결, 진행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들과 후보자 선출 절차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민당의 당규와 기민당의 전당대회 업무규정상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 모든 주에 적용되는 공동명부(연방명부)의 작성은, 제4문의 유보 하에, 직전 유럽연합의회선거의 결과에 기초하여 동트(D' hondt) 방식에 따라 기민당의 각 주(州)조직에 할당되는 비례대표 후보자 몫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기민당의 각 주(州)조직들은 자신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대표자회의는 이에 대해 2/3 이상의 의결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모든 주에 적용되는 공동명부(연방명부)의 맨 앞 순위들은 유럽연합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낸 기민당의 주(州)조직들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자들로 채워진다; 나머지 자리들은 동트(D' hondt) 방식으로 분배되는데, 이 경우 첫 번째 반문(半文)에 의거하여 분배된 자리들이 계산에 포함된다.

§ 20 (Kandidatenaufstellung)

- (1) An der Aufstellung der Kandidaten und an der Wahl von Vertretern für eine Vertreterversammlung zum Zwecke der Kandidatenaufstellung können nur diejenigen Mitglieder der Partei mitwirken, die im Zeitpunkt des Zusammentritts der jeweiligen Versammlung zur betreffenden Wahl im Wahlgebiet wahlberechtigt sind, soweit das jeweilige Wahlgesetz dies vorschreibt.
- (2) Das Verfahren für die Aufstellung der Kandidaten (§ 18 Abs. 7 Ziffer 2 dieses Statuts) muss mindestens folgendes vorsehen:
 1. Festlegung der Art und Weise der Kandidatenaufstellung, wenn das jeweilige Wahlkreisgebiet dem Gebiet eines CDU-Kreisverbandes entspricht, wenn mehrere

Wahlkreisgebiete zusammen dem Gebiet eines CDU-Kreisverbandes entsprechen oder wenn ein Wahlkreisgebiet das Gebiet mehrerer CDU-Kreisverbände oder von Teilen davon umfasst,

2. Vorschriften über die Beschlussfähigkeit, die Art und Weise der Abstimmung, die jeweils erforderlichen Mehrheiten und die Aufnahme und Unterzeichnung der Niederschriften über die zum Zwecke der Kandidatenaufstellung erfolgenden Mitgliederversammlungen oder Vertreterversammlungen sowie über die Prüfung, Unterzeichnung und Einreichung von Wahlvorschlägen,
 3. Bestimmung der Art der Versammlung zur Aufstellung von Kandidaten zu öffentlichen Wahlen,
 4. Wahl der Vertreter zu Vertreterversammlungen im Wahlkreis,
 5. Einberufung und Leitung der Mitgliederversammlung oder Vertreterversammlung zum Zwecke der Kandidatenaufstellung auf Wahlkreis- und Landesebene,
 6. Schriftform der Einladung unter Angabe der Tagesordnung, wobei die Ladungsfrist eine Woche beträgt, jedoch in dringenden Fällen durch Beschluss des zuständigen Vorstandes auf drei Tage abgekürzt werden kann,
 7. Festlegung des Stichtages für die jeweils im Zusammenhang mit der Wahl von Vertretern für die Kandidatenaufstellung maßgeblichen Mitgliederzahlen.
- (3) Die Bewerber und Ersatzbewerber für die Wahl zum Europäischen Parlament werden, sofern der Bundesvorstand gemäß § 8 Abs. 2 Europawahlgesetz sich für die Einreichung einer gemeinsamen Liste für alle Länder (Bundesliste) entscheidet, in geheimer Abstimmung von einer Bundesvertreterversammlung gewählt. Für deren Zusammensetzung gelten, soweit die Wahlgesetze nicht entgegenstehen, die Bestimmungen des § 28 des Statuts entsprechend; für die Einberufung, Beschlussfähigkeit, Leitung und Durchführung der Bundesvertreterversammlung sowie für das Verfahren für die Wahl der Bewerber gelten die Bestimmungen des Statuts und der Geschäftsordnung der CDU für Bundesparteitage entsprechend.

Für die Aufstellung der gemeinsamen Liste für alle Länder (Bundesliste) werden vorbehaltlich Satz 4 die auf die CDU eines jeden beteiligten Bundeslandes entfallenden Listenplätze nach dem d' Hondtschen Verfahren aufgrund der Ergebnisse der vorausgegangenen Europawahl ermittelt. Die CDU in den Ländern hat für die ihr zustehenden Listenplätze das Vorschlagsrecht. Die Bundesvertreterversammlung kann hiervon nur mit Zweidrittelmehrheit abweichen. Die ersten Plätze der gemeinsamen Liste für alle Länder (Bundesliste) sind zunächst mit je einem Bewerber aus jedem Bundesland zu besetzen, in dem die CDU zur Europawahl kandidiert; die restlichen Plätze werden nach dem d' Hondtschen Verfahren verteilt, wobei die nach Halbsatz 1 verteilten Plätze angerechnet werden.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 제12조 후보 지명

- (1) 기초의회 후보 및 직선 시장 후보는 지역조직에서 지명한다. 자치단체에 다수의 지역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조직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후보자가 지명된다.
- (2) 군의회 후보 및 주(州)위원회 직선 위원 후보 또는 시장 후보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조직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지명된다. 행정구역조직 및 주(州) 행정구역조직들이 이와 상이한 내용을 자신의 당규에 규정할 수 있다.
- (3) 연방의회 및 주의회 후보자는 행정구역조직 내지는 정당 지도부와의 협의 하에 관할 지역 조직이 지명한다.
- (4) 선거법 및 당규에 반하지 않는 한, 관할 지도부는 기초의회 후보자, 직선 선출직 후보, 의회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 (5) 연방의회선거를 위한 각 주의 후보들은 정당 지도부와의 협의 하에 주의 지역조직들 또는 주(州)정당조직이 지명한다.
- (6) 공직 및 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밀투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세부사항은 당규의 선거규정에서 정한다.
- (7) 선거법과 당규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이 관할 지도부들은 후보자 지명 절차, 예를 들어 그 기한, 대표자 선출 또는 전체 회의의 원칙 적용 등에 대한 지침을 발령할 수 있다. 후보자 지명 절차에 대해 해당되는 다수의 조직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 지도부가 선거법 및 당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한다.

§ 12 Aufstellung von Kandidaten / -innen

- (1) Kandidaten und Kandidatinnen für Gemeindevertretungen und das Direktwahlamt der Bürgermeisterin oder des Bürgermeisters werden von den Ortsvereinen aufgestellt. Bestehen in einer Gemeinde mehrere Ortsvereine, so werden die Kandidaten und Kandidatinnen durch Delegierte der zur Gemeinde gehörenden Ortsvereine aufgestellt.
- (2) Kandidaten und Kandidatinnen für die Kreistage oder das Direktwahlamt des Landrates oder der Landratin oder das der Oberbürgermeisterin oder des Oberbürgermeisters werden durch Delegierte der zu der Gebietskörperschaft gehörenden Ortsvereine aufgestellt. Dazu können Bezirke und Landesbezirke abweichende Regelungen in ihren Satzungen festlegen.
- (3) Wahlkreisvorschläge für Bundestag und Landtage werden durch die örtlich zuständigen Organisationsgliederungen im Benehmen mit dem Bezirks- bzw. Parteivorstand beschlossen.
- (4) Soweit die Wahlgesetze und Satzungen nicht entgegenstehen, können die zuständigen Vorstände beschließen, dass Kandidatinnen und Kandidaten für Gemeindevertretungen, ein Direktwahlamt oder Parlamente von Vollversammlungen aufgestellt werden.
- (5) Landeswahlvorschläge für die Bundestagswahl werden von den Bezirken des Landes

oder dem Landesverband im Benehmen mit dem Parteivorstand aufgestellt.

- (6) Die Abstimmung über Wahlvorschläge für öffentliche Ämter und Mandate ist geheim. Das Nähere regelt die Wahlordnung.
- (7) Die jeweils zuständigen Vorstände können, soweit die Wahlgesetze und Satzungen nicht entgegenstehen, Richtlinien über das Verfahren zur Kandidatenaufstellung, z. B. über Fristen, Delegiertenschlüssel oder die Anwendung des Vollversammlungsprinzips, erlassen. Können mehrere betroffene Gliederungen keine Einigung über das Verfahren der Kandidatenaufstellung erzielen, so entscheidet der nächst höhere Vorstand im Rahmen der Wahlgesetze und des Satzungsrechts.

- 각 정당들의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정당의 중재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있음.
- 중재위원회가 후보자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권한을 가짐.
- 주요 정당의 중재위원회 선출에 관한 당규는 다음과 같음.

[관련 규정]

「정당법」

제14조 정당중재위원회

- (1) 개별적 당원과 정당 또는 정당의 지역조직 간의 분쟁 및 당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 등의 중재와 결정을 위하여 정당 및 정당의 지역조직에 각각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수의 지역조직들을 위한 공동의 중재위원회도 설치될 수 있다.
- (2) 중재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한다. 정당 또는 정당의 지역조직의 지도부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정당의 지역조직과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되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도 없다. 위원들은 독립적 지위를 지니며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3) 정당의 당규는 일반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상황별로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에 동수로 참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4) 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중재위원회 규정이 발령되어야 하는데, 이 규정에는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정당한 절차, 편파성을 사유로 한 중재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 14 Parteischiedsgerichte

- (1) Zur Schlichtung und Entscheidung von Streitigkeiten der Partei oder eines

Gebietsverbandes mit einzelnen Mitgliedern und Streitigkeiten über Auslegung und Anwendung der Satzung sind zumindest bei der Partei und den Gebietsverbänden der jeweils höchsten Stufe Schiedsgerichte zu bilden. Für mehrere Gebietsverbände der Kreisstufe können gemeinsame Schiedsgerichte gebildet werden.

- (2) Die Mitglieder der Schiedsgerichte werden für höchstens vier Jahre gewählt. Sie dürfen nicht Mitglied eines Vorstandes der Partei oder eines Gebietsverbandes sein, in einem Dienstverhältnis zu der Partei oder einem Gebietsverband stehen oder von ihnen regelmäßige Einkünfte beziehen. Sie sind unabhängig und an Weisungen nicht gebunden.
- (3) Die Satzung kann vorsehen, daß die Schiedsgerichte allgemein oder im Einzelfall mit Beisitzern besetzt werden, die von den Streitparteien paritätisch benannt werden.
- (4) Für die Tätigkeit des Schiedsgerichts ist eine Schiedsgerichtsordnung zu erlassen, die den Beteiligten rechtliches Gehör, ein gerechtes Verfahren und die Ablehnung eines Mitglieds des Schiedsgerichts wegen Befangenheit gewährleistet.

2) 여성 또는 소수자(이민족, 장애인 등) 정치 참여 관련 지원 규정

- 사민당은 당규 내 조직규정에서 정당지도부에 관한 사항 중, 정당지도부 구성원 총 숫자는 35명을 넘을 수 없으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은 40%를 넘도록 규정하여 어느 한 성별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함(「사민당 당규 조직규정 제23조제1항제f호).
- 특별히 이민자를 배려하기 위해 정당의 조직구성 또는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할당제 등과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관련 규정]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

제23조 정당지도부

(1) 정당지도부는 정당을 이끈다. 정당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당대표
- b) 5명의 당대표 대리인
- c) 사무총장
- d) 재무담당자(자산관리인)
- e) 유럽연합에 대해 정당지도부를 대표하는 사람

f)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숫자의 그 밖의 당원들. 정당지도부 구성원 총 숫자는 35명을 넘을 수 없다. 개별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구성원 및 정당지도부의 구성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최소 40%를 넘어야 한다. 성별 비율은 당대표 대리인 선출 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 23 Parteivorstand

(1) Die Leitung der Partei obliegt dem Parteivorstand. Er besteht aus

- a) dem oder der Vorsitzenden,
- b) fünf stellvertretenden Vorsitzenden,
- c) dem Generalsekretär oder der Generalsekretärin,
- d) dem Kassierer oder der Kassierer(in) (Schatzmeister bzw. Schatzmeisterin),
- e) dem oder der Verantwortlichen des Parteivorstandes für die Europäische Union und
- f) einer vom Parteitag festzusetzenden Zahl weiterer Mitglieder. Die Zahl der Mitglieder des Parteivorstandes darf insgesamt nicht mehr als 35 betragen. Unter den in Einzelwahl zu wählenden Mitgliedern sollen, unter den Mitgliedern des Parteivorstandes insgesamt müssen Männer und Frauen mindestens zu 40 % vertreten sein. Die Geschlechterquote soll auch bei der Wahl der Stellvertreter / -innen Berücksichtigung finden.

3) 정당별 의원정수 대비 여성의원수

국가명	의원정수			정당명	여성의원수			비고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	양원제		
		하원	상원			하원	상원	
독일	해당없음	630명 304)	69명	CDU/CSU	해당없음	76	4	
				SPD		82	14	
				Die Linke		35	1	
				Die Grünen		34	7	
				SSW		-	1	

304) 독일 하원정수는 598명이나 2013년 9월 총선결과 전국구 초과의석으로 631명으로 시작, 2015년 9월 4일 CDU 소속으로 Brandenburg 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되었던 Katherina Reiche가 의원직을 사퇴로 1명 감소된 630명임.

3. 미 국



미국 연구관 : 박천호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1) 정당의 창당 및 운영 실태- 정당 창당의 법적 요건

- 정당법 혹은 정당 창당 및 운영에 관련한 연방 수준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각 주는 법률을 통해 정당 창당 요건 및 과정을 규정하고 있음.
- 정당 창당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각 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각 주에서 진행되는 예비선거 및 본선거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됨.

(1) 캘리포니아 주³⁰⁵⁾

-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함.
 - (a) 코커스 혹은 전당대회 개최: 정당 창당의 주체들은 임시 간부 임명과 정당의 명칭이 결정되는 코커스 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여야 함. 신규 정당의 명칭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기존의 정당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함.
 - (b) 전당대회 이후, 정당은 정당 결성 및 임시 간부 선출, 임시 간부의 명단 및 주소, 그리고 해당 정당이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5001장 혹은 5151장에 의거 하여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자 함을 주 국무부에 통지

305) <http://www.sos.ca.gov/elections/political-parties/political-party-qualification/> (검색일: 2015. 10. 15)

하여야 함.

- 신규 정당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음.
 - (a) (주 예비선거에 후보를 내고자 하는 정당은) 주 예비 선거 실시 154일 이전 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고자 하는 정당은) 대통령 선거 실시 이전 123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완료한 유권자 가운데 0.33% 혹은 그 이상의 유권자들의 등록 서식에 선호 정당으로 기재된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됨.
 - (b) 직전의 주지사 선거 투표자의 10% 이상의 유권자(2016년 선거 기준으로는 2014년 주지사 선거 투표자인 7,513,972명의 10%인 751,398명)로부터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예비선거 실시 혹은 대통령 선거로부터 최소한 135일 이전에 주 국무부에 제출하여야 함.
- 대통령 선거 실시 135일 이전 혹은 주 예비선거 실시 102일 이전까지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자격 획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존 정당이 계속해서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a) 주 등록 유권자 가운데 0.067% 혹은 그 이상의 유권자들의 등록 서식에 선호 정당으로 기재되고, 전체 유권자 투표 가운데 2% 이상을 획득한 주 전체 선거(주지사, 부지사, 국무장관, 회계감사관, 재무장관, 법무장관, 보험감독관, 연방 상원 의원)의 후보자를 보유
 - (b) 주 예비 선거 실시 154일 이전 혹은 대통령 선거 실시 이전 123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완료한 유권자 가운데 0.33% 혹은 그 이상의 유권자들의 등록 서식에 선호 정당으로 기재

(2) 미시간 주³⁰⁶⁾

- 미시간 주에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랜싱에 소재한 주 국무부의 선거국에 제출하여야 함.
 - (a) 직전 주지사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수의 1퍼센트 이상의 등록 유권자의 서명을 받은 정당 창당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4년 주지사 선거의 투표자는 총 3,156,531인이었으며, 따라서 2016년 선거 이전에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31,566인 이상의 등록 유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청원 제출로부터 180일 이내에 받은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 2016년 선거 기준으로 청원 제출 기한은 2016년 7월 21일임.
 - (b)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증명서. 이 증명서는 정당의 주 중앙 위원회의 위원장과 총무에 의해 서명된 것이어야 함.
 - (c) 투표용지에 표시될 정당의 표식(vignette).

(3) 캔자스 주³⁰⁷⁾

- 캔자스 주에서 정당을 창당하는 방식 역시 여타의 주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주 국무부에 제출하는 것임. 청원서는 직전 주지사 선거 투표자의 2% 이상의 등록 유권자로부터 받은 서명이 청원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정기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6월 1일 정오임.
- 청원서에는 정당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 국무부에서는 신당의 명칭이 지나치게 길거나 기존 정당과 비슷할 경우에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주 국무부는 청원서를 접수한 후, 청원서 사본을 정당이 서명을 받은 카운티의 선거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서명이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각 카운티의 담당자들은 서명의 유효 여부를 20일 이내에 국무부에 통

306) http://www.michigan.gov/documents/sos/New_Political_Party_Qualification_424178_7.pdf (검색일: 2015. 10. 16)

307) https://www.kssos.org/forms/elections/election_standards/ChapV-Petitions.pdf (검색일: 2015. 10. 20)

지하여야 하며, 국무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원서에 정당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숫자의 서명이 포함되었는지를 결정함.

2) 정당 활동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

- 상기의 주에서는 신당의 명칭이 기존 정당과 지나치게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뉴욕 주의 경우, 신당의 명칭을 기존 정당과 지나치게 비슷하게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American", "United States", "National", "New York State", "Empire State", 혹은 이러한 단어의 약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⁰⁸⁾

2. 위헌(법) 정당 해산 제도

1) 정당 해산 제도 존재 여부(헌법 및 법률 규정)

- 각 주의 법률은 정기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외에 여타의 사유로 인해 정당을 해산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2) 위헌(법) 정당 해산 사례(결정 및 판례 분석)

- 미국 사회 전반에 소위 “레드콤플렉스”가 유행하던 1954년, 의회는 『공산주의자 통제법(Communist Control Act of 1954)』³⁰⁹⁾을 제정하여 미국 공산당을 불법화하고자 시도한 바 있음.

308) New York Election Law,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Sec. 2-124. Party names and emblems.

309) Public Law 83-637.

- 『공산주의자 통제법』은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공산주의자 조직원들이 대의기구에서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법률 제정 취지이며, “미국 공산당은 정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미국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음모가 실체화된 주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 『공산주의자 통제법』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라 실제로 공산당을 해산하거나 불법화하고자 하는 행정적 조치는 시도된 바 없으며, 미국 공산당은 1919년에 창당한 이래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³¹⁰⁾

3. 정당 재정 지원 제도

- 미국의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운영 비용 및 의회 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미국 내국세법의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국세법 제95장의 제9006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국고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개 주에서 25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자로부터 5,000달러 이상을 모금하여야 하고, 개인자금으로부터의 총당하는 선거비용을 50,000달러로 제한하는데 동의하여야 함.³¹¹⁾
- 또한, 선거비용이 연방선거운동법 제441조의 a의 (b)에 명시된 대통령 후보자 지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³¹²⁾
 -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10,000,000달러. 단, 1개 주에 있어서는 그 주의 선거연령 인구수에 16센트를 곱한 금액 또는

310) <http://www.cpusa.org/> (검색일: 2015. 10. 25)

311) 내국세법 제95장 제9003조.

312) 연방선거운동법 제441조 a의 (b), (c).

200,000달러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통령 선거운동의 경우 20,000,000달러.

○ 이 지출 한도는 1974년의 연방선거운동법의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증액됨. 2012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선거의 실질적인 지출 한도는 54,744,840 달러였으며, 본선거의 지출 한도는 91,241,400 달러였음.

4.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방법

1)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방법(관련법, 규정)

- 각 주는 대통령 및 의회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주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주에 따라서 각 정당이 후보자 선출 방식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주도 있음.
- 다음은 주의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근거하여 각 정당이 실시하고 있는 대통령 및 의회 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을 정리한 것임.³¹³⁾

주	대통령 후보자	의회 선거 후보자	관련 법률
앨라배마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Ala. Code § 17-13-7
알래스카	폐쇄형 코커스	반개방형(공화당)/블랭킷(민주당) 예비선거	Alaska Stat. § § 15.25.014, 15.25.060
애리조나	폐쇄형 예비선거	반개방형 예비선거	Ariz. Rev Stat § 16-467; Ariz. Att'y Gen. Op. No. 199-025 (R99-049)
아칸소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Ark. Code Ann. § § 7-7-306-308
캘리포니아	폐쇄형(공화당)/반개방형(민주당) 예비선거	탑투 (Top Two) 개방형 예비선거	Proposition 14; CA S.B. 28

313)

<http://www.fairvote.org/research-and-analysis/presidential-elections/congressional-and-presidential-primaries-open-closed-semi-closed-and-top-two/> (검색일: 2015. 10. 29);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6/us/elections/primary-calendar-and-results.html?_r=0 (검색일: 2015. 10. 29);

<http://www.fec.gov/pubrec/fe2012/2012pdates.pdf> (검색일: 2015. 10. 29);

<http://www.thegreenpapers.com/P16/events.phtml?s=c&f=m> (검색일: 2015. 10. 29).

주	대통령 후보자	의회 선거 후보자	관련 법률
콜로라도	폐쇄형 코커스	폐쇄형 예비선거	Colo. Rev. Stat. § 1-7-201
코네티컷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Conn. Gen. Stat. §§ 9-431, 9-59
델라웨어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Del. Code Ann. § 3110
컬럼비아 특별구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D.C. Code Ann. § 1-1001.09(g)(1); 1-1001.05(b)(1)
플로리다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Fla. Stat. Ann. § 101.021
조지아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Georgia Code Ann. § 21-2-224
하와이	폐쇄형 코커스	개방형 예비선거	Haw. Rev. Stat § 12-31
아이다호	폐쇄형 예비선거(공화당)/ 개방형 코커스(민주당)	폐쇄형(공화당)/개방형(민주당) 예비선거	Idaho Code Ann. § 34-904A
일리노이	반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10 Ill. Comp. Stat. 5/7-43, -45
인디애나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Ind. Code §§ 3-10- 1-6, 1-9
아이오와	폐쇄형 코커스	폐쇄형 예비선거	Iowa Code Ann. §§ 43.38; 43.42
캔자스	폐쇄형 코커스	폐쇄형 예비선거	Kan. Stat. Ann. §§ 25-3301
켄터키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Ky. Rev. Stat. Ann. § 116.055
루이지애나	폐쇄형 예비선거	탑투 (Top Two) 개방형 예비선거	La. Rev. Stat. Ann. §§ 18:1280,21
메인	폐쇄형 코커스	폐쇄형 예비선거	Me. Rev. Stat. tit. 21, § 111, 340
메릴랜드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Md. Code, Elec. Law §§ 3- 303, 8-202
매사추세츠	반개방형 예비선거	반개방형 예비선거	Mass. Gen. Laws ch.53 § 37
미시간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Mich. Comp. Laws § 168.575; Public Act 163
미네소타	개방형 코커스	개방형 예비선거	Minn. Stat. § 204D.08
미시시피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Miss. Code Ann. § 23-15-575
미주리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Mo. Rev. Stat. § 115.397

주	대통령 후보자	의회 선거 후보자	관련 법률
몬태나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Mont. Code Ann. § 13-10-301
네브래스카	반개방형 예비선거(공화당)/반개방 형 코커스(민주당)	반개방형 예비선거	Neb. Rev. Stat. § 32-912
네바다	폐쇄형 코커스	폐쇄형 예비선거	Nev. Rev. Stat. § § 293.287, 293.518
뉴햄프셔	반개방형 예비선거	반개방형 예비선거	N.H. Rev. Stat. Ann § 659:14
뉴저지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N.J. Stat. Ann. § 19:31-13.2
뉴멕시코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N.M. Stat. § 1-12-7.2
뉴욕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N.Y. Elec. Law § 5-304
노스캐롤라이나	반개방형 예비선거	반개방형 예비선거	N.C. Gen. Stat. § § 163-59, -119
노스다코타	개방형 코커스	개방형 예비선거	N.D. Cent. Code, § 40-21-06
오하이오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Ohio Rev. Code Ann. § 3513.19
오클라호마	폐쇄형(공화당)/개방형(민 주당) 예비선거	폐쇄형(공화당)/개방형(민 주당) 예비선거	Okla. Stat. § 26-1-104
오리건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Or. Rev. Stat. § § 247.203, 254.365
펜실베이니아	폐쇄형 예비선거	폐쇄형 예비선거	25 Pa. Stat. Ann. § 2812
로드아일랜드	반개방형 예비선거	반개방형 예비선거	R.I. Gen. Laws § § 17-15-24
사우스캐롤라이나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S.C. Code Ann. § § 7-13-610, 7-13-1010
사우스다코타	폐쇄형(공화당)/반개방형(민주당) 예비선거	폐쇄형(공화당)/반개방형(민주당) 예비선거	S.D. Codified Laws § 12-6-26
테네시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Tenn. Code Ann. § 2-2-102
텍사스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Tex Elec. Code Ann. § 172.086
유타	폐쇄형 예비선거(공화당)/개방형 코커스(민주당)	폐쇄형(공화당)/반개방형(민주당) 예비선거	Utah Code Ann. § § 20A-2-107.5
버몬트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Vt. Stat. Ann. tit. 17, § 2363

주	대통령 후보자	의회 선거 후보자	관련 법률
버지니아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Va. Code Ann. § 24.2-530
워싱턴	폐쇄형 예비선거(공화당)/ 반개방형 코커스(민주당)	탑투 (Top Two) 개방형 예비선거	Wash. Rev. Code § 29A.52.112, 29A.36.171
웨스트버지니아	반개방형 예비선거	반개방형 예비선거	W. Va. Code § 3-5- 4
위스콘신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Wis. Stat. § 6.80
와이오밍	폐쇄형 코커스	폐쇄형 예비선거	Wyo. Stat. Ann. § 22-5-212

2) 여성 또는 소수자(이민족, 장애인 등) 정치 참여 관련 지원 규정

○ 해당 규정 없음.

3) 정당별 의원정수 대비 여성의원수³¹⁴⁾

○ 의회 내 여성의원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명	의원정수			정당명	여성의원수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	양원제	
		하원	상원			하원	상원
미국	해당 없음	435	100	민주당	해당없음	65	14
				공화당	해당없음	23	6

314) Manning, Jennifer E. and Ida A. Brudnick. 2015. "Women in Congress, 1917-2015: Biographical and Committee Assignment Information, and Listings by State and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www.fas.org/sgp/crs/misc/RL30261.pdf> (검색일: 2015. 10. 27.)

4. 호 주



호주 연구관 : 김리라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1) 정당의 창당 및 운영 실태

- 「연방선거법」의 제11장 정당의 등록(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에서 정당 창당에 대한 법적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가 정당 등록과 원내정당 관리 업무를 맡음³¹⁵⁾.
 - 적법한 정당(eligible political party)이란 원내정당 혹은 500명 이상의 당원수를 가진 정당을 말하며, 원내정당(parliamentary party)이란 당원 중 한명 이상이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일 경우를 말함.(「연방선거법」 123조)
- 적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창당 조직은 정당가입조건, 탈퇴방법, 정당원의 권리와 의무, 정당원 퇴출여부, 연회비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함.
 - 해당 조직과 회원의 구성이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목표에 적합하며,
 -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은 해당 정당원 한 명 이상이 연방 국회에 속해있거나(원내정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으며 연방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있는 정당원이 500명 이상 있어야 함(원외정당의 경우).

315) 연방 정당 등록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나오는 당의 이름과 그 약자를 겹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함.

- 원내정당(Parliamentary parties)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방 국회에 속해있는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 한명이면 족하고 그 외의 정당원이 필요하지 않음. 등록시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그 서류에는 다른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내야 함.
 - 대부분의 신생정당은 원외정당(non-parliamentary parties)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때 연방선거의 선거인명부³¹⁶⁾ 상의 500명 이상³¹⁷⁾의 당원수가 필요함. 등록 시 당원의 목록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각 당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함. 호주선거위원회로 빠른 회신을 위해 당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서류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창당하는 정당 조직은 「연방선거법」의 조건에 맞는 정당이름과 그 약자³¹⁸⁾를 호주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연방선거법」 129조에서 제시하는 정당 이름과 약어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참고하여 선택해야 함.

316) 창당준비를 하는 정당은 각 정당원이 연방선거인등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호주선거위원회 사무소에서 전자선거인명부(eRoll)을 이용하거나 'Check my electoral enrolment(<https://oevf.aec.gov.au/>)'를 사용할 수 있음.

317) 호주선거위원회는 원외정당 등록에 필요한 당원수의 최대인원수는 550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이 되는 당원수의 신청서는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므로 신청서를 돌려보내 당원수 명단을 줄여서 다시 제출하도록 함.

318) 투표용지에 정당의 이름 대신 그 약자를 넣을 수 있음.

「Commonwealth Electoral Act」 129 Parties with certain names not to be registered
(a) is more than six words long
(b) is obscene
(c) is the same as, or is likely to be confused with, or mistaken for, the name of a 'recognised political party'¹, unless that other party is a 'related party'²
(d) suggests a relationship or connection with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if that connection or relationship does not in fact exist
(e) uses the words 'Independent Party,' or the word 'Independent' with the name of a recognised political party, or in a way that is likely to be confused with the name of a recognised political party.

「연방선거법」 129조 등록할 수 없는 정당 이름
(a) 6글자 이상이 되는 이름
(b) 음란한 의미의 이름
(c) 관련된 정당이 아니면서 이미 등록되어있는 정당의 이름과 같거나, 그 정당이라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
(d) 사실상 관련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정당과 관련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름
(e) '무소속(Independent Party)' 혹은 이미 알려진 당의 이름 앞에 '독립(independent)' 단어를 붙이거나 알려진 당의 이름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

- 정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규약에 맞는 정당사무소직원(office bearers)을 지정해야 하며 이들의 의무를 규약집에 정확하게 규정해놓지 않은 경우, 호주선거위원회에서 등록 전에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함.
 - 「연방선거법」 123조에 따르면 당 사무소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총무(secretary)³¹⁹가 있으며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나 선거인명부 관리, 혹은 정당 내 사람들의 연락망을 관리하는 등 호주선거위원회와 직접 연락하는 역할을 맡음.

319) 당 내 규약집에는 Secretary 대신 Director, Convenor, General secretary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

출처: http://www.aec.gov.au/Parties_and_Representatives/party_registration/guide/process.htm 2015년 10월 검색.

「Commonwealth Electoral Act」 123 Interpretation

secretary, in relation to a political party, means the person who holds the office (however described) the duties of which involve responsibility for the carrying out of the administration, and for the conduct of the correspondence, of the party.

「연방선거법」 123조 의미

정당과 관련하여 총무는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정당의 연락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 또한 최고책임자(Registered officer)를 선정해야 하며 최고책임자는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투표용지에 찍히는 정당의 이름과 약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호주선거위원회에서는 정당 등록에 관한 공식적인 허가 서류를 최고책임자에게 보내야 함.
- 창당 정당의 계좌를 관리하고 모금된 돈을 운용하며 지출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있으며 「연방선거법」 288조에 따르면 호주선거위원회에 매년 회계공개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당 대리인(party agent)’을 지정해야 함.
- 같은 법 290조에서는 적법한 정당대리인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당대리인을 통해서 선거자금(election funding)이 전달되기 때문에, 만약 아직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했다면 당해 선거에서 4%이상의 득표를 하였더라도 선거자금을 받을 수 없음.

「Commonwealth Electoral Act」 290 Requisites for appointment
(a) be a natural person and not a corporation
(b) be at least 18 years of age
(c) not have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under the funding and disclosure provisions of the Electoral Act
(d) have signed a consent to the appointment
(e) have signed a 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appointment.

「연방선거법」 290조 임명요건
(a) 자연인이며 법인이 아닐 것
(b) 18세 이상일 것
(c) 선거법 상의 자금조달이나 내용공개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을 것
(d) 임명동의안에 서명을 했을 것
(e) 적법한 임명 동의란에 서명을 했을 것

2) 정당 활동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

- 「연방선거법」 129조1(d)항에서는 동일(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d) so nearly resembles the name, or an abbreviation or acronym of the name, of another political party (not being a political party that is related to the party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that is a Parliamentary party or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that it is likely to be confused with or mistaken for that name or that abbreviation or acronym, as the case may be; or

(d) 원내정당 혹은 다른 원외정당의 이름 혹은 약어, 두문자가 거의 비슷해서 해당 정당의 이름, 약어, 두문자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경우,

- Woollard³²⁰⁾는 호주선거위원회가 「연방선거법」 129조 1(d)에 근거하여 'liberals for forests'당의 이름이 기존에 있던 ' Liberal Party of

320)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호주선거위원회의 정당등록신청거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소 판례(the AAT in the case of Woollard and the AEC and the Liberal Party [2001] AATA 166 (6 March 2001)).

http://www.aec.gov.au/Parties_and_Representatives/party_registration/Registration_Decisions/similar-names.htm
2015년 10월 검색.

Australia'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da) is one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think suggests that a connection or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party and a registered party if that connection or relationship does not in fact exist; or

(da) 사용하려고 하는 정당의 이름 혹은 약어가 사실상 등록정당의 이름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둘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서는 ‘산림자유당 (liberals for forests)’의 이름이 ‘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의 이름과 혼동이 되지 않으며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으므로 정당등록을 거부했던 호주선거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정당의 이름 등록을 명령함.
- 해당 법조항의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129조1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라는 문구를 넣은 129조1(da)가 추가되었음. 이는 행정심판소의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 전에 이루어졌음.
-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소 결정 40과 46항은 다음과 같음.

Political parties in Australia use, and historically have used, in their names generic words such as 'Australia', 'liberal', 'labour', 'democrat', 'national', 'christian', 'progressive', 'socialist' and the like. Absent clear language to contrary effect, the disqualifying provision is not to be construed so as to lock up generic words as the property of any organisation when it comes to names that can be used on the ballot paper. ... The term 'liberals for forests' is a combination of words emphasising a specific issue and describing a party by a name different from that of the Liberal Party of Australia or any of its State divisions. It may be that some persons will draw the inference that members of 'liberals for forests' are former members or have some affiliation with the Liberal Party of Australia or one of its State divisions. It is unlikely that any elector, seeing the two names on a ballot paper, will draw the conclusion that 'liberals for forests' is a political party related to the Liberal Party of Australia or any of its State divisions.

호주의 정당의 이름에는 역사적으로 ‘호주’, ‘자유’, ‘노동’, ‘민주주의’, ‘국민’, ‘기독교’, ‘진보’, ‘사회주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왔다. 투표용지에 나온 이름을 정하는데 단체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법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산림자유당(liberals for forests)’은 특정 이슈에 대한 정당임을 드러내며 자유당과는 다른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 간혹 어떤 이는 ‘산림자유당’의 정당원이 이전 자유당의 당원이었거나 혹은 자유당의 부속정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이름이 나온 투표용지를 본 어떤 투표자라도 ‘산림자유당’이 호주자유당과 관련있는 정당이라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위헌(법) 정당 해산 제도

1) 정당 해산 제도 존재 여부(헌법 및 법률 규정)

- 헌법 75조 연방대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살펴보면 연방대법원은 연방이 정당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다루는 경우, 그 심사를 관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법률 규정은 없음.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SECT 75 Original jurisdiction of High Court

In all matters:

- (i) arising under any treaty;
- (ii) affecting consuls or other representatives of other countries;
- (iii) in which the Commonwealth, or a person suing or being sued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is a party;
- (iv) between States, or between residents of different States, or between a State and a resident of another State;
- (v) in which a writ of Mandamus or prohibition or an injunction is sought against an officer of the Commonwealth;

the High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호주헌법」 75조 연방대법원의 관할권

(iii) 연방 혹은 연방을 대신하여 소송을 걸거나 소송에 걸린 개인이 정당인 모든 경우에 연방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2) 위헌(법) 정당 해산 사례(결정 및 판례 분석)

○ 위헌 정당을 해산시킨 결정은 아니지만, 1951년 호주 연방 대법원은 「공산당 해산법률(The Communist Party Dissolution Act 1950)」에 대한 위헌 무효 판결을 내렸음.(Australian Communist Party v The Commonwealth (1951) 83 CLR 1,[1951]HCA 5)³²¹⁾

- 「공산당 해산법률」은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정부가 결정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약시키는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가 단체를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은 지나친 것이며 민주적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냄.

321) George Wlliams, 심포지움자료, 공산당 해산법률과 그 여파(The communist party dissolution bill and its aftermath)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6&ved=0CEYQFjAFahUKEwiD-vnI1-fIAhVje6YKHdWIBAk&url=http%3A%2F%2Fasslh.org.au%2Fwp-content%2Fuploads%2F2009%2F01%2FThe-Communist-Party-Dissolution-Bill-and-its-Aftermath.doc&usg=AFQjCNE1R4IFD_t7ujO6-hLur5iXsdwf8Q

3. 정당 재정 지원 제도

1)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 현황

- 「연방선거법」 제20장 294조-302조는 선거자금(Election funding)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빅토리아, 서호주, 수도준주에서는 선거캠페인을 위한 선거자금 지원제도가 있고, 남호주, 타즈매니아, 북부준주에서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음.
 - 호주선거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 정당소속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상원 단체는 해당 선거구의 제1순위 선호표를 4%이상 얻은 경우 선거자금을 받게 됨. 하지만 이 4% 기준선은 중소정당이 획득하기 어려우며, 선호투표로 4%이하의 표를 획득했음에도 당선인 된 후보자가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비판이 있음.
 - 호주노동당(Democratic Labour Party)은 해당하여 \$1,000의 선거자금을 환불받은 바 있음. 선호투표 4%이상 획득한 소속 정당의 후보자들도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여 선거자금을 받기도 했음.³²²⁾
- 탈규제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에는 정당의 사무국(secretariats)과 무소속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정당사무소 관리, 선거사무소 운영과 언론 등을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환급하는 제도가 있음.³²³⁾

322) 2011년 선거에 관한 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Electoral Matters), 정당의 선거캠페인 자금에 대한 질의(Inquiry into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중에 해당 내용.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House_of_Representatives_Committees?url=em/political%20funding/index.htm

323) 호주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도서관의 리서치 자료, 선거와 정치자금: 연방에서의 개혁 내용(Electoral and political financing: the Commonwealth regime and its reforms)의 내용.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N/2011-2012/ElectoralFinancing#_ftnref48 2015년 10월 검색.

2) 국고지원 배분 방법 및 규모

- 선거캠페인자금은 연방 선거 혹은 보궐선거 전에 정부예산의 형식으로 받으며 이는 선거를 관리하는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에서 재무부를 통해 받음. 제1선호표를 4%이상 받은 상원의원 혹은 하원의원 그룹이 속한 정당에서는 이를 받게 되며 등록정당은 선거지출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음.
- 정당 사무국과 무소속 의원은 정당사무소 관리,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정부에 환급을 요청하면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2010-11년에 각 사무국과 무소속 상하원의원에 환급할 수 있는 지원액은 각 1,000불이었으며 그 최대 환급 지원금 액수는 회계기간 동안 의원 임기에 비례하여 결정됨.

정당사무국 / 무소속의원	2009-10 최대 환급금	2009-10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 청구한 지원금		2010-11 환급금에 대한 최대자금
호주노동당	\$115,000	\$105,805	\$116,34	\$105,540
자유당	\$87,000	\$87,000	\$95,700	\$92,020
국민당	\$14,000	-	-	\$15,720
녹색당	\$5,000	-	-	\$5,860
스티브 필딩 상원의원	\$1,000	-	-	\$1,000
밥 캐터 의원	\$1,000	-	-	\$1,000
로버트 오크셔 의원	\$1,000	-	-	\$1,000
토니 윈저 의원	\$1,000	-	-	
닉 제노폰 상원의원	\$1,000	-	-	

〈표〉 정당사무국과 무소속의원이 청구한 지원금³²⁴⁾

324) 탈규제재무부 홈페이지에서 2010-11년 연간보고서 내용 중 정당사무국의 교육비(Training provided by Political party secretariats) 부분의 정리된 표 인용.

http://www.finance.gov.au/publications/mops_annual_reports/2010-2011/Content/18_training_provided_political_party_secretariats.html 2015년 10년 검색.

4.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방법

1)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방법(관련법, 규정)

- 「연방선거법」 166조에 의하면 (a) 후보자의 이름, 거주지, 직업을 적고, (b) 해당 선거에 참여 자격이 있으면서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유권자 10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거나, 혹은 정당의 최고책임자(registered officer)에게 서명을 받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후보자를 추천함.
 - 상원의원선거의 (a) 후보자가 i) 상원의원이거나 ii) 상원의회 회기가 끝난 후 선거의 경우, 의회 해산 전에 상원의원이었고 (b) 후보자의 이름이 그가 대표하는 주 혹은 준주의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후보자는 거주지가 아닌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추천을 받음 (「연방선거법」 166조1A).
 - 하원의원선거의 (a) 후보자가 하원의회 회기가 끝나기 직전에 하원의원이었고 (b) 후보자의 이름이 그가 대표하는 주 혹은 준주의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후보자는 거주지가 아닌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추천을 받음(「연방선거법」 166조1B).

(1) Subject to subsections (1A), (1AA), (1B) and (1C), a nomination may be in Form C, CA, D or DA in Schedule 1, as the case requires, and must:

- (a) set out the name, place of residence and occupation of the candidate; and
- (b) be signed by:
 - (i) not less than 100 electors entitled to vote at the election for which the candidate is nominated; or
 - (ii) the registered officer of the registered political party by which the candidate has been endorsed for that election.

(1A) Where:

- (a) a candidate in a Senate election is:

- (i) a Senator; or
- (ii) in the case of an election following a dissolution of the Senate, a person who was, immediately before the dissolution, a Senator; and
- (b) the candidate' s name is, under subsection 99(4), enrolled on the Roll for any Subdivision of a Division of the State or Territory that he or she represents or represented;

the candidate may set out in his or her nomination the address recorded in that enrolment rather than his or her place of residence.

(1B) Where:

- (a) a candidate in an election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immediately before the dissolution or expira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preceded the election,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 (b) the candidate' s name is, under subsection 99(4), enrolled on the Roll for any Subdivision of the Division that he or she represen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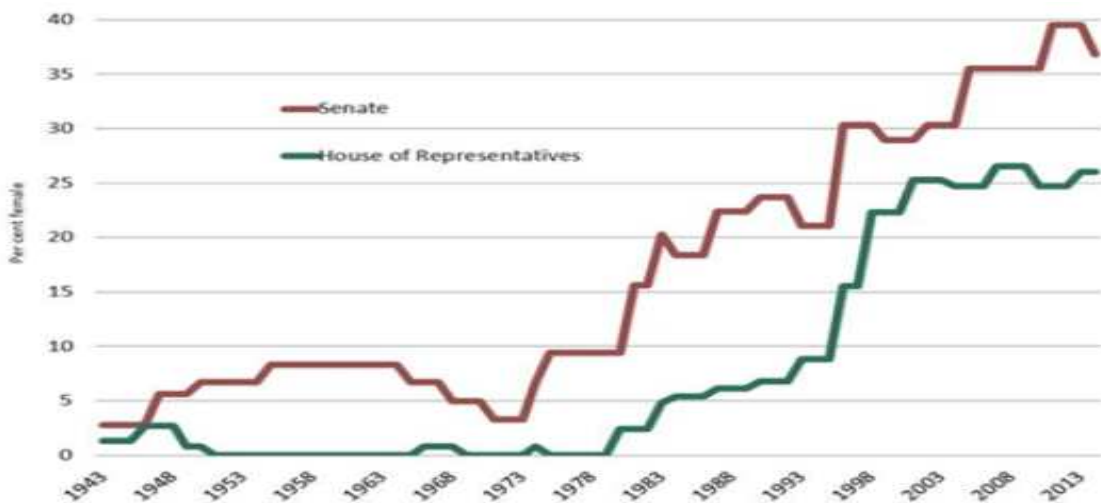
the candidate may set out in his or her nomination the address recorded in that enrolment rather than his or her place of residence.

- 상원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호주선거위원회공무원(Australian Electoral Officer)에게 해야 하며, 하원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선거구선거관리관(Divisional Returning Officer)에게 제출해야 함. (「연방선거법」 167조1,2)
 - 하원의원선거 후보자를 호주선거위원회에 했을 경우, 호주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받은 지역구에 해당하는 선거구선거관리관에 후보자 서류를 후보추천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한 빨리 전달해야 함.(「연방선거법」 167조4)

2) 여성 또는 소수자(이민족, 장애인 등) 정치 참여 관련 지원 규정

○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영국, 미국 여성의 국회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선거제도 특성, 정당 운영 방식,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하기 어려움을 들고 있음. 호주 국회도서관의 리서치페이퍼³²⁵⁾를 보면, 호주의 선거제도가 국회에서의 여성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단일투표제보다 여성이 당선될 확률을 높여줌. 1943년 여성이 처음으로 국회진출을 한 이후로 연방의회의 여성비율을 보면 웨어식 선호투표제 방식을 취하는 하원의원의 구성보다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하는 상원의원의 여성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연방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여성비율(1943-2013)³²⁶⁾

○ 여성의 의원 비율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로 정당이 후

325) 호주국회도서관의 리서치페이퍼, 2014년 호주 국회의 여성참여(Representation of women in Australian parliaments 2014) 재인용, Dr Joy McCann and Janet Wilson, July 2014,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1415/WomanAustParl 2015년 10월 검색.

326) 위와 같음.

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음. 하원상임위원회³²⁷⁾에서는 ‘정당의 규칙이나 전략이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결정되는지 검토하고 정치과정 중에 여성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 정책(affirmative action)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권고하였음.

- 1980년 말콤 마커러스(Malcolm Mackerras)의 조사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자 선택과정에서 여성 후보자를 예비 선택한 경우, 남성 후보자와 비슷한 의석수를 획득하였음. 예를 들어 2007년 하원의원 연방선거에서 1,054명의 후보자가 150석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는데 여성후보자의 14.7%, 남성후보자의 14.1%가 의석을 획득하였음.

○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성별쿼터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호주에서는 약간의 찬반논쟁이 있었음. 하지만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의 경우 2002년 선거에 의무적으로 35% 예비 선택 쿼터를 두어 국회의 성별균형에 맞추는데 기여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40:40:20 쿼터제를 도입하여 각각 40%씩 남녀로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성별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택함³²⁸⁾.

3) 정당별 의원정수 대비 여성의원수

○ 공직에서의 여성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호주의 순위는 점점 내려가고 있음³²⁹⁾. 국회에서는 여성비율이 1/3을 밑돌고(29.0%) 장관직에서는 1/5수준으로 UN에서 정한 국회에서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327) 법적문제에 대한 하원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Half way to equal: report of the inquiry into equal opportunity and equal status for women in Australia, Recommendation 41, AGPS, 1992, p. xxxvi.

328) 위와 같음.

329) 호주국회도서관의 리서치페이퍼, 2014년 호주 국회의 여성참여(Representation of women in Australian parliaments 2014) 재인용, Dr Joy McCann and Janet Wilson, July 2014,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1415/WomanAustParl 2015년 10월 검색.

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함.

- 빅토리아주 국회의 여성비율은 약 1/3로 가장 높고 남호주가 그중에 비교적 높은 편임. 수도준주 국회의 여성비율이 가장 높으며 퀸즐랜드 국회의 여성비율은 가장 낮음.
- 정당별로 여성의원수를 살펴보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모두 호주노동당 (Australian Labor Party) 소속의 여성의원이 가장 많고, 자유당 (Liberal Party of Australia)이 그 다음을 차지함. 호주녹색당 (Australian Greens)과 파머연합당(Palmer United Party)은 여성 상원의원만 있으며 자유국민당 소속의원 중에는 여성의원이 없음.

국가명	의원정수			정당명	여성의원수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	양원제	
		하원	상원			하원	상원
호주	해당 없음	150	76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해당 없음	21	16
				호주녹색당(Australian Greens)		0	7
				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15	7
				국민당(National Party of Australia)		1	2
				파머연합당(Palmer United Party)		0	1
				지역자유당(Country Liberal Party)		1	0
				자유국민당(Liberal National Party of Queensland)		0	0
				무소속		1	0

5. 일 본



일본 연구관 : 송재현

1. 정당의 창당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1) 정당의 창당 및 운영 실태

가. 정당 창당의 법적 조건(정당법 등)

○ 일본에는 「정당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와 유사한 법률로는 「정당자금규정법(政党資金規正法)」, 「정당조성법(政党助成法)」,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政党交付金の交付を受ける政党等に対する法人格の付与に関する法律)」이 존재하며 상호 보완적인 존재임.

－ 「정치자금규정법(政治資金規正法)」에 있어서 정치단체란 정치적인 의견 및 정책을 추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 지지, 반대를 하는 단체를 뜻함.

「정당자금규정법」 제 3조 제1항

이 법률에 있어서 “정치단체”란 이하를 뜻함.

1. 정치적인 의견 및 정책을 추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특정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여 지지 및 반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이상의 2호 이외에 이하의 활동을 조직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단체
 - 3-1. 정치상의 주의 혹은 시책을 추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3-2. 특정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여 지지 및 이에 반대하는 것.

「政党資金規正法」第3条

この法律において「政治団体」とは、次に掲げる団体をいう。

- | | |
|---|--|
| 一 | 政治上の主義若しくは施策を推進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を本来の目的とする団体 |
| 二 | 特定の公職の候補者を推薦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を本来の目的とする団体 |
| 三 |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次に掲げる活動をその主たる活動として組織的かつ継続的に行う団体 |
| イ | 政治上の主義若しくは施策を推進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 |
| ロ | 特定の公職の候補者を推薦し、支持し、又はこれに反対すること° |

- 정당의 정의는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政党交付金の交付を受ける政党等に対する法人格の付与に関する法律)」 제 3조에 의거함.
- 위의 법률에 의거한 정당은 「정당자금규정법」 제 3조 1항의 정치단체 중 중의원 또는 참의원 다섯명 이상이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의 국정선거에서 2%이상의 유효득표율을 기록한 정치단체를 의미함.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정당의 정의)

제 1항 이 법률에 있어서 "정당"이란, 정치단체(정치자금규정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치단체를 뜻함) 중, 이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함.

제 1호 해당 정치단체에 소속된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을 5인 이상 가진 곳

제 2호 위에서 규정한 해당단체에 소속하지 아니하는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을 보유한 곳으로 가장 최근에 행해진 중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또는 가장 최근에 행해진 참의원 통상선거(이하, 통상선거), 또는 해당 통상선거의 가장 최근 통상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의원 선거 또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정치단체의 총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인 곳.

제 2항 전 항 각호의 규정은 그 외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중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이 소속된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政党交付金の交付を受ける政党等に対する法人格の付与に関する法律」

第二条 (政党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政党」とは、政治団体(政治資金規正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九十四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政治団体をいう。以下同じ。)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

一 当該政治団体に所属する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を五人以上有するもの

二 前号の規定に該当する政治団体に所属していない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を有するもので、直近において行われた衆議院議員の総選挙(以下単に「総選挙」という。)における小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若しくは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又は直近において行われた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以下単に「通常選挙」という。)若しくは当該通常選挙の直近において行われた通常選挙における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若しくは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における当該政治団体の得票総数が当該選挙における有効投票の総数の百分の二以上であるもの

2 前項各号の規定は、他の政党(政治資金規正法第六条第一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政党である旨の届出をしたものに限る。)に所属している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が所属している政治団体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정치단체는 단체 조직일 또는 단체로서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편을 통하여 단체 설립의 통지 및 해당 정치단체의 목적,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관할 구역, 단체의 대표 및 회계책임자 등의 정보를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당자금규정법」 제6조)
 - 예1) 한 도·도·부·현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단체는 해당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예2) 두개 이상의 도·도·부·현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단체는 주요 사무소가 있는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총무대신에게 제출
 - 예3) 정당 및 정치자금 단체는 총무대신에게 제출
- 정치단체 중 상기의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부합하는 정치단체는 이하와 같은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정당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1. 명칭
 2. 목적
 3.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권을 가지는 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 사유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6. 소속된 의원의 성명 및 주소 등
 7. 최근의 선거에서의 총 득표수
- 나. 창당준비 활동 기한, 창당 필요 당원수, 지역 정당수, 정당사무소 소재지 등 기타 창당에 필요한 요건 등
- 일본의 경우 정당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의 제3조 및 제5조에 부합하는 정치단체의 경우 정당으로서 인정됨.

-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이 시도당의 수, 당원수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지역정당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있음. (예: 홋카이도(北海道)의 신당 대지(新党大地), 아이치(愛知)의 감세일본(減税日本), 오사카(大阪)의 오사카 유신의 모임(大阪維新の会), 오키나와(沖縄)의 오키나와 사회대중당(沖縄社会大衆党) 등)
- 단, 당의 강령 및 당칙,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는 제출하여야 함.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

다. 정당의 조직 운영 관련 근거 내용(관련법, 규정)

- 일본의 경우, 정당법이 없기 때문에 정당의 조직에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 법률상으로는 정당의 대표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외의 제한은 없음.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 제 9조)
 - 그 외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음이 상기 법률의 제9조의 5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참고: 일반적인 일본내 정당의 조직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은 정당법이 존재 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정당의 조직형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대부분의 정당이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자민당)의 조직 형태를 따르고 있음. 대부분의 정당에 공통적으로 있는 조직은 이하와 같음.

1. 총재(대표)
2. 간사장(幹事長)
3. 정무조사회(政務調査會)
4. 총무회

위의 2~4의 수장인 간사장, 정무조사회장, 총무회장은 총재(대표)에 다음가는 당 집행부의 간부로 일반적으로 당3역(党三役)라고 불리움. 또한, 이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더하여 당4역이라 부르기도 함. 총재를 포함한 이 다섯 조직은 대부분의 정당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직이 있음.

2) 정당 활동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규정

가. 정당 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정

○ 정당법의 부재로 인해 정당의 활동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선거기간 중의 활동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에 의해 엄격하게 활동이 제한되는데 반하여, 그 외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³³⁰⁾.
-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의 해석규정(제 2조)에서도 또한 해당 법률내의 어떠한 내용도 정당활동의 제한으로 해석해서 아니 됨을 명기해 놓았음.

330) 「정치활동에 대하여」. 신주쿠구 홈페이지. URL: http://www.city.shinjuku.lg.jp/kusei/file10_00021.html
(검색일: 2015년 10월 18일)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

제 2조 (해석규정)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한다.

「政党交付金の交付を受ける政党等に対する法人格の付与に関する法律」

第二条 (解釈規定)

この法律のいかなる規定も 政党の政治活動の自由を制限する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 「정당자금규정법」, 「정당조성법」,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앞의 두 법률의 벌칙은 회계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후자의 법률은 신고 및 등기가 지연되었을 경우의 벌칙규정이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정당 활동의 주요 위법 사례(판례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2. 정당 재정 지원제도

- 일본의 정당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1994년 제정된 「정당조성법(政党助成法)」에 규정되어 있음.
 - 상기의 법률 이외에도 「정당자금규정법(政党資金規正法)」이 존재하나 이는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이 아닌 기부 등에 의한 자금에 관한 법률임.
 - 국고지원에 관해서는 1953년 제정된 「국회내 각 회파(會派)에 대한 입법사무비의 교부에 관한 법률(国会における各會派に対する立法事務費の交付に関する法律)」이 있으나, 정당이 아닌 국회내의 회파(원내단체)를 대상으로 함.

1)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 현황

-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는 주로 「정당조성법」에 의하며, 이하와 같은 자격과 절차를 거친 정치단체에 한하여 국고를 지원함.
 - 정당조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당」이란 이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정치단체를 의미함.(「정당조성법」 제2조)
 1.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 의원을 5인 이상 보유
 2. 가장 최근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2% 이상
 - 이는 「정당교부금을 교부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정당을 의미하며, 정당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의거한 법인격을 가져야 함(「정당조성법」 제 3조).
 - 정당교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정당은 기준일³³¹⁾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알려야 함(「정당조성법」 제 5조의 1).
 1. 명칭
 2.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회계 책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선출 연월일
 4. 회계감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선출 연월일
 5. 소속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의 성명, 주소, 선출 연월일
 6. 이하의 득표총수
 - 6-1. 최근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의 선거구득표수
 - 6-2. 최근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득표수³³²⁾
 7. 지부(支部)가 있을 경우, 지부의 수, 명칭, 소재지, 대표자와 회계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8. 그 외 총무성령으로 지정한 사항

331) 일반적으로 1월 1일

332) 참의원 선거의 경우, 최근 선거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선거 득표수도 신고하여야 함.

- 상기한 사항 이외에도 이하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정당조성법」 제 5조의 2).
 1. 강령, 해당 정당의 목적 및 기본 정책을 기재한 문서
 2. 당칙, 규약, 해당 정당의 조직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3. 위의 기재사항에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소속 중의원 및 참의원 동의서, 소속 의원이 해당 정당 이외의 다른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함을 보증하는 서약서
 4. 그 외 총무성령으로 지정한 사항

2) 국고지원 배분 방법 및 규모

- 정당교부금의 총액은 인구수에 250엔을 곱한 액수로, 각 정당은 국회의원 수 및 총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됨.
 - 정당교부금의 총액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세조사의 인구수에 250엔을 곱한 금액임.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0년 국세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수는 128,057,352명으로, 교부금의 총액은 32,014,338,000엔임.
 - 각 정당의 정당교부금은 이하와 같이 산출함.
 - ① 교부금 총액의 1/2과 해당 정당 의원수 비율을 곱한 금액.
예를 들어, 교부금이 100억엔, 해당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200명, 모든 정당에 소속된 의원의 수가 500명일 경우,
 $100억 \times (200명 \div 500명) = 40억$
 - ② 교부금 총액의 1/4에 최근의 중의원 선거 소선거구 득표율³³³⁾을 곱한 금액
 - ③ 교부금 총액의 1/4에 최근의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득표율을 곱한 금액
 - ④ 교부금 총액의 1/8에 최근의 참의원 선거 선거구 득표율을 곱한 금액
 - ⑤ 교부금 총액의 1/8에 최근의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 득표율을 곱한 금액

333) 이 항목에서 설명하는 득표율의 분모는 전체 유효투표수가 아닌, 정당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치단체가 획득한 투표수의 총합임. 즉 무소속이나 정당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치단체가 획득한 투표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 ⑥ 교부금 총액의 1/8에 전전회³³⁴⁾ 참의원 선거 선거구 득표율을 곱한 금액
 - ⑦ 교부금 총액의 1/8에 전전회 참의원 선거 비례대표 득표율을 곱한 금액
- 이상의 ①부터 ⑦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해당 정당에 배부함.

3) 위법 또는 위헌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 제도

○ 위법, 위헌 정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해당사항 없음.

4) 주요정당의 정당교부금 지급 현황³³⁵⁾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자유민주당 (自由民主党)	157.8	150.6	101.5	101.1	102.6
민주당 (民主党)	66.9	77.7	165.4	168.2	171.0
공명당 (公明党)	26.0	25.7	22.8	23.4	26.1
일본 유신의 모임 (日本維新の会)	16.5	29.6	-	-	-
유신의 당 (維新の党) ³³⁶⁾	12.2	-	-	-	-
모두의 당 (みんなの党)	-	17.8	11.2	11.1	6.7
사회민주당 (社会民主党)	4.3	4.9	7.6	7.6	8.2
일본공산당 (日本共産党) ³³⁷⁾	-	-	-	-	-

〈표〉 주요 정당의 정당교부금 지급액(단위: 억엔)

334) 가장 최근 선거의 득표율만 대상으로 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가 전전회 선거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의 1/2씩 새로 선출하기 때문임.

335) 총무성 정당조성관련 자료, URL: http://www.soumu.go.jp/senkyo/seiji_s/data_seitou/ (접속일시: 2015년 10월 26일)

336) 일본 유신의 모임과 기타 정당의 합당으로 인해 탄생한 정당. 정당교부금은 매년 4회 지급되기 때문에 2014년은 일본 유신의 모임이 4, 7월 교부금 및 10월 교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유신의 당이 10월 교부금의 일부와 12월 교부금을 수령함.

337) 일본공산당은 정당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당교부금을 수령할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조성제도에 반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

4.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방법

1)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방법

- 법률에 의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정당별로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음.
 - 현재의 일본은 기본적으로 하향식 공천제도이나 정당별, 지역별, 선거 종류별로 다양한 방식이 있음.
 -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의 경우 대부분 하향식 공천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자에 한해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음. 다만 모집한 후보자들 또한 공천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최종 후보자를 결정함.
 - <사진1>은 민주당 홋카이도(北海道) 지부가 차기 중의원선거(2018년 예정³³⁸⁾)의 홋카이도 4구의 후보자를 공모하는 홈페이지³³⁹⁾의 이미지임. 민주당 홋카이도 지부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함.
 - <사진2>는 자민당이 차기 참의원선거(2016년 7월)의 후보자를 모집하는 홈페이지의 이미지임. 이는 <사진1>의 민주당과 달리 상향식과 하향식 공천이 혼합된 형태임. 공모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최대 10명의 결승 진출자를 선출한 뒤, 인터넷 투표를 통하여 상위의 후보를 참의원 선거 전국구(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함.

338) 다만 일본의 경우,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4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드물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앞당겨 실시될 수 있음.
339)

<http://www.minsyu.net/news/%E8%A1%86%E9%99%A2%E9%81%B8%E5%80%99%E8%A3%9C%E8%80%85%E3%82%92%E5%85%AC%E5%8B%9F%E3%80%90%E6%B0%91%E4%B8%BB%E5%85%9A%E5%8C%97%E6%B5%B7%E9%81%93%E7%AC%AC%EF%BC%94%E5%8C%BA%E7%B7%8F%E6%94%AF%E9%83%A8/>



〈사진 1〉 민주당의 후보자 공모

〈사진 2〉 자민당의 후보자 공모

-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파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천(공인)이 아닌 「추천」을 함. 추천의 경우, 많은 수의 후보자(주로 현직 후보자)가 자민당과 민주당으로부터 동시에 추천을 받기도 하는 등 당파성이 열음.

2) 여성 또는 소수자 정치 참여 관련 지원 규정

- 법적으로 여성 또는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권장하는 규정은 없음.
 - 여성,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쿼터제는 법률로 보장되지 아니하며 일부 정당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됨.
 - 모두의 당(みんなの党)³⁴⁰⁾이 2015년 통일지방선거 후보자의 4분의 1을 여성으로 하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2014년 11월 모두의 당이 해산됨으로서 무산됨³⁴¹⁾.
 - 민주당은 차기 국정선거(2016년 7월 참의원선거)부터 여성 쿼터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³⁴²⁾.

340) 2014년 11월 28일 해산

341) 일본경제신문, 2014년 7월 9일. “모두의 당, 후보자 선정에 여성 쿼터”

URL: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FS09H0E_ZOOC14A7PP8000/ (접속일자: 2015년 10월 20일)

342) 일본경제신문, 2014년 10월 12일. “야당 각당, 여성 등용 어필. 선거에 여성 쿼터 설치 검토”

URL: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12H0E_S4A011C1PE8000/ (접속일자: 2015년 10월 20일)

- 일본의 소수민족으로는 홋카이도의 아이누족(アイヌ族)이 존재하나 정치 참여 촉진에 관한 규정은 없음. 홋카이도의 지역 정당인 신당대지(新党大地)의 경우에도, 아이누족의 쿼터제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음.

3) 정당별³⁴³⁾ 의원정수 대비 여성의원수

국가명	의원정수			정당명	여성의원수		
	단원제	양원제			단원제	양원제	
		하원	상원			하원	상원
일본	해당없음	291	113	자유민주당	해당없음	25	16
		72	58	민주당		9	9
		35	20	공명당		3	3
		39	11	유신당		1	0
		21	11	일본공산당		6	4
		0	5	차세대당		0	1
		2	3	사회민주당		0	1
		0	7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0	1
		2	3	생활의 당과 야마모토 타로와 그 친구들		0	1
		0	2	신당개혁		0	0
		0	4	무소속 클럽		0	1
		11	5	기타/무소속		1	1
		2	0	결원		0	0
		475	242	총계		45	38

343) 엄밀히는 정당별이 아닌 회파(會派)별 의원수임. 회파는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에 상응함.

V. 선택과제

1. 영국 교육부
시민교육(초등) 지침 / 377
2. 서호주 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책임자(DMM) 임명 / 393



영국 교육부 시민교육(초등) 지침

-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가 2015년 2월 발간한 초등학교 민주주의 교육지침 번역(원문 포함)자료임.
- 영국 해외연구관(윤성원)이 원문 전체를 번역하여 선택과제로 제출함.

■ 시민권

본 지침은 법적규제가 아니므로 각 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로 하여금 시민교육 전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핵심 1단계 (Key stage 1: 만 5~7세)

핵심 1단계 기간에 속한 학생들은 개별경험 및 개인적·사회적·감정적 계발을 위한 각자의 초기 학습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습득해 나감.

이들은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기본적 규칙과 기술을 습득함. 그리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음. 이들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며, 다른 친구들과 연장자들의 시각과 필요, 권리 등에 대해 알게 됨.

학급 및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들은 공유하는 법, 임무를 번갈아 하는 법, 교제하는 법, 타인을 돕는 법, 간단한 수준의 논쟁을 해소하는 법, 약자 괴롭히기에 대응하는 법 등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함. 또 학교와 지역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

지식, 기술 및 이해

1. 자신감, 책임감 및 능력 활용기술 개발

필수학습내용:

- a.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 무엇이 정당하고 부당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인지

- b. 스스로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설명
- c. 스스로의 감정을 긍정적 방식으로 인지하고 표현하며 다루는 것
- d.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무엇에 능숙한지 습득하고, 본인에 대해 생각 하는 것
- e. 간단한 목표를 설정.

2. 시민으로서의 능동적 역할 준비

필수학습내용:

- a. 다른 학우 및 학급 전체와의 토의에 참여하기
- b. 시사관련 간단한 토론에 참여하기
- c. 스스로가 내릴 수 있는 선택사항을 인지하고,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구분하기
- d. 학급 내 규칙을 준수하고 동의하며, 해당 규칙이 어떻게 그들을 돕는지 이해 하기
- e.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진다는 점을 배우기
- f. 가족학교와 같은 다양한 집단과 공동체에 속한다는 점을 배우기
- g. 자신의 지역과, 자연, 공간 환경 등에 무엇이 유용하고 해로운지, 해당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배우기
- h. 학급과 학교생활에 공헌하기
- i. 수입이 다양한 경로로 발생할 수 있고, 다방면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깨닫기

3.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방식 개발

필수학습내용:

- a. 스스로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간단한 수준의 결정능력
- b. 개인위생 지속방법

- c. 질병 확산 이유 및 통제 방법
- d. 사람의 성장 및 노화과정과 그에 따른 필요사항의 변경 과정
- e. 신체 주요기관 이름
- f. 약물 등을 포함한 가정용품이 올바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해로울 수 있다는 점 배우기
- g. 기본적인 교통안전을 포함한 안전수칙 및 시민들의 안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우기

4. 원만한 대인관계 계발 및 사람들 간의 차이 존중

필수학습내용:

- a. 스스로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기
- b.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협력해 어울리고 일하기
- c. 사람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깨닫고 존중하기
- d. 가족들과 친구들은 서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점
- e. 약자를 괴롭히는 형태가 다양하며, 해당 행동은 잘못이라는 점, 괴롭힘을 당할 경우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배우기

5. 폭넓은 기회 제공

핵심 1단계 기간, 학생들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아래의 행동양식 습득을 위한 지식, 기술 및 이해도를 제고해야 함

- a. 책임 완수 및 분담 (예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 학급 내 규칙 작성에 참여하고 따르기, 애완동물 돌보기 등)
- b. 자아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예시, 과제완수 및 그에 따른 긍정적 피드백 부여)
- c. 토의 참여 (예시, '우리의 음식과 산업을 위한 자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와 같은, 학교, 지역, 국가, 유럽, 국제적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얘기하기)
- d. 실제적 상황에서 결정하기 (예시, 건강한 급식 식단 고르기, 텔레비전 시청 프로그램 정하기, 놀이 정하기,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모으는 법 등)
- e.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기 (예시, 종교지도자, 경찰관, 학교간호사 등과 같은

- 외부 사람들과 대화하기)
- f. 공부와 놀이를 통한 관계형성 (예시, 그룹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과 도구를 나누어 사용)
 - g.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회적·도덕적 딜레마 고려하기 (예시, 공격적 행동, 공정성에 대한 질문, 옳고 그름, 간단한 정치관련 사안, 돈의 사용, 간단한 환경관련 사안 등)
 - h. 도움 요청 (예시, 가족과 친구들, 학교 감독관, 상급생, 경찰관 등으로부터 도움 요청하기)

핵심 2단계 (Key stage 1: 만 7~11세)

핵심 2단계 기간 학생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과정에서, 그리고 고유의 경험과 생각들로 인한 개별성의 변화를 거치며 정체성을 습득해 나감.

이들은 보다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자신감을 얻게 됨. 세계가 넓다는 점과 그 가운데 상호의존적인 지역공동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배움. 사회정의 및 도덕적 책임 의식을 고양하고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사안을 비롯해 정치·사회단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함. 어떠한 형태로 학교와 지역사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습득함.

청소년 시기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사춘기의 변화를 겪고, 중등학교 진학을 위한 지원과 격려를 받게 됨. 이들은 스스로의 건강과 환경, 개인 및 단체로서의 책임감 고양,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에 있어 더욱 자신감 있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습득하게 됨.

지식, 기술 및 이해

1. 자신감, 책임감 및 능력 활용기술 개발

필수학습내용:

- a. 자신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쓰고, 설명
- b. 스스로가 지닌 긍정적 측면과 성취감, 실수를 만회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 등을 통해 자아의 가치를 발견
- c. 정보를 획득하고 도움을 구하며, 책임 있는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을 통해 주어진 도전을 긍정적으로 마주하기
- d.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어떤 정서적 변화를 겪고, 자아 및 가족, 타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등을 긍정적으로 인지
- e.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 가진 직업의 범위, 훗날 스스로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지 이해
- f.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관리하고, 절약이 필요하다는 점 깨닫기

2. 시민으로서의 능동적 역할 준비

필수학습내용:

- a. 시사적 이슈에 대한 연구, 토의 및 토론
- b. 규칙과 법규가 제정돼야 하는 이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규칙들이 필요한 이유, 규칙을 만들고 변경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 c. 개인 간 또는 공동체 내에서의 약자 괴롭히기, 인종차별 등 반사회적 또는 공격적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 이해
- d.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책임, 권리 및 의무가 존재하며, 때로는 이들 간 충돌 사안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기
- e.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상상력을 활용해 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사안에 대해 반추

- f. 대안을 검토하고 선택하며, 선택사안을 설명함으로써 차이점 해소
- g. 민주주의의 의미, 지역·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본적 기관
- h. 자원봉사단체, 지역사회, 이익단체 등의 역할 이해
- i. 영국 내 국가, 지역, 종교 및 민족적 정체성의 범위 인식
- j. 자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배분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적 선택방식이 개인 및 지역사회, 환경지속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해하기
- k. 언론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 이해

3.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방식 개발

필수학습내용:

- a. 운동과 건강한 식단 등의 유용성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요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익히기, 정보에 입각한 선택
- b.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과 바이러스 익히기, 이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수칙
- c. 사춘기에 접어드는 신체변화 이해
- d.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물품 및 의약품의 합법·불법성 및 그것의 영향과 위험성
- e. 다양한 상황에 잠복해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인지하기, 양식 있는 도로 이용 및 허용 가능한 신체접촉 범위 문제 등을 포함한 책임감 있는 행동양식 이해
- f.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험한 행동을 강요하는 압력이 지인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기본 요령 숙달
- g. 학교 내 건강과 안전수칙, 기본응급처치 절차 및 도움요청 방안

4. 원만한 대인관계 개발 및 사람들 간의 차이 존중

필수학습내용:

- a. 스스로의 행동이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 b. 다른 공간과 시대, 다른 가치와 관습을 지닌 사람들의 삶에 대한 숙고
- c. 결혼·교우·가족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 이해, 실질적 관계형성을 위한 기술개발
- d. 인종차별·약자 괴롭히기·공격적 행동 등의 유형과 결과 깨닫기, 해당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도움을 요청하는지 배우기
- e. 고정관념을 인지하고 도전하기
- f. 사람들 간 차이점과 유사점은 문화·민족·인종·종교·성별·장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로 발생
- g. 개인·가정·사회집단이 어디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배우기

5. 폭넓은 기회 제공

핵심 2단계 기간, 학생들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아래의 행동양식 습득을 위한 지식, 기술 및 이해도를 제고해야 함

- a. 책임완수 (예시, 학급환경 계획 및 관리, 동료 혹은 친구 역할, 후배들을 위한 중재역할 등을 통한 타인의 필요 인지, 동물들 돌보기, 수학여행 계획시 안전하고 건강하며 합리적인 여행 수단 확인)
- b. 자아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예시, 일기·프로필·포트폴리오 작성,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부여)
- c. 토의 참여 (예시,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을 의회·정부·선거 등과 같은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에 연계)
- d. 실제적 상황에서 결정하기 (예시, 흡연과 같은,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희소자원 사용문제, 용돈사용 및 자선단체 기부와 같은 재정관리 문제)

- e.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기 (예시, 환경보호단체 또는 국제구호기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 종교지도자·지역경찰관 등과 같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 f. 공부와 놀이를 통한 관계형성 (예시, 어린아이·노약자 등과 같이 특수한 필요를 요하는 사회적 그룹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성·이메일·편지 등을 활용해 다른 나라에 있는 어린이들과 소통하기)
- g.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사회적·도덕적 딜레마 고려하기 (예시, 서로 다른 인종 간 존중과 이해를 장려하는 활동 및 괴롭힘에 대한 대처)
- h. 정보검색 및 조연구하기 (예시, 상담서비스, 사회 내 복지체계 이해 등)
- i. 변화 준비하기 (예시, 중등학교 진학)

@ Crown copyright 2015

Reference: DFE-00057-2015



Department
for Education

Citizenship

This programme is non-statutory and schools are not required to follow it. It is included so that schools can plan a whole curriculum.

Key stage 1

During key stage 1 pupils learn about themselves as developing individuals and as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building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on the early learning goals for personal,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y learn the basic rules and skills for keeping themselves healthy and safe and for behaving well. They have opportunities to show they can take som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and their environment. They begin to learn about their own and other people's feelings and become aware of the views, needs and rights of other children and older people.

As members of a class and school community, they learn social skills such as how to share, take turns, play, help others, resolve simple arguments and resist bullying. They begin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life of their school and its neighbourhood.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Developing 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and making the most of their abilities

1. **Pupils should be taught:**
 - a. to recognise what they like and dislike, what is fair and unfair, and what is right and wrong;
 - b. to share their opinions on things that matter to them and explain their views;
 - c. to recognise, name and deal with their feelings in a positive way;

- d. to think about themselves, learn from their experiences and recognise what they are good at;
- e. how to set simple goals.

Preparing to play an active role as citizens

- 2. Pupils should be taught:**
- a. to take part in discussions with one other person and the whole class;
 - b. to take part in a simple debate about topical issues;
 - c. to recognise choices they can make, and recognise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 d. to agree and follow rules for their group and classroom, and understand how rules help them;
 - e. to realise that people and other living things have needs, and that they have responsibilities to meet them;
 - f. that they belong to various groups and communities, such as family and school;
 - g. what improves and harms their local,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and about some of the ways people look after them;
 - h. to contribute to the life of the class and school;
 - i. to realise that money comes from different sources and can be used for different purposes.

Developing a healthy, safer lifestyle

- 3. Pupils should be taught:**
- a. how to make simple choices that improve their health and wellbeing;
 - b. to maintain personal hygiene;
 - c. how some diseases spread and can be controlled;
 - d. about the process of growing from young to old and how people's needs change;
 - e. the names of the main parts of the body;
 - f. that all household products, including medicines, can be harmful if not used properly;
 - g. rules for, and ways of, keeping safe, including basic road safety, and about people who can help them to stay safe.

Developing good relationships and respecting the differences between people

4. **Pupils should be taught:** a. to recognise how their behaviour affects other people;
b. to listen to other people, and play and work cooperatively;
c. to identify and respec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people;
d. that family and friends should care for each other;
e. that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teasing and bullying, that bullying is wrong, and how to get help to deal with bullying.

Breadth of opportunities

5. **During the key stage, pupils should be taught the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through opportunities to:** a. take and share responsibility (for example, for their own behaviour; by helping to make classroom rules and following them; by looking after pets well);
b. feel positive about themselves (for example, by having their achievements recognised and by being given positive feedback about themselves);
c. take part in discussions (for example, talking about topics of school, local, national, European, Commonwealth and global concern, such as 'where our food and raw materials for industry come from');
d. make real choices (for example, between healthy options in school meals, what to watch on television, what games to play, how to spend and save money sensibly);
e. meet and talk with people (for example, with outside visitors such as religious leaders, police officers, the school nurse);
f. develop relationships through work and play (for example, by sharing equipment with other pupils or their friends in a group task);
g. consider social and moral dilemmas that they come across in everyday life (for example, aggressive behaviour, questions of fairness, right and wrong, simple political issues, use of money, simple environmental issues);
h. ask for help (for example, from family and friends, midday supervisors, older pupils, the police.)

Key stage 2

During key stage 2 pupils learn about themselves as growing and changing individuals with their own experiences and ideas, and as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They become more mature, independent and self-confident. They learn about the wider world and the interdependence of communities within it. They develop their sense of social justice and moral responsibility and begin to understand that their own choices and behaviour can affect local, national or global issues and political and social institutions. They learn how to take part more fully in school and community activities.

As they begin to develop into young adults, they face the changes of puberty and transfer to secondary school with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their school.

They learn how to make more confident and informed choices about their health and environment; to take more responsibility, individually and as a group, for their own learning; and to resist bullying.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Developing 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and making the most of their abilities

1. **Pupils should be taught:**
 - a. to talk and write about their opinions, and explain their views, on issues that affect themselves and society;
 - b. to recognise their worth as individuals by identifying positive things about themselves and their achievements, seeing their mistakes, making amends and setting personal goals;
 - c. to face new challenges positively by collecting information, looking for help, making responsible choices, and taking action;
 - d. to recognise, as they approach puberty, how people's emotions change at that time and how to deal with their feelings towards themselves, their family and others in a positive way;
 - e. about the range of jobs carried out by people they know, and to understand how

they can develop skills to make their own contribution in the future;

f. to look after their money and realise that future wants and needs may be met through saving.

Preparing to play an active role as citizens

2. Pupils should be taught: a. to research, discuss and debate topical issues, problems and events;

b. why and how rules and laws are made and enforced, why different rules are needed in different situations and how to take part in making and changing rules;

c. to realise the consequences of anti-social and aggressive behaviours, such as bullying and racism,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d. that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at home, at school and in the community, and that these can sometimes conflict with each other;

e. to reflect on spiritual, moral, social, and cultural issues, using imagination to understand other people's experiences;

f. to resolve differences by looking at alternatives, making decisions and explaining choices;

g. what democracy is, and about the basic institutions that support it locally and nationally;

h. to recognise the role of voluntary, community and pressure groups;

i. to appreciate the range of national, regional, religious and ethnic identities in the United Kingdom;

j. that resources can be allocated in different ways and that these economic choices affect individuals, communitie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environment;

k. to explore how the media present information.

Developing a healthy, safer lifestyle

3. Pupils should be taught: a. what makes a healthy lifestyle, including the benefits of exercise and healthy eating, what affects mental health, and how to make informed choices;

b. that bacteria and viruses can affect health and that following simple, safe routines

can reduce their spread;

c. about how the body changes as they approach puberty;

d. which commonly available substances and drugs are legal and illegal, their effects and risks;

e. to recognise the different risks in different situations and then decide how to behave responsibly, including sensible road use, and judging what kind of physical contact is acceptable or unacceptable;

f. that pressure to behave in an unacceptable or risky way can come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people they know, and how to ask for help and use basic techniques for resisting pressure to do wrong;

g. school rules about health and safety, basic emergency aid procedures and where to get help.

Developing good relationships and respecting the differences between people

4. Pupils should be taught: a. that their actions affect themselves and others, to care about other people's feelings and to try to see things from their points of view;

b. to think about the lives of people living in other places and times, and people with different values and customs;

c. to be aware of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 including marriage and those between friends and families, and to develop the skills to be effective in relationships;

d. to realise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racism, teasing, bullying and aggressive behaviours, and how to respond to them and ask for help;

e. to recognise and challenge stereotypes;

f. tha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people arise from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cultural, ethnic, racial and religious diversity, gender and disability;

g. where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can get help and support.

Breadth of opportunities

5. During the key stage, pupils should be taught the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through opportunities to: a. take responsibility (for example, for planning and looking after the school environment; for the needs of others, such as

- by acting as a peer supporter, as a befriender, or as a playground mediator for younger pupils; for looking after animals properly; for identifying safe, healthy and sustainable means of travel when planning their journey to school);
- b. feel positive about themselves (for example, by producing personal diaries, profiles and portfolios of achievements; by having opportunities to show what they can do and how much responsibility they can take);
- c. participate (for example, in the school's decision-making process, relating it to democratic structures and processes such as councils, parliaments, government and voting);
- d. make real choices and decisions (for example, about issues affecting their health and wellbeing such as smoking; on the use of scarce resources; how to spend money, including pocket money and contributions to charities);
- e. meet and talk with people (for example, people who contribute to society through environmental pressure groups or international aid organisations; people who work in the school and the neighbourhood, such as religious leaders, community police officers);
- f. develop relationships through work and play (for example, taking part in activities with groups that have particular needs, such as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the elderly; communicating with children in other countries by satellite, email or letters);
- g. consider social and moral dilemmas that they come across in life (for example, encouraging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races and dealing with harassment);
- h. find information and advice (for example, through helplines; by understanding about welfare systems in society);
- i. prepare for change (for example, transferring to secondary school.)

© Crown copyright 2015

Reference: DFE-00057-2015

서호주 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책임자(DMM) 임명

- 호주 해외연구원(김리라)이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3-14 연간보고서의 케이스스터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출함.

- 2014년 서호주 상원의원선거에서는 선거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원을 임시적으로 투표용지책임자(Divisional Materials Manager, DMM) 로 임명하였음.³⁴⁴⁾ 호주선거위원회는 이를 통해 투표용지를 더 세밀하게 검사하고 선거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선거결과의 공정성을 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 관리하고 포장, 이동, 저장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으며 이들은 선거가 있기 3주 전부터 하나의 투표소를 맡아 선거구관리관이 필요한 선거용품,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목록 준비함. 이들은 투표용지를 지정된 곳에 보관해 놓고 매일 검사하면서 투표용지를 옮길 때까지 투표용지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 선거일에 투표용지책임자는 각 투표소에서 모인 투표지와 이동투표지를 집계하고, 투표참관인이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때에도 이를 검사함. 그 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관(Divisional Returning Officer)에게 투표지와 선거 결과를 전달.

<출처>

호주선거위원회, 2013-14 연간보고서. A new role to deliver reform: Divisional Materials Managers at the 2014 Western Australian Senate election

호주 상원의원 재무행정 위원회 질의답변서. Senate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legislation committee, Answers to questions on notice additional estimates 2013-2014

344)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3-14 연간보고서의 케이스스터디 내용 정리.

출처 <http://annualreport.aec.gov.au/2014/case-study/dmm-at-wa.html> 2015년 10월 검색.

<원문 URL>

<http://annualreport.aec.gov.au/2014/case-study/dmm-at-wa.html>

http://www.aph.gov.au/~media/Estimates/Live/fapa_ctte/estimates/add_1314/finance/F49.pdf

The 2014 Western Australian Senate election was conducted under unprecedented scrutiny. The AEC needed to demonstrate that it had new, improved procedures in place to ensure the security of ballot papers, the quality of election services and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outcome. The new role of Divisional Materials Manager (DMM) would be central to achieving these goals.

The role of DMM was first introduced at the 2014 Griffith by-election. Given the larger scale of the WA Senate election, the role was enhanced and experienced temporary staff were appointed as DMMs for each WA electoral division.

DMMs were responsible for the movement, packaging, storage, and security of all of their division's election materials and for maintaining a detailed materials management log. They worked primarily at outposted centres - premises hired for a range of large-scale election tasks. In Perth, outposted centres housed several divisions and DMMs at these sites reported to a supervisor who oversaw material management for the whole centre.

Louise Foppoli was appointed the DMM supervisor at the Northern Scrutiny Centre and was responsible for supervising DMMs for three divisions - Cowan, Moore and Pearce. 'All the positions were new, which meant that, regardless of our election experience, we had a lot to learn', Louise said.

For nearly three weeks before the election, DMMs were responsible for organising materials for the officers in charge of each polling place, including ballot papers, certified lists and sundry election materials. 'We organised ballot paper secure zones in allocated areas within the scrutiny centre and monitored them daily so that movement of ballot papers was controlled and fully accounted for at all times', Louise said.

After election day, the DMMs had to ensure all ballot papers from each polling place as well as declaration votes were accounted for and could continue to be accounted

for at each phase of the subsequent scrutinies. They also worked closely with their respective Divisional Returning Officers to ensure that the ballot papers and results tallied for each division.

'The first few days after the election were definitely the most challenging' , Louise said. 'There was pressure to count votes as quickly as possible, but we could not compromise on the methodical accounting and packaging procedures to be followed. I was impressed with the dedication of everyone involved and the efforts they went to so that every ballot paper could be accounted for at every step in the process.'

Louise believes that trialling the new roles and procedures at state level was a vital step in the AEC' s reform process. 'I' m really confident my team did a great job - not just because we achieved the needed outcome but also because we added value along the way. We saw the intent of the changes straight away but sometimes minor adjustments to forms and processes were needed for the new procedures to work effectively on the ground' , she said.

'I' m sure the things we learned will help other AEC staff and ensure that full rollout at the next federal election is successful.'

Logistics and Materials Management

- Improved logistical and material handling policies and procedures, including guidance for OIC's on ballot paper transport and storage.
- Creation of a Divisional Materials Manager role for the election period, who will have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control of ballot paper movements and ensuring that all movements are documented. A job profile and briefing material has been developed in relation to this role. It will be supplemented by an election period State Materials Manager, who will provide coordination and consistency in practice across sites, and ensure compliance with new policies in conjunction with operation with operations managers.
- Post-election activities must be planned in a way that minimises ballot paper movements, which has necessitated larger out-posted centers for some divisions. An

additional checklist has been prepared to assist in the procurement of suitable out-posted centres.

- Ballot paper movements will be documented at every point from production until they are placed in long term storage. This will include a requirement for transport contractors to complete consignment documentation for each transfer. The intention is that we will know where our ballot papers are at any given point in time and who is responsible for their custody.

- Documentation will be required for all movements of all ballot materials, whether by transport contractors or staff.

VI. 부 록

1. 2015년도
해외연구관 현황 / 401
2. 2015년도
지정과제 목록 / 402



2015년도 해외연구관 현황

국가	성 명	학 력 및 경 력	보고서 제출내용		비 고
			지정 과제	선택 과제	
영국	윤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래드포드대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4건	1건	
독일	이승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크푸르트대 법학 박사과정 ◦ 고려대 법학과 졸업 	4건	-	
미국	박천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간주립대 정치학 박사과정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4건	-	
호주	김리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4건	1건	
일본	송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베대학 정치학 박사과정 ◦ 게이오대학 법학 학사 	4건		

2015년도 지정과제 목록

구분	과제 제목
1차	2009년 이후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정 내용
2차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방안
3차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재외선거, 거주불명등록자)
4차	정책선거 추진실태 및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5차	정당의 구성 및 활동 등에 대한 제도 및 운영실태

2015 해외연구관 보고서

2015년 11월 일 인쇄

2015년 11월 일 발행

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서울시종로구창경궁로110
TEL. 765-2393(제도연구부)

판권

소유

인쇄 아람문화인쇄
서울 중구 을지로38길 13-5
TEL. 2273-1459(대표전화)

<비매품>